



Agricultural Terms of Trade

농업통상 용어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Center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Extension Service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ONTENTS



농업 통상용어집

농업통상 용어 34

A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완전생산기준) 36

AARDO (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36

ACC (Anti-Concentration, 신축성 제한요건) 36

Accession (가입) 36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국가) 37

ACRE 프로그램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 평균작물수입)..... 37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 37

Adjustment Costs (구조조정 비용) 38

Ad Valorem Duty/Tariff (종가세)..... 38

AFBF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n, 미국농업인연맹) 38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기업인 자문회의) 38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39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중간재 흡수원칙) 39

Accumulation (누적조항) 39

AD Advisory Committee (반덤핑 자문위원회)..... 39

ADB (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39

Adjustment Tariff (조정관세) 40

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PEC 정상회의)..... 40

AEM (Meeting of the ASEAN Economic Ministers,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40

Alternative duty (선택세) 40

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41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41

Agenda 2000 (의제 2000)..... 41

Agenda 21 (의제 21)..... 42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42

Agreement on Agriculture (농업협정) 42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45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설립협정)..... 45



| | |
|--|----|
| Agricultural Subsidy (농업보조금) | 46 |
| A-H1N1..... | 46 |
| AI (Avian influenza, 조류독감)..... | 47 |
| AIE (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분석 및 정보교환)..... | 47 |
| ALOP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적정보호수준)..... | 47 |
| AMAD (Agricultural Market Access database, 농업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 | 48 |
|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농업보조총액)..... | 48 |
| Amber Box (감축대상 농업보조)..... | 48 |
| Anadromous Fish (소하성 어족)..... | 48 |
| Analytical Index (분석인덱스)..... | 49 |
| 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동식물건강검역청, APHIS)..... | 49 |
| Antarctic Treaty (남극조약)..... | 49 |
|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적정수준 보호, ALOP)..... | 49 |
| Anti-Circumvention (반우회덤핑) | 49 |
| Anti-Dumping Duty (반덤핑관세)..... | 50 |
| APB-NET (Asia-Pacific Business Net, APEC 기업망) | 50 |
|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50 |
|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APEC 무역·투자위원회)..... | 51 |
| 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APEC 비구속적 투자준칙) | 51 |
| Appellate Body (상소기구) | 52 |
| Appellation of Origin (원산지 명칭)..... | 52 |
| Appellate Review (상소검토)..... | 52 |
| Applied Tariff (실행관세)..... | 52 |
| Arbitration (중재)..... | 53 |
| ARP (Acreage Reduction Program, 식부면적 감축계획)..... | 53 |
| Article 113 Committee (113조 위원회) | 53 |
| Artisanal fisheries (전통어업)..... | 54 |
| ASC (APEC Study Center, APEC 연구센터)..... | 54 |
| A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54 |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 54 |
|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ASEAN 산업협력 프로그램) | 55 |



| | |
|---|----|
| ASEAN Investment Area (ASEAN 투자지대)..... | 55 |
| ASEAN+3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 55 |
|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 55 |
| ASEM Connect | 56 |
| Asia-Europe Vision Group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 56 |
| ASPs (Agreement-Specific Proposals, 협정별 제안)..... | 56 |
| ATCWG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Working Group) | 56 |
| ATL (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 조기 자유화) | 56 |
| Atlantic beef/pigmeat market (대서양 소고기/돼지고기 시장) | 56 |
| At-the-border barriers (국경장벽) | 57 |
| AUSFTA (Australia-US Trade Agreement,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 | 57 |
| Automaticity (자동성)..... | 57 |
| Automatic Import Licensing (자동수입허가)..... | 57 |
| Autonomous Tariff (할당관세) | 58 |
| AVE (Ad Valorem Equivalent, 종가세 상당치) | 58 |
| Award of contracts (낙찰)..... | 58 |

B

| | |
|--|----|
| BAC (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예산행정위원회)..... | 62 |
| Backloading (후기〔後期〕이행)..... | 62 |
| Balance of current account (경상수지) | 62 |
|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 62 |
| Bali Package (발리패키지) | 62 |
| Bangkok Agreement (방콕협정) | 63 |
| Barter Trade (구상무역)..... | 64 |
|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영해기선)..... | 64 |
| Base Rate (기준세율)..... | 64 |
| Base Total AMS (기준총보조총액 측정치)..... | 65 |
| Basel Convention (바젤협약) | 65 |
| Behind the Border (국경 내 장벽) | 65 |
| BIA (Built-in Agenda, 기설정 의제) | 65 |
| BIAC (Business & Industry Advisory Committee, 기업산업 자문위원회)..... | 66 |



Bilateral Negotiation (양자협상)..... 66

Bilateral Safeguards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66

Bilateral Trade Agreement (양자간 무역협정)..... 66

Bilateralism (양자주의) 67

Bindings (구속적 양허)..... 67

Binding overhang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67

Binding ratio (양허비율)..... 67

Biomass Conversion (생물자원) 67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68

BIS Ratio (자기자본비율)..... 68

BISD (Basic Instrument and Selected Document) 68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보장협정)..... 69

Blair House Accord (블레어하우스 합의)..... 69

Block Exemptions (분야별 제외)..... 71

Blue Box(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71

Bogor Declaration (보고르선언) 72

Bolar Provision (볼라 규정)..... 72

BOP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 73

BOP Article (Balance of Payment Article, 국제수지보호조항)..... 73

Border Protection (국경보호) 74

Border Tax Adjustment (국경세조정) 74

Bound Tariff (양허관세) 74

Bounty (보조금)..... 74

Box (국내농업보조의 카테고리)..... 75

BPA (Bilateral Payment Arrangement, 양자지불방식협정)..... 75

Bretton Woods System (브레튼우즈 체제) 75

BRICs (Brazil-Russia-India-China, 브릭스) 75

Brussels Ministerial Meeting (브뤼셀 각료회의) 76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76

BTL (Base Trigger Level, 기초발동수준)..... 77

Business Practices (영업관행) 77



C

C-TPAT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80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80

Cabotage (연안운송 금지)..... 80

Cabotages (국내운항권)..... 80

Cairns Group (케언즈 그룹)..... 80

Calvo Clause (칼보조항)..... 81

Canada-Periodicals Case (캐나다 정기간행물사건) 81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 81

CAP (Collective Action Plan, 공동실행계획) 83

Capping (상한 설정) 83

Carbon Footprint Scheme (탄소발자국) 83

Cargo Manifest (적하목록)..... 84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공동시장)..... 84

Carnet Convention (까르네 협정) 84

Carry forward (조상)..... 84

Carry over (이월) 84

Carve out (제외)..... 85

Cascading tariffs (중첩적 과세)..... 85

Catadromous fish (강하성 어종) 85

Causality (인과성)..... 85

CB (Capacity Building, 능력배양 또는 능력형성) 86

CBSPC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 86

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86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86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기구) 87

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상품신용공사)..... 87

CCFTA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칠레 FTA)..... 88

CCP (Counter Cyclical Payment, 가격보전직불제도)..... 89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국제상호인정협정) 89



| | |
|--|----|
| CCRF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책임수산업규범)..... | 89 |
| CCSB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 90 |
| CDS (Catch Documentation Scheme, 어획증명제도) | 90 |
| CE (Conformité Europé)..... | 90 |
| 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 90 |
| Ceiling Binding (한도양허)..... | 91 |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91 |
|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 91 |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 | 91 |
|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92 |
| Change in tariff heading (세번 변경)..... | 92 |
| Chicago Convention (시카고 협약) | 92 |
| CIQ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세관, 출입국관리 및 검역)..... | 92 |
| Circumvention (우회덤핑)..... | 93 |
|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우회 수출보조) | 93 |
|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93 |
|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멸종동식물 보호협약) .. | 94 |
| Clawback GI (지리적표시) | 94 |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94 |
| Cluster (협상방식)..... | 94 |
| CMA (Current Market Access, 현행시장접근)..... | 95 |
| CMO (Common Market Organization, 설탕공동시장조직) | 95 |
| Code-conditioned Most-favored-nation-treatment (협정가입 조건부 최혜국대우) | 95 |
|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OECD 양대 자유화규약)..... | 95 |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96 |
| COGECA (General Committee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유럽농협연합회) | 96 |
| Combined Duty (혼합세) | 96 |
| Commercial Loan (상업차관)..... | 96 |
|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 97 |



| | |
|---|-----|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 집행위원회) | 97 |
| Commission on Investment, Technology and Related Financial Issues (투자, 기술 및 관련금융위원회)..... | 97 |
| Commitment (약속)..... | 97 |
| Committee on Agriculture (WTO 농업위원회) | 97 |
|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협정위원회) | 98 |
|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원회)..... | 98 |
|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위원회)..... | 99 |
| Common Market (공동시장) | 99 |
| Commercial Consideration (상업적 고려)..... | 99 |
| Compensation (보상)..... | 99 |
| Compensatory Payment (보상지불제도)..... | 100 |
| Competition policy (경쟁 정책)..... | 100 |
| Compound duty (복합세)..... | 100 |
| Compound tariff (복합관세) | 100 |
| Comprehensive Tariffication (포괄적 관세화)..... | 101 |
| Concession (양허)..... | 101 |
| Concession Negotiation (양허협상) | 101 |
| Consensus (만장일치제) | 101 |
| Conservation Compliance (보전동의 규정)..... | 102 |
| Consolidated Text (통합협정문)..... | 102 |
| Consular Transaction (영사거래)..... | 102 |
| Consultation (협의)..... | 102 |
| Contingent Measure | 103 |
| Contiguous Zone (접촉수역) | 103 |
| Contracting Party (체약국) | 103 |
| Continental shelf (대륙붕) | 103 |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 103 |
|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 | 104 |
| Coordinator's Meeting (조정국회의)..... | 103 |
| COPA (Committee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the EU, 유럽농민단체협의회) | 104 |



| | |
|---|-----|
| Copyright (저작권) | 105 |
| Copyright Treaty (저작권조약) | 105 |
| COREPER (Committee of Parliament Representatives, 상주대표위원회) | 105 |
| Cotton-4 | 105 |
| Council of Europe (유럽평의회) | 105 |
| Council of Ministers (각료이사회)..... | 106 |
| Countervailing Measure (상계조치)..... | 106 |
| Country List (국별 농업보호현황자료) | 106 |
| Country of Origin (원산지) | 107 |
| Country of Origin Marking (원산지 표시제도) | 108 |
| Country Quota (국별 쿼터) | 108 |
| Country Risk (국가 위험도) | 108 |
| CPUE (catch per unit effort, 단위노력당 어획량) | 108 |
| Credit (기여실적)..... | 109 |
| Critical Mass | 109 |
| Crop Year (곡물년도)..... | 109 |
| Cross Compensation (교차보상)..... | 109 |
| Cross-cutting issue (공통이슈)..... | 109 |
| Cross Retaliation (교차보복)..... | 110 |
| 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보존유보계획)..... | 110 |
| C/S (Country Schedule, 국별양허표)..... | 110 |
| CSE (Consumer Support Estimate, 소비자지지추정치) | 110 |
| 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위원회)..... | 111 |
| CTG (Council for Trade in Goods, 상품무역이사회) | 112 |
| 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위원회) | 112 |
| CT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이사회)..... | 113 |
| Cumulative Assessment (누적 피해판정) | 113 |
| Customs Broker (관세사) | 113 |
|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섬유류 통관협력)..... | 113 |
| Customs Free Zones (관세자유구역) | 113 |
| Customs taxes (통관세) | 114 |
| Customs Territory (관세영역) | 114 |



Customs Union (관세동맹)..... 114
 Customs Valuation (관세평가)..... 114
 Current Total AMS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 115
 CVD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 115

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118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118
 Decoupling (디커플링)..... 118
 Decoupled Income Support (비연계소득보조)..... 118
 de facto Discrimination (사실상의 차별)..... 119
 Default (채무불이행)..... 119
 Default clause (디폴트조항)..... 119
 Deficiency Payments (부족불 제도)..... 119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확정 반덤핑관세)..... 120
 De jure discrimination (법적 차별)..... 120
 Delayed Tariffication (관세화 유예)..... 120
 De minimis dumping margins (미소 덤핑마진)..... 120
 De-minimis (최소허용보조)..... 121
 Destination Principle (소비국 과세원칙)..... 121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121
 Dezeeuw Draft (드쥬의장 초안)..... 121
 DFQF (Duty-free Quota-free, 무관세 무쿼터)..... 122
 DG (Directorate-General, 집행위원회의 총국)..... 122
 Dillon Round (딜론라운드)..... 123
 Directive (지침)..... 123
 Direct Payment (직접지불제도)..... 123
 Dirty Tariffication (편법 관세화)..... 124
 Disguised Trade Barriers (위장된 무역장벽)..... 125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 125
 Distortion (왜곡)..... 126
 Diversionsary Dumping (전환적 덤핑)..... 126



| | |
|---|-----|
| Diversity of Origin (수입선다변화 제도) | 126 |
| DMEG (Dispute Mediation Experts Group, 분쟁조정 전문가그룹)..... | 126 |
| Domestic Subsidy (국내보조금) | 126 |
| Down Payment (초기 가시화 자발적 선행조치) | 127 |
| Drawback System (관세환급제도) | 127 |
| Drawback (환급)..... | 127 |
|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 128 |
| 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 128 |
| Dumping (덤핑)..... | 128 |
| Dumping Margin (덤핑 마진)..... | 128 |
| Dunkel's Draft Final Act (던켈초안)..... | 129 |
| Dynamic Asian Economies(아시아 고도 성장국) | 130 |

E

| | |
|---|-----|
| EAEC (East Asian Economic Caucus, 동아시아경제협의체)..... | 134 |
| EAERR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 동아시아비상쌀비축제) | 134 |
| EAF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생태계적 접근) | 134 |
| EAI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아세안 행동계획)..... | 134 |
| Early harvest (조기수확) | 135 |
| 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제도)..... | 135 |
| EBA (Everything but Arms) | 135 |
| EBRD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 135 |
| 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 135 |
| Economic Leader's Meeting (경제지도자 정상회의) | 136 |
| Eco- Labelling (환경표시제)..... | 136 |
|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 136 |
|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 137 |
| ECU (European Currency Unit, 유럽통화단위) | 137 |
| EC Oilseeds Case (EU 유지종자분쟁)..... | 137 |
| EC Banana Case (EC 바나나분쟁) | 138 |
| EC Hormmone Case (호르몬사건) | 138 |
| Economic Intergation (경제통합)..... | 139 |



| | |
|---|-----|
| ECOTECH (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경제기술협력)..... | 139 |
|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 139 |
| EEP (Export Enhancement Program, 수출증대프로그램)..... | 139 |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140 |
|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 140 |
| Effective exchange rate (실효환율)..... | 140 |
| EISA 2007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 에너지독립안보법)..... | 141 |
|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 141 |
| El Nino (엘니노 현상)..... | 141 |
| E-mark (환경마크)..... | 141 |
| Emerging Market Program (신흥시장계획)..... | 142 |
| 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제)..... | 142 |
| EMM (Economic Ministerial Meeting, ASEM 경제장관회의)..... | 142 |
| EMS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보조상당측정치)..... | 142 |
| EN (European Standard, 유럽규격)..... | 143 |
| Enabling Clause (권능부여조항)..... | 143 |
| Enlargement (가입확대)..... | 143 |
| Enquiry Point (문의처)..... | 144 |
| EPG (Eminent Persons Group, APEC 저명인사그룹)..... | 144 |
| Equivalence (동등성)..... | 144 |
| ERA (Effective Rate of Assistance, 유효지원율)..... | 144 |
|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발전기금)..... | 144 |
| ERP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유효보호율)..... | 145 |
| ESC (ECOSOC.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경제사회위원회)..... | 145 |
|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 145 |
| Escape Clause (면책조항)..... | 146 |
|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 146 |
| EURO (유로화)..... | 146 |
| Euro-Council/Euro-X (Euro 이사회)..... | 147 |
|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 | 147 |
| 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분야별 조기 자유화)..... | 147 |



| | |
|---|-----|
| Excise duty (물품세)..... | 148 |
| Exempted Domestic Support (허용대상 국내보조) | 148 |
|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 | 148 |
| Export Credit (수출신용)..... | 148 |
|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 149 |
| Export Credit Programme (수출신용보증계획)..... | 149 |
| Export Competition (수출경쟁)..... | 149 |
| Export Enhancement Program (수출진흥계획)..... | 150 |
|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 | 150 |
| Export Price (수출가격)..... | 151 |
| Export quota (수출쿼터)..... | 151 |
| Export restitutions (수출반환)..... | 151 |
| Export subsidies (수출 보조금)..... | 151 |
| Export Subsidy (수출보조)..... | 151 |
| Export tax/tariff (수출세)..... | 153 |
| External Reference Price (외부참조가격)..... | 153 |

F

| | |
|---|-----|
| FA (Final Act, 최종의정서)..... | 156 |
| FAD (Fish Aggregating Device, 어류군집장치) | 156 |
| Fair Trade (공정무역)..... | 156 |
| Farm Bill (미국 농업법)..... | 156 |
|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 157 |
| FAO Compliance Agreement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FAO 이행협정)..... | 157 |
| FAO/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잉여농산물 처분원칙) | 158 |
| Farmer Owned Reserve Program (농가보유비축제도)..... | 159 |
| Fast 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 | 159 |
| Fast Track Procedure (신속처리절차) | 159 |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 | 160 |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 160 |



| | |
|---|-----|
| FFA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 160 |
| FFG (Fish Friends Group, 피시 프렌즈 그룹)..... | 161 |
| First Action..... | 161 |
| Fisheries management (어업관리)..... | 161 |
| Fish finder (어군탐지기)..... | 161 |
| FIPs (Five Interested Parties, 주요 5개국)..... | 162 |
| FMD (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 162 |
| Flexible Tariff (탄력관세)..... | 162 |
| Flexibility (신축성)..... | 162 |
| Flooring (하한 설정)..... | 163 |
| FMDP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외국시장개척 정책)..... | 163 |
| FNR (Friends of a New Round, 뉴라운드 우호국)..... | 163 |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 163 |
| FOC (Flag of Convenience, 편의치적선)..... | 163 |
| Food Aid (식량원조)..... | 164 |
| Food Chain (먹이사슬)..... | 164 |
| Food Safety (식품안전)..... | 164 |
| Food Stamp (식품권)..... | 165 |
| Food Security (식량안보)..... | 165 |
| Food Web (먹이그물)..... | 166 |
| Formula Approach (공식적용방식)..... | 166 |
| Free-Rider (무임승차국)..... | 166 |
| Free-Trade Area (자유무역지대)..... | 166 |
| Freezing (자유화수준동결)..... | 166 |
| Frontloading (전기이행)..... | 167 |
| FSIS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식품안전검사국)..... | 167 |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167 |
|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 | 168 |

G

| | |
|------------------------------|-----|
| G7 (Group7, 선진 7개국)..... | 172 |
| G10 (Group of 10, 10그룹)..... | 172 |



| | |
|--|-----|
| G20 (Group of 20, 20그룹)..... | 172 |
| G33 (Group of 33, 33그룹)..... | 172 |
| G77 (Group of 77, 77그룹)..... | 172 |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73 |
|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73 |
| GATT 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194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74 |
| GATT 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94,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74 |
| GATT 8조..... | 174 |
| GATT 14조..... | 174 |
| GATT 17조..... | 175 |
| GATT 18조..... | 175 |
| GATT 20조..... | 175 |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175 |
|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 176 |
|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176 |
| General Council (WTO 일반이사회)..... | 176 |
| General Exception (일반적 예외)..... | 177 |
| General Tariff (일반관세) | 177 |
|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 | 177 |
| GHG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 178 |
| Girard formula (지라르 공식) | 178 |
| Global Approach (총체적 감축방식)..... | 178 |
| Global Quota (총량 쿼터)..... | 179 |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 179 |
|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 179 |
| GNP deflator (Gross National Product Deflator) | 180 |
| GNS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서비스협상그룹)..... | 180 |
| Good Offices, Conciliation, Mediation (추선, 조정, 중개) | 180 |
|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 181 |
|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 181 |



| | |
|--|-----|
| Grain Major (곡물메이저) | 182 |
| Grandfather Clause (조부조항) | 183 |
| Gravity Model (중력모형) | 183 |
| Green Box (허용대상농업보조) | 183 |
| Green Room (그린룸) | 183 |
| Green Round (그린라운드) | 184 |
| GRA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 | 184 |
| Grey Area Measure (회색지대조치) | 184 |
| 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모범규제관행) | 185 |
| GRULAC (Group of Latin-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남미·카리브 연안 국가군) | 185 |
| GSM 프로그램 (General Sales Manager, 수출신용보증제도) | 185 |
|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 186 |
|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국제무역특혜제도) | 186 |
| GTA (Growth Triangle Area, 성장삼각지대) | 187 |
| GTAP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 | 187 |

H

| | |
|--|-----|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 190 |
| Harmonization of Tariffs (관세조화) | 190 |
| Harmonized Rules of Origin (통일원산지규정) | 190 |
| Harmonized Standards (통일규격) | 190 |
| Havana Charter (하바나 헌장) | 190 |
| High Seas (공해) | 191 |
| High sea fisheries (공해어업) | 191 |
| Highly Migratory Species (고도회유성어종) | 191 |
| Historical preferences (역사적 특혜) | 192 |
| HOD (Heads of Delegations) 회의 | 192 |
| Horizontal Approach (수평적 접근방식) | 192 |
| Horizontal Commitments (수평적 양허) | 192 |
| Horizontal Issues (수평적 이슈) | 192 |
|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192 |



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한국품목분류) 193

I

IAP (Individual Action Plan, 개별실행계획) 196

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전미열대 참치위원회) 196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196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 196

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197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197

IE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국제환경협약) 197

IF (Integrated Framework, 개도국지원을 위한 통합체제) 197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 농업개발기금) 198

IFC (Int'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198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198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198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199

Import Licensing (수입허가) 199

Import Licensing Procedure (수입허가절차) 199

Import Quotas (수입쿼터) 200

Import Restrictions (수입제한) 200

Import Surcharge (수입과징금) 200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200

Injury (피해) 201

In-quota rate (할당관세율) 201

INR (Initial Negotiation Right, 최초협상국 권한) 201

Insurance on Cargo (적하보험) 201

Interim Review (잠정검토제도) 202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환경비용의 내부화) 202

Intervention purchase price (개입구매가격) 202

Intervention stocks (개입 재고량) 202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Tuna and Tuna like species in the North
 Pacific Ocean (국제과학위원회) 203
 Invasive Alien Species (침입성외래종) 203
 Investment-related Trade Measures (투자관련 무역조치) 203
 Invisibles Meeting 203
 Inward Processing (역내가공) 203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인도양참치위원회) 203
 IPAP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투자촉진행동계획) 204
 IPOA-IUU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204
 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204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205
 ISD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투자서비스에 관한 지침) 205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205
 Item by Item Formula (품목별 협상방식) 205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206
 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206

J

Jones Act 210
 Juridical person (법인) 210
 Jurisdictional Sea Area (관할해역) 210
 July Package (7월 패키지) 210

K

Kennedy Round (케네디 라운드) 214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214
 Korea-US Beef Case (한-미 쇠고기 분쟁) 214
 Koyto Protocol (교토 의정서) 217

L

LDCs (Least-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220



| | |
|--|-----|
| Lesser Duty Rule (최소부관원칙)..... | 220 |
| Lesser duty principle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부과 원칙)..... | 221 |
| Less than full compensation (동등하지 아니한 보상)..... | 221 |
| Less-than-formula Cut (공식에 의한 것보다 적은 감축)..... | 221 |
| Lex speciali (특별법 우선의 원칙)..... | 221 |
| Lex posterior (신법 우선의 원칙)..... | 221 |
| LFA (Less Favoured Area, 조건불리지역)..... | 222 |
| Like Product (동종상품)..... | 222 |
| Linear Tariff Reduction (관세인하방식)..... | 222 |
| Lisbon Agreement (리스본협약)..... | 223 |
| Loan Deficiency Payments (LDP, 융자부족분지불제도)..... | 223 |
| Lome Convention (로메협정)..... | 223 |
| London Dumping Convention (런던협약)..... | 223 |
| LTFR (Less-Than-Full Reciprocity, 불완전 상호주의)..... | 224 |
| Limited Tendering (제한입찰)..... | 224 |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 224 |

M

| | |
|---|-----|
| Maastricht Treaty (마하트리히트 조약)..... | 228 |
| 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다자간 투자협정)..... | 228 |
| Market Failure (시장실패)..... | 228 |
| Madrid Agreement (마드리드협약)..... | 228 |
| Managed Trade (관리무역)..... | 229 |
|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관리변동환율제도)..... | 229 |
| Mailbox (메일박스)..... | 229 |
| Margin of Preference (특혜마진)..... | 229 |
| Maritime Flag State (기국주의)..... | 229 |
| Market Access (시장접근)..... | 230 |
| Market Disruption (시장교란)..... | 230 |
| Market Transparency (시장투명성)..... | 230 |
| Marketing Loan (시장융자제도)..... | 230 |
|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



| | |
|--|-----|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 231 |
| Marks of Origin (원산지 표시) | 231 |
| Mark-up (수입차익)..... | 232 |
| Mark-up (미양허품목) | 232 |
| MCS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감시감독통제) | 232 |
|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다자간환경협약) | 232 |
| Measure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233 |
| MFA (Multi-Fiber Arrangement, 다자간 섬유협정)..... | 233 |
| 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 233 |
| MFN 관세 (Most-Favoured Nation Tariff) | 234 |
| MFN exemption (최혜국대우 면제)..... | 235 |
| Mid-Term Review (중간평가) | 235 |
| Ministerial Conference (WTO 각료회의)..... | 236 |
| Ministerial Decision and Declaration (각료결정 및 선언) | 236 |
| Ministerial Meeting (APEC 각료회의) | 236 |
| MM (Monitoring Mechanism, 이행현황 감독기구)..... | 237 |
| MMA (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 237 |
| Modalities (협상 세부원칙) | 237 |
| Mode 1~4 (서비스의 공급형태) | 237 |
| Modification of Schedules (양허표의 수정)..... | 238 |
| Montreal Protocol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238 |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 238 |
| MPA (Marine Protected Area, 해양보호구역) | 239 |
| MPP (Market Promotion Program, 시장촉진정책)..... | 239 |
| MPS (Market Price Support, 시장가격지지) | 239 |
| 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최대지속적생산량)..... | 240 |
| Multi-Domestic Corporation (다국적 기업)..... | 240 |
| Multilateralism (다자주의) | 240 |
| Multilateral Negotiation (다자간협상) | 240 |
| Multifunctionality (다원적 기능)..... | 240 |
|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241 |



N

NAC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s, 명목지원계수)..... 244

NAFO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북서대서양수산기구)..... 244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 무역협정)..... 244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시장접근) 245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245

NAWG (National Association of Wheat Growers, 미국밀생산자연협회) 246

NCBA (National Cattleman's Beef Association, 미국축산협회) 246

Negative List (금지목록 또는 네거티브 방식) 246

Negligible Imports (미소수입물량) 247

New Round Negotiation (뉴라운드협상) 247

NFIDC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식량순수입 개도국) 248

NFU (National Farmers Union) 248

Non-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 248

Notification (통보)..... 248

Non ad valorem duties (비종가세)..... 249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비자동수입허가)..... 249

Non-Conforming Measure (비합치 조치) 249

Non-Discrimination Principle (무차별 원칙) 249

Non-Cumulation (비누적)..... 250

Non-Exempted Domestic Support (감축대상 국내보조) 250

Non-linear formula (비선형 공식)..... 250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 원산지 규정) 251

Non-Product-Specific AMS (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251

Non-Recourse Commodity Loans (비상환상품융자제도) 251

Non Recourse Loan Programme (비상환청구권융자 프로그램)..... 252

Non-Tariff Measures (비관세조치) 252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 252

Non-Violation Complaints (비위반청구) 252

Normal Value (정상가격) 253

Non-Violation Case (비위반사건)..... 253

NPAFC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253



NTC (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기능)..... 254
 NTE Report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255
 Nuisance Tariff (소액관세)..... 255
 Nullification or Impairment (무효화 또는 침해) 256

O

OAA (Osaka Action Agenda, 오사카행동지침) 260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260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260
 OECD/Act of OECD (제규범)..... 262
 OECD/Committee for Agriculture (OECD 농업위원회)..... 263
 OECD/Committee & Working Party (OECD위원회 및 작업반) 263
 OECD/Convention (OECD 협정) 263
 OECD/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 각료이사회)..... 264
 OECD Hard Core Cartel Recommendation (OECD 경성 카르텔 권고) 264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뇌물방지협약) 264
 OECD 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OECD 특별집행위원회) 264
 Official exchange rate (공정환율)..... 265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국제수역사무국)..... 265
 OMA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 265
 Openness (개방도) 266
 Open Regionalism (개방적 지역주의)..... 266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 266
 Open tendering (공개입찰)..... 266
 Opinion (의견) 267
 Original Principle(생산국 과세원칙)..... 267
 Osaka Declaration (오사카선언) 267
 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무역왜곡보조총액)..... 268
 Out-of-quota rate (초과할당 관세) 268
 Outward Processing (역외가공) 268

**P**

| | |
|--|-----|
| Pacific beef/pigmeat market (태평양 육류 시장은 구제역, Food and Mouth Disease; FMD)..... | 272 |
| Panel (패널) | 272 |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파리협약) | 273 |
| Parallel import (병행수입)..... | 273 |
| Parallelism (평행주의)..... | 274 |
| Paris Club (파리클럽)..... | 274 |
| Partnership Agreement (신동반자협정)..... | 274 |
| 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경제인협의회)..... | 274 |
| PBF (Pacific Business Forum, 태평양기업인포럼) | 274 |
|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태평양경제협력회의)..... | 275 |
| Peer review (상호검토)..... | 275 |
| Pest-or Disease-Free-Area (병해충 안전지역) | 275 |
| Peace Clause (평화조항)..... | 275 |
| Phytosanitary [plant health] certificate (식물위생증명서) | 276 |
| PL 480 (미 공법) | 276 |
|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복수국간 무역협정)..... | 276 |
| 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 277 |
| PIC (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 277 |
| PIK Programme (Payment-in-Kind Program, 패이먼트 인 카인드 프로그램)..... | 277 |
| Polluters Pay Principle (오염자 부담원칙) | 277 |
|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278 |
| Pre-arrival processing (도착전 처리) | 278 |
| Price Undertaking (가격인상약속)..... | 278 |
| PROCAMPO (프로캄포)..... | 278 |
| Prohibited subsidy, red subsidy (금지보조금) | 279 |
| Protocol on Biosafety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279 |
|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잠정 반덤핑관세) | 279 |
|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잠정 상계관세) | 279 |
| Provisional Measure (잠정조치)..... | 280 |
| Progressive Liberalisation (점진적 자유화)..... | 280 |



| | |
|--|-----|
| Port State Measures (항구국조치)..... | 280 |
| Positive comity (적극적 예양)..... | 280 |
| Positive System (포지티브 시스템)..... | 281 |
| PPM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제조공정방법)..... | 281 |
|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 281 |
|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 원칙)..... | 281 |
| Preferences (특혜)..... | 282 |
| Preferences Erosion (특혜침식)..... | 282 |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 원산지 규정)..... | 282 |
| Preferential Tariff (특혜관세)..... | 282 |
| Preshipment Inspection (선적전 검사)..... | 283 |
| Principle of Comprehension (포괄성 원칙)..... | 283 |
| Principle of Flexibility (신축성 원칙)..... | 284 |
|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 | 284 |
| Precautionary Approach (예방적 접근)..... | 284 |
|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무역특혜협정)..... | 285 |
|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 (생산자 은퇴계획)..... | 285 |
| Product Specific AMS (품목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 285 |
|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생산탄력계약)..... | 285 |
| Prohibited Subsidy (금지 보조금)..... | 286 |
| Protocol (의정서)..... | 286 |
| Protocol of Accession (가입의정서)..... | 287 |
| Provisional Safeguard (임시 세이프가드)..... | 287 |
| PSE (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추정치)..... | 287 |
| PSI (Principal Supplying Interest, 주요 공급국)..... | 288 |
| Punta del Este Declaration (푼타 델 에스테 선언)..... | 288 |

Q

| | |
|--|-----|
| QR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제한)..... | 292 |
| Qualified Majority Voting (가중다수결)..... | 292 |
| Quad (협상 주요 4개국)..... | 292 |
| Quota (수입할당)..... | 293 |



Quota Auction (수입권 공매)..... 293

R

| | |
|---|-----|
| RAM (Recently Acceded Members, 신규가입국) | 298 |
| Ratchet (역진방지장치 또는 자유화후퇴방지)..... | 298 |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경제협력협정)..... | 298 |
| Reciprocity (상호주의, 호혜성) | 298 |
| Recycling (재활용) | 298 |
| 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신재생에너지지침) | 299 |
| Red-Amber-Green Light (신호등 분류방식)..... | 299 |
| Regionalism (지역주의) | 299 |
| Regional Value contents (역내 부가가치 기준)..... | 300 |
| Reciprocity (상호주의) | 300 |
| Request (시장개방요구서) | 301 |
| Residual Import Restriction (잔존수입제한) | 301 |
|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 (자원폐기계획) | 301 |
| Reuse (재사용)..... | 301 |
| Retaliatory tariff (보복관세)..... | 302 |
| Retaliation (보복)..... | 302 |
| Reservations List (유보안)..... | 302 |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현시비교 우위지수) | 302 |
| Reverse Consensus (역만장일치제)..... | 302 |
| RFMO(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지역수산물관리기구) | 303 |
| RFS and RFS2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 | 303 |
| Rice Millers Association (미국 미국도정업협회)..... | 303 |
| Right of hot pursuit (추적권) | 304 |
| Rio Declaration (리우선언) | 304 |
| Risk Assessment (위험평가)..... | 304 |
| Risk Management (위험관리) | 304 |
| R/O (Request & Offer System,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 305 |
| Rollback (규제철폐) | 305 |
|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 305 |



Rules (규범) 306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 306
 RVC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비율) 307

S

Safety Net (소득안전망) 310
 SAB (Standing Appellate Body, 상설상소기구) 310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 310
 Safeguard Measure (긴급수입제한조치) 310
 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311
 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수산보조금 개도국 특별대우) 311
 SBS (Simultaneous Buy and Sell, 업계 간 자율거래제도) 311
 Schedule of Concessions (양허표) 311
 SEAF0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남동대서양수산기구) 312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ion Agreement,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312
 Section 201 (미 통상법 201조) 312
 Section 22 waiver (22조 면제) 312
 Section 301 (미 통상법 301조) 313
 Sectoral Approach (분야별 접근방법) 313
 Sectoral Negotiations (분야별 자유화) 313
 Selectivity (선별성) 313
 Sensitive Products (민감품목) 314
 Shrimp-Sea Turtle 사건 314
 Serious Prejudice (심각한 손상) 314
 SG (Safeguard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 315
 Set-aside Program (휴경제도) 316
 Singapore Issues(싱가폴 이슈) 317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싱가폴 각료회의) 317
 Single Farm Payment (단일직접지불제도) 317
 Single Undertaking (일괄수락원칙) 317
 Simple average tariff rate (단순 평균 관세율) 318



| | |
|--|-----|
| Sliding scale..... | 318 |
|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 318 |
| SOM (Senior Officer's Meeting, 고위급회의) | 318 |
| SOMTI (senior officials' meeting for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 | 319 |
| SP (Special Product, 특별품목) | 319 |
| Specificity (특정성) | 319 |
| Special 301 (스페셜 301조) | 319 |
| Spaghetti-bowl effect (스파게티볼 효과) | 320 |
| SPC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남태평양공동체 사무국) | 320 |
| Special Treatment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 | 320 |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 우대) | 321 |
| Specific Duty (종량세) | 321 |
| SPRFMO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 321 |
| SPS Agreement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322 |
| SRM (Specified Risk Material, 특정위험물질)..... | 322 |
| SSG (Special Safeguard,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322 |
| SSM (Special Safeguard Measures,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 322 |
| STABEX (Stabilisation of Export Earnings, 수출소득보상제도) | 323 |
| Standing Committee (상설위원회)..... | 323 |
| Standstill (현상/규제 동결)..... | 323 |
| State Trading (국영무역)..... | 324 |
| State Trading Enterprise (국영무역기업) | 325 |
| Stock to Use Ratio (사용 대비 재고 비율) | 326 |
| Stock to Disappearance Ratio (몰량 대비 재고의 비율)..... | 326 |
| Straddling Fish Stock (경계왕래어족)..... | 326 |
| Structural Fund (구조자금)..... | 327 |
| Subsidy (보조금) | 327 |
|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실질적 변형 기준) | 328 |
|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 | 328 |
| Sunset Clause (일몰조항, 자동소멸조항)..... | 329 |



Super 301 (슈퍼 301조) 329

Support price (지지 가격) 329

Surveillance Body (감시기관) 330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330

SVE (Small and Valnerable Economices, 소규모 취약국가) 330

Swap Transaction (스왑거래) 330

Swap Agreement (상호교환협정) 331

Swiss Formula (스위스 공식) 331

Swing (전용) 331

T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무역조정 지원조치) 334

TAC (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334

TARIC (Tariff Integre Communautaire, EC 통합관세) 334

Tariff (관세) 334

Tariff Binding (관세양허) 335

Tariff Concession or Concessin of Tariff (관세양허) 335

Tariff Dispersion (관세격차) 336

Tariff Escalation (경사관세) 336

Tariff Quota (관세할당) 336

Tariffication (관세화) 337

Tariff Harmonization (관세조화) 337

Tariff Heading (세번) 337

Tariff Increase (관세인상) 337

Tariff Line (관세품목) 337

Tariff-jumping Investment (관세회피 투자) 338

Tariff Peak (고관세) 338

Tariff Peak and Valley (불균등 관세) 338

Tariff Reduction (관세인하) 338

Tax on Tax (중첩적 과세) 339

TBR (Trade Barriers Regulation, 무역장벽규정) 339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339



| | |
|--|-----|
| TCE/TDE (Trade Creation Effects, Trade Diversion Effects,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 340 |
| TDE (Trade Distortion Equivalent, 무역왜곡상당치) | 340 |
| TE (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치) | 341 |
| Tariff Concession Modalities (관세양허 모델리티)..... | 341 |
| Tariff Barriers (관세장벽) | 341 |
| Tariff Cap (관세상한) | 341 |
| TPL (Tariff Preference Levels, 관세특혜수준) | 341 |
| Tariff Quota Underfill Mechanism (미소진 매커니즘) | 342 |
| Territorial Sea (영해)..... | 342 |
| Third Party (제3국) | 342 |
| Technical Regulation (기술규정) | 342 |
| Technical Barriers (기술장벽) | 343 |
| Tiered Formula (구간 공식) | 343 |
| Threshold (구간 경계) | 343 |
| TMB (Textile Monitoring Body, 섬유감시기구) | 343 |
|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무역협상위원회)..... | 344 |
| Tokyo Round (도쿄라운드) | 344 |
| TRQ administration (TRQ 관리)..... | 344 |
| Total AMS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총보조 총액측정치) | 344 |
|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권한)..... | 345 |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345 |
|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무역정책검토제도)..... | 346 |
| Trade Act of 1974 (1974년 미국 통상법) | 346 |
| Trade Diversion (무역전환)..... | 348 |
| Trade Facilitation (무역원활화) | 348 |
| Trade Remedies (무역구제)..... | 348 |
| Trade-chilling Effect (무역냉각효과) | 349 |
| Trade Creation (무역창출) | 349 |
|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 (무역가중 평균관세율) | 349 |
|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잠정세이프가드) | 349 |
| Transparency (투명성 · 공개주의) | 349 |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우호·통상·항해조약) 349

Treaty of Rome (로마조약)..... 350

Trigger Price (발동가격) 350

Trigger Level (발동수준) 350

TRIM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 무역관련 투자 조치) 350

TRIP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351

Tropical Products (열대상품)..... 352

TRQ (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쿼터) 352

TSE (Total Support Estimate, 총지지추정치)..... 352

TSB (Textile Surveillance Body, 섬유감독기구) 353

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 353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353

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노동조합자문위원회) 353

Tuna-Dolphin Case (참치-돌고래 사건) 354

U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358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 통상법위원회) 359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 359

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개발위원회) 359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36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360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360

Unethical business practice (비윤리적 영업관행)..... 361

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 Agreement, 유엔공해어업 협정) 361

Uniform Regulation (통일규칙) 361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361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362



| | |
|--|-----|
| URAA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 362 |
| UR Acceleration (UR 가속화) | 363 |
|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 | 363 |

V

| | |
|--|-----|
| Value added criteria (부가가치기준) | 366 |
| Variable Levy (가변과징금)..... | 366 |
| 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자율규제)..... | 366 |
| Vertical Approach (수직적 접근방식) | 366 |
| VHT (Vapor Heat Treatment, 증열처리) | 367 |
|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감시장치) | 367 |
| Voluntary Quota Restructuring Scheme (자발적 할당량구조조정 계획)..... | 367 |

W

| | |
|--|-----|
| Waiver (의무면제) | 370 |
| 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컨센서스) | 371 |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372 |
| 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 372 |
| WTO Plus 방식..... | 372 |
| WTO Trade Policy Review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 372 |
| WTO 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373 |
| WTO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 | 373 |
|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WTO 분쟁해결절차) | 373 |
|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373 |
|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 | 374 |
| WCT (WIPO Copyright Treaty, WIPO 저작권조약) | 374 |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374 |
|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 WIPO 실연, 음반조약)..... | 374 |
| WRP (Wetland Reserve Program, 습지유보계획) | 374 |
| WFC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이사회) | 375 |



| | |
|--|-----|
|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 375 |
|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세계동물보건기구) | 375 |
|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 376 |
| World Investment Report (세계투자보고서) | 376 |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376 |
| WTO 보조금협정 (ASCM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377 |
| WTO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 377 |
| | |
| Z | |
| Zanzibar Declaration (잔지바르 선언)..... | 380 |
| Zero for Zero Tariff Reductions (관세 무세화)..... | 380 |
| Zero for X | 380 |
| Zeroing (제로잉)..... | 380 |
| Zero option (제로옵션) | 380 |
| | |
| 한글 INDEX | 382 |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완전생산기준)

원산지 판별 기준중의 하나로, 당해 상품이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어, 생산된 상품’ 인지 아니면 ‘그 생산에 한 국가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상품’ 인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며,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됨.

AARDO

(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촌의 후생증진 및 기아와 빈곤의 타파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62년 3월에 설립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1963년 2월에 가입하였음.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됨. 주요사업으로 연수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개발, 남남협력 차원의 전문가과견 등임.

ACC

(Anti-Concentration, 신축성 제한요건)

DDA 협상에서 개도국이 신축성을 특정 품목(예: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선진국들이 요구한 조항임. 2008년 7월 잠정타협안에서는 “개도국 신축성을 HS chapter 전체 품목에 적용할 수 없고,” “HS chapter별로 세 번의 최소 20% 또는 수입액의 최소 9%에 공식감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ccession

(가입)

세계무역기구 혹은 여타 국제기구 및 협정의 회원국이 되는 것을 의미함.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관세영역은 자신과 WTO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WTO에 가입할 수 있음. WTO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신청국의 무역제도가 WTO 규범에 일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존회원국과 가입신청국 간에 협상을 하여야 함. 가입 시에 가입 신청국의 관세 및 서비스 양허표(C/S 표)는 오랫동안의 회원국 지위와 수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한 결과가 반영된 기존 회원국의 양허표와 유사해야 함. 즉, 신청국은 대체로 회원국 가입에 따라 향유하게 될 권리에 상응하는 수준의 양허를 준비해야 함. 최종 가입승인은 보고서, 가입의정서, 시장개방 일정표 등으로 구성된 최종 가입안이 WTO의



일반이사회 또는 각료회의에 제출되어 WTO회원국의 2/3가 찬성투표를 하면 WTO 가입이 승인됨.

※ Enlargement(확대가입) 참조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 카리브해 · 태평양지역 국가)

로마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77개 국가그룹에 대한 명칭.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들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Lome Convention(로마협약) 참조

ACRE 프로그램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 평균작물수입)

2008 미국 농업법(FCE Act)이 도입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수확량과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농민이 일정수입을 보장받을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특정성(specificity)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임.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5조에 따르면 보조금이 타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경우(타 체약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양허혜택의 무효화 및 침해, 타 체약국에 대해 심각한 손상 등), 수입국의 문제제기와 DSB(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수출국은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수입국은 필요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음. 기존 GATT 협약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상계조치(구제조치나 상계관세) 부과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WTO협정은 상계조치 이외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

※ 특정성(specificity) 참조

Adjustment Costs

(구조조정 비용)

무역장벽을 낮춤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수입개방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실직에 직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구조조정 비용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음.

Ad Valorem Duty/Tariff

(종가세)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로 표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 이러한 관세체계로 인해 단순가공 농산물에 낮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단순혼합 또는 가공하는 방법으로 높은 관세를 회피하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로 인해 국내 마늘생산 농가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 Specific duty(종량세) 참조

AFBF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미국농업인연맹)

미국의 최대농민단체로서 보수주의적 색채를 지니면서 미국 농업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격지지 축소, 정부규제 완화, USDA 식품정책을 반대하는 등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선호함에 따라 의회 내 공화당의 입장과 비슷함. 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애나 등 Corn Belt States가 거점지역임.

※ NFU(전국농민연맹) 참조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기업인 자문회의)

APEC 활동과정에서 민간 및 기업부문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거나 APEC 산하 각 그룹회의에서 요청하는 자문에 응한다는 취지 하에 1995년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공식민간자문기구. APEC의 의장은 그해의 APEC 의장국에서 1년마다 선출되며 부의장은 2명이며, 그 전해의 의장국과 차기 의장국에서 1명씩 선출되고 있음.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규정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중간재 흡수원칙)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말함.

Accumulation

(누적조항)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예 : 한-미 FTA의 경우 미국에서 미국산 부품과 한국산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기면도기를 조립,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

AD Advisory Committee

(반덤핑 자문위원회)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에 관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ADB

(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1968년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 및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됨. 주요 업무는 지역 내에 있어서의 개발투자 촉진,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조정, 기술원조 제공,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등임.

Adjustment Tariff (조정관세)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 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음(2013년, 15개 품목).

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PEC 정상회의)

APEC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아·태지역의 비전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며,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1회 개최되고 있음. 주요 논의 핵심사항은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축으로 하여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그해 11월 정상회의를 통해서 구체적 실천방안 등 최종 결과를 도출해 냄.

AEM (Meeting of the ASEAN Economic Ministers,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각 회원국 경제관계 장관들의 회의체로서 1975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음. 매년 1~3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개최됨. 아세안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 정부에의 조언 작성과 각국의 개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주로 개최됨.

Alternative duty (선택세)

한 품목에 증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그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 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식(예: 30% 또는 200원/kg).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 부과품목은 주로 선택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ASEAN+3 농림장관회의 체제에서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한 정보(식량생산, 수출입, 시장가격, 소비, 재고, 작황 등) 수집 방법 및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쌀·옥수수·콩·카사바 및 사탕수수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 단계로서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교역 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제통합체를 말함.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1993년부터 본격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시작하였음.

Agenda 2000

(의제 2000)

EU는 1995년부터 중·동부 유럽 국가의 EU가입에 대비하여 동·서유럽지역의 농업의 통합을 준비하는 새로운 개혁에 착수함. 냉전구조 붕괴 후 새롭게 형성된 유럽의 지정학적 조건에 맞추어 공동농업+정책(CAP)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구상된 것임. Agenda 2000이 표방하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새로운 시장불균형의 발생에 대한 우려, WTO 뉴라운드대비, EU의 확대, 환경 보전형 농업의 필요성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 Agenda 2000의 기본방향은 소비자부담에 의한 가격지지에서 재정 부담에 의한 직접지불로의 이행, 농촌정책의 재편 강화, EU 확대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재정분담 규정 제정, WTO 협상 대응책으로 각종 지원방식의 가격과의 연계 완화 등임. 주요 개혁내용을 보면 경종부문은, 역내가격을 국제가격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곡물개입가격을 20% 인하하고 지지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해 50% 정도를 직접지불로 보상하며 의무적 휴경은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 휴경(5년간 계약)은 존속하도록 하였음. 우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30% 인하하고 시장개입(매입)이 아니라 민간재고 조성을 통해 시장가격 안정을 달성하고 가격인하에 대한 보상지불은 EU 국가 전체에 일률적으로 지불되는 기본급부와 회원국별로 지불방식을 달리 할 수 있는 추가지불로 구별하여 시행함. 축산부문에는 육우 송아지, 거세육우, 육용번식용 모우에 대한 지급상한액 증액과 수유용 모우, 암송아지에 대한 직접지불 신설이 포함되어 있음. 낙농부문의 개혁에 있어 2006년까지 생산할당제 유지, 2000년~2003년 기간 동안 지지가격은 15% 인하, 수유용 모우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Agenda 2000은 1999년 3월

24일~26일 베를린 EU이사회(정상회의)에서 타결됨.

※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참조

Agenda 21 (의제 2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지구보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임.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환경 및 개발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의제21의 구성은 총 40개의 장으로 성립되어 있음. 리우선언이 모범이라면 Agenda21은 시행령에 해당함.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류 교역은 일반 공산품이면서도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섬유류에 관한 다자간 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과 MFA협정에 따른 양국 간 쿼터협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협정이 3~4년 주기로 계속 연장되어 선진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개도국들로부터 MFA 철폐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됨. UR협상의제 채택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자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넣을 것을 주장하자 개도국들도 섬유류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협상의제에 포함됨. WTO 섬유협정은 MFA를 철폐하고 섬유류 교역을 GATT 체제로 복귀시켜 자유로운 섬유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푼타 델 에스테 각료회의 시 섬유류분야를 GATT 규칙 및 규율에 입각하여 GATT에 통합하여 교역을 보다 자유화하기로 선언, 최종협정은 ① 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섬유류를 단계적으로 일정한 내에 GATT에 복귀시키고, ② 일단 GATT에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없으며, ③ 복귀과정에 규제가 계속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쿼터 증가율을 인정한다는 것 등을 기본골격으로 세부 복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WTO 섬유협정의 타결에 따라 그동안 GATT 체제 밖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섬유류 교역이 단계적으로 GATT 체제 내에 복귀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은 이러한 잔존기간동안 적용될 한시적인 규정임. 현행 MFA협정이 GATT에 완전히 복귀되는 시한은 협정 발효 후 120개월(10년) 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Agreement on Agriculture

(농업협정)

GATT체제 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가트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196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등 자급자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식량수입국인 EU까지도 수출국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음.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농산물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 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현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1986년 9월부터 UR협상이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산물협상은 크게 ① 시장개방 ② 국내농업보조 ③ 수출보조 ④ 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UR협상이 시작된 후 7년 반이 경과된 1993년 12월 15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시장개방

-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로 전환함으로써 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에 의해서만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995년~2000년(이행기간)중 평균 36%를 감축(품목별 최소 15% 감축)하되 매년 동일비율로 균등 감축토록 함.
 - 개도국은 1995년~2004년 기간 중 평균 24%(품목별 최소 10%)를 감축
-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 중 총 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현행시장접근〉

- 현재 3% 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 특별긴급관세(SSG)
 -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의 급락으로 내외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능성이 있을 때 농업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허용

■ 국내보조분야

-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19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함.
-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됨.
 - 정부의 일반서비스(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시장가격에 의한 구매, 방출의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 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을 위한 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함.
 - 품목별 또는 특정보조금별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보조액을 계산하여 총액을 감축하여 나가는 것임.
 -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 이하 또는 품목불특정 보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하여 감축의무면제(개도국은 10% 이하)
- 국내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수출보조분야

-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함(개도국은 10년간 24%, 14% 감축)
-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근거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위생 및 검역분야

- 각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위생 및 검역협정은 이러한 농산물 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제한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하기 위하여 별도의 SPS협정(위생검역협정)을 성립시켰음.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WTO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 모든 SPS조치(관련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한 위생검역 조치)에 대하여 동 협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에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요건, 가공요건, 검사, 인증, 소독 또는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함. ①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②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③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④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또한 SPS협정 제2조는 SPS조치는 생명과 건강보호 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즉, SPS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기존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임시적으로 SPS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증거가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 재검토 또는 개정되도록 하여야 함. SPS조치는 각국의 특정위생조건(동식물을 포함)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상품을 국별로 차등 대우하여서는 안 되며, SPS조치를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사용하여서도 안 됨.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설립협정)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설립 및 동 기구의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협정으로서 UR 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WTO 구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속되는

4개의 부속서는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nnex 1 A, B, C)과 분쟁해결절차(Annex 2), 무역정책검토(Annex 3), 복수국간 협정(Annex 4)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상품관련 다자간 협정에는 농업, 위생, 섬유, 기술장벽, 투자, 반덤핑, 관세평가,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등 12개 협정이 있음.

Agricultural Subsidy (농업보조금)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며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또한 그 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국내보조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임.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지출이 아닌 [관리가격-외부참조가격]×[지지물량]으로 산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효과를 보조지원액으로 산출하도록 함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됨. 국내보조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아니한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허용대상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서비스 정책'과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으로 나누어짐. 또한 수출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보조를 금지하고 있음. 수출보조도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보조뿐만 아니라 공공재고의 저가판매, 운송비의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의 이해는 징수감면, 금융지원, 정부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입 등 광의의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의 산출은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함으로써 단순한 재정지출의 개념과는 상이한 것임.

※ AMS, Amber Box 참조

A-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 현재의 H1N1 유행병 이전에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원인으로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분석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는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유래 되었으며, 1977년 이래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계절적 H1N1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음.

AI

(Avian influenza, 조류독감)

조류독감은 A타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조류 전염병임. 이 질병은 100년 전에 이태리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함. 표준통제조치에는 감염농가 격리조치와 감염되었거나 잠재적으로 노출되었을 수 있는 가축을 폐사 처리하는 조치가 있고, 최근에는 예방접종이 도입되었음.

AIE

(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분석 및 정보교환)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1997년부터 WTO 농업협정의 이행관련 문제점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WTO 농업위원회에서 비공식회의 형태로 1997년 6월부터 농업위원회 공식회의에 앞서 각국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이나 합의는 도출하지 않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1999년 9월말에 논의를 종료함. 1999년 9월말까지 각국으로부터 74개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수출국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유도해 나갔음. 초기에 농산물수입국들은 차기협상을 가급적 늦추려는 의도에서 이 토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1999년부터 수입국들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모으고 6월에 일본과 노르웨이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9월 22일에 '식량수수입국에서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EU는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논의한 바 있음. 사무국에서 TRQ 실적, 국내보조 이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배포한 보고서도 12건에 달함. AIE 과정에서의 논의내용들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된 WTO 농산물협상의 논의기초가 되고 있음.

ALOP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적정보호수준)

자국 내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다고 판단한 위생 및 검역조치를 의미함.

AMAD

(Agricultural Market Access database, 농업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유럽위원회-농업총국(EU Commission-Agricultural Directorate-General), FAO, OECD, 세계은행, UNCTAD, 미국 농업부의 경제연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음. 데이터베이스는 WTO에 제출된 각국의 계획과 공지에서 얻을 수 있음.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농업보조총액)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함. 단, 이 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됨. AMS는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원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감축기준 AMS의 산출내역은 양허표의 보조자료로,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매년 계산되는 AMS는 매년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Amber Box

(감축대상 농업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 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 기간 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

※ Red box, Blue box, Green box 참조

Anadromous Fish

(소하성 어족)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산란을 위해 산란기 이전에 바다에서 하천으로 거슬러오는 어류를 지칭하며, 연어나 송어는 산란기에, 은어 등은 어릴 때 하천으로 회유해 올라옴. 유엔해양법협약 제66조는 소하성 어족이 기원하는 하천의 국가가 이 어족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공해에서 소하성 어족에 대한 어업을 금지하고 있음.



Analytical Index (분석인덱스)

GATT 및 WTO 협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 WTO 법률국이 정기적으로 보완·발간하고 있음. 각 협정별 조문 내용과 용어에 대한 패널, 상소기구의 해석을 포함하고 있음.

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동식물건강검역청, APHIS)

미국 농림부(USDA) 산하기관으로 동물 및 식물과 관련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Antarctic Treaty (남극조약)

남극지역을 평화목적에만 이용하고, 과학연구의 자유와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61년 6월에 발효된 조약으로 현재 38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월 28일에 가입하였음. 남극에서는 핵폭발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생물자원 등을 보호보존하며, 과학연구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특색임. 그 때문에 자연보호지역을 설치하는 등 자연보호에 노력함과 동시에 남극 월동대를 파견하여 과학관측을 계속하는 한편 인류활동이 남극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행하고 있음. 또한 1991년 10월 남극 보호를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채택되었음.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적정수준보호, ALOP)

SPS 협정은 역내의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적절한 수준의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적정수준의 보호라고 정의하고 있음.

Anti-Circumvention (반우회덤핑)

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가치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

Anti-Dumping Duty (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함. 그동안의 각국 반덤핑 제도의 근거가 되어온 국제 반덤핑규범(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이 명료하지 않아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개시 및 실시,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기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추상적 표현 또는 규정결여로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음.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 남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UR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반덤핑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 규범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 등 새로운 기업 관행에 대해 현행 반덤핑 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UR협상에서는 이러한 주요수출국과 수입국들의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여 기존 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기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말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논의 시 반덤핑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무산된 바 있음.

※ Dumping, Dumping Margin 참조

APB-NET (Asia-Pacific Business Net, APEC 기업망)

APEC 용어. 1994년에 구성된 역내 재계모임으로 각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인 단체와 기업인 개개인이 참가하여 역내 기업인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APEC 과정에의 참여를 목표로 운영됨.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1960년대 말 이래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1980년대 초 PECC(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를 기원으로 하여 1970년~1980년대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고성장기에 따라 지속적 경제 활력유지 및 상호 의존성 증가에 부응하여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88년 10월 일본 통산성의 제안 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이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3년 시애틀에서 첫 번째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됨. APEC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이며,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 지주로 ① 무역 투자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② 무역 투자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③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편의상 전자 2개를 TILF로 후자를 Ecotech로 약칭하면서 APEC의 양대 지주로 일컫고 있음.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임(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gapore, Brunei Dussalam,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Mexico, Papua New Guinea, Chile, Peru, Russia, Viet Nam). 2005년도에는 한국이 의장국의 역할을 수입하여 6월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11월 부산에서 APEC 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우리나라는 APEC이 DDA 협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DDA NAMA 협상 관세감축 공식으로 스위스 공식을 지지한다는 APEC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 낸 바 있으며(APEC 통상장관 간 DDA 별도 성명 채택),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DDA 협상 가속화를 요구하는 APEC 정상 간 DDA 특별 성명을 주도하였음.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APEC 무역·투자위원회)

1993년 설립된 것으로 APEC 지역 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촉진에 초점을 둔 작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추진분야는 무역정책, 분쟁중개, 규제완화, 중소기업, 표준 및 일치, 통관절차, 경쟁정책, 원산지 규정, 투자 및 비관세조치 등임.

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APEC 비구속적 투자준칙)

APEC 지역 내 투자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4년 보고르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자발적 규칙. 동 준칙의 목표는 신뢰를 증진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투자규범 및 정책을 자유화·단순화시킴으로써 정책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임.

Appellate Body (상소기구)

WTO 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Appellation of Origin (원산지 명칭)

상품이 생산된 고유한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품질이나 특성을 일컫는 지역표시. 농산물의 경우 각국이 법에서 정한다면 상표나 특허로도 사용될 수도 있음.

Appellate Review (상소검토)

WTO 분쟁절차상 상소는 제3국이 아닌 분쟁당사국만이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음. 일방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보고서 제출예정일을 서면으로 DSB(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소는 패널 보고서 상의 법규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함. 상소기구의 검토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의 참여 없이 이미 제공된 정보 및 진술을 기초로 작성됨. 상소보고서에 기록되는 개별구성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하며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 및 결론을 지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상소보고서는 DSB가 채택하지 않을 것을 총의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에 배부된 후 30일 이내에 채택됨.

※ DSB, DSU 참조

Applied Tariff (실행관세)

각국이 타국에 대하여 관세부과의 우선순위에 의해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UR에서 양허한 양허관세보다 매우 낮으며 기본세율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의 실행세율은 0~50%까지이나 8%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40~50%에 이르는 고율관세는 주로 과실류와 채소류에 적용됨. 각국은 국내적으로 WTO 양허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를 실행관세라 함. ※ Bound tariff(양허관세) 참조



Arbitration

(중재)

분쟁해결의 한 방법. 분쟁당사자들을 모이게 할 목적의 중개(mediation)보다는 공식적이고, 반대 변론에 의한 정식 법정절차보다는 덜 법적인 성격을 가짐. 중재에 합의한 분쟁당사자는 정해진 절차 규정에 스스로 구속되며 사전에 중재 결과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데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ARP

(Acreage Reduction Program, 식부면적 감축계획)

미국의 대표적인 생산조정제도. ARP는 미국의 곡물생산농민들이 자신의 과거 기준면적의 일정 비율만큼을 현행 생산에서 자발적으로 휴경시키는 구(舊) 농업프로그램임. 즉 전체농산물 생산량 또는 특정 농산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년 식부면적기준의 일정비율로 휴경면적을 설정하는 연도별 휴경계획(Annual Acreage Set-aside)과 토지전환프로그램(Acreage Diversion Program)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휴경계획에 따라 농민은 작물기준면적의 일정 비율을 휴경시키고 그를 보전용으로 유지해야만 정부 농업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토지전환프로그램은 농민이 보유한 기준면적의 일정비율을 휴경할 경우 단위면적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대개 공급과잉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부족분지불제도와 연계성하에서 부족분지불의 전제조건으로 실시되었는데, 1973년 농업법 이후 미국의 농가소득지지도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생산조정제도는 사전적으로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수요가 급증할 경우 물량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개별 작물 간의 상대적인 시장가격에 대응하여 농민들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을 신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축소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 Farm Bill(미국 농업법) 참조

Article 113 Committee

(113조 위원회)

로마조약 제113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 산하기관. 제11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하여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에 관한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 제113조 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는 협상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Artisanal fisheries

(전통어업)

대대손손 내려오는 토속적 어업으로 생계형, 가족중심, 소규모 등의 특징이 있으며, 전통어업 보조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많음. 소규모어업(small-scale fisheries)과는 차이가 있음.

ASC

(APEC Study Center, APEC 연구센터)

APEC 각 회원국에 설치된 APEC 활동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로서 해마다 APEC 의장국에서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Meeting이 개최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APEC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A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WTO체제 하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한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반덤핑 관세와 상계과세 및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음. 상계관세라 함은 수출국이 수출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개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특히 이 협정에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상세히 구분하였으며, 특정성(specific)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상계조치 판단의 기준으로 정립하였음.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동남아국가연합으로 동남아시아지역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1967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을 원회원국으로 창립하여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가입함. 아세안은 역내 경제개발, 사회 및 문화발전의 촉진, 지역평화 및 안정을 도모하며 제반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원조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한-아세안 관계는 1989년 부분대화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승격하였으며,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을 통해 교역, 투자, 관광,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 100여개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997년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04년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2005년 이를 위한 이행방안인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채택함.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ASEAN 산업협력 프로그램)

1995년 12월 ASEAN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산업개발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산업에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ASEAN Investment Area (ASEAN 투자지대)

ASEAN 국가 간의 투자촉진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협력체제로 제안된 것임.

ASEAN+3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로 2000년 필리핀 농업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2001년부터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여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3국간 농림분야의 협력에 관하여 논의해 오고 있음.

※ AMAF+3(아세안+ 한중일 농림장관회의): 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 3(Korea, China, Japan)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를 말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 등 각료회의가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며 고위관리회의(SOM)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 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협의함. 제1차 정상회담이 1996년 3월 방콕에서 개최된 이후 1998년 4월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2000년 제3차 회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ASEM Connect

제2차 AEBF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무역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아시아 유럽 중소기업간 무역·투자 등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자정보교류망 구성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Asia-Europe Vision Group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제1차 ASEM정상회의에서 한국이 ASEM의 중장기 발전에 민간부문의 지혜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창설을 제안, 제2차 정상회의가 끝난 후 공식 출범했으며, ASEM 회원국이 지명하는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민간 저명인사들로 구성됨.

ASPs

(Agreement-Specific Proposals, 협정별 제안)

WTO 각 협정 및 결정상의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제안(2013년 기준 총 88개로 확인됨)

ATCWG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Working Group)

APEC의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11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서, APEC 21개 회원국 간 농업 기술(농업유전자원, 생명공학, 유통기술 등)협력방안을 논의함.

ATL

(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 조기 자유화)

APEC의 EVSL(분야별 조기 자유화)를 총칭하는 말임.

Atlantic beef/pigmeat market

(대서양 소고기/돼지고기 시장)

대서양 시장은 구제역(Food and Mouth Disease; FMD)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축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교역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짐. 이 시장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서양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와 곡물을 먹고 자란 돼지고기를 교역함.



이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나라들은 남아메리카, EU, 러시아, 북아메리카, 이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음

At-the-border barriers (국경장벽)

관세와 비관세조치(쿼터 포함) 등 국경을 통과할 때 타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조치.

AUSFTA (Australia-US Trade Agreement,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호주 간에 이루어진 이 양자협정은 200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음. AUS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표준 및 기술규제, 텔레커뮤니케이션, 경쟁관련사안,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사안들을 다루고 있음

Automaticity (자동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널 보고서 채택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자동적인 시간적 진전으로 확정되는 개념을 말함.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Automatic Import Licensing (자동수입허가)

수입신청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WTO 수입허가절차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이 별도의 다른 적절한 수입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동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도입여건이 지속되는 한 자동수입허가는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동수입허가절차는 자동수입허가의 대상인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규제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되며, WTO 수입허가절차협정 2조에 따르면 자동수입허가란 다음 요건에 일치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승인이 모든 경우에 있는 것으로 봄.

- ①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것
- ② 허가신청서는 상품통관 이전의 모든 근무일에 제출 가능할 것
- ③ 허가신청서는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한 한 즉시,

최대한 10근무일 이전에 승인될 것 등이 포함됨.

Autonomous Tariff (할당관세)

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동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함. 그러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함.

AVE (Ad Valorem Equivalent, 증가세 상당치)

종량세(kg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증가세(수입가격의 몇%)로 환산한 수치. DDA 농업협상에서는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전체 농산물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높은 관세에 대해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각 품목에 적용될 감축률을 결정할 때 비종가세가 증가세로 볼 때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VE 계산방식이 필요함(DDA NAMA 협상에서도 공식 적용을 위해 동 AVE가 필요). 2005년 3월 이후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간 AVE 전환 공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2005년 5월 3일~4일 OECD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룸.

Award of contracts (낙찰)

정부조달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이 최종적으로 공급자들이 제출한 입찰서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BAC

(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예산행정위원회)

APEC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의 위원회로서 APEC 예산안의 작성, 예산집행 검토와 운영의 효율증대를 마련하며, 또한 APEC 산하 working group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된 안을 상정함. 의장은 전년도 APEC 의장국에서 맡고, 적어도 연 2회 회의를 개최함.

Backloading

(후기(後期)이행)

법적으로 가능한 최종시점까지는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보류하는 관행을 의미. 이는 WTO 섬유 및 의류 협정 하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활용한 바 있음.

Balance of current account

(경상수지)

IMF방식에 의한 국제수지표에서 재화, 용역 및 이전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경상계정(current account)이라 하고, 이 계정의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경상수지라 함. 이것은 상품, 서비스,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를 합한 것으로 국민소득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계정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으며, 통상 한 나라의 대외적 실물거래의 균형 또는 불균형을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이용됨. 경상수지 적자는 장·단기자본의 도입으로 보전되지만, 국제수지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천이 대부분 경상수지의 불균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Bali Package

(발리패키지)

DDA 협상에서 회원국 간에 비교적 용이하게 합의 가능한 이슈만을 선택하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03년 12월 3일~7일간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조기 합의한 내용. 주요

합의 내용은 ① 첫째, TRQ 관리개선에 대한 각료결정 임. 동 제안은 브라질 등 G20(수출개도국 그룹)이 지난 2012년 9월에 제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동 제안은 UR(우루과이라운드)타결 시에 TRQ 물량만 정하고 이행은 수입국의 재량에 맡겨진 결과 수입국별로 TRQ 이행률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수출국들의 요구로 농업협상 모델리티 초안(Rev.4)에 반영된 내용을 G20이 발췌해서 제안한 것임. 주요 내용은 크게 본문과 부속서로 나뉘는데, 본문은 90일전 TRQ 입찰 등 정보 공표, 30~60일 이내 TRQ 신청완료 등 TRQ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것이고, 부속서는 TRQ 물량 수입률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임. 특히,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 시 현행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나 개도국은 의무가 면제됨. ② 둘째,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으로 인한 보조한도 초과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 제기를 자제토록 하는 각료결정이 이루어짐. 개도국이 상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각료회의의 결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 개도국이 각료회의의 결정일(2013년 12월 7일) 현재 운영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보조한도를 초과해야 하고, 최근 5년간의 농업보조 통보, 비축 프로그램 운영정보, 비축물량 수출금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영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작업계획을 세우고, WTO 일반이사회는 동 프로그램 및 작업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2015년 각료회의에 보고해야 함.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농업협정의 보조한도 초과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가 되나,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다른 회원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금지에 관한 협정에 의거 제소될 수 있음. ③ 셋째, 수출경쟁 관련하여 각료들의 정치적 선언이 채택되었음. 수출경쟁분야는 수출보조 철폐 및 수출신용 축소, 수출 국영무역 규율 강화 등 홍콩각료선언(2005년)의 이행을 촉구하고, 수출보조 등의 감축기조를 유지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발리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조치에 대해 매년 농업위원회에서 점검키로 하였으며, 상기 농업위원회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현재 농업협정상 통보의무가 있는 수출보조 외에 사무국이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질문할 질문서 양식에 대해 합의하였음. ④ 넷째,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허용보조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각료결정이 있었음. 이를 통해 WTO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보조)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을 추가함으로써, 일반서비스에 명확하게 추가했음.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 일반서비스 항목들은 예시적인 목록이므로, 홍수통제 및 가뭄관리 등 신설항목들도 기존 항목으로 허용보조로서 지원이 가능했으나, 발리패키지에서는 이를 허용보조로서 명확히 함.

Bangkok Agreement (방콕협정)

공식명칭은 UN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개발도상국 간 통상협정에 관한 제1차 협정(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ESCAP)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조치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내 개발도상 회원국 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975년 7월에 서명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한국, 중국(2002년 1월 1일 가입)임.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명칭 변경함.

Barter Trade

(구상무역)

수입자가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설비 또는 기술 등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폐대신 상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라 할 수 있음. 즉 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무역거래를 총칭. 구상무역은 구소련 및 동구권 등이 외환부족현상을 해결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구상무역의 종류에는 바터무역, 대우구매, 보상무역 등이 있음.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영해기선)

영해가 시작되는 선으로 간조 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인 저조선(低潮線)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하며, 통상기선은 우리나라 동해와 같이 해안선이 단조롭고 주변에 섬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면 서해나 남해와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선 주변에 섬들이 많은 지역에는 적절한 지점 또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우리나라는 1977년 서해와 남해에 직선기선을 선포함)으로 표시함.

Base Rate

(기준세율)

관세 인하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2조는 원칙상 동 기준세율로부터 5회에 걸친 균등인하 방식으로 최종 양허세율(bound rate)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국의 관세양허표상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공산품 세율은 1995년 1월 1일 첫 인하가 개시되어 1999년 1월 1일 최종 양허세율이 적용됨.

Base Total AMS (기준총보조총액 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기준기간동안(1986년~1988년) 제공된 총감축대상보조액으로 국내보조 감축의 기준이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1991년 기준으로 계산된 Base total AMS는 17,186억 원임.

Basel Convention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채택되었으며 1992년 5월 5일 발효.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감소 및 통제와 이들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 우리나라는 1994년 1월에 가입하였음.

Behind the Border (국경내 장벽)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국경 간 장벽은 아니나, 1차적으로 국내경제를 위해 채택하지만 결국에는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부규제나 규범을 일컫음. GATT 3조는 국경 간 장벽을 거친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내국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BIA (Built-in Agenda, 기설정 의제)

국제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협상당사국 간의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기설의제는 협정문 등에 이미 명시되어 이러한 논의가 없더라도 협상 시 당연히 포함되는 의제임. New Round 협상을 예로 들면 WTO 농산물협정과 GATS 협정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추가협상을 추진토록 협정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New Round 협상의 BIA중에는 농산물, 서비스분야가 해당됨.

※ Agreement on Agriculture 참조

BIAC

(Business & Industry Advisory Committee, 기업산업 자문위원회)

OECD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경제계의 필요성에 따라 1962년 OECD 가맹국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독립된 자문기구인 BIAC을 설립. 이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① OECD에 경제-산업부문에 분야별 자문을 제공하고, ② 세계 각국 정부에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조언을 제공함.

Bilateral Negotiation

(양자협상)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하는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이해 관련 당사국 2개국이 벌이는 통상협상을 말함.

Bilateral Safeguards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의 결과 계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 동안 당해 FTA 계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킴.

Bilateral Trade Agreement

(양자간 무역협정)

두 나라간의 교역수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만약 두 당사국이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비차별(Non-discrimination),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별도로 이들 국가가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양자간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및 무역진흥(Trade promotion)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양자협정의 일반 당사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면 동 양자협정은 최혜국대우(MFN),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협의 및 분쟁절차(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원활한 무역흐름과 신속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타 원칙이나 제도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대개 양자간 무역협정은 합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 또는 복합위원회(Mixed commission) 등과 같은 각료급 또는 고위실무차원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조항들을 갖고 있음.

※ Multilateral negotiation 참조

Bilateralism

(양자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 양자주의는 2개국만이 관련될 경우 상대적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양자적 접근방식은 중·소국의 이익에 반하고 강국에 유리하게 작용함.

Bindings

(구속적 양허)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구속적 양허는 WTO규범에 따라 이행강제를 할 수 있음. 이 목적은 관련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한도 관세(tariff ceiling)를 설정함으로써 상업적 확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Binding overhang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양허관세율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의 차이를 말함. DDA 협상은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행관세율에 비해 양허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주로 브라질 등 개도국)는 협상을 통해 양허관세를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행관세보다는 높아 실제 시장접근에 영향이 없게 됨(paper cut).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등 선진국들은 실행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관세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Binding ratio

(양허비율)

전체 관세항목에서 양허된 관세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Biomass Conversion

(생물자원)

사탕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서 에탄올, 에너지원 등을 추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라는 세 가지 단계에서의 다양성을 종합한 개념으로 육상, 해상 및 기타 수중생태계와 이를 포함한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variability)을 의미함.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며 인간과 생태계 등 경제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생명부양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자원임. 오늘날 지구상의 야생동물은 1,300만에서 1,4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약 13%에 불과함. 이러한 다양성은 개발 및 오염에 의하여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종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2000년대까지 100만 종이, 향후 20~30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될 것으로 전망되는 터라 자연보호, 자원관리의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되고 있음. 열대림, 산호초를 가진 열대의 각 나라들은 풍부한 생명의 다양성을 가졌으며, 약 12개국에 전 야생 생물종의 3분의 2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됨.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국적 조약으로서 람사 조약, 세계 황산(遼産) 조약, 워싱턴 조약, 본 조약 등이 있음. 다양성은 또한 에콜로지사상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존재간의 협조, 상호 의존, 공생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기초 개념의 하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생물다양성이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하면서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생물다양성은 생태계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생물다양성이 확보되려면 외부의 간섭이 없이 오랜 진화적 시간이 필요하며, 이렇게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정의함.

BIS Ratio (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이 지키도록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함.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외화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됨.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8%의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함.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차입하더라도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해야 함. 국내 은행들이 1997년 12월말 BIS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온갖 대출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을 동결하거나 회수한 것도 이 규정 때문임.

BISD (Basic Instrument and Selected Document)

GATT의 공개된 문서시리즈로서 BISD 시리즈의 Volumes 2(개정), 3 및 4는 GATT의 본문을

수록하였음. Volume 2와 연간 증보판(supplements)은 GATT활동의 이해에 필요한 법적 문서, 결정 및 보고서 등을 수록하고 있음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보장협정)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 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투자기업의 재산보호는 물론 투자대상국이 수용 및 국유화를 단행했을 때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을 대신해서 정부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Blair House Accord

(블레어하우스 합의)

1990년 12월 브뤼셀 회의 결렬이후 담보상태에 있던 UR협상은 1991년 연말타결을 목표로 각국 간의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1991년 12월 20일 GATT 단켈 사무총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최종협상초안(Draft Final Act)이 제시된 후 1992년으로 이어졌음. 최종초안(DFA)이 배포된 후 한국을 비롯한 EC, 일본 등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규정된 단켈 초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하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분위기와 최종안이 각국의 합의 없이 도출되었다는 제약으로 인해 1992년 1월 13일 개최된 TNC 회의에서 향후 협상은 최종안을 기초로 하며 시장접근그룹, 서비스 그룹, GATT 규범 그룹, 협정초안 수정 그룹 등 4원 협상체제(Four track approach)로 진행될 것에 각국이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1992년 2월부터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양허협상(Track 1), 서비스 양허협상(Track 2), 규범법제화작업(Track 3)에서는 협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미·EC간 협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협정초안 수정협상(Track 4)은 개최되지 못했음.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1992년 7월 6일~8일 뮌헨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대를 걸었으나 메이저(Major) 영국수상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연내타결에 노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보는데 그쳤음. 또한 단켈 초안 제시이후 곧 타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하에 재개된 1992년 UR 협상은 유럽각국의 EC 통합조약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미국의 대통령선거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등 국내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막후접촉을 통해 미·EC간 견해차가 많이 좁혀져 왔고,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만료기간이 얼마 남아 모든 국가가 1992년도 말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의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각국은 협상타결에 노력을 경주하였음. 이에 따라 10월에 접어들어 협상 양대 세력인 미국과 EC는 수차에 걸친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 등을 통해 UR 농산물협상의 쟁점사항을 강도 있게 토의해 나갔으며, 마침내 11월 20일 워싱턴에서 부시대통령과 메이저 수상이 동시에 미·EC 쟁점해소합의(블레어하우스 협정)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UR 협상에 대한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1992년 11월 20일에 타결된 미·EC간 합의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국내보조감축은 품목별 AMS감축방식에서 Total AMS 감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EC의 공동농업정책의 주요골격인 생산통제하의 직접보조를 허용대상화 하였고, 둘째 세계농산물 무역질서를 가장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온 수출보조의 물량감축목표를 24%에서 21%로 축소하였음. 또한 미·EC의 동 작물에 대한 보조금지원 생산면적을 초기년도에 15%에서 매년 10%씩 줄여나간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음.

※ Agreement on Agriculture, Uruguay Round 참조

〈 단켈 최종초안과 미·EC간 합의사항 비교〉

| 구 분 | 단켈최종초안 | 미·EC간 합의사항 |
|--|---|---|
| 시장개방분야 • 관세화범위 • 최소시장접근 • 이행기간 | • 예외없는 관세화 • 3%→5% 종량 • 1986~1988 기준년도 수입수준보장 • 1993년부터 6년간 | • 단켈초안 수용 • 단켈초안 수용 • 단켈초안 수용 • 1994년부터 6년간 |
| 국내보조분야 • 허용대상정책 • 이행기간 • 보조금감축방법 | • 공통기준 및 정책별 세부기준 충족하에 허용화 제시 • 1993년부터 6개년 • 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함 (Product Specific AMS) | • EC의 생산제한하 직접보조의 허용화 • 미국의 부족불지불제도의 허용화 • 1994년부터 6개년 • 모든 감축대상보조를 함께하여 감축(Total AMS) |
| 수출보조 • 수출보조 감축방법 • 이행기간 | • 재정지출 36%와 물량기준 24% 동시 감축 • 1993년부터 6년간 | • 재정지출 36%, 물량기준 21% 동시 감축 • 1994년부터 6년간 |
| 보조수준재조정문제 (Rebalancing) • 사료곡물대체품의 관세조정 | • 불인정 | • 불인정원칙하에 사료곡물 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EC간 협의 |
| 분쟁해결절차규정 (Peace Clause) | • 일방적 보복조치 자제 | • 일방적 보복조치금지 |
| Oilseeds 분쟁 | • UR의제가 아닌 기존 GATT 규정상 분쟁으로 인식 | • EC의 보조대상 생산면적 감축에 합의 - 초기년도 15% 감축 - 차기년도부터 10%씩 추가 감축 |

Block Exemptions

(분야별 제외)

일부 민감분야(sensitive sectors)는 특혜 무역협정의 완전적용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EC의 관행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 흔히 농산물 및 섬유류 제품 등을 배제함. 종종 특정부문이나 관행을 적용 가능한 법령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시행상의 용어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Blue Box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농업협정에는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보조정책을 인정하고 있음. 하나는 허용보조예서와 같이 3년 이상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의 휴경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임. 농업협정은 생산제한계획 하의 직접지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축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WTO농업협정 제6조5항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총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전체 협상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EU가 이해의 대립상황을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Blair House Agreement)한 결과로 반영된 것이며 UR 이행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임. 다만 감산을 전제로, 즉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 장려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축면제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 면제기준은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계획에 반영된 감산보상제(Compensatory payment)를 반영한 것으로서, 허용보조인 휴경보상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3년 이상의 휴경이나 가축의 항구적인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산제한을 실시하는 전제하에 매년도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 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임.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WTO

농업위원회 통보대상에서 타당성 여부가 점검되어야 함. 이와 같은 직접지불은 또한 감축의 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되어 있으나 이행기간 지원년도의 AMS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기존에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온 국가는 사실상 국내보조 감축을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가 없게 되었음.

※ Direct Payment to Producers 참조

Bogor Declaration (보고르선언)

1994년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Bogar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 시 채택된 선언으로 APEC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채택하여 UR합의사항 이행의 가속화 및 UR결과의 심화, 확대, 보호수준을 협상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보호조치의 증대 금지(standstill), APEC 무역 및 투자 활성화(facilitation) 프로그램의 확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보완하는 자발적이고 consultative한 분쟁조절 서비스 창설가능성 검토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보고르선언의 성과로는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2020년) 등을 포함한 보고르선언 채택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Vision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APEC 국가 간 인력자원, 교통, 통신,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협력 등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였으며, WTO의 차질 없는 출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세계무역체제 강화·발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APEC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였음을 들 수 있음.

Bolar Provision (볼라 규정)

미국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제출용 자료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된 의약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한 미국의 특허법 271.(e)(1)을 의미. FDA 승인을 위해 Roche사의 특허 의약품에 대해 특허만료 이전 임상시험을 수행한 Bolar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미국 특허법을 위반하여 Roche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한 Roche Prods., Inc. v. Bolar Pharm. Co., Case(1984)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됨.

BOP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

한 나라가 외국과 재화, 용역 및 자본 등을 거래함으로써 생긴 모든 지급과 수취를 말하며, 일정기간(보통 1년)을 대상으로 한 나라의 국제수지를 체계적으로 한 표에 기록한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함. 국제수지표에서 보통 모든 대외거래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 및 수입, 국제간 증여 등이 기록된 경상거래와 장기자본과 단기자본거래가 포함된 자본거래로 대별됨.

BOP Article

(Balance of Payment Article, 국제수지보호조항)

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한편 제18조 B항에서는 개도국의 BOP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음. 이는 GATT 회원국들 간에 BOP문제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분야였던 만큼 참가국들 사이의 여러 가지 타협을 반영하고 있음. GATT 제12조는 수량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국의 대외자금사정과 국제수지방어 목적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이 조치는 자국의 통화지급준비의 현저한 감소를 저지하거나 혹은 통화지급준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동 통화지급준비의 합리적인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선진국과 수량제한 실시에 적용되고 있음. 1955년 GATT 조항이 수정되기 전부터 제18조는 개도국의 GATT의무이행 이탈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특정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과 GATT의 사전승인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도국의 비판대상이 되어 1955년 GATT 제18조를 수정하여 개도국들에게 있어 국제수지상의 곤란은 경제개발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 어떤 체약국이 제18조 4(a)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원한다면 제18조 B항의 발동권리를 가지게 되며 제11조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원한다면 제12조를 사용할 권리도 가짐.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를 142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해 왔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개도국으로서의 최초로 1989년 10월 BOP조항을 졸업하고 1997년 7월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은 개방기로 약속하였으나 쇠고기는 UR 협상을 통해 2001년에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Border Protection

(국경보호)

반입시점에서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총칭. UR농산물협상에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와 함께 3대과제로 다루어졌던 국경보호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조치 등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제한하고 있는 일체의 수입제도를 의미함.

Border Tax Adjustment

(국경세조정)

국가별로 상이한 세금수준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또는 수출품에 대한 면세를 통해 국가 간 세금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자국의 세입증대를 위한 세금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점차로 무역에서 경쟁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고 최근에는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특히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있어 환경관련 세금·부과금에 대한 국경세 조정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Bound Tariff

(양허관세)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부과를 할 수 없게 됨.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 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 등이 논의됨. 한국의 농산물 양허관세율은 0%에서 887%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12%에 이르며, 특히 75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28개 품목이 평균 농산물 양허관세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본의 농산물 양허관세율은 최고 114%까지 분포하지만 관세율 15% 이하의 품목이 전체의 70%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25%에 비해 훨씬 많음.

※ Tariff Concession 참조

Bounty

(보조금)

특별한 목적에서 국내생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조금으로서 조선 등 제조업 또는 농업용 인산비료 등의 생산과정에서 특정 투입요소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Box (국내농업보조의 카테고리)

① Green Box : WTO 농업협정은 농산물 무역 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극소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는 허용하고 있음. 허용보조의 종류는 WTO 농업협정 Annex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업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 ② Blue Box : WTO 농업협정 제 6.5조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하는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감축 대상 보조금 총액 계산시 산입되지 않음.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무역왜곡을 최소화한다고 보기 때문 ③ Amber Box :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 감축약속을 하게 됨.

BPA (Bilateral Payment Arrangement, 양자지불방식협정)

아세안 역내 회원국 상호간의 자국통화를 사용한 무역 결제 협정을 의미함. 1997년 12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달러화 보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역내 통화를 사용한 무역 결제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음. 이에 따라 우선 참여 대상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필리핀이 BPA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조치로서 1998년 7월 11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간에 BPA가 최초로 체결되었음.

Bretton Woods System (브레튼우즈 체제)

이 체제의 기본이념은 고정환율과 금환본위제를 통하여 환율의 안정,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의 확대를 추구하는 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국제 통화기금(IMF)과 전후 부흥 및 후진국 개발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창설됨.

BRICs (Brazil · Russia · India · China, 브릭스)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그룹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임. 브릭스는 브라질(Brazil) · 러시아(Russia) · 인도(India) · 중국(China) 등 4국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것임.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4개국은 1990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게 됨.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음.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임.

Brussels Ministerial Meeting (브뤼셀 각료회의)

1990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 각료회의는 107개 UR협상 참가국 중 95개국 및 5개 국제기구로부터 각료 117명을 포함 약 1,500명의 대표와 취재기자단 1,500명, 로비스트 1,000여 명 등이 참가함으로써 통상관계로는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음. 당초에는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UR협상을 완전히 종결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제네바에서 진행되어온 사전 절충과정에서, 특히 농산물 분야의 주요쟁점에 대한 타결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당초 본 회의가 지닌 성격을 바꾸어 회원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결정만 내리고 기술적 사항은 추후 실무협상을 더 연장함으로써 UR협상을 종결한다는 방침 하에 회의가 개최되었음. 4차에 걸친 비공식 각료회의(Green room meeting)에도 불구하고 브뤼셀 각료회의가 결렬 위기가 대두되자 12월 6일 헬스트롬(Helletrom) 그린룸 회의 의장은 자신의 책임 하에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비공식 문서(Non-paper)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그 직후 개최된 제4차 농업협상그룹 그린룸 회의에서는 이 비공식 중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협상의 기초로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EC는 강력한 유보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일본 등 수입국들도 불만을 나타냄으로써 결국 협상의 기초로 채택하는데 실패하였음. 브뤼셀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협상 그룹의 타결이 전체 UR타결의 전제조건임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비단 무역관련 국경조치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농업정책까지도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UR 농업협상의 결과가 처음부터 우려되어 오던 것이지만 브뤼셀 회의를 통해 그 같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게 된 것임. 따라서 UR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당초 자신들이 세웠던 협상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브뤼셀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결렬의 파국은 피하고 협상을 연기하게 되었음.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소해면상뇌증은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확인된 질병으로서 소(주로 성우)의 뇌 조직이 스펀지 모양으로 변형되는 치명적인 신경질환이며, 역학적으로 경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경세포에 정상적으로 있는 프리온의 형태와는 형태상 다른 비정상적인 변형 프리온(variant prion; 단백질의 일종)이 뇌의 특정부위에 축적되면서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BSE와 같이 뇌 조직이 스펀지 모양으로 변형되는 질병들을 총칭하여 TSE(전파성해면상뇌증;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라 하며, 양의 Scrapie, 사람의 CJD(Creutzfeldt-Jacob disease)와 Kuru, 사슴의 CWD(사슴만성소모성질환; Chronic Wasting Disease of Deer) 등이 이에 해당함. BSE는 육골분 등 BSE 관련 위험물품을 소에 급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에서 보고된 이후 이들 물품이 비교적 자유로이 교역되는 아일랜드, 스위스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01년 6월에는 체코에서도 BSE감염소가 확인된 바 있음. BSE는 흥분, 불안, 마비증상 등 전형적인 신경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발생초기에는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최초 발생확인 후 10년이 경과한 1996년 3월 사람의 변형 CJD(new variant CJD)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BSE는 환경호르몬과 더불어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이며,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주창자들의 모델이 되고 있음.

BTL

(Base Trigger Level, 기초발동수준)

Trigger level(발동수준) 참조.

Business Practices

(영업관행)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또는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제한 행위 포함, 자유 경쟁을 제약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관행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C-TPAT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더불어 특혜관세 대상 판단과 관련 원산지가 중요해지고 있음.

Cabotage

(연안운송 금지)

국내 항구 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 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Cabotages

(국내운항권)

국내 항구와 항구 간, 국내 공항과 공항간의 해운 또는 항공 서비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 소유이거나 그 국가에 등록된 배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만 가능함. 미국은 연안항해권을 제공하는 선박이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제작되어야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Cairns Group

(케언즈 그룹)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동북부 Cairns라는 도시에서 공식 결성되어 케언즈 그룹이라고 함. 회원국은

당초 호주를 위시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파라과이, 남아공 등의 15개국이었으나 1999년 11월에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3개국이 추가 가입하여 총 18개국이 됨.

Calvo Clause (칼보조항)

남미국가에서는 외국인과 계약체결 시 외국인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주유국국민(駐留國國民)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국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수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칼보조항이라고 함.

Canada-Periodicals Case (캐나다 정기간행물사건)

캐나다는 ① 자국의 관세법(Tariff Code 9958)에 따라 특정한 정기간행물(Spilt-run Periodicals)의 캐나다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② 소비세법(Excise Tax Law)에 따라 Spilt-run Periodicals에 포함된 광고가치의 80%에 상당하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③ 캐나다에서 우송되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간행물과 같은 낮은 우편료가 아닌 높은 우편료(Postal rates)를 부과하고 있었던바, 1996년 3월 미국에 의하여 WTO에 제소되었음. 미국은 ①에 대해서는 GATT 11조 위반 ②·③에 대해서는 GATT 3조 위반으로 제소한바, WTO 패널은 ①·②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장을 ③주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항변을 받아들였음. 미국의 ③주장에 대하여 캐나다는 이는 캐나다 국내생산자에 대한 생산자보조금으로서 GATT 3조 8항 b호에서 인정된다고 항변하였는데 패널에서 받아들여졌음. 그러나 ③에 대한 패널의 판정은 WTO 항소패널에서 번복되었음.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

1957년 당시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구주경제공동체(EEC) 각 회원국들은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어 고용측면의 농업의 중요성 인정, 농업부문의 소득향상 필요성 인정, 농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개별적 개입으로는 공동시장의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분야에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본 운용원칙으로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농산물 우선, 공동재정부담 원칙을 채택하였음. 단일시장형성을 통해 회원국 간 관세 및 교역제한을 철폐하고 공동가격, 공동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역내우선원칙에 따라 시장개입, 수출환불제 등을 통해 역내 농산물가격지지 및 판로를 확보하고 가변과징금 부과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며, 공동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으로 EU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생산성 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등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지지한 결과 소비증가를 초과하게 되어 1980년 이후부터는 과잉문제가 대두되었음. 한편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중 수출보조 및 가격보조, 저장비용 보조 등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입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여 EU의 재정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EU는 가변부과금 및 수출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농산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에 따라 여타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의의제기를 하여 통상마찰을 일으켰음. 이와 같이 가격 지지를 위주인 공동농업정책은 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1970년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곡물 과잉공급 상태가 되어 농산물가격도 하락하여 재고증가 및 농업예산증가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1988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 예산과다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재고처분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급확대 등은 주요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져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여부가 EU의 농업보조금감축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결국 UR농업협정은 EU로 하여금 수출보조금을 양허토록 하여 더 이상 세계시장에 과잉농산물을 텀핑수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보조금에 대한 감축약속제시로 EU의 가격지지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과잉, 예산압박, 소비자의 농산물가격 인하요구 등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역내 개혁필요성과 역외의 개혁요구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CAP은 1999년 3월 11일 EU농업이사회에서 합의되었으며 1999년 3월 24일~26일 베를린 EU이사회(정상회의)에서 Agenda 2000이 타결됨.

- CAP개혁 주요 내용 -

〈경종작물분야〉

- 지지가격은 2000/01년부터 2년간에 걸쳐 각 7.5%씩 15% 감축
- 의무휴경은 2000년~06년 기간 동안 10% 유지

〈쇠고기〉

- 지지가격을 2000년부터 3년간 일정비율로 20% 감축
- 쇠고기보상금의 일부는 회원국이 자체실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당초 2002년 7월부터 폐지기로 한 공공수매제도는 톤당 가격(bull 및 steer)이 1,560euro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만 수매를 실시하는 안전장치(safety-net)수매제도를 도입

〈 낙농분야 〉

- 버터 및 탈지분유의 지지가격을 2005/06년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
- 우유생산쿼터는 2003년부터 1.5% 증가시키고, 5개 회원국(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영국)에 대해서는 추가 증량

〈 기 타 〉

- EU의 예산감축과 관련한 직접지불금(Direct payment)의 점진적 감축 방안은 폐기
- ※ Agenda 2000 참조

CAP

(Collective Action Plan, 공동실행계획)

19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서 APEC 무역자유화의 구체적 실천 단계로서 채택된 공동실행계획. 특히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와 역내 사업수행의 용이함과 신속함, 그리고 더 싼 가격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의 증진에 역점을 둬. 분야별 사항으로는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투자,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UR 이행, 정부조달, 분쟁 조정, 지적재산권, 서비스, 경쟁정책, 규제완화, 기업인 이동 등 14개 분야가 논의되고 있음.

Capping

(상한 설정)

관세를 감축할 때 일정 수준 이상 관세를 설정할 수 없도록 상한치를 설정하는 것.

Carbon Footprint Scheme

(탄소발자국)

특정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환경라벨의 한 유형. 인간이 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지표로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의미로 시작된 개념. 우리나라는 2009년 2월부터 '탄소성적표시제도'를 시행하는 있는데,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 제품 인증의 2단계로 구성되며, 2012년 12월 31일 기준 131개 기업, 263개 사업장, 807개 제품에 대해 인증이 부여되어 있음.

Cargo Manifest (적하목록)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 운송기관의 명칭, 선하증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하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화물의 품명 및 수량, 하수인 및 송하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목적항의 선박대리점에게 도착화물의 내용을 알림.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공동시장)

1973년 창설된 관세동맹형태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연합.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Carnet Convention (까르네 협정)

1959년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컨테이너 수송 시 경유지에서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도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기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아타까르네(ATA Carnet)가 대표적임.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임.

Carry forward (조상)

수출국이 당해 연도에 익년도의 쿼터를 앞당겨 소진하는 행위.

Carry over (이월)

수출국이 당해 연도의 미소진 쿼터를 익년도에 넘겨서 소진하는 행위.

Carve out

(제외)

특정 조치 또는 경제적 행위를 신무역규범의 적용으로부터 당분간 면제해 주기로 하는 협상 참가국간의 합의. 예를 들어 양자 항공권 및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합리적 규제(prudential regulations)를 GATS 규범에서 면제해주는 것을 들 수 있음.

Cascading tariffs

(중첩적 과세)

상대적으로 단순한 최종 제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가공정도가 늘어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행을 말함(tariff escalation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짐). 동 관세의 목적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임.

Catadromous fish

(강하성 어종)

담수에서 생활하다가 산란을 위해 하천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어류를 말하며, 대표적인 어종으로는 뱀장어가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제67조는 강하성 어종이 그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이 이 어종의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Causality

(인과성)

덤핑의 존재, 보조금의 존재, 또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함.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존재, 그리고 그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존재, 그리고 그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존재하고 그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CB

(Capacity Building, 능력배양 또는 능력형성)

개도국이 국제협정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대다수 협정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CBSPC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바깥의 공해수역에서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위해 1995년에 체결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4일 협약에 가입하였음. 명태자원의 보존을 위해 1993년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조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폴란드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남극 주변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남극해양생물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28일 가입하였음. 호주 호바트에 본부를 두고,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 및 남극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 25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국제관세기구)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유럽지역의 여러 나라는 경제통합화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관세동맹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1947년 유럽경제협력위원회의 일부 국가는 유럽관세동맹의 설립을 위하여 유럽관세동맹연구단을 설립, 경제위원회와 관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경제문제와 관세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하였음. 경제위원회는 OECD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관세위원회는 관세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기초로 세계적인 규모의 관세기술협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1952년 11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발표시켰음. CCC는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로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관세제도,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CCC에 1968년 7월에 가입하였음. 1994년 6월에 세계관세기구로 개칭하여 활동 중이며 상품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상품의 그룹별로 세계 공통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관세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역활동을 촉진하며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을 함. 현재 관세분류체계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와 이스탄불 협약 및 교토협약의 운영을 맡고 있음. 기구의 소개를 통해 투자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기타 지원의 촉진, 적절한 투자진흥정책 및 전략수립과 관련한 각국 정부에 대한 자문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기구)

1995년에 발효된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의 전신임.

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상품신용공사)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농무부(USDA)산하에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해 1933년 10월 Delaware 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그 후 1948년 7월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해 재설립됨. 수정된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는 용자, 구매, 보상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또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이사회 의장과 이사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농무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사회는 농무부장관 외에 7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상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함. 모든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공사의 직원들은 농무부 직원이고 상품신용공사는 소속운영직원이 없으며, 공사의 가격지원, 보관, 비축 및 전환사업이나 가격지원상품의 국내 구입 및 처분은 연합농가지원처(Consolidated Farm Service Agency : CFSA)의 시설과 인력을 통해 수행되며, 상품신용공사 통제하의 비축물량의 수출 및 외국지원 업무는 해외농업처(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FAS)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CCC의 품목별 지원계획의 기본구조와 운영요령은 『1996 연방농업개혁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the Farm Bill)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품목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품목지원계획에는 밀, 옥수수, 면화, 쌀, 담배, 우유 및 낙농품, 보리, 귀리, 수수, 땅콩, 설탕이 포함됨. 대부이자율(Loan rates)은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설정되며, 목표가격(Target price)은 생산비를 반영하여 설정됨. 농가소유곡물비축계획(Grain reserve programme)은 농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농산물의 재고가 국내나 수출수요보다 많은 때에는 비축했다가 재고가 줄거나 가격이 유리할 때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유 및 낙농품에 대한 지원은 버터, 치즈 및 무지방 건조우유를 가공업자나 처리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줌으로써 수행되며, 낙농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CCC지원계획은 없음. 품목별지원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CCC는 비축된 물자를 인수(Take over)하거나 구매(purchases)하는 방식으로 취득함. 한편, CCC는 특정한 상황에서 품목별지원계획이나 민간비축을 통해 구입될 식량을 연방,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에게 지원하는 국내 식량원조계획도 수행함. 또한 CCC는 판매, 수출업자 보전, 직접금융 및 기타 업무수행을 통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식량원조 및 지원계획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진하는 CCC는 수출신용·보증사업과 여타 수출보조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CCC는 3가지의 수출신용·보증사업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최단기 공급자신용사업(Very-short term supplier credit programme), 단기수출보증사업(Short-term export guarantee programme), 중기수출신용·보증사업(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me)이 있음.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me : 수출촉진계획)하에서 CCC는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농산물을 수출대상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EIP(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me : 낙농품수출진흥계획)하에서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농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EEP와 DEIP 계획은 수출업자에 대해 직접현금보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MAP(Market Access Programme : 시장접근계획)하에서 미 농무부는 해외시장개발사업을 이행하는 자격 있는 무역기관들에게 비용분담보조를 통해 미국농산물의 수출시장 확장, 유지 및 개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모든 MAP계획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CCC와 비영리농산물무역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FAS(해외농업지원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CCC는 또한 비축물량으로부터 수출시장에 낙농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나 특정 품목의 수입에 관여하지 않음.

CCFTA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동 협정은 1997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케언즈 국가 간에 체결된 FTA임. 쇠고기·사탕수수의 관세 철폐기간은 16년 이내, 제분용 밀은 18년 이내, 낙농품·닭고기·계란·배합사료의 초과물량(Out-quota)관세는 철폐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동 협정문은 '99년 말부터 공식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 FTA에서 칠레 측이 협정문 체결 시 참고사례로 우리 측에 제시한 바 있음.

CCP

(Counter Cyclical Payment, 가격보전직불제도)

2002년도 농업법(Farm Bill)에 의거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미국의 농업 보조금으로 옥수수, 수수, 대맥, 귀리, 소맥, 대두, 유지작물, 면화 및 쌀 등의 품목에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조금 지불제도임. 목표가격은 1974년 도입된 부족불제도와 같은 개념이지만 차이점은 첫째, 당시에는 없었던 고정직접지불금의 정부 보조금이 농가에 별도로 지급되므로 차액 지불시 이것을 감안했다는 점과 둘째, 과거에 재배면적을 근거로 현재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WTO차원의 허용보조 범위로의 분류근거를 마련 점을 들 수 있음.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국제상호인정협정)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으로서 1998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 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이고, 2000년 5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 2006년 5월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회원국은 총 26개국임.

Cf. CCC(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상 공통평가 기준(CC)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서.

CCRF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책임수산업규범)

1995년 제28차 FA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수산업규범으로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어선어업, 양식, 가공, 수산물 교역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수산업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기본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범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voluntary) 성격의 규범이나 그동안 국제어업질서를 규율하는 중요한 어업규범으로 기능하여 왔음.

CCSB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남방참다랑어 회유수역(대략 남위 30도에서 50도 사이)의 참다랑어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의 하나로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에 따라 1994년 5월 20일자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17일에 가입하였고,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대만 등 6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호주 캔버라 있음. 우리나라의 동 기구에서의 어획쿼터는 남방참다랑어 1,140톤임.

CDS

(Catch Documentation Scheme, 어획증명제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이빨고기에 대하여 2000년 5월 7일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협약수역 내 어획된 이빨고기의 양육 및 거래를 추적하기 위하여 이빨고기의 생산 및 거래 시 일정한 서식에 그 관련내용을 기재토록 한 것임. 회원국의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빨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빨고기가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줌. 동 제도는 IUU 어업방지를 위하여 ICCAT 등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CE

(Conformité Européenne 마크)

유럽적합성을 의미하는 Conformitee Europeenne의 약자. EU회원국 사이의 무역에 기술적 장벽이 되는 각 회원국마다 다른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정비를 통해 유럽단일시장 완성에 일조할 목적으로 EU전체에서 사용할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1985년 합의된 '기술적 조화' 및 표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to Technical Harmonization and Standards)이며 이 지침을 바탕으로 유럽표준상품에 부여하는 유럽표준마크가 CE마크임. CE마크가 부여된 상품은 EU내에 자유 유통되며 어느 회원국도 이 상품을 기술적 이유로 거절할 수 없으며, 유럽표준에 상치되는 국가표준은 폐지됨.

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1993년 3월 발효됨.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코소보 등 8개 회원국을 연결하는 복잡한 협정구조를 지닌 자유무역 협정임.

Ceiling Binding (한도양허)

특정한 수준에서 관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허하는 WTO 개념으로서 종종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됨. 양허는 보통 협상의 결과이며,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국가는 이러한 양허 수준의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시킬 수 없음.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당사국 사이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표현만 다를 뿐 교역자유화의 추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동일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호주와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ANZCERTA(긴밀경제관계 무역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의 약칭. 198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양국 간 상품무역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량제한도 하지 않으며 상호 간에 반덤핑조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

수입상품의 원산지국을 입증해주는 서류.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 규정 실행의 일부분임.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무역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음.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실제 경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 기술 혹은 다른 외생 요인의 변화에 대해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정하는 경제 모형의 한 종류임. CGE모형은 ① 모형 방정식: 종종 생산자에 의한 행태 비용 최소, 평균 비용 가격 그리고 최적화 행태에 기반을 둔 가계 수요를 가정하는 신고전학파적 체제에 기반을 둬. 그러나 많은 CGE모형이 이론적인 일반 균형 패러다임을 대체적으로만 수용하고 있음. ② 데이터베이스: 거래 가치의 테이블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철강 산업에 이용되는 석탄의 가치 같은 것임. 통상 데이터베이스는 투입-산출 테이블이나 사회적 회계 행렬로 나타남. 이는 한 국가의 전체 경제(또는 전세계)를 포괄하고 상품, 주요 요인과 가계의 형태 등 여러 부분으로 나눔. ③ CGE모형: 와슬리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가 처음 개발한 투입-산출 모형으로부터 계승된 것이나 물가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일임함. 그래서 레온티에프가 고정 노동량이라 한 것을 가정한 데서 1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CGE모형은 보통 임금 수준이 (부정적으로)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용함. 또한 CGE모형은 1960년대 이후 수립된 빈민국의 경제(보통 외국에의 수출에 의한)의 계획을 위한 모형에서 파생되었음. 레온피에프 모형과 비교하여, 발전 계획 모형은 숙련 노동, 자본 또는 외화의 긴축이나 결핍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

Change in tariff heading

(세번 변경)

원산지 판정 시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B라는 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 번이 변경된 경우 A국의 제품으로 간주됨.

Chicago Convention

(시카고 협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제 항공서비스 체제를 촉진할 목적으로 1944년에 타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 동 협약의 규정들은 범지구적 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양자간 항공운수권의 배분 방법을 규율하고 있음. 동 협약은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시행됨.

CIQ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세관, 출입국관리 및 검역)

외국 출입국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우리나라에는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음.

Circumvention (우회덤핑)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을 말함. 우회덤핑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나 최초의 우회덤핑제도인 EU의 우회덤핑제도는 반덤핑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역외의 수출기업이 핵심부품을 EU역내의 조립생산공장으로 수출하고 동 공장에서 이를 조립하여 유통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Screwdriver Clause라고 함. 도쿄라운드 반덤핑협정에는 우회덤핑방지규정이 없었으나, EU와 미국이 각각 1987년과 1988년에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국내법제화함. WTO 반덤핑협정상의 규범화 문제는 UR협상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우회덤핑방지의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각료선언만 채택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WTO반덤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여 논의가 진행 중임.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우회 수출보조)

WTO 농업협정 제10조 1항은 제9조에서 제시한 6가지 형태의 수출보조 이외의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계량화가 가능한 수출지원을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해 나가는 한편, 사실상 계량화가 어려운 여타 수출지원은 금지토록 하여 감축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출지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어떠한 보조가 우회수출보조인지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수출보조리스트에 제시된 수출보조가 하나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은 국제적인 합의 규율을 정립하여 준수 ② 국제식량원조는 FAO의 국제식량원조 규율 준수 ③ 기타 수출지원은 수출지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지원금지에 해당됨.

※ Export Subsidy 참조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 구소련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21일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11개국 정상이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 모여 연합의 설립에 서명함으로써 1922년의 소연방조약을 폐기하고 탄생함. 참가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벨로루시·투르크멘·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우즈베크·키르기스·카자흐·타지크·몰다비아 등 11개 국가로 구성됨.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멸종동식물 보호 협약)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 3월에 채택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곰 등 약 3만 여종의 야생 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 및 상거래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1975년 7월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가입하였음. 2002년 6월 기준 158개국이 가입하였음.

Clawback GI

(지리적표시)

보호확대 문제와 관련한 EC의 주장. EC는 GI와 관련된 농산물 리스트를 마련하여, 동 리스트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추가 보호하되, TRIPS 협정 제24조 상의 예외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 TRIPS 협정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이미 선의로 GI를 상표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및 관용 명칭이 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의 예외가 됨을 규정.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서,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했을 경우 일정부분을 선진국 실적으로 이전하는 제도.

Cluster

(협상방식)

협상 전 분야를 하나로 묶지 않고 관련된 분야마다 묶어 협상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방식과 분야별 방식의 중간방식으로 캐나다에서 주장함.

CMA

(Current Market Access, **현행시장접근**)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 Market Access 참조

CMO

(Common Market Organization, **설탕공동시장조직**)

EU의 설탕시장을 위한 공동조직(CMO)은 공동체 설탕 생산자들의 정당한 수입을 보장하고 공동시장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68년에 설립되었음. 현재 CMO는(EC)규제위원회(No,318/2006)의 관할 하에 있음. 이 위원회는 설탕 생산자들에게 산업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돕기 위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함.

Code-conditioned Most-favored-nation-treatment

(협정가입 조건부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가 동일한 협정의 회원국에만 부여되는 경우로서, WTO 정부조달협정이 그 예임.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는 OECD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하나로서 경상무역의 거래와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 규약을 1961년 12월 이사회에 의해서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채택함. 이 규약은 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 투자 및 자본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세계 경제발전이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신규 가입국의 경우에는 기존회원국이 동의하면 양대 규약의 일부조항에 대한 유보가 가능함.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2년에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185개국이며, 사무국은 이태리 로마의 FAO 본부 내에 위치하고 있음.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의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각국 정부의 채택을 위해 권고될 수 있는 식품기준의 개발,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식품기준작업의 국제적인 조화 및 조정 작업임. 우리나라는 1971년에 가입하였음.

COGECA

(General Committee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유럽농협연합회)

1959년에 설립되어 유럽 내 33,000여 개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임. COPA (유럽농민단체연합회)와 더불어 EU 최대의 농업 관련 NGO임.

Combined Duty

(혼합세)

선택세와 복합세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그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 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양질의 물품이나 시가가 등귀할 때에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염가품이나 시가가 하락할 때 또는 외국환이 저락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복합세(Double duty)는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임.

※ Compound Duty 참조

Commercial Loan

(상업차관)

국내기업이나 개인이 민간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을 차입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말함.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서비스 거래의 한 형태로서,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임.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 집행위원회)

20명의 위원(European Commissioner)으로 구성된 EU의 주요 집행기관으로 각 국가의 이익이 아닌 EU차원의 이익을 대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2명의 위원을 선출하며 기타 10개국은 1명의 위원을 선출. 임기는 5년이며 중임제한은 없음. 위원회는 합의체로 운영되며 각 집행위원은 특별 담당업무가 있으나 행위의 책임은 전체가 지며 모든 사항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함.

Commission on Investment, Technology and Related Financial Issues

(투자, 기술 및 관련금융위원회)

UNCTAD 9분과에 설치된 것으로 개도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이용할 능력의 증진, 발전, 특히 경쟁법(competition law) 관련 현안의 검토, 과학기술의 분석, 기업혁신 정책, 기술발전을 위한 기술원조, 국제무역 및 투자에의 효과적인 참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발전 과정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무를 가짐. 위원회는 매년 개최됨.

Commitment

(약속)

WTO 협정 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양허(bindings), 서비스 개방 약속표(schedule of commitment on services) 등을 들 수 있음.

Committee on Agriculture

(WTO 농업위원회)

GATT 94조 농업협정문에 따른 위원회로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의 식량 수입 이행약속을

감독하고 농업무역분쟁을 관장하는 기구.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협정위원회)

지역협정위원회는 1996년 2월 WTO일반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되었음. 동 위원회는 GATT 24조 위원회라고도 하는바, 이는 동위원회가 수많은 지역협정이 GATT 24조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임. GATT 2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협정에 대하여 MFN원칙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즉, 동조는 ① 국경무역(frontier trade) ② 관세동맹(customs trade) ③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등의 지역협정에 대하여 GATT의무로부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WTO협정 하에서는 GATT 24조 외에도 GATT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GATS 5조가 있음.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WTO협정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역내국간의 (1)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 조치들(GATT 제 11조에서 15조까지의 수량규제와 GATT 제 20조의 일반적 예외는 필요시 제외)이 제거되어야 하며(GATT 제 24조 제 8항), (2) 역내국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이 철폐되어야 함(GATS 제 5조 제 1항). ② 역외국에 대해서는 (1) 상품과 관련, 지역무역협정체결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2) 서비스와 관련, 협정체결전보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의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켜서는 안 됨(GATS 제 5조 제 4항). ③ 자유 무역협정을 형성하는 전단계인 잠정협정은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 기한(reasonable length of time)”이 부여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이행해야 함(GATT 제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제 3항). 최근에는 통보된 개별지역협정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일반의제로서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협정 검토 과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WTO SPS 협정문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 위생검역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위생검역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위원회)

WTO일반이사회가 다음 10개의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개정필요성여부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 1996년 12월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의 시 제출토록 mandate를 받아 설립된 특별위원회임. ①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MTS규정과과의 관계 ② 국내환경정책과 MTS와의 관계 ③ MTS규정과 (a)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 (b)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 관련 요건과의 관계 ④ 환경관련무역조치의 투명성 ⑤ MTS와 MEA(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의 분쟁해결체제 ⑥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 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 ⑦ 국내 판매금지품의 수출문제 ⑧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환경 ⑨ 서비스와 환경 ⑩ 기타 기구와의 관계 증진. WTO협정에서는 협정전문, TBT, SPS협정, TRIPS협정, GATS협정, 1994GATT협정 등에 환경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무역환경위원회는 각국의 이견으로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 권고문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각료회의는 이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설치된 동 위원회가 작업을 계속 하도록 결정하였음.

Common Market

(공동시장)

가장 진전된 형태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서 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외에도 노동, 자본 및 서비스도 제한 없이 이동 가능한 상태를 말함. 1994년 이전의 EU가 여기에 해당됨.

※ Regionalism 참조

Commercial Consideration

(상업적 고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이 수출입시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조건 등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Compensation

(보상)

한 국가가 GATT협정 제19조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취하거나 제28조에 의하여 양허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요 이해 당사국에 대하여 여타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내지

자유화 등으로서 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함.

Compensatory Payment (보상지불제도)

EU의 대표적인 직접지불제도. 보상지불제는 1992년부터 농산물 과잉과 재정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인하하고 그에 따른 농민소득의 감소분을 지불하는 제도임. 지원 방법은 기준 면적에 기준단수를 곱한 다음 이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상지불 단가는 개입가격의 인하에 따라 보상지불이 그만큼 증가하여 실질적인 목표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곡물류에 대한 보상지불액 단가는 1993년 25ECU/톤에서 매년 인상되었으며, 1996년 이후는 54.34 ECU/톤으로 고정. 보상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면적의 일정 부분을 휴경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의무 휴경조항으로 감축대상면제정책(blue box)이 되었음. 의무휴경비율은 재고 수준에 따라서 매년 조정이 되는데, 1994년 15%, 1995년 12%, 1996년 10%, 1997년 이후 5%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고, 경지면적이 곡물 92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면적보다 작은 소규모 농가(EU 평균으로는 20ha)에 대해서는 휴경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Direct Payment 참조

Competition policy (경쟁 정책)

보다 폭 넓은 경쟁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방법을 일컫음. 경쟁을 유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런 점에서 한 국가의 경쟁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무역정책과 대비됨.

Compound duty (복합세)

한 품목에 증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과세하는 방식. (예: 30% + 200원/kg)

Compound tariff (복합관세)

증가세와 종량세 요소를 모두 포함한 관세. 어떤 상품에 대해 1달러의 종량세에 10%의 증가세가

더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Comprehensive Tariffication (포괄적 관세화)

예외 없는 관세화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UR협상을 통해 각종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형태로 통합시킨다는 개념임.

Concession (양허)

WTO 체제 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상품의 경우 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 그 예임.

※ Commitment 부분 참조

Concession Negotiation (양허협상)

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 각국은 관세·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 스케줄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함.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됨.

Consensus (만장일치제)

WTO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별도 투표절차 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식. WTO 협정에는 투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하나 대부분 컨센서스 방식에 따라 결정이 내려짐. GATT이사회에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도 제소국과 피소국을 포함한 만장일치를 요구함.

Conservation Compliance

(보전동의 규정)

1985년 미국의 농업법에서 규정된 조항으로 연방정부의 소득지지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환경농업 실행지침 규정을 말함. 즉 이 규정은 농가에 대해 특정한 환경보존계획의 이행을 상품 프로그램 수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Consolidated Text

(통합협정문)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 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 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함.

Consular Transaction

(영사거래)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 중임.

Consultation

(협의)

WTO DSB 분쟁해결절차의 초기단계로서 분쟁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계당사국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고 3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함.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협의 요청국은 즉시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요청은 요청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DSB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함. 협의결과,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또는 협의기간 중에라도 협의당사국 모두가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부패성 물품이 관련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Contingent Measure

WTO 협정 하에서 합법적인 보호 메커니즘으로 덤핑수출, 보조금 지급, 예기치 않는 수입급증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등이 있음.

Contiguous Zone

(접속수역)

영해 가까이에 이어진 일정범위의 공해수역(公海水域)으로서, 연안국이 그 국가의 통관·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을 막고 처벌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인정된 수역을 말함.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접속수역의 범위는 24해리까지로 되어 있으며, 200해리 수역 등으로 연안국의 바다에 대한 관할권이 확대됨으로써 그 의미는 약해졌음.

Contracting Party

(체약국)

GATT 가입국을 의미함. 체약국 혹은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전자는 개별 체약국을 의미하고 후자는 복수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체약국이 함께 행동할 때를 의미함.

Continental shelf

(대륙붕)

대륙의 가장자리와 연결된 바다 밑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부분으로 해안으로부터 수심 200m 정도까지 육수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함. 육지의 주변에 있어 하천수에 의한 영양염의 공급도 많아 해양에서 생물 생산이 많은 곳임. 1982년 국제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범위를 대륙 확대해 200해리까지 대륙붕으로 규정하였음.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국의 생물자원 이용을 규제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음.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임. 당사국들은 생물자원이 재생될 수 없을 정도의 소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이용 및 관리 조치로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음. 각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열대우림과 동식물 등이 풍부한 생물종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이 무제한 사용한 유전자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의 보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음. 또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국과 자원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야 함.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

개발을 위한 매립,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습지의 잠식과 상실을 방지하고 특히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류를 국제적인 자원으로 중시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1972년 2월 이란 람사에서 채택한 협약임.

Coordinator's Meeting (조정국회의)

ASEM 관련 용어. 아시아지역 2개국, 유럽지역 2개국이 조정국이 되어 고위관리회의와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지역별 의견 수렴 및 연락관(Correspondents)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최되며, 보통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중이나 다른 국제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소집함.

COPA (Committee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the EU, 유럽농민단체협의회)

1958년에 창설된 유럽 내 최대의 농민단체조직으로 EU내 15개국 30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함.

Copyright (저작권)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도서, 음반, 테이프, 그림, 조각물, 사진, 악보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정됨.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공표, 출판, 복제, 공연, 방송, 연주, 전시 등의 권한을 그 저작권 존속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향유함.

Copyright Treaty (저작권조약)

1996년 12월 20일에 체결된 동 조약의 2가지 기본목적은 첫째, 베른협약이 저작권 보호에 있어 간과했거나 불완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임. 둘째, 베른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술과 조약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임. 저작권조약의 특징은 동 조약이 베른협약과는 특수한 관계를, 다른 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고 있다는 것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물의 종류를 확대했다는 것, 배포권 및 대여권을 새롭게 신설한 것임. 또한,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종전 25년에서 다른 저작물과 같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COREPER (Committee of Parliament Representatives, 상주대표위원회)

EU 각료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대사급 또는 부대사급의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주로 각료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공동체기구와 회원국 행정부 간 상호 연결 및 정보교환, 안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정리 및 조화, 공동체기구의 업무에 대한 직접 참여 등의 기능을 담당함.

Cotton-4

아프리카 주요 면화생산국들로서 면화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베냉으로 구성된 협상그룹.

Council of Europe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은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문화적 유산 및 이상을

보존,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1949년에 설립되었음. 현재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는 4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음.

Council of Ministers (각료이사회)

EU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EU의 모든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EU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국 각료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외상들이 참석하는 일반 각료이사회와 관련 각료들이 참석하는 특별 각료회의이사회로 구분됨. 의장은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바뀌며 그 권한은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규칙, 지침, 결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예산심사 확정권, 협정체결권 등을 가짐. 의결은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로 결정함.

Countervailing Measure (상계조치)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 제10조~23조는 보조금 지급으로 GATT 6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산업의 서면 신청으로 상계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여타 철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상계조치 제소자격은 유사상품 국내생산자 혹은 대리인, 단 제소를 찬성하는 업체들의 합계 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명한 업체들의 합계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사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 조사 불가함. 조사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초과 금지토록 하고 있음. 보조금액은 지분참여, 정부대출, 대출보증,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 등을 「수혜자 수입개념」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보조금액이 소액(De-minimis)이거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경우(일반적으로 보조금액이 가액대비 1% 이하)와 같은 소액 보조액은 상계관세부과를 배제하고 피해의 누적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음. 상계관세의 효력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Country List (국별 농업보호현황자료)

UR 협상 시 농산물그룹 의장(DeZeeuw)은 1989년 UR 중간평가 이후 폰타델에스테 각료회담 및 중간평가회의 합의사항인 농산물무역자유화 또는 농업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Country List)를 제출할 것을 의장초안에서 요구하였음. 협상참가국들은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따라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인 Country list를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Country list는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보조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현황 자료임. 주요국들의 C/L을 분석해 보면 각국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보호 현황자료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음. 미국과 Cairns Group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의장초안에 충실하여 자료를 작성했으나 수입국들은 의장초안의 해석상의 융통성 및 문제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국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많은 수입국들이 국내보조금 현황자료에 있어 대부분의 농업지원정책을 NTC목적달성, 농업개발목적 등의 이유로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 그 외에도 국내 보조자료는 물론 관세상당액 자료 등에 있어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도 있었음. 한국도 식량수입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초안을 해석하여 C/L을 작성했으며, 또한 UR 농업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농업협상 및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반대해 온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따라서 한국은 농업보호 현황자료 중 국내보조 현황자료의 경우에 AMS 계측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출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계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감액대상보조금(정책)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15개 NTC품목은 관세화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C/L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수출보조금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Country of Origin (원산지)

물품이 생산되었거나 가공된 국가. 당해물품을 단순히 조립한 조립국이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음. 물품의 생산 공정이 1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생산국이 원산지이나, 2개국 이상일 경우 원산지 결정이 문제됨. 당해물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임.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할 수 있음.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객관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일반무역통계,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의 기준이 되며 제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 특혜원산지규정은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GSP 등 특혜관세 부여 시 관세혜택의 대상물품을 결정하는 기준임. WTO 원산지 협정은 비특혜원산지기준과 별도로 특혜원산지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비특혜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WTO 원산지 협정(Rules of Origin)의 후속과제로 세계 각국의 원산지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통일원산지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 협정 체결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원산지 기준을 협정과 조화시켜야 함.

Country of Origin Marking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의 생산국을 부착내지 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물품구매 시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Country Quota (국별 쿼터)

국별 쿼터는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국가별로 할당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인위적인 국가 간의 물량배정으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 이는 무차별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GATT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를 허용하는 한편,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국가 간에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Country Risk (국가 위험도)

민간기업 또는 개인인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신용위험(Commercial Risk)라고 하며 반면 그 차주가 속한 국가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위험도라고 하는데, 특정국에 행하여진 투자나 여신에 대하여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상 위험도를 지칭함. 외채상환부담율(DSR, Debt Service Ratio)을 그 측정치로 하고, 일반적으로 DSR이 20%에 미달하면 위험수준으로 평가됨. 일반적으로 국가위험 발생원인은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 부족, 전쟁이나 대란, 수출입 규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임. 또한 혁명 등에 의한 채무승계의 거부 등을 의미하는 Sovereign Risk와 국제수지 곤란에 의한 대외지급 지연 등을 의미하는 이전 리스크(Transfer Risk)로 구분.

CPUE (catch per unit effort, 단위노력당 어획량)

총 어획량을 총 어획노력으로 나눈 것을 단위노력당 어획량이라고 하며, 이는 자원량 지수로서 사용됨. 즉 단위노력(선박, 사람, 낚시)에 따른 개별 어획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연승어업의 경우라면 한 상자당 어획량을 의미하고, 채 낚기 어업의 경우는 한 사람당 어획량을 의미.

Credit (기여실적)

UR 농산물협상에서 EC 및 일본 등이 주장한 개념으로서, 농업보호 및 지원조치의 점진적 감축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UR 출범년도인 1986년으로 하여 그 이후 자유화 이행실적을 향후 감축약속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임.

Critical Mass

사전적 의미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을 의미하며, 주로 NAMA 협상에서 분야별 자유화를 논의할 때 특정 분야 및 품목의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자발적으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교역량(또는 생산량)이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 기준을 넘게 되면 “critical mass를 형성하였다.”고 말함. ITA 협정에서는 critical mass를 교역량의 90%로 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했을 때 ITA 협정이 발효되었음.

Crop Year (곡물년도)

일본은 4월 1일, EU와 뉴질랜드는 7월 1일, 캐나다는 8월 1일, 호주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잡곡의 유통년도임. 미국의 잡곡 곡물년도는 보리와 귀리의 경우 6월 1일, 옥수수와 수수의 경우 9월 1일에 시작됨.

Cross Compensation (교차보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양허를 위반한 WTO 회원국이 위배조치나 관행을 철회하지 않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Cross-cutting issue (공통이슈)

개도국 우대원칙 및 목적 등 특정 협정 또는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 우대문제 전반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이슈.

Cross Retaliation

(교차보복)

WTO 협정 하에서 피소당사국이 패널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함.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게 됨.

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보존유보계획)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보전 정책.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CRP는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토양침식도가 높은 경작지(High Erodible Land)를 농민에게 매년 입차료와 표토 보전비용의 50%를 지불하는 대가로 생산에서 10년간 배제시키는 장기농지은퇴프로그램(Long-term Land Retirement Program)임. 즉, 농지소유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농지소유자는 10년간 농경지를 생산목적(긴급가축방목용은 허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정부의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 CRP의 기본목적은 경작지의 토양침식을 줄이는 것이며, 그 외에 식량의 장기생산력 보호, 토양침전물 감소 및 수질개선, 야생동물 서식처 마련, 과잉생산 억제 및 농가소득지지가 있음. CRP계약 하의 농지는 잔디 또는 나무와 같은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피복작물을 심도록 되어 있음.

※ Wetland Reserve Program, Conservation Compliance 참조

C/S

(Country Schedule, 국별양허표)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임.

CSE

(Consumer Support Estimate, 소비자지지추정치)

농업지지정책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예를 들면 경쟁수입품에 대한 관세수입) 부(-)의

이전가액을 말하며, CSE는 농업보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과된 암묵적인 세금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CSE는 보통 (-) 수치로 표시하며, (-) 수치가 클수록 사용자에게 대한 암묵적인 세금이나 소비자로부터 이전가액은 커짐. CSE의 구성요소는 시장가격지수로 인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 대한 시장가격 이전가액과 관세나 지대로 정부나 수입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분, 기타 농정수행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예산지출액(보조금 등) 등이 있음. CSE 계산대상품목은 PSE 산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밀, 옥수수, 쌀, 유지작물, 설탕, 우유, 쇠고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 산출하며 국내생산이 없거나 미미하여 PSE 산출대상품목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입소비량이 상당한 경우에는 CSE 산출대상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음.

※ PSE 참조

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위원회)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근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원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 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음.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규제형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됨. 그동안 환경과 무역문제는 상호 독점적으로 접근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을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Mutually supportive)으로 추진키 위해 상호 정책 간 조정·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GATT, UN, OECD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음. GATT는 1971년 11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EMIT : 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을 설치한 바 있으나 유명무실하였고,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최초로 『개별국가가 환경목적 하에서 환경조치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술장벽협정(TBT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채택』한 바 있음. 이후 GATT내에서는 환경관련 작업은 1990년 11월 제1차 EMIT 그룹회의가 소집되어 1991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시작되어 ①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 ②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방안 ③ 환경마크, 포장요건의 무역효과 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1994년 4월 15일 UR의 최종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위해 마련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키로 결의하였음.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관계,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등 10개 의제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국제환경협약 등에 의한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 1) ②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 2) ③ 국제무역규범과 환경부과금, 세금, 표준, 기술규정, 포장, 재활용, labelling 중 상품조건과의 관계(의제 3) ④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의제 4) ⑤ 국제환경협약과 국제무역규범의 분쟁해결절차(의제 5) ⑥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제한(의제 6) ⑦ 국내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의 수출문제(의제 7) ⑧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환경관련조항(의제 8) ⑨ 서비스교역(GATS)과 환경과의 관계(의제 9) ⑩ NGO참여 및 자료제공 방안. 지금까지 무역환경위원회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하여 공식회의를 통하여 이해당사국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WTO사무국에서 취합·분석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재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앞으로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 후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각 의제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새로운 작업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각 의제별(Items) 토의보다는 핵심 쟁점사항(Issues)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될 것이며, CTE사무국은 유용하고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환경계획(UNEP)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음.

CTG

(Council for Trade in Goods, 상품무역이사회)

WTO 무역에 관한 주요 분야별 이사회(3개) 중 하나. 무역원활화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부기관(NGO)과 여타 국제기관에서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품협정과 관련된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룸. 상품무역이사회 산하에는 특정 분야(농업, 시장접근, 보조금, 반덤핑조치 등)를 다루는 11개 위원회가 있음.

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위원회)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년)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APEC 산하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SOM과 연계하여 연 4회 정도 개최됨. 경제 활동중대, 회원국 내의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원활화, 무역 자유화 및 확대를 위한 협력, 회원국 간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정에의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해서 오사가 Action Agenda에서 제안된 15개 분야 기업인 활동의 장벽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CTI 산하 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4개의 전문가회의(투자, 정부조달, 분쟁조정, 지적재산권)와 3개의 비공식 회의(시장접근, 서비스, 기업인이동) 등이 있음. 특히, 1996년에 제안된 CAP(공동실행계획)과 1997년에 범위가 선정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논의가 CTI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CT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이사회)

서비스 관련 WTO 협정 준수사항을 감시함.

Cumulative Assessment

(누적 피해판정)

반덤핑에 따른 피해 조사 시, 한 덤핑 행위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합산하여 피해판정을 하는 것. 이 원칙에 의하면, 소량 수출국 또는 수출량이 감소하는 수출자의 경우 대량수출자의 수출량과 누적되어 피해가 판정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됨.

Customs Broker

(관세사)

무역상사나 기타 수출입 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 해당 수출입절차에 필요한 통관수속을 대행해주는 업자.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섬유류 통관협력)

미국 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Customs Free Zones

(관세자유구역)

관세, 부과세 등의 부과가 면제되며 지역 내 이동물품에 대한 반출·입 신고, 각종세관절차, 수입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 등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의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됨. 관세자유지역은 세계적으로 500여 곳이 있으며 물류촉진, 증계·위탁무역의 촉진, 물류부가가치 창출, 외국인본 유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부산항과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되었으며, 2003년 1월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2004년 7월부터 관세자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에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되었음.

Customs taxes (통관세)

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Customs Territory (관세영역)

WTO 규정 하에서 다른 영역과의 무역을 하고, 고유의 관세 또는 기타 상업관련규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 관세영역이 꼭 주권국가일 필요는 없음.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이 국가가 아닌 관세영역의 자격으로 WTO 회원국이 된 바 있음.

Customs Union (관세동맹)

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 간에는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모두 폐지하고,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국가 그룹임.

Customs Valuation (관세평가)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품, 납세의무자, 과세율 및 과세율표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은 관세율(Tariff rate)과 과세표준인 바,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의 경우)이나 또는 수량(중량세의 경우)을 의미함. 즉, 종가세(Advalorem duty)의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이 곧 과세가격(Customs value)이 되는 반면에, 중량세(Specific duty)의 경우에는 성질상 그 과세표준이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수입시점 등에 따라서 달리 결정됨. 이와 같이 다양한 가격(value) 중에서

일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법률상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함.

Current Total AMS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이행기준의 특정년도 및 그 이후에 실제로 제공된 보조를 말하며, 매년 그 산출기초자료를 이행점검자료로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AMS 참조

CVD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

수출국에게 제조·생산·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따라서 상계관세가 발동되려면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내 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함. 그 절차를 보면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상계관세 부과 요청에 의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나 국내 산업개발의 실질적 지연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보조금액 이하의 관세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 Countervailing Measures 참조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OECD 분야별 위원회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원조의 금액과 성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원조의 공정한 분담기준을 조정함. 또한 각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권고함. DAC는 각 회원국이 GDP의 0.7% 이상을 개도국에 대한 ODA로 제공하도록 권고함.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 간 양해된 데 비롯됨.

Decoupling

(디커플링)

디커플링이란 농업지원 정책에 있어 생산량 수준과 소득지지와의 관련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경우 부족분지불제도에 의한 소득지지와 함께 운용된 생산감축정책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WTO농업협정상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러한 농업보조 정책은 허용됨.

Decoupled Income Support

(비연계소득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대상보조 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의 보조로서, 수혜대상자는 소득, 생산자, 농지소유자여부, 생산요소사용량,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 생산자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국내가격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되며 일면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접보조에 해당됨. 재해구호 및 농민 은퇴, 휴경, 투자지원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소득보조와 같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작자에 대한 생산중립적인 소득보조 방법임. ※ Direct Payment to Producer 참조

de facto Discrimination

(사실상의 차별)

1996년 바나나 패널 판정에 관한 WTO 상소기구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된 개념. 상소기구는 법적인(de jure)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개념을 대비하고 있음. 이 개념은 법적 요건이라기보다는 관행에 기초한 암묵적인 차별(implicit discrimination)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Default

(채무불이행)

차입국 또는 특정국의 차입자가 어떠한 사태의 발생으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① 제지급의 불이행 ② 차주의 자료 제출이나 중요사실 통보 등의 불이행 ③ 계약상의 제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불이행이 일정기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④ 차주의 제 진술이나 보증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때 ⑤ 차주의 타 채무의 지급 불이행, 보증채무의 불이행 및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⑥ 차주계약의 수행을 위한 승인, 허가 등의 취소, 정지 또는 효력 상실 등으로 차주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임.

Default clause

(디폴트조항)

약정위반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에는 차관의 경우 원리금상환불이행 이외에 타 채무의 불이행, 제출자료의 허위, 제반 서약의 불이행 등을 망라하며, 만일 계약서에 열거된 디폴트 조항의 어느 한 조항을 위반하면 기한이익의 상실을 초래하게 됨.

Deficiency Payments

(부족불 제도)

미국의 전통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가격지지정책.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단위당 일정한 총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평균시장가격이 의회에서 산정한 목표가격 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시장가격 및 용자가격과의 단위당 차액을 생산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함. 이 제도는 주요작물(소맥, 옥수수, 쌀, 보리 등 8개)에 대하여 지지가격인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참여농가에 지불해 주는 제도임. 농민이 본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재배면적이

정해지고 지정된 작목만을 심어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휴경해야 하는 등 정부가 세운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이 따름.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함. 이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음.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확정 반덤핑관세)

정식 반덤핑 조사를 완료한 후 부과되는 반덤핑관세. 반덤핑 협정은 국내 산업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기 위하여 잠정(provisional)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어, 그에 대비되는 개념임.

De jure discrimination (법적 차별)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무역상대국을 차별하는 것.

Delayed Tariffication (관세화 유예)

관세화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로,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 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 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De minimis dumping margins (미소 덤핑마진)

덤핑마진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는 미소 덤핑마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negligible imports)인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De-minimis

(최소허용보조)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UR 협정과 관련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됨. 덤핑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핑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농산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 미만인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 Agreement on Agriculture 참조

Destination Principle

(소비국 과세원칙)

제품교역 시 간접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모든 형태의 내국세와 수입관세 등을 제품 수입국에서 부과한다는 무역에서의 과세원칙의 하나로 생산국 과세원칙의 대칭개념임.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UR 협상과정 중에서 개도국, 선진국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분류기준의 설정문제를 놓고서 선·개도국 간에 많은 논란이 진행되었으나, 통일된 분류기준의 제시에 대한 의견차이로 UR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미합의 상태로 종결됨. WTO 제반 협정문 중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만 개도국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상에서도 최빈개도국의 분류기준(1인당 GNP 1,000\$ 이하 국가)은 제시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일반개도국간의 분류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WTO 협정상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는 기존 GATT 상의 일반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자기선언원칙(Self-declaration principle)에 의해 개별 국가별로 결정됨.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상 감축약속의 이행시기, 감축률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행하고 있음.

Dezuew Draft

(드주의장 초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1989년 4월 제네바 중간평가회의(Mid term review)의 결의에 따라 각국의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이러한 각국 제안에 기초하여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음. 그러나 거의 모든 협상의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였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산물협상 그룹의 드쥬(Dezeeuw)의장은 1990년 4월 이후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를 개별 접촉하였으나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어 협상골격에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이에 TNC 회의에 합의초안을 제출·보고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드쥬의장은 보고시한에 쫓긴 나머지 초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그동안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토대로 합의초안을 작성, 1990년 6월 27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던 것임. 드쥬의장은 ‘농산물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초안’으로서 동년 7월 9~11일까지 미국의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G7)에 제출하여 7월 23일 개최되는 TNC 회의에서 농산물협상 합의골격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적 결단을 유도하였으나, 농업보호 및 지원수준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협상목적의 재확인과 의장초안은 협상의 토대(Basis)가 아닌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as 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s)’으로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으로 귀착되었음. 또한 7월 12~13일까지 진행된 ‘농산물그룹 제23차 공식회의’에서도 의장초안의 채택여부가 집중적인 논의대상이 되었는데, 의장과 수출국들은 의장초안이 협상의 기초로 채택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력 제기하고 EC는 그동안 EC가 주장해 온 국경보호 및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를 포괄하여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Global Commitment) 것과 보호 및 지원수준의 재균형화(rebalancing), 관세화에 따른 보정요소(Corrective factor)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장초안의 내용 합의에 강력 반대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음.

DFQF

(Duty-free Quota-free, 무관세 무쿼터)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거나 쿼터 제한을 두지 않는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를 지칭.

DG

(Directorate-General, 집행위원회의 총국)

EU 집행위원회는 분야별로 총 25개의 관련총국(DG)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 사람의 위원(Commissioner)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총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총국이 함께 관여하여 실무를 관할함.

Dillon Round (딜론라운드)

1960년 5월부터 1961년 7월까지 개최된 GATT의 다섯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의 국무차관이었던 Douglas Dillon의 제창으로 개시되며,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다자간협상임.

Directive (지침)

EU이사회 또는 EU위원회가 제정하는 EU의 법 규정으로 그 대상인 회원국에 대해 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만을 강제하며 해당 지침의 실행방법은 그 회원국에게 일임하고 있음.

Direct Payment (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함.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킴.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는 것이 OECD국가들의 추세임.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의 도입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으나,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음.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제1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요구조건과 함께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명시된 직접지불의 개별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WTO 농업협정상 허용대상이 되는 직접지불은 다음과 같은 허용보조의 일반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②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함. WTO협정상 직접지불제의 유형별 요건(허용대상)을 살펴보면 ① 비연계 소득보조 : 기준기간 동안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로서의 지위, 생산요소의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결정하고, 특정년도의

소득지원 규모는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의 생산자의 생산량, 생산형태, 국내가격,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시켜서는 안 되며 농업생산을 지원조건으로 해서도 안 됨. ② 소득보조 및 소득안정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 평균 농업소득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손실의 70% 이하로만 보상. ③ 자연재해로부터 구호를 위한 지불 : 전염, 병해충, 병의 발생 등 재해로 인해 평균 생산량의 30%를 초과한 손실에 대해 재해복구에 필요한 총비용 이내에서 보상. ④ 탈농지원 : 상업적 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항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⑤ 휴경지원 : 농지의 경우 최소한 3년 이상의 휴경, 가축의 경우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처분을 조건으로 직접지불. ⑥ 구조조정 투자지원 : 불리한 생산여건에 있는 생산자의 재정적, 물리적 구조조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기준기간 이후의 생산량, 생산형태, 국내가격,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시켜서는 안 되고, 특정품목의 생산금지 또는 생산을 명령하거나 방법을 지정할 수 없음. ⑦ 환경보전지원 : 정부의 환경 및 토양보전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전. ⑧ 낙후지역에 대한 지불 : 낙후지역에서 농업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상. ⑨ 기타 직접지불제도 : 위에서 열거된 직접지불 외에 특정년도의 소득지원규모는 기준기간 이후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국내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 ⑩ Blue Box(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 : WTO 농업협정에서는 비록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생산을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직접지불은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직접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초로 제공되는 경우, 생산을 총전의 85% 이하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축산의 경우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적용됨.

※ Blue Box, Decoupling, Direct Payment 참조

Dirty Tariffication (편법 관세화)

UR 협상 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국내가격, 국제가격 등의 수치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실제 국내외 가격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양허한 행위를 가리킴.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들은 UR협상결과 기준연도로 채택한 1986~88년은 농업보호수준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이고, 국내가격은 높은 가격을 국제가격은 가능한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Disguised Trade Barriers

(위장된 무역장벽)

표면상 무역과 무관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나 사실상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뜻함. 이런 조치들로는 소비자 보호법, 제품표준 및 검역규칙 등이 있음.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

과거 GATT의 분쟁해결절차의 약점은 강대국을 제재하는 패널 보고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GATT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었음. 따라서 일부 무역 강대국의 경우에는 GATT 규정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기보다는 자국의 경제력 행사를 통해 GATT 규범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GAT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UR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GATT 산하 개별협정별로 각기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로 일원화하였고, ② 패널진행이 과도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③ 패널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였음. ④ 패널 패소국은 상설 상소기구에 언제나 상소가 가능하도록 상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⑤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이 이행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국에 대해 피해보상 또는 양허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⑥ 피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분야 내에서 보복이 허용되며, 이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보복이 인정됨. 무역에 관한 분쟁해결절차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 주관 하에 일원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등 일방적 보복수단이 통상압력으로 사용될 여지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 주요절차를 보면 협의절차, 패널절차, 상소절차,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보복조치 절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소국의 요청에 의거, 30일 이내 보복조치를 허용함. 보복조치는 동일한 분야에 우선 적용하나 여타 협정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DSB, DSU 참조

Distortion

(왜곡)

가격이나 생산량이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것 이상이거나 이하인 상태.

Diversionsary Dumping

(전환적 덤핑)

수출국이 최종수출 목적지로 직접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제3의 중간국가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로 중간지역의 가격구조를 활용하여 최종 수출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

Diversity of Origin

(수입선다변화 제도)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수입처 전환을 통한 지역 간 무역불균형의 해소 및 국산화 촉진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1978년부터 도입·시행된 제도로 주요 대상품목분야는 자동차, 기계, 전자·전기, 섬유(직물), 화공제품 등이며,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본을 주요 대상국으로 하여 운용함.

DMEG

(Dispute Mediation Experts Group, 분쟁조정 전문가그룹)

APEC 용어. 역내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한 모임.

Domestic Subsidy

(국내보조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먼저 감축이 면제되는 정책의 기준과 대상을 예시하고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원은 감축대상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축대상에 해당되는 품목별 지원액(Product specific AMS)과 품목불특정지원액(Non-product specific AMS)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지원액을 총액으로 합산(Total AMS)하고 이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허용기준에 합치되는 정책은 지원액 수준에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며 감축약속 지침에 부합되는 지원에 대하여는 상계조치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매지원

금액을 1989년~1991년도를 기준으로 17,185억 원에서 매년 228.6억 원을 10년간 감축하여 최종년도에 14,900억 원으로 13.3% 감축키로 Country Schedule에 제시하였음.

※ Agricultural Subsidy 참조

Down Payment (초기 가시화 자발적 선행조치)

APEC EPG(저명인사 그룹)의 제안의 하나로서 APEC 회원국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모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개방, 관세율 감축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유화 선행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Drawback System (관세환급제도)

관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과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①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의 환급 ③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의 환급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한 부과취소 등이 있음. 이와 같은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 즉 위약물품을 수출 또는 멸각하거나 수입 면허된 물품의 보세구역에서 멸실·변질·손상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그 물품들이 수입되었다 하여도 수입의 실효가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고,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 중인 관세는 납부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서 징수를 한 후에 환급을 하는 번잡스러움을 피하는 것으로 이는 관세의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것임. 1974년까지 수출용 원자재는 수입 시 사후면제제도에 의해 관세를 현금으로 물지 않고 관세 지불의 유예를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대신한 후 나중에 수출면장이 발급되면 그것으로 관세담보를 해제하였는데, 1975년부터는 수출용 원자재도 수입 시 일단 모든 관세를 일반자료와 같이 지불하고 수출이 이행되면 지급한 관세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Drawback (환급)

가공 또는 다른 제품제조에 투입된 후 재수출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당시 징수했던 관세, 판매세, 소비세 등을 반환하는 것.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회원국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일반이사회 산하기구로서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

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WTO 협정의 부속서 2를 의미하는 것으로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임. 동 양해는 GATT 1947 이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권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 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Dumping

(덤핑)

1994년 GATT 제2조에 의하면,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함.

Dumping Margin

(덤핑 마진)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함.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수출국의 정상가격-수출가격=덤핑마진'이라고 함.

※ Anti-Dumping 참조

Dunkel's Draft Final Act

(던켈초안)

브뤼셀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재개를 위한 막후절충에 대한 권한이 맡겨졌으며, 이에 따라 1991년 1월 15일 개최된 TNC 회의에서 각국은 협상재개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1991년 협상이 시작되었음. 이후 던켈총장은 주요 협상국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2월 25일 협상재개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각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UR협상은 재개되었음. 던켈총장이 제시한 제안서에서는 국내보조, 국경조치, 수출보조 등 각 분야별 협상요소들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각 협상분야별로 기술적 쟁점에 대한 협의가 3~6월까지 개최되었음. 이러한 기술적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각 협상분야별로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던켈총장이 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자격으로 내놓은 6월 24일의 의장대안서(Options paper)였음. 의장대안서(Options paper)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입장만이 강조된 것은 아니고,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었음. 따라서 대안서에 명시된 분야별 각종 대안들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협상의 관건으로 대두되었음. 따라서 대안서 제출 이후의 협상과정에서 대안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각국은 자국 입장에 유리한 대안이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1991년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각국의 경직된 협상자세 때문에 대안서의 각 협상분야별로 제시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하나로 줄여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음. 각 협상요소별로 제시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협상은 각국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특히 농업이 갖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민감성은 주요 협상국들의 합의에 의한 조속한 타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던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시간지연은 협상자체의 결렬이라는 인식하에 던켈총장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21일 작업초안(Working paper)을 독자적 책임 하에 제시하였음. 작업초안은 대안서에 제시된 대안들을 단일안으로 채택한 문서로서 특히 농산물 수출국 측 주장을 주로 반영한 단일안이었으나 감축 폭, 이행 기간 등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제시하였음. 이것은 워낙 여러 번에 걸쳐 협상초안이 제시된 뒤 주요국에 의해 거부되고 이때마다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절충이 어려운 정치적 쟁점에 대해 공란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모든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포괄적 관세화(Comprehensive tariffication)를 시장개방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작업초안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국 간의 논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던켈이 의도한 1991년 내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더 이상의 협상진행은 무의미함을 판단한 던켈총장은 전체 UR협상그룹의 최종안을 자신의 책임과 독자적 판단아래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2월 20일에 배포된 최종의정서 초안(Final draft act)이었음. 1991년 12월 제출된 던켈초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협상과정에서 지배적으로 논의되어오던 것보다는 각 분야별 내용에 있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이는 모든

협상참가국들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여 어느 나라도 완전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상종결을 이끌어내는 의도의 일환이었음. 실제로 본 최종의정서 초안에 나타난 기본원칙 및 부분별 내용이 향후 협상의 기초와 골격이 되어 최종협정문에 반영되었음. 동 의정서 초안은 턱켈총장이 이끌어 오던 1991년 협상의 종합적 결과이며, 동시에 조기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안의 성격을 띠고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상여지 없이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문서임.

〈헬스트롬 중재안과 최종의정서 초안 비교〉

| 구 분 | 헬스트롬 중재안 (’90. 12) | 최종의정서 초안 (’91. 12) |
|--|--|--|
| 시장개방 관세 및 관세상당액 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 최소시장접근 | 30% 1990년 1991~95년(5년간) 5% 이상 | 36% (최소 15% 신축성 부여) 1986~88년 1993~99년(7년간) 3%에서 5%까지 |
| 국내보조 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 감축의무면제상환 (De-minimis) | 30% 1990년 또는 최근년도 1991~95년(5년간) 불인정 | 20% 1986~88년 1993~99년(7년간) 5% |
| 수출보조 감축기준 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 | 재정지출액, 단위당 보조액 물량 30%(물량) 1988~90년 1991~95년(5년간) | 보조물량 및 금액 24%(물량), 36%(금액) 1986~90년 1993~99년(7년간) |
| 개도국우대 감축폭 이행기간 | 국내보조 분야만 선진국의 1/2 수준(시장개방, 수출보조 언급 없음) 1991~2000년(5년 연장) | 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조 등에 선진국의 2/3 수준 1993~2002년(3년 연장) |

Dynamic Asian Economies (아시아 고도 성장국)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을 가리킴.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EAEC

(East Asian Economic Caucus, **동아시아경제협력체**)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의 연계 강화 및 세계 자유무역 체제 비전을 목표로 지난 1990년 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에 의하여 주창되었음. AFTA가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기초적인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비하여 EAEC은 아세안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비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경제 문제는 APEC에서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대 내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EAERR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 **동아시아비상쌀비축체제**)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체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쌀의 안정적 공급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일본의 주도로 2003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비축방식은 실제 쌀의 이동 없이 비상상황 발생 시 제공할 일정물량을 공시만 하고 관리는 개별국가에서 하는 Earmark Reserve방식과 실제 일정 지원물량을 일정장소에 이동시키고 보관·관리하는 Stockpiling Reserve방식이 있음.

EAF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생태계적 접근**)

사회의 다양한 목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어업관리 방식의 하나로 생태계의 구성요소로서의 생물, 비생물 및 인간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역 내에서 수산업에 통합적 접근을 적용하는 어업관리방식임. 생태계적 접근방식을 수산업에 적용하는 목적은 해양생태계가 공급하는 자원으로부터 미래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수산업을 계획,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함임.

EAI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아세안 행동계획**)

2002년 10월 미국 부시(Bush) 대통령이 로스카보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 ASEAN 통상 정책의 기본방향임. ASEAN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사전 정치작업으로서의 무역통상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목적으로

하였음.

Early harvest (조기수확)

일부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협상종결 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합의, 시행하기로 한 경우를 뜻함.

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제도)

무역상대국이 도입할 무역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사전에 그들의 유감 또는 관심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EBA (Everything but Arms)

EBA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일부로 EU가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에게 각종 경제개발사업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2001년 3월 5일에 발효됨. EBA프로그램은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포함한 재화들에 대하여 EU에서 수입관세 및 쿼터를 철폐하는 것임. 하지만 의류에 대해 특히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생산과정이 최빈개도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EBRD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이 과정에 필요한 구조조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29일에 창설된 금융기관. 1989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스트라스부르 EC 정상회담에서 합의됨으로써 탄생되었음.

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Euro경제권의 단일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초국가적인 중앙은행으로서 1999년 이후 통화정책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게 됨. 유럽중앙은행은 단일통화정책의 수립을

책임지는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와 정책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세부사항을 지시하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그리고 통화관련 일반사항의 심의·결정을 담당하는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로 구성되어 있음. EMU 참가국의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

Economic Leader's Meeting (경제지도자 정상회의)

APEC의 정상회의로서 1993년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주도로 시애틀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제2차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선언을, 1995년 일본 오사카의 제3차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선언을 발표하였음. 중국과 대만 문제로 인해 정식 명칭은 “경제지도자 회의”로 불리며, 공식 의제 없이 역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함.

Eco-Labeling (환경표시제)

환경조화형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환경배려형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 하에, 개별제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당해 제품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문구·표지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임. 이러한 환경표시제는 무역저해적인 소지가 많기 때문에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의제로서 검토되고 있음.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EEC, ECSC, 유라툼의 총칭. 1967년 7월 EEC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로마조약 조인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들 3개 조직의 집행기관이 종합하여 일체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쓰이게 되었음. 종래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유럽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73년 1월 1일에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3개국이 신규 가입, 다시 1981년 1월 1일부터 그리스가 가맹하여 10여 개국이 되었으며 스페인, 포르투갈도 1986년 1월에 가맹해 가맹국수가 12개국에 달하는 경제·정치 블록을 이루게 되었음. 활동 주체로 되어 있는 EEC는 1958년 1월에 발족, 다음해 1월부터 실시 단계에 돌입했음. 로마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① 역내 국간의 관세철폐와 수출입제한의 철폐 ② 대외공통관세의 설정과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③ 농업, 운수, 경쟁제한 등의 면에서의 공통정책의 작성 ④ 노동력, 자본이동, 기업설립 등의 자유화 ⑤ 유럽투자은행의 설립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음. EC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의 기구가 있음. 각료이사회는 EC의 최고결정기관이며 가맹국의 대표(각료)로 구성, 가맹국의 일반경제정책을 조정함. 유럽의회는 로마조약에 정해진 제기관이 특정국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EC 전체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짐. 사법재판소는 로마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기관임. 또 유럽위원회는 EC위원회라고도 불리며 ① EC 각 기관이 채택한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고 ② 로마조약이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나 의견을 작성하며 ③ 이사회가 결정한 규칙을 실시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하고 있음. 한편 EC는 1993년 5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통합, 유럽경제지역(EEA)를 결성, 1994년 1월 1일부터 거대한 유럽단일시장을 발족시켰고,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으로 공식명칭을 바꾸었음.

※ EU 참조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1년 파리조약의 체결에 근거하여 프랑스, 이태리, 독일 및 베네룩스 3국에 의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장 모네(Jean Monnet)의 계획을 수용한 슈망계획(Schuman Plan)에 따라 유럽 내 석탄 및 철강 자원의 공동 관리와 공동시장의 창설을 목표로 창설되었음. 1967년 통합조약의 발효에 따라 ECSC의 기관은 EEC와 Euratom의 기관과 함께 EC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로 단일화 되어 유럽공동체(EC)에 속하게 됨.

ECU

(European Currency Unit, 유럽통화단위)

유럽통화제도(EMS)의 중요한 지주 중의 하나로서 EU 12개 회원국 통화의 바스켓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며, 각국 통화의 가중치는 회원국별 GDP, 역내 무역비중, 단기 신용공여 및 차입실정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조정됨. 현재 계산단위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ECU라는 통화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1999년 1월 EMU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경우 EU 단일통화인 'EURO'로 전환됨.

EC Oilseeds Case

(EU 유지종자분쟁)

미국은 1988년 EEC가 수입유지종자가 아닌 역내 생산된 유지종자의 가공에 대하여 역내

가공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GATT 4조 4항 위반이라고 제소하였음. 또한 가공에 대한 보조금은 EEC의 유지종자의 생산자에 대한 간접적인 생산보조금을 구성하여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양허이익의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한 GATT 23조 b호의 위반이라고 제소하였음. 1989년 패널은 역내생산 유지종자와 수입유지종자 사이의 가격차를 상회하는 보조금의 지급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3조 4항의 위반이며 또한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한 23조 1항 b호의 위반이라고 판정함.

EC Banana Case (EC 바나나분쟁)

EU는 세계최대의 바나나 수입시장으로 EU회원국 중 상당수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로부터 바나나 수입 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유지해 왔음. 반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 산 바나나에 대해서는 ACP 국가들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여하였고, 각국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수입면허제도등 각종 수량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더군다나 1975년 EEC와 ACP국가 간에 체결된 EEC의 ACP국가 제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발전원조협정인 로메협정(Lome Convention)에 따라 EU는 ACP국가들에 대해 전통적인 특혜를 유지한 것임.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이 EU의 조치들이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 제11조 수량제한금지원칙, 제13조 수량제한 시 무차별적용원칙,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원칙을 선언한 GATT 제4부 등에 위반된다고 하여 GATT에 제소한 것이고, EU는 위와 같은 조치는 EU국가들이 오랜 전부터 유지해 왔던 것으로 PPA의 '현행법령' 조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묵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소국들의 주장이 오히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로메협정은 EU와 ACP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 지역협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ACP국가들에 대해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음. 패널은 EU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바나나수입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방식이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EC Hormmone Case (호르몬사건)

미국은 EU가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여섯 가지의 특정 호르몬이 투여된 동물의 육류와 육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SPS협정의 제2조, 3조, 5조 및 1994 GATT의 1조와 3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 이에 대해 1997년 8월 WTO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음. 첫째, EU는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위생조치를 유지함으로써 SPS협정 제5조 1항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 둘째, EU는 상이한 상황에서 국제무력에 대한 차별, 가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위생보호의 수준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의적인 또는 부당한 구별을 채택함으로써 SPS협정 제5조 5항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 셋째, EU는 SPS협정 제3조 3항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고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은 위생조치를 유지함으로써 SPS협정 제3조 1항에 규정된 요건에 위반, 이에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EU에게 동 조치를 SPS협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하였음. 본 사건은 제품관련 PPMs이 WTO 규율대상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GATT/WTO 패널 판정임.

Economic Integration

(경제통합)

각국 또는 경제권이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함. 즉 경제통합이란 각국 경제 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 간의 경제관계로서는 가장 고도화된 것임. 경제통합단계는 역내 국가 간 각종 무역장벽이 제거되는 FTA단계가 있고, 역내 국가 간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역외관세를 사용하며 공통의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Customs Union의 단계를 거쳐 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외에도 노동, 자본 및 서비스도 제한 없이 이동 가능한 Common Market의 단계가 있음.

※ FT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참조

ECOTECH

(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경제기술협력)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해소, 역내 주민의 경제, 사회복지 개선과 아-태 지역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로 APEC에서 사용되는 개념임.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제국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과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요청 증대에 부응하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7년에 업무를 개시하였음.

EEP

(Export Enhancement Program, 수출증대프로그램)

1985년 미국이 도입한 보조 프로그램으로 쌀, 가금육 등의 특정 농산물을 특정지역에 수출하는

영해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당초 EU의 CAP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응하여 미국의 해외농산물 시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에 접속된 20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 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어업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인정되는 어업수역에 비해 포괄적인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다른 나라 배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을 막을 수 없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영해와 다름없는 권리가 미치는 곳.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포함하는 EEZ선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한국어선의 일본연해 조업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EEZ를 넓히려는 데 목적이 있음.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는 곳이 없어 200해리 EEZ는 서로 중복될 수밖에 없음.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구제국 7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

Effective exchange rate

(실효환율)

각종 수출지원 또는 수입억제 조치 결과를 외화단위당 자국화폐로 계산하여 이를 명목환율에 가산시켜 조정한 환율로서 수출 실효환율과 수입 실효환율로 나누어짐. 수출 실효환율은 각종 수출지원액을 총 수출액으로 나눈 수출 1단위당 지원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명목환율에 가산하여 산출하며, 수입 실효환율은 수입억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총수입액으로 나눈 수입 1단위당 억제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명목환율에 가산하여 산출함. 그러나 수출액 실효환율을 적정 환율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① 수출입 실효환율은 상대국의 제반 수출입조치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수출입 실효환율은 환율 본연의 기능, 즉 한 국가통화의 대외가치 척도라기보다는 단지 한 국가 내의 수출업자와 내수산업 간의 비교우위를 비교한 한 국가의 자원배분 문제와 결부된 지표라는 점 ③ 현재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수출입 제한 또는 진흥조치는 극히 복잡·다기능화되어 이의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

EISA 2007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 에너지독립안보법)

2007년 12월 통과된 미국 법안으로,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안보 향상과 에너지 보전과 효율성 증진,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지능형 기술 적용으로 효율성, 신뢰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임.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나 현재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재화 및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다시 말해 전자적으로 배달되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음. 그간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정보통신시장 접근문제, 기술표준 정립문제, 국제거래에서 의무관세 문제, 국내거래에서의 내국세 부과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음. 특히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선언이 채택되었음.

El Nino

(엘니뇨 현상)

엘니뇨는 원래 태평양 남동부 페루연안 및 적도부근을 따라 발생하는 표층수온의 이상 고온현상을 말하며, 직접적인 원인은 적도 해역에서 무역풍(trade winds)의 약화에 따른 고온수의 이동에 있음.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차가운 해류수로 덮여 있는 이 해역에 고온 고염수가 얇은 층으로 퍼지는데 이 고온의 해수는 영양염이 거의 없으므로 생산력이 급격히 낮아지게 됨에 따라 어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를 먹이로 하던 바닷새들이 폐사하게 되는 현상임. 현재는 대기와 대양의 역학적 균형에 따라 엘니뇨는 적도부근 해역에서 대양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대규모 지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E-mark

(환경마크)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 마크임. 저공해 상품에 붙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임.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약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시행 중임.

E-mark, Eco-마크라고도 함.

Emerging Market Program (신흥시장계획)

1996년~2002년 동안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에서 신흥시장에 대해 직접신용 또는 신용보증으로 최소 10억불과 기술적 지원으로 매년 최대 1,000만불까지 사용토록 규정한 프로그램임. 이 자금들은 수입된 농산물의 처리, 유통, 가공 또는 배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비, 용역 등에 사용될 수 있음.

Emissions Trading (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선진국 간에 시행되는 제도로서, 자국의 감축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경우 잉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제도.

EMM (Economic Ministerial Meeting, ASEM 경제장관회의)

2년마다 1회 개최되는 ASEM 회원국 경제장관들의 회의로 양 지역 간 경제 관계일반, WTO내에서의 협력, 기업 간 교류 증진방안 등을 논의함.

EMS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보조상당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단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이나, AMS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함. 단, 농업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됨. 보조상당액측정치(EMS)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나 보조액을 산출해 내는 데 있어서 품목특정적보조 계산방법으로 보조액을 계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기초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산출방법임.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 EMS는 적용 관리가격과 동 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함.

- AMS : (관리가격-고정의부참조가격) × 지지물량

- EMS : 관리가격 × 지지물량, 또는 재정지출액

여타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지불 및 기타 감축대상보조액 계산, 이의 합산방법 등은 품목특정적 AMS 산출방법과 동일하며, AMS로 보조액을 계산해 낼 것인가 또는 EMS로 계산해 낼 것인가는 당해 국가가 지원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EN

(European Standard, 유럽규격)

유럽규격은 CEN, CENELEC, ETSI에 의해 개발된 규격으로서 EU회원국의 국가규격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상충되는 국가규격이 존재할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함. 국가규격으로 EN규격을 채택 시 약간의 변형도 용납되지 않음.

Enabling Clause

(권능부여조항)

GSP(일반특혜관세제도)가 1970년대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와 같은 대 개도국 특혜대우는 GATT 최혜국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이에 도쿄라운드에서는 GATT 1조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특별하고도 우대적인 대우를 공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Framework Code를 제정, 선진국으로 하여금 혜택을 공여할 수 있도록(Enable) 하였으며 동 Code의 제1부를 통상 권능부여조항이라 부르고 있음.

Enlargement

(가입확대)

EU회원국은 1958년 EEC설립 당시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을 시작으로 현재 28개국이 되었음. EU 가입기준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49조에 의거하여 모든 유럽 국가는 EU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희망국이 가입신청서를 EU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집행위와 이를 협의하고 구주회의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됨. EU의 확대협상 중 농업분야는 협상의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임. 가입대상국들은 EU가입과 동시에 EU 공동농업정책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EU 역내 농민에 지원중인 농업직접지불정책을 신규 가입국가의 농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가장 큰 협상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음.

Enquiry Point (문의처)

WTO/SPS, WTO/TBT 등 협정상의 각 회원국들은 이해당사 회원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답변 또는 관련문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할 하나 이상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EPG (Eminent Persons Group, APEC 저명인사그룹)

1992년 APEC 방콕회의에서 구성을 결정하였으며, APEC의 역할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각료회의를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1995년 오사카회의를 끝으로 해체되었음.

Equivalence (동등성)

WTO/SPS협정 제4조는 만일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이 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해야 하며, 관련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조치의 동등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RA (Effective Rate of Assistance, 유효지원율)

※ ERP(유효보호율) 참조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발전기금)

ERDF는 EU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하거나 산업퇴조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심각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EU차원에서 조성되어진 기금.

ERP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유효보호율)

정부정책의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영향 평가, 즉 국내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s)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 개발된 개념이 유효보호율(ERP) 개념임. 처음 동 개념이 개발되었을 당시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정부지원 형태는 관세(tariffs)에 의한 교역적인 장벽(Trade barriers)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관세로 무역의 방향이나 교역의 왜곡, 즉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음. 그러나 오늘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세제와 함께 일반지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그 측정수단도 이러한 다양한 지원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유효지원율(ERA)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 한편, OECD와 같은 기관에서는 국내 산업지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약간 다른 방법으로써 생산자지원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s, PSE)와 소비자지원상당치(Consumer subsidy equivalents, CSE)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명목지원계수(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 NAC) 개념이 소개되고 있음.

ESC

(ECOSOC.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경제사회위원회)

로마조약(제193~198조)에 의해 설립된 EU의 순수 자문기관으로,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기타 이익집단 등 유럽 내 각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EU의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의회의 정책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은 1947년 3월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ECAFE(아시아아동경제위원회)로 발족하였으나 1974년 3월 ECAFE 총회에서 ESCAP으로 개명되었음. ESCAP은 역내 국가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기술적 문제를 조사하여 연구 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조하고, 역내 경제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정회원국은 역내 49개국과 역외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을 포함하여 53개국이며, 9개국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Escape Clause (면책조항)

면책조항이란 GATT의 각종 의무로부터 예외될 수 있도록 허용한 GATT조항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GATT 제19조를 GATT 의무에 대한 면책조항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GATT상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몇 개 조항이 있음. GATT 제12조는 특정상황에서 국제수지문제상 한 국가의 재정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량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제수지 방위에 관한한 제19조보다 유용한 방책임. 제18조는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이유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협의와 발동시간에 대하여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는 한 GATT의 어떤 의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저개발국가에게는 제18조가 제19조보다 더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제19조의 핵심규정은 1항(a)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로 인하여 어느 상품이 당해 체약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증가된 수량과 조건으로 당해 체약국의 영역 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 일정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EC의 새로운 명칭임. 국경 없는 지역 창설, 경제·사회적 결속 강화, 경제통화동맹 단일통화 수립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일체성을 옹호하며, 구주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93년 11월 1일에 출범함.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27개국으로 소속기구로는 이사회(유럽연합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집행기관으로 유럽연합 법안 제안권, 공동체 이익 대변), 유럽의회(입법 및 예산 감독기관),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이 있음.

EURO (유로화)

유럽연합(EU) 단일통화의 명칭은 지난 1979년 이후 에쿠(ECU)를 써왔으나 독일의 테오 바이젤 재무장관이 유로를 뜻하는 '유로(EURO)'로 쓸 것을 제안하여 1995년 12월 마드리드 정상회담 때 최종 확정됐음. 1999년 단일통화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유로화는 국가별로 발행하게 되는데,

주화의 경우 한쪽 면이 '국가면'이 되고 다른 쪽 면이 '유럽면'이 되는 식으로 유럽면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음. 1999년 1월 1일 이후 유럽경제통화연맹(EMU ;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공식 출범함과 동시에 EMU 참가국들은 Euro화를 자국의 통화로 사용하게 됨. Euro는 1999년 초부터 2001년 말까지 실체가 없는 문서상의 통화로 정부 간 거래 및 금융기관 간 결제통화로 사용되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각국의 통화와 함께 통용되어지나, 2002년 7월부터는 Euro화만이 법정통화로 사용되었음.

Euro-Council/Euro-X (Euro 이사회)

유럽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 참가하는 11개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재무장관이사회. 통화정책과는 달리 재정정책은 유럽의 통화통합 이후에도 참가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Euro이사회는 재정분야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으로 보임.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

일 년에 두 번 모이는 EU회원국 정상들과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회담으로서 1986년 체결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 의해 공식화되었음. 유럽이사회는 회원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하여 EU의 전반적인 발전전략의 수립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분야별 조기 자유화)

APEC 회원국이 자발성 및 신축성에 기초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 보고르 선언의 2010/2020 목표보다 더욱 조속한 시기 내에 무역자유화를 이룩하고자 취지하에 1996년 수빅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지정도, 경제적 중요성, 회원국 간의 이익균형을 감안하여 15개 분야를 조기 자유화 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음. 회원국이 자발성(voluntarism)과 신축성(flexibility)의 원칙을 존중하여 논의하되, 주요 논의내용은 관세철폐,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경제기술협력도 추진하기로 결정. 15개 대상 분야로는 완구, 수산물, 환경제품 및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너지 및 관련 장비, 의료장비, 정보통신 MRA, 식품, 유지종자 및 관련 제품, 비표, 자동차 표준, 고무, 민간항공기분야임.

Excise duty (물품세)

정부가 상품의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사용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알코올 증류 및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가 전형적인 예임. 수입품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따라 동종 국내 상품과 동일 수준의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함.

Exempted Domestic Support (허용대상 국내보조)

WTO 농업협정 상의(농업협정부속서 2)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는 국내보조조치를 말함. 기본적인 요구 조건으로 당해보조가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징수감면포함)에 의하여 제공되며, 당해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서비스(연구, 병해충 방제, 훈련, 지도, 자문, 검사, 시장정보제공, 하부구조사업 등),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이며, 생산자에 대하여 재정적 혜택이 직접 부여되는 보조사업 중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소득안정화 계획 지원, 자연재해구호, 탈농지원, 휴경보상,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지원 등이 해당됨.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

영해에 접속된 20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당해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 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말함.

Export Credit (수출신용)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됨. 수출신용은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됨. 현재 다자간

수출신용을 규율하는 규범제정 문제가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과 EU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특히, EU는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을 겨냥하여 WTO 농산물협상에서 수출신용도 수출보조와 마찬가지로 국제농산물교역을 왜곡하므로 WTO차원에서 국제규범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전체 수출신용 사용의 50%를 차지하고, 보조성격을 갖는 수출신용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수출신용의 94%가 1년 이상의 장기간 신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관련용어 : GSM-102, GSM-103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Export Credit Programme (수출신용보증계획)

미국의 상품신용공사(CCC)에서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 년 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임.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첫째는 최장 3년 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이고, 둘째는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용자에 준 것은 포함되지 않음.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 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Export Competition (수출경쟁)

UR협상에서 다루었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3개 의제에 폭넓게 포함되는 분야로서, 농산물 수출관련 각종의 보조 및 지원조치 모두를 망라해서 이의 금지 및 감축을 다룸.

Export Enhancement Program (수출진흥계획)

1985년 미국 농업법에 의해 도입된 수출지원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거나 다른 수출국의 수출보조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음. 수출진흥계획 하의 모든 수출판매는 미국정부가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혜자는 미국의 농산물생산자, 가공업자 그리고 수출업자들임. 대상품목으로는 소맥, 소맥분, 쌀, 냉동가금육, 냉동돼지고기, 보리, 맥아, 식물유지 등이 있음. 이 제도의 적용대상 국가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판매가 수출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시장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가 되며, 따라서 수출진흥계획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정대상국가에서 여타 수출경쟁국의 보조금 수출을 대체함으로써 수출경쟁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계할 수 있어야 함. 이 제도는 민간 수출업자에게 상대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며, 수출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수출업자에 대해 정상적인 농산물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 시장에 미국산 농산물을 덤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 제도 도입의 근본요인은 1980년대 중반 농업경제의 불황탈출과 EU(당시 EC)에게 잠식당한 수출시장에서의 실제회복이었음. EU(당시 EC)는 1980년대에 들어서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가격지지정책과 수입제한정책 등을 통한 역대 과잉농산물 처리를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미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였음. 즉 EU(당시 EC)에 의해 잠식당한 수출시장에서의 실지회복을 꾀하는 한편, 1980년대 초반 이후의 농업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음. 결국 1985년 농업법에서 수출지원정책으로 도입된 EEP의 직접적인 공격대상은 EU(당시 EC)였음. EEP의 EU에 대한 공격은 북아프리카 소맥시장에서 잘 나타나는데 북아프리카 소맥시장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986년에 미국 35%, EU(당시 EC) 25%였으나, 이 제도 시행 이후 미국의 점유율은 65%, EU(당시 EC) 10%로 크게 역전되었음. 이 제도는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이 국제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적받아 개도국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해 온 제도로서, 최근 제정된 2014년 미국 농업법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이를 폐지하였음.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함.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국의 관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UR 농산물협상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port Price (수출가격)

반덤핑협정상 덤핑마진 산정 시 정상가격에 대비되는 가격으로서, 1961년 GATT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국에 반입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동종 상품이 수출국을 떠나는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표현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수출가격은 수출을 위한 공장도가격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FOB가격도 적절한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Export Quota (수출쿼터)

수출품에 대한 물량이나 수출총액을 규제하는 것으로 주로 국내에서 공급부족이 발생하거나 국제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임. WTO에서는 수출쿼터를 금지하고 있음.

Export restitutions (수출반환)

특정 상품의 내부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EU의 수출보조금임.

Export subsidies (수출 보조금)

내부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역상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EU 수출반환이 그 예임. 이제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에서 제약의 대상임.

Export Subsidy (수출보조)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함.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음.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음.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음. UR 농산물 협상과정에서는 수출에 대한 직접제정지원 및 기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감축 및 철폐가 협상 의제로 논의되었고, 농산물 수출보조금 관계로 참여한 대립을 보였던 나라는 수출보조금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출보조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케언즈 그룹이 아닌 수출보조금을 이용하고 있던 미국과 EU(당시 EC)임. 미국은 농산물의 수출보조금, 수출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지는 입장이었음. 즉, 5년만에 걸쳐 모든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상품목 및 해당 보조금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음. 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량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유보조건을 부가하고, 단기적인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과 수출금지규정인 GATT 11조 2(a)항을 폐지하고, 5년 이내에 수출부과금의 차별철폐를 주장하여 형식상 완전 자유화를 제안하였음. EU(당시 EC)는 수출보조금에 대하여 미국과 반대로 수출보조금의 철폐에 반대하였음. 왜냐하면 공동농업정책(CAP) 수출보조금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상 EU(당시 EC)로서는 공동농업정책을 포기 또는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임. 수출보조금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보조금의 양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행 GATT 16조 3항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정 중 과거 대표적 기간을 최근 5년간의 3년 평균으로 개정하지는 것이었음.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금을 감축, 철폐해 나가는 이행방법으로서 우선 현재수준에서 수출보조금을 동결하고 합의된 일정 및 공식에 의거 점진적 감축, 궁극적으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안과 유사함. 이에 비해 수출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아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수출보조금 지급이 국제농산물 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을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철폐하자고 주장하였음. UR 농산물협상결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하였으며(개도국은 10년간 24% 또는 14% 감축)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하였음. WTO 농업협정 제9조 1항에 제시된 6가지 유형을 보면, ①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②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③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④ 취급, 등급향상과 여타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⑤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⑥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보조금 한편,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식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음. 우리나라는 1989년~1991년간 감축대상이 되는 수출보조 지원 실적이 없어 농산물이행계획서에 감축약속을 제시하지 않았음.

Export tax/tariff (수출세)

물품 수출 시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주로 원재료에 대해 부과되며 수출에 부담을 줌으로써 원재료를 이용한 생산을 국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수출세를 부과해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생산물이나 유력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부과함. 브라질의 커피에 대한 수출세 부과, 자원수출국의 부존자원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이 대표적인.

External Reference Price (외부참조가격)

국내가격지지 효과나 관세상당액(TE)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으로서 UR 농산물 협정에서는 1986년~1988년 평균 세계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FA

(Final Act, 최종의정서)

UR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최종적인 UR 협상결과를 확인하고 WTO 설립협정을 국내 비준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약속 문서로서, WTO협정의 제일 앞부분에 있으며 6개항으로 구성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FA에 서명하고 필요한 국내절차 회부, 1995년 1월 1일 혹은 1995년 1월 1일 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WTO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 WTO협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키 위해 1994년 말 이전 별도의 각료급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식명칭은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ing of the Uruguay Round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임.

FAD

(Fish Aggregating Device, 어류군집장치)

어획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 혹은 자연적인 부유물을 대양 표면에 떠다니게 하거나 바닥에 부착해 두는 일종의 어구 보조 장치로서 참치선망어선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음. 어류군집장치는 형태 및 배치 방법에 따라 고정(Anchored) FAD, 유영(Drifting) FAD 등으로 구분됨.

Fair Trade

(공정무역)

국제 교역규범이 그 국가의 구성원 중 약자, 특히 농업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무역은 그 교역된 상품 생산자의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나 주장.

Farm Bill

(미국 농업법)

미국의 농업법은 일종의 농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영속법인 1933년의 농업조정법과 1949년 농업법을 일시적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입안되어 왔음. 또한 1965년 농업법 이후부터는 그 시효가 대개 4~5년으로 설정되는 일괄농업법(Multi-year Omnibus Farm Bill)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농업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이러한 다년도 농업법은 시효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입법당시의 미국 농업경제의 현황과 전망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경제와 세계경제질서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입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미국농정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압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과잉공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조정과 연계된 농산물 가격 및 소득지지 정책을 수립, 운용해 온 것이 골격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의 농업보조 1980년대 들어 미국은 구조적인 농업불황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농업보호정책, 특히 수출지원정책을 강화하였음. 1994년 UR협상이 타결되고 세계 곡물가격이 회복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1996년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구체화하였음. 1996년 농업법은 종전의 가격지지정책인 부족불(Deficiency payment)제도를 폐지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제도인 생산자율계약직불제를 실시하였음. 이전의 부족불제도 하에서는 정부의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또는 용자가격 중 높은 가격의 차액을 해당품목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불하였으나 1996년 농업법은 부족불제도뿐만 아니라 휴경의무조항, 최소 경작면적제한, 작목제한 제도 등을 폐지하였음. 미국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까지 포함하여 1930년대 이래로 총 17개의 농업법이 만들어졌으며 1973년 영양 분야가 포함되면서 일괄법의 성격이 더해짐. 가장 최근의 농업법은 201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로 2014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최종 개정되었으며 품목별 정책, 보전, 무역, 영양, 작물재해보험 등 총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 농업법에서는 직접지불제(DP)를 폐지하였으며 현행 23개의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13개로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또한 영양 프로그램에서 SNAP 예산을 10년간 약 80억 달러 절감하였으며 수혜 자격조건을 보다 명확히 적용하였음. 작물보험에 대한 펀딩을 증대하였는데 농가 작물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충보장옵션(SCO)과 면화생산자들이 이용가능한 누적수입보장제(STAX)를 추가하였음.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1943년 7월 UN이 식량농업을 위한 유엔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FAO 현장을 마련함에 따라 1945년 10월 제1차 UN총회에서 정식 발족된 유엔전문기구임. 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기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량 및 농업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력증진, 농민생활수준개선, 각국 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FAO 회원국은 188개국임. FAO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됨. 우리나라는 1949년 11월 제5차 총회 시 가입하였음.

FAO Compliance Agreement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FAO 이행협정)

‘공해조업어선의 국제적 보전관리 조치 준수협정’으로 1993년에 채택되고, 2003년에 발효되었음. 소위 ‘리프래깅(reflagging) 방지 협정’ 또는 ‘편의치적선 금지 협정’이라고도 함. 기국에게

자국등록 공해조업 어선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공해 상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토록 하고 있음.

FAO/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잉여농산물 처분원칙)

식량원조에 있어서 FAO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1954년 제20차 FAO이사회에서 제정되었음. 이 원칙의 목적은 잉여농산물을 국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 국제농산물교역이나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이익보호에 역점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로 인해 B국이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원조행위는 FAO원칙의 규제를 받게 됨. 이러한 국가 간의 마찰은 FAO내에 설치된 「잉여농산물처분협의 소위원회」(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 CSD)를 통해 중재를 받으며, 이를 위해 FAO회원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식량원조국이 원조 요청을 받으면, 계약의 체결 및 물품선적에 앞서 이를 수혜국에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제3국에게 통지하고 양자 간 협의를 행함. 이 협의에서 원조국은 통상적시장수요량(Usual Marketing Requirement : UMR)을 제시해야 함. UMR이란 수혜국이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일정수준 유지한다는 보장으로 원조협상 시 원조국과 수혜국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계약내용에 포함됨. 양자협의를 통해 제3국과의 이권이 조정되면 원조국은 월 1회 개최되는 CSD에 이를 통보하고 다자간협상에 들어감. 이 때 원조국은 CSD에 상품의 종류, 금액, 수송일정 등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UMR, 양자 간 협의 상대방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함. CSD사무국은 이 사항을 모든 FAO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없으면 원조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 CSD는 국제교역의 형태를 무상원조에서 일반상업거래까지 2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중 13가지 형태의 교역은 이 FAO원칙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긴급원조나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의 원조에 있어서는 사후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쌀의 경우 연간 각 수혜국 당 1천톤 이하가 여기에 해당됨. FAO 잉여농산물처분원칙은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일 뿐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임.

Farmer Owned Reserve Program

(농가보유비축제도)

소맥과 사료곡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재고수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농산물저장제도임. 이 제도는 1996년 농업법에 의해 그 실시가 중단됨.

Fast 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의회의 수정 없이 가부만 표결토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시의성 있는 심의를 보장해 주는 미국 통상법상의 입법 메카니즘임. 1974년 무역법에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는 조항으로 20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용되었다. 미국 행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다자·쌍무 간 무역협정의 국내시행을 위해서 시행법안 제출 후 60일(단, 세입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의회가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4년 4월 16일 신속처리권한의 시효가 끝남. 2000년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미주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협정 교섭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 신속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도입됨. 미국 행정부가 2002년 미국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을 보장 받은 기간은 2005년 6월 1일까지였으나 미국 상하 양원에서 연장 반대 결의가 채택되지 않아 2007년 7월 1일까지 연장되었고, 논의가 지속되었음.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TPA를 부여받기 위해 대의회 로비를 강화해 왔고 2014년도 1월 초 의회 내 영향력이 큰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맥스 보커스·민주당)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데이브 캠프·공화당)이 TPA 부여 법안을 공동 제출함. 일명 보커스·캠프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여야 공동 형식으로 제출되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 반대가 심해 전망이 밝지는 않으며, 현재 논의 중에 있음.

Fast Track Procedure

(신속처리절차)

의회가 행정부에 대외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밟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의회는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에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부간의 결정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은 거부권 행사에 국한됨. 이와 같이 행정부는 대외 협상 시 자율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점에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대외적 통상협정의 체결방식과 비교해 볼 때 행정부가 비교적 의회로부터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다만 행정부는 대외통상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와 민간자문기구 등에 협상의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 따라서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60일 이내에 상·하원에서 수정 없이 행정부의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 신속처리절차는 동경라운드협상을 수권한 [1974 통상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동 절차가 도입된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TT 다자간 협상 시 행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컸기 때문임. 케네디라운드가 종결된 이후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의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미 행정부는 대외적인 신뢰도의 저하를 경험한 바 있음. 이후 단순한 관세율 인하협정과는 달리 포괄적인 대외통상협상 시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신속승인권한을 부여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동경라운드(1974년~1979년),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1984년~1985년),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1991년~1993년) 등 5개 대외통상협정을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체결됨.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임. 우리나라 식약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치료약이나 기구는 순도·강도·안전성·효능 등에 대한 FDA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판이 가능함. 새로운 의약품은 동물 실험을 거친 뒤 FDA의 인증을 받아야만 함. FDA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IMF 정의에 의하면 “외국에서 운용되는 기업에서 영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직접투자로서 투자자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임. ‘지속적인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어 왔는데 OECD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권고함.

FFA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태평양수역의 참치자원의 지속이용과 회원국의 어업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9년 7월에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임. 현재 호주, 쿡 아일랜드, 미크로네시아, 피지, 키리바시, 마셜,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PNG, 사모아, 솔로몬,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7개국이 있으며, 사무국은 솔로몬 호니아라에 있음. FFA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수역의 참치자원관리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

FFG

(Fish Friends Group, 피시 프렌즈 그룹)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군으로 미국,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브라질, 칠레 등이 주축을 이루며 수는 일정하지 않음. 이들 국가들은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First Action

심사관에 의한 최종 심사결과의 통지(거절 이유 통지 등)가 출원인 등에게 발송되는 것.

Fisheries management

(어업관리)

OECD, FAO 등 국제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효율적인 어업관리(예: 개별 어획 쿼터 할당)가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이 과잉어획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함. 보조금을 지급해도 미리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 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효율적인 어업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규범 의장 초안에도 개도국 보조금 지급과 어업관리제도를 연계하는 조항(Article V)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것(효율적인 어업관리 시 보조금 허용)과는 차이가 있음. 한편, 미국 등 FFG는 실제로 어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음.

Fish finder

(어군탐지기)

물속에 있는 어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기계. 수면 하에서 발사된 초음파가 해저나 어군 등에 부딪혀서 반사해 오는 것을 포착하여 어군의 존재를 확인함. 어군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전기진동을 일으켜 송파기에 보내주는 발진기(發振器), 초음파를 수중에 발사하는 송파기(送波器), 메아리를 수신하는 수파기(受波器), 수파기에서 수신한 미약한 메아리를 증폭시키는 증폭기, 메아리의 상황을 기록이나 영상으로 나타내는 지시기(指示器), 어군탐지기 전체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원(電源) 등 여섯 부분으로 구성됨.

FIPs

(Five Interested Parties, 주요 5개국)

DDA 농업협상의 주요 협상국가로서 미국, EC, 브라질, 인도, 호주를 말함. 주로 농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나 최근에는 전체 협상 분야도 함께 논의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각 FIPs 국가가 한 국가씩을 초청하여 10개국 간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FIPs-Extended(또는 FIPs-Plus)라고 부름.

FMD

(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양,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동물에서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함.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Flexible Tariff

(탄력관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관세의 책정과 조정권은 국회만이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급변하는 국내의 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관세이며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여기에 속함. 탄력관세 제도는 오늘날 관세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종류로는 텀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음.

Flexibility

(신축성)

관세감축에 있어서 감축을 보다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이행 기간 연장, 공식을 적용한 감축치보다 적은 감축폭 적용, 예외적인 미양허 인정 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주로 개도국에 대하여 이러한 신축성이 부여됨.

Flooring (하한 설정)

관세감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하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 Capping의 반대 개념.

FMDP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외국시장개척 정책)

미국이 농산물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서 교육 및 수출촉진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 등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협회의 일부 기금이 총 기금에 보태짐. 이 제도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확대와 수입품의 사용방법을 수입국에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밀, 옥수수, 콩, 유제품, 면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채소 및 견과류 등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협회가 이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임.

FNR (Friends of a New Round, 뉴라운드 우호국)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호주, 칠레, 체코, 헝가리,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홍콩 등 14개국이 모여 뉴라운드 협상방식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포괄적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물품가격의 하나로서 해당물품을 수출항에서 인도할 때의 가격을 의미(공장도가격에 수출항까지의 운송비 등이 더해진 가격).

FOC (Flag of Convenience, 편의치적선)

규제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선주의 국적이 아닌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함. 어업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로를 목적으로 한 편의치적선임. 참치 등에 대한 국제적인 어획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어업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에 선적을 옮기는 것을 말함. FAO에서는 1993년 편의치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국제보전·관리조치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소위 편의치적 금지 협정 또는 Reflagging 방지 협정)을 채택하였음.

Food Aid (식량원조)

경제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지원. 인권 차원의 고려 이외에 공여국 차원에서 잉여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DDA 농업협상에서 식량원조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원조는 필요하나 식량원조가 국내 잉여 농산물의 처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식량원조로 인하여 상업적 거래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 왔음. 2005년 12월의 홍콩 각료회의 이후 식량 원조가 수출보조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순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공여로 제공, 현물로 지원하기보다는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Food Chain (먹이사슬)

어떠한 군집(community)에서나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3가지의 특징적인 종류의 생물이 있는데, 생산자(producer)인 식물과 소비자(consumer)인 동물, 그리고 분해자(decomposer)인 박테리아임. 식물은 광합성(photosynthesis)을 통하여 유기물(organic matter)을 합성하고, 이 식물을 동물이 섭취하며, 사체나 배설물 등은 데트리터스 식자(detritus feeder)에 먹히고 나머지는 박테리아가 분해하여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물로 다시 전환시키게 됨. 이런 일련의 과정을 먹이사슬이라 하며, 먹이사슬의 각 단계를 영양단계(trophic level)라 함. 실제적으로 먹이사슬은 거의 선으로 간단히 이어져 있지 않고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여러 생물들 사이에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Food Safety (식품안전)

식품이 조리되거나 섭취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

Food Stamp (식품권)

원래 식품권제도란 현금대신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본적 욕구인 식생활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저소득 계층이나 영양취약 계층의 영양을 최소한 보장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식품권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식품권은 일반 식품교환권과 식사교환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식품교환권은 지정식품점에서 원하는 식품과 교환하도록 하고 식사교환권은 가구 내 취사가 불가능하여 식품교환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긴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식품교환권으로의 대체가 가능할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미국의 식품권 제도는 현금대신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1999년 현재 18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수혜대상은 소득과 자산을 평가한 후 판정하며, 주 수혜자는 어린이들임. 수혜자는 식품수입 쿠폰이나 전자카드를 받고, 이것으로 식품소매점에서 인증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음.

Food Security (식량안보)

식량문제에 대한 시각은 그 나라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남. 식량이 부족한 수입국들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부족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며, 식량생산이 과잉상태인 식량수출국들은 해외식량시장 개발을 통한 과잉농산물의 수출에 관심을 두고 있음.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어 1972년~1973년도의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었음. UR협상 과정에서도 시장가격의 크기로 반영되지 않는 국내농업의 소위 비교역적기능(NTC ; Non-trade concern)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기능으로 식량안보문제가 논의된 바 있음. [NTC(비교역적 고려사항)참조]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각국의 식량생산능력, 식량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국내외 여러 학자나 단체가 내린 정의가 다양하나, 이를 요약하면,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접근기회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야 하며(여기서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이란 식품의 안전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선호에 적합한 식품을 가리킴), 이러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1996년 11월에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식량이 항상 확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양·질·다양성의 관점에서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주어진 문화 내에서 수용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시도한 바 있음.

Food web

(먹이그물)

해양에서 먹이 에너지의 상관관계는 마치 그물모양으로 얽혀져 있으며, 각자의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평형을 이루는 각각의 방향을 말함. 식물플랑크톤(제1생산자)은 물속의 무기질소화합물, 기타 영양염과 탄산가스로부터 태양의 빛과 엽록소에 의해 무기화합물을 합성해서 증식하면, 동물플랑크톤(제2생산자)은 이것을 포식하고 그것을 소형동물이 이용하고, 다시 대형동물(제3차 또는 4차 생산자)로 전환해 가지만 이들은 여러 가지 생물의 유해나 배설물은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무기물질로 되고 다시 유기물의 합성에 이용되는 복잡한 물질순환을 말함.

Formula Approach

(공식적용방식)

국제교역관련 협상 등에서 특정 공식이나 인하폭을 결정하여 회원국의 모든 대상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율 및 보호정도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임. 관세율에 관한 공식인하 방식으로는 스위스 공식, 일괄선형인하방식, 혼합접근방식 등이 있음.

Free-Rider

(무임승차국)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 하에서 제약국들이 협상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양허함으로써 상응하는 양허를 제공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제약국을 일컬음.

Free-Trade Area

(자유무역지대)

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 간의 거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제거한 국가들의 그룹. 관세동맹과는 달리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각자의 관세를 유지하는 등 각자의 통상정책을 보유함.

Freezing

(자유화수준동결)

서비스교역의 최초 자유화 약속을 위한 양허협상방식의 한 형태로서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초의 자유화 약속수준을 기존의 자유화수준에서 동결시키는 방식임.

Frontloading (前期이행)

협정 의무 이행이 이행 기간 초기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행

FSIS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식품안전검사국)

FSIS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 관리 기관임. 미국은 1906년 육가공 특히, 포장 공장의 위생 개선을 위해 'Federal Meat Inspection Act(FMIA)'를 제정한 이후 이 법이 점차 전반적인 식품 안전에 관여하는 법으로 인식되면서 1967년 개정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PPI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의 축산물과 관련된 주요 두 가지 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음. 이 두 가지 규정의 집행을 실제 담당하는 것이 FSIS임.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식육과 가금육으로 인한 대형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FSIS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되었던 risk를 실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 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음. FSIS는 예방 시스템인 HACCP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는 회원국 간에 적용하는 관세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함. 1994 GATT 제24조 및 동 조항 해석양해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국 간에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동 조항 해석양해 3절에서는 관세 등을 원칙적으로 10년 내 철폐토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함. 이 FTA는 WTO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음.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임. 이런 형태는 1994 GATT 제5항 (A) 및 제8항 (a)에 규정되어 있음.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임. 이런 형태는 1994 제5항 (b) 및 제8항 (b)에 규정되어 있음.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

미주지역 경제의 단일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 국가의 참여로 형성된 미주자유무역지대를 말함. 상품과 용역, 자본, 인적 자원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북미자본과 기술이 중남미 노동력과 쉽게 결합해 공동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자유무역지대임. FTAA는 1994년 미국 마이애미의 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FTAA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상장관회의, 통상차관회의, 실무그룹 등이 운영되어 왔음. 1998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2005년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는 '산티아고선언'으로 FTAA가 구체화되었음. 산티아고선언에서 약속한 2000년까지 관세표준화 마련 등 구체적 실천계획이 실무회의에서 각국의 주도권 싸움과 이견으로 차질을 빚었으나, 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3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미주지역 34개국 정상들은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는 '퀘벡선언문'을 채택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4개국과 베네수엘라 등의 반발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5년 11월 결국 결렬되었음.

FO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G7

(Group7, 선진 7개국)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으로 이루어진 그룹임.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하여 G8이라고 하며, 신흥개도국 15개국을 포함하여 G22이라고 함.

G10

(Group of 10, 10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 또 다른 선진국 모임.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G5)에다 캐나다, 이탈리아(G7),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11개국의 모임을 말함. OECD 내 경제정책위 산하의 비공식 실무기구인 G10 그룹은 OECD의 국제통화 및 금융정책을 협의하며, OECD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구라 할 수 있음.

G20

(Group of 20, 20그룹)

아시아·태평양(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 EC),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0개국.

G33

(Group of 33, 33그룹)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에 중점을 두는 개발도상국 그룹(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등 46개국).

G77

(Group of 77, 77그룹)

1964년 6월 제1차 UNCTAD 총회 시 77그룹이 공동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이로부터 77그룹으로 불리게 되었음. 1967년 10월 알제리아의 수도 알제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설립되었고, 매년 UN총회를 대비하여 외상회의를 개최하며, UNCTAD총회를 대비하여 전체 및 지역별 각료회의를 가지고 있음. 77그룹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촉진 및 제3세계의 경제적 공동이익의 강구와 신 국제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선진국과의 교섭능력의 제고를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회원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3개 지역 그룹으로 구성되어 12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개도국 간 실질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개도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4년 6월에 가입했으나, 1996년 OECD 가입과 함께 탈퇴함.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교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으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 교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에 따라 UR협상 출범 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교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하고, 서비스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일반협정(GATS)을 체결하였음. 서비스일반협정(GATS)은 6부 28조, 8개 부속서(MFN 예외, 자연인 이동, 금융, 통신, 항공, 기본통신, 해운, 금융Ⅱ)와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음. 서비스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적용되며, 이들 조치는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한 조치도 포함됨. GATS 제1조에 따르면 서비스 교역을 ①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Cross-border supply) ② 서비스 소비자의 국경 간 이동(Consumption abroad) ③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GATS(서비스일반협정)는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후속 양허협상을 시작하며 그 후 정기적인 협상 진행함. 우리나라는 GATT 분류기준 11개 분야 155개 업종 중 교육·보건사회·문화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운송 등 8개 분야 78개 업종을 개방하였음. UR협상 타결로 인하여 양허된 품목들은 당장 1995년부터 개방된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개방시한이 각기 다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 현장회의와 함께 회의 참가국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한 다자간 무역협정. 무역과 관련 최혜국 대우(MFN) 및 내국민대우(N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됨. 1995년 WTO 설립에 따라 WTO 체제로 흡수됨.

GATT 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194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조인됨으로써 발족했으며 한국은 1967년 4월에 정식 가입하였음.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GATT 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94,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서 1947년 채택된 기존의 GATT 규정, 관세 양허의정서, 가입의정서 기준 GATT 체제하에서의 일부 결정사항, UR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GATT 2조 1항(b), 17조, 19조, 24조 waiver, 28조, 35조의 양허 및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구성됨.

GATT 8조

(IMF 8조국)

IMF규약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승인한 나라를 의미함. IMF는 각국 간의 환결제에 대한 제한 및 차별대우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국제적 환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동 규약 제8조에 일반적 의무로서 ① 동 기금의 승인 없이 경상적 지급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 ② 타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③ 통화의 자유교환성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국제간의 자유로운 환거래 관계의 유지에 협조하고 있는 나라를 IMF 8조국이라 하며 14조국과 구별하고 있음.

GATT 14조

(IMF 14조국)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 잔액의 교환성 보장이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외환제도를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IMF 8조국은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외환제도 철폐에 대한 유예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 즉 IMF규약 제14조에 따르면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14조국이라 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부에 관해 협의를 받아야 함.

GATT 17조 (국영무역)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및 그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임. 이 규정은 국영무역기업의 일반적인 정의로 상업적 고려의 구체적 내용,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하는 구매나 판매에 있어서 무차별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과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그러한 구매 또는 판매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1항). 또한 정부의 최종 소비품에 대한 본조 제1항의 적용배제(제2항), 국영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효과와 감소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3항), 국영무역 대상수입품 및 수출품의 통보의무와 수입차익 혹은 재판매가격의 통보의무 등 국영무역기업에 관련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제4항)이 규정되어 있음.

GATT 18조

생활수준이 낮고 개발 초기에 있는 나라는 GATT 18조에 관세양허의 수정·철회가 인정되어 있는 외에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도 인정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채용하는 국가를 GATT 18조국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이 범주에 속함.

GATT 20조

GATT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예외조항. 각국은 공중도덕,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GATT 규범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걸프협력회의라고도 함. 1979년 2월 이란혁명으로 인한 왕정붕괴,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9월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 발발 등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정상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모여서 결성한 단체임.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 면에서 결속할 것을 목적으로 함. 이 6개국은 석유의 생산·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함. 또한 세습왕정체제를 유지하는 동일 민족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하는 이란의 반발이 심해지자 동맹국간의 보조가 흐트러져, 1982년 11월의 제3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합협정만을 조인하고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였음. 1983년 3월부터는 역내의 관세장벽 철폐, 여행제한 해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6개국은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결성 이후 10년 동안 활동의 중심은 정치·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협력에 있었음. 그러나 19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공동 방위력의 증강 등의 정치·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음.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GCF 사무국은 2012년 10월 인천 송도로 최종 결정되어 2013년 12월 공식 출범함.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GNP)은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계이지만 국내 총생산(GDP)은 국토 내에서의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계.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는 계상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음.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음. 한국인의 해외소득과 외국인의 국내소득과의 차이인 해외순소득이라면, GDP의 계산은 국민총생산 GNP에서 해외순소득을 공제한 것과 같음.

General Council (WTO 일반이사회)

기존 GATT의 GATT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WTO 각료회의가 비회기중일 때 개최되는 회의로서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의장의 지정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WTO협정 4조).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특별이사회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복수국간 협정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음.

General Exception

(일반적 예외)

GATT 제20조는 모든 의무(예컨대, MFN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의무 등)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예외를 인정. ①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③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④ GATT에 반하지 않는 국내법령의 보호 ⑤ 재소자 노동 상품에 관한 조치 ⑥ 미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 ⑦ 유한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치 ⑧ 정부 간 상품협정상의 의무 ⑨ 국내원료가격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원료의 수입제한 ⑩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 등이 있음. GATS 14조에도 유사한 조문이 있음.

General Tariff

(일반관세)

일반관세는 교역상대국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는 주로 최혜국관세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용어임. 1948년 GATT가 발효되어 일반 최혜국대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용어는 주로 일체의 특혜도 받지 못한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22조는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라고 정의하면서, 당해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원국은 그러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Refuse or invalidate)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샴페인, 스카치, 데킬라 같은 상품 등은 지역의 명칭을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포도주(wine)와 주류(spirits) 생산자들은 광범위하게 지역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상품을 묘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명칭, 즉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지리적 원산지와 상품의 특성 두 가지를 식별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상품이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거나, 또는 상품이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통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도시킬 위험과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WTO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각 회원국이 지역명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임. 포도주와 주류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보다 엄격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일반대중이 오도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명칭의 사용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명칭이 상표로서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또는 일반적 용어로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형태의 치즈를 지칭하는 '체다(Cheddar)'치즈는 반드시 체다 지방에서 만들어질 필요는 없지만 예외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가는 문제의 지역명칭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함. 지적재산권협정은 포도주를 위한 지리적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WTO내에서 계속 협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GHG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방사선(radiation)을 흡수하여 재방출하는 천연 및 인공의 기체성 대기구성물을 말함.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지구층을 마치 우산으로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싼 듯 결과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함. 온실효과의 원인물질로 이산화탄소(CO₂), 아산화질소(N₂O), 메탄(CH₄), 염화불화탄소(CFCs) 등이 있으며, 이중 CO₂가 55%를 차지하고 있음. 온실효과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 6월 채택되었음.

Girard formula

(지라르 공식)

2002년~2003년간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그룹의 의장을 맡았던 Girard 스위스 대사가 2003년 5월 제안한 관세 감축공식.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 감축폭이 커지는 스위스 공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평균관세율에 따라 관세 상한이 달라지게 되어 있음. 평균관세율이 높은 개도국 일수록 높은 수준의 관세 상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식이어서 개도국은 선호하고 선진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도 주장하여 ABI 공식으로도 불림.

$t_1 = t_0 * B * T_a / t_0 + B + T_a$, t_1 = 공식 후 관세율, t_0 = 공식전 관세율, T_a = 각국 평균관세율, B = 계수

Global Approach

(총체적 감축방식)

UR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농업보조 및 지지수준의 감축방법의 하나로, 분야별 감축방식(Sectoral approach)에 대응하는 개념임. 총체적 감축방식이란 분야별 감축방식과 달리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경쟁 등을 포괄적 단일개념의 총 보호수준으로 파악, 이를 분류치 않고

전체적으로 보호총량만을 감축해나가는 접근방식이며 EC가 강력히 주장했었음. 이에 대하여 수출국들인 미국, 케언즈 그룹은 EC의 총체적 감축방식은 그들의 수출보조금 감축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함.

Global Quota (총량 쿼터)

한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자국으로 수입될 상품의 가치 또는 양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정한 수량제한 조치를 의미하며 국별 쿼터(Country Quota)와 대립되는 개념임.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GATT협정에서는 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총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 방법은 수출국가 간에 먼저 수출하려는 경쟁을 유발시켜 단기간에 수입이 물리게 될 수 있으며, 먼 거리에 위치한 국가는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Quota, Quantitative Restriction 참조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주로 Biotechnology 기술의 한 분야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수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일컫음. 의약품, 화장품,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농작물중 상품화에 성공한 대표적 작물은 1996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시장에 나온 제초제 저항성 콩(Roundup-ready soybean)과 해충저항성 옥수수(Bt corn)를 들 수 있음.

Cf. LMOs(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조합물이 들어간 모든 생물체를 말함. 이것은 GMO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는 LMO와 GMO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음.

Cf. Biotech LMO와 GMO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임. 주로 미국 측은 GMO란 말 보다 biotech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음.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한 나라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최종생산물의 총액을 말함. 즉 중간생산물인 원료와 최종생산물인 제품 중 제품만이 GNP에 계상됨.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이 GNP가 명목국민총생산인데, 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다른

해와 비교하기 위해 GNP디플레이터로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총생산이며, 이 두 가지의 성장률이 각각 명목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임. GNP에서 고정자본의 소모분(감가상각비 등)을 뺀 것이 NNP(국민순생산)임.

GNP deflator (Gross National Product Deflator)

국민총생산(GNP)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 GNP와 집계연도의 경상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상 GNP의 두 가지로 집계하는데, 경상 GNP로 나누면 한 해 동안의 실질적인 물가 변동 폭이 드러나게 됨. 이것이 GNP디플레이터임. GNP디플레이터는 개별적인 가격을 뒤쫓는 도매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달리 GNP를 집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물가 움직임을 추적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으나 GNP에는 공산품, 농산품은 물론 건설 및 서비스, 수출입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 만큼 GN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물가지수임.

GNS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서비스협상그룹)

1986년의 폰타 델 에스테 선언 제2부를 이루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관할권을 가지는 UR협상그룹.

※ TNC(무역협상위원회)참조

Good Offices, Conciliation, Mediation (주선, 조정, 중개)

WTO분쟁 해결절차상 주선, 조정,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절차이며, 동 절차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개시되고 종결될 수 있음. 동 절차의 종결 시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절차가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해야 하나, 그 이전이라도 동 절차가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 절차 중에도 분쟁당사국의 합의하에 동 절차는 지속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동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원래 정부조달분야는 GATT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분야(GATT 3조 8항, 17조 2항)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나, 1960년대 이후 각국에서 차치하는 정부조달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세계무역자유화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동 분야의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음. 이에 따라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제정(시행은 1981년부터)된 정부조달협정은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 중앙정부기관의 일정금액(하한선:13만 SDR) 이상의 물품 구매만을 규율하는데 한정되어,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 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이나 서비스, 건설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1979년 구협정은 미국, EC 등 23개국이나 신흥협정에는 홍콩, 싱가포르가 미가입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22개국임. 정부조달 확장협상은 WTO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조달 부문에서도 자유화의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 1987년부터 시작된 가입국 간의 협상으로 자유화 대상을 기존의 『중앙·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음. WTO체제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을 포함한 기타의 4개 다자간 협정을 별도의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으로 취급하고 있음.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는 GATT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조달제도가 개선되고 우리 기업이 여러 선진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정부조달협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음. 한편 GPA 제24조 제7항(b)는 “발효 후 3년 이내에 협정문 개선 및 양허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 개시를 규정”하고 있어 WTO 차원에서 GPA 협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협상이 다시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양허 협상은 2004년부터 개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음.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기관의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고,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 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년 12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회 종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양허 표에는 상호주의(mutual reciprocity)적 규정이 많음.

Grain Major (곡물메이저)

곡물메이저(Grain Major)는 세계 곡물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대규모 곡물무역상사를 말하며 대표적인 곡물메이저로는 카길(Cargill), 콘티넨탈(Continental),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 병기(Bunge), 앙드레(Andre) 등 5대 상사가 꼽히고 있음. 이밖에도 이태리의 페루찌, 일본계의 미쓰이, 미쓰비시도 자주 거론됨. 5대 곡물메이저들은 세계 곡물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출을 포함한 곡물유통량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5대 곡물 메이저 중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길 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에서 창설하여 세계적인 곡물상으로 성장해 온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당시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던 영국에서는 자국의 식량증산을 위하여 곡물법을 제정하고 곡물수입을 금지시켰음. 그러나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고 식량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게 되자 곡물법은 폐기되고 곡물의 수출입은 자유화되었음. 이에 따라 라인강 유역의 강변도시를 중심으로 4개 곡물상이 발생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5대 곡물메이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우선 이들은 농지 등의 생산수단은 소유하지 않고 유통과정을 점유함으로써 세계 곡물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 곡물거래가 신용을 필요로 하고 거래의 거래에는 신용과 비밀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가족체제의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방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끝으로 5대 곡물메이저들은 모두 스위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곡물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대부분 동 법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의 경우 법인세율이 매우 낮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비밀계좌의 설치가 가능하여 곡물거래에 적합하기 때문임. 최근에는 곡물수출회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5대 곡물메이저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계 곡물상과 농협계통의 곡물수출량이 크게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5대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60여 개의 곡물상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음.

Grandfather Clause

(조부조항)

GATT 제2부의 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국은 국내법령을 GATT 가입과 동시에 GATT 제 규정과 일치시킬 수는 없는 일임. 따라서 당초 체약국의 경우는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의거하고, GATT 설립이후의 체약국의 경우는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에 의거해 국내법령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GATT 제2부를 수락하는 편법이 인정되었음. 의정서 상 GATT 제2부의 잠정적 적용에 관한 조문이 바로 GATT에 우선하는 'Grandfather Clause'로 불리는 것임. 과거 선진국의 잔존 수입제한의 대부분은 이 조항에 의거한 것임.

Gravity Model

(중력모형)

1960년대 Tinbergen과 Poyhen이 국제 무역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것에서 유래된 자유무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 중력모형에서는 양국 간 교역은 국가규모(GDP, 인구, 면적), 거래비용(거리, 문화적 유사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 동 모형에서 수입국의 GDP와 인구규모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교역 국가 간 거래는 비용의 개념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Green Box

(허용대상농업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농업보조 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 Exempted domestic support(허용대상 국내보조), Red · Amber · Green light(신호등 분류방식) 참조

Green Room

(그린룸)

GATT 본부에 있는 소회의실(방의 벽지색깔이 옅은 녹색이어서 명명). 그린룸 회의라고 하면 보통 각국의 협상수석대표를 1인으로 하여 중요안건을 다루는 회의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제에 대한 최종토론 및 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음. GR회의는 대체로 각료급/고위급/실무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치적 타협과 결정을 요하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각료급이나 고위 관리급 GR회의가, 기술적 검토사항 및 이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급 GR회의가

열림. GR회의 참가국은 주요국가로 한정되어 사무총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GR의 좌석 수에 따라 20여 개국 정도의 초청대상국가가 결정되나 이는 유동적임. 한 국가의 참가인원은 1+1(대표와 보좌관 각 1명)으로 한정되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2가 되기도 함.

Green Round (그린 라운드)

GATT 체제 하에서의 각종 '라운드'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협상을 지칭한다면 그린라운드, 즉 무역·환경 협상은 WTO 체제하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로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무역규범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 무역·환경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규율(discipline)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허용하되 이들 조치가 합당한 목적을 넘어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각국은 나름대로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이 환경보전을 이유로 시행하는 무역제한조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환경보전과 보호주의 견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국은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환경협상이 전개되고 있음.

GRA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

지속적인 식량생산 추구·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 연구협력체로 회원국의 자발적 공동노력에 기초한 상향식·개방형 R&D 네트워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2011년 5월 기준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로 미국,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가나,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태국, 남아공, 이탈리아, 중국 등 34개국임.

Grey Area Measure (회색지대조치)

모든 회원국들은 GATT 제19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수입제한조치, 즉 수출자유규제(VER) 및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회색지대조치 들을 적용할 수 없음. GATT 19조의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보상의무와

보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국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됨. 따라서 수출이 급증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유리한데 GATT 19조로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대상국가에게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이나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를 유보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선별적인 규제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조치들로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회색지대조치라고 불렸으며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 WTO 협정 체결당시 발동 중인 회색지대조치는 WTO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일정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4년 이내에 철폐되어야 함.

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모범규제관행)

자유로운 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에 필요한 요소로서 ① 의사 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 ② 비차별성 ③ 불필요한 무역제한의 회피 ④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⑤ 동등성의 인정 ⑥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관련 주요 원칙, 관행 및 경험을 말함.

GRULAC

(Group of Latin-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남미·카리브 연안 국가군)

남미·카리브 연안 국가군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파나마, 온두라스,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벨리즈, 도미니크공화국, 도미니카연방,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안티구와바비다, 세인트루시아, 바하마, 가이아나, 수리남, 엘살바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33개국임.

GSM 프로그램

(General sales Manager, 수출신용보증제도)

미 농무부(USDA)가 자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으로, 원래 의미는 농산물 수출업무를 맡고 있는 농무부 직책인 General Sales Manager의 약어.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 은행이 보낸 신용장을 통해 자국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우선 받게 됨. 이어 수출국 은행은 수입국 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상환 받고, 최종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자국(수입국)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USDA 산하 상품신용공사(CCC)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우선 지불한 자국 민간은행에 대해 대금상환을 보증해 주는 것이 GSM 프로그램.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함. 즉 일반특혜제도는 1968년 2월 1일~3월 29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 총회 의결21에 “System of generalized, non-reciprocal and non-discriminatory preference”라고 언급되어 통상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 칭하는 것으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 특혜제도를 의미함.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측은 동 제도가 GATT 제1조에 규정된 세계무역에서의 자유·무차별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GATT 제25조 5항에 의한 Waiver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1조를 수정하거나 또는 GATT(제4부)에 의하여 합격성을 증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결국 UNCTAD 결의(II) 『조기 Waiver 획득』에 의하여 1971년 6월 25일 GATT 제25조 5항의 GATT 1조에 대한 Waiver를 포괄적으로 얻게 되었으며, 이후 1979년 MTN Framework 협약의 채택에 따라 1980년부터 GSP는 GATT Waiver 취득부여에 관계없이 합법적 무역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음.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과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 일부 동구권 선진 경제국이며, 수혜국은 최빈개도국 및 일반개도국으로서 UNCTAD 회원국이면 WTO 비회원국도 수혜국에 해당됨. 특혜관세공여에는 획일적인 공여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인 선진 경제국이 자국의 경제사정과 개도국들 경제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최빈 및 일반개도국에 대해 경제사정에 따라 ‘0’세율(비민감품목)을 적용하거나, MFN세율에 비해 20~50% 정도(민감품목) 인하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의 GSP 운용현황을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GSP 공여를 중단하고 있음. 즉, 미국(1989년), 호주(1991년), 캐나다(1995년)는 GSP 공여를 중단했음.

※ GSP 참조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국제무역특혜제도)

GSTP는 개도국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UNCTAD 산하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으로 제1라운드는 1986년 개시되어 1988년 종결, 총 44개국이 비준함으로써 1989년 4월 발효됨. 제2라운드는 1994년 개시되어 1998년 24개국이 참가했으나 비준국이 없어 사실상 실패. 제3라운드 협상은 2004년 6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시된 이후 22개 참가국 간 협상을 지속하여 2009년 12월 모렐리티(범위 : 전체 관세부과 품목의 70% 이상, 특혜마진 : 실행관세의 20% 이상 감축)합의 후 2010년 11월 타결.

GTA

(Growth Triangle Area; 성장삼각지대)

아세안이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고 다양한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AFTA보다도 우선 실질적 의미를 갖는 역내 소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데서 출발한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개념을 의미함. 현재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성장삼각지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조호르-리아우 성장삼각지대로서 지난 1989년 싱가포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음.

GT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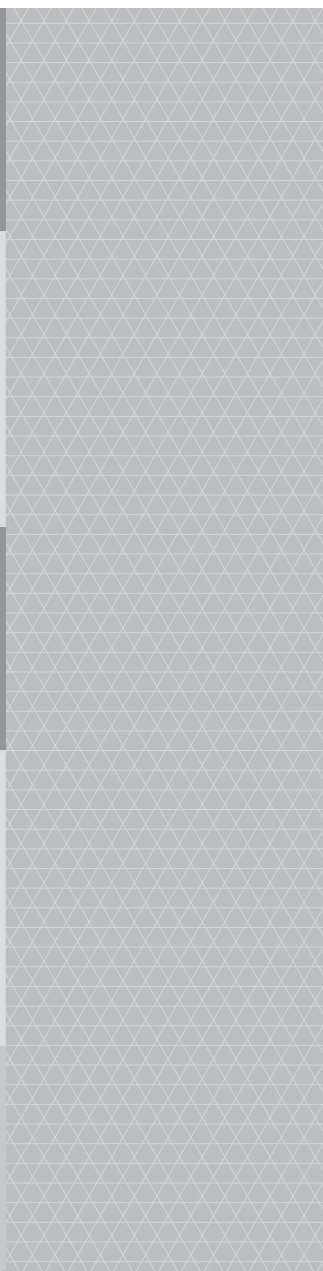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

미국의 퍼듀대학에서 개발된 국제 교역에 대한 경제모형으로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과 전 세계 무역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됨. 흔히 FTA와 같은 경제 통합의 경제적인 충격이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됨. 다만 모형의 단점으로는 상품교역 위주로 분석되고 서비스업 등에 경제통합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같은 변수의 분석에도 제한적임.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의 재배(사육),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farm to table)에서 위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Harmonization of Tariffs

(**관세조화**)

각 나라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하기 위한 관세인하방식임.

Harmonized Rules of Origin

(**통일원산지규정**)

WTO 회원국들의 모든 비특혜 무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인 원산지규정.

Harmonized Standards

(**통일규격**)

EU내에서 통일규격이란, 1984년의 유럽표준화기관(CEN, CENELEC)과 EU집행위원회의 합의 하에 유럽표준기관이 EU집행위원회로부터의 위임사항에 따라 채택한 기술시방. 통일규격으로 채택되는 것은 새로 작성된 규격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격을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검토하는 것도 포함함. 따라서 국제규격 또는 국가규격을 유럽 통일규격으로서 채용하는 것도 가능. 기존의 규격을 그대로 채용할 경우는 작성활동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각국에 대한 협의는 필요함. 통일규격을 채택함에 있어 표준화기관은 규격의 지침의 어느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함.

Havana Charter

(**하바나 헌장**)

1947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무역헌장으로서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헌장이라고도 함. 세계무역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재건·촉진하려는 목적으로 1945년 11월 1일 미 국무성이

제안한 「세계무역 및 고용확장에 관한 제안」에서 발단되었고, 그 초안은 1946년 11월 런던에서, 1947년 1월 뉴욕, 그리고 1947년 4월 제네바에서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1948년 3월 하바나 회의에서 채택된 것임. 전문 8장 106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① 관세인하와 특혜관세의 폐지 ② 할당제와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통제의 철폐 ④ 사적 카르텔의 금지 ⑤ 잉여물자처리법의 규제 ⑥ 수출보조금의 폐지 ⑦ 완전고용의 유지 ⑧ 국제무역기구(ITO)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현장의 내용이 너무나 자유무역의 이상으로 흘렀기 때문에 조인제국에서 인준을 얻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 이념의 일부는 1947년 10월에 성립된 GATT규정에 반영되었음.

High Seas (공해)

국가의 내수(內水), 영해(領海),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군도수역(群島水域)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의 모든 부분으로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도 영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는 해역을 말함. 네덜란드의 H. 그로티우스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해양의 자유를 이론화하였음. 최초로 성문화된 공해조약은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공해에 관한 협약>이고 공해에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 어업·항행(航行), 해저전선의 부설 등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약이 체결되었음.

High sea fisheries (공해어업)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에서의 어업임. 즉 자국의 영해 밖에서 행하는 어업으로서 최근에는 어업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음.

Highly Migratory Species (고도회유성어종)

회유성 어종 중에 그 회유 거리가 비교적 먼 거리를 회유하는 어종을 지칭하며, 유엔해양법협약 제1부속서에서는 참치류, 새치류, 고래류 등 17개 어종을 동 협약이 규정하는 고도회유성 어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동 협약 제64조는 고도회유성 어종은 관련 국가 간 직접협력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Historical preferences

(역사적 특혜)

1948년 GATT가 발효하기 이전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하에서 주어졌던 특혜. 이들 협정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정되었음.

HOD

(Heads of Delegations) 회의

WTO 회원국 수석대표(Heads of Delegations)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

Horizontal Approach

(수평적 접근방식)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비관세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상방식 중의 하나로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장벽별로 논의하는 방식을 의미함. 기술장벽, 통관절차, 수입규제 등 품목을 불문하고 비관세장벽 자체의 내용에 따라 논의하는 방식.

Horizontal Commitments

(수평적 양허)

GATS에 부속된 WTO 회원국의 양허표의 구성요소로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 무역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속에는 투자, 기업구조의 형성, 토지 취득, 인력 이동 등이 해당됨.

Horizontal Issues

(수평적 이슈)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관세협력이사회(CCC)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복잡한 각국의 관세율표를 공통의 분류방식으로 변경하게 한 BTN(Brussels Tariffs Nomenclature)제도의 편성임. BTN은 관세부과의

목적으로 상품을 가공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각국의 관세율을 파악하는데 무역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정부 간의 관세교섭에도 편리하게 되었음. BTN은 당초 CCC사무국이 위치한 브뤼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BTN이라고 하였으나 1976년부터는 명칭을 바꾸어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이라고 하였음. 그 후 CCC에서는 세계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당시까지 국가 및 산업부문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던 상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적용하기 위하여 CCCN을 골격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방식의 상품분류체계를 1983년 CCC에서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관세율표에 HS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한국품목분류)

관세협력이사회(CCC)는 국가 간 품목분류를 통일해 통관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잡기 위해 국제적 통일품목 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현재 전세계 18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에 의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우리 필요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화한 분류표임.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IAP

(Individual Action Plan, 개별실행계획)

19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채택된 사업임. APEC 각 회원국은 14개 과제별로 자발적인 자유화 실행계획으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며, 매년 진전된 상황을 보고함. 14개 과제로는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 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 이행 등이 있음.

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전미열대 참치위원회)

동부태평양 참치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물리기구 중의 하나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50년 3월 3일자로 설립되었음.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13일자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미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20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하며, 1994년 7월에 조인된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하여 1945년 2월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임. 설립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부흥과 경제개발 원조에 있는데,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업무에는 가맹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장기자금대출,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증여, 개발계획의 조사 및 채권국 회의의 소집 등이며, 자금원은 가맹국에 대한 지분할당에 의한 자기자본금, 채권발행 등임.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와 더불어 '세계은행 그룹'이라고도 불림.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

세계 각국의 농협, 신협, 소비조합 등을 망라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895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서 93개국의 236개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8억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음. 농협중앙회는 1963년에 회원으로 가입,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년 9월 ICA 제네바총회에서 원철희 당시 농협중앙회장이

ICA이사회의 이사로 피선됨으로써 한국이 ICA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맞았음.

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참치 보존위원회)

대서양 참치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의 하나로 '대서양참치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1969년 3월 21일자로 설립되었음. 우리나라는 1970년 8월 28일자로 가입하였고, 현재 미국·일본·중국·EU 등 47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음.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

세계은행(World Bank) 기관의 하나로 국가와 타국 국민 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convention)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되어, 현재 158개국이 회원국임. ICSID는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절차를 제공함.

IE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국제환경협약)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18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음.

IF

(Integrated Framework, 개도국지원을 위한 통합체제)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의 통칭. 1997년 WTO 주관으로 개최된 HLM(High-Level Meeting on Integrated Initiatives for LDCs' Trade Development)에서 출범. LDC에 무역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이 목적임.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IMF, UNCTAD, UNDP, WTO, IBRD 등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함.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 농업개발기금)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 촉진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에 발족된 UN 산하기구로서 16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함. 우리나라는 1978년 1월에 가입하였음. 동 기구는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양허조건(Concessional Terms)으로 제공될 수 있는 추가재원을 동원하여 수혜국의 식량생산체제의 개선, 확대 및 관련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제공하고 있음.

IFC

(Int'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DA와 함께 IBRD의 자매기관으로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발전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1964년 3월에 가입하였음. IBRD는 대출만 하는 반면 IFC는 대출 및 자본투자를 하는데, 대출은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총재는 IBRD 총재가 겸임함.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불법어업이라 함은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말하며, 비보고 어업은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를 하는 어업활동을 말하고, 비규제 어업이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어업 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말함.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창설된 ILO는 다양한 형태의 ILO협약을 통해서 국제노동기준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즉,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뿐만 아니라 고용, 경제, 사회적 발전 및 인권보호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체계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통해 세계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관으로, 1945년 가맹국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음. 가맹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하였을 경우 외화자금용 공여하여 균형을 도모하고,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방지하며, 환규제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세계무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기금은 제2차 대전이후 가맹국의 환율안정, 무역,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1962년 1월 10개 선진공업국에 의하여 합의된 일반차입협정(GAB : General Arrangement to Borrow)의 성립과 1969년 7월 SDR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제통화제도 확립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IMF의 고정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사실상 붕괴되고, 그 해 12월 스미소니언협정에 의하여 고정환율제도가 잠정적으로 부활되었으나, 1973년 2월부터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석유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어렵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동년 3월 IMF 이사회는 제2차 IMF협정 개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IMF 감시하에 환율제도의 선택을 인정하고, ② IMF협정으로부터 금을 배제(증자분의 25% 금불입 의무의 폐지, 금에 대한 기준을 또는 평가 폐지 등)하며, ③ SDR제도를 개설하여 중심적 준비자금으로 육성한다는 것 등임. 최고결정기관은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로 연 1회 개최되며, 이때 선임된 각국 대표에 의한 이사회가 운영방침을 결정함.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음.

Import licensing

(수입허가)

WTO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에 의하면, 수입허가란 수입의 조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서나 기타 서류(관세 부과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신청서나 서류는 제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절차

Import Licensing Procedure

(수입허가절차)

수입국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나 기타서류(관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의미함. 이러한 수입허가의 절차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분류되어 왔음. 이에 따라 수입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이 동경라운드에서 MTN Code 중의 하나로 성립되었으나 여기에는 미국, 일본, EC 등 29개국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등 30개국은 옵저버로 참여하였음. UR협상을 통하여 수입허가절차 협정내용이 좀 더 명료화되고 규율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수용원칙(Single undertaking)에 따라 그 동안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가입하게 되었음.

Import quotas (수입쿼터)

어떠한 물품의 수입국가가 그 물품의 수입 총액이나 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제한이나 상한성. 수입쿼터는 낮은 가격의 수입으로 인한 효과로부터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음. 수입쿼터는 수량 제한의 일종임.

Import Restrictions (수입제한)

수입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정부조치.

Import Surcharge (수입과징금)

통상적인 관세에 추가되는 부과금. 일부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공은 제한적임. 그 이유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특정한 유형의 경제구조나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뿌리 깊은 경제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수입부과금은 또한 국내 생산자의 가격을 인상시키며 이들의 국제기준에 대한 경쟁력을 저하시킴.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WTO 농업협정상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형태의 재해보험적 성격의 보조로서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대상은 농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 중에서 이전 3개년 또는 이전 5개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조수의 또는 순소득 기준으로 30%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함. 보상수준은 수해년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 미만을 보상하며, 생산자가 동일년도에 자연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

Injury (피해)

덤핑, 보조금, 수입급증 등 해외의 수출업자가 취한 행동에 의해 국내 산업이 겪는 부정적인 효과. 덤핑 및 보조금의 경우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음.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와 심각한 피해라는 용어는 모두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나 '심각한 피해'가 '실질적 피해'보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간주됨.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 실질적 피해의 정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In-quota rate (할당관세율)

저울관세쿼터(TRQ) 물량 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현행 시장접근 또는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물량 이상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out-of-quota rate)보다 낮음.

INR (Initial Negotiation Right, 최초협상국 권한)

GATT 28조의 양허철회 재교섭 시 양허철회국은 종래 관세협상에서 당해 양허세율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최초협상국에게는 권한이 됨.

Insurance on Cargo (적하보험)

보험회사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파손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계약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Interim Review

(잠정검토제도)

잠정검토제도는 패널 보고서 초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패널은 기술적 부분과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제출하고, 최종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담되기 전에 분쟁당사국은 패널이 설정한 기간 내에 잠정보고서의 특정측면을 패널이 검토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환경비용의 내부화)

천연자원의 활용, 오염, 쓰레기 발생, 소비, 폐기 및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품생산 및 사용의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s of production and use of a product)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환경비용의 내부화는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환경경제학의 초점이 되어 왔음. 이 원칙은 자원의 가격결정,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수단 사용, 환경비용과 이익계산, 환경회계방법(Green accounting methods) 등과 같은 분야에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의 토대가 됨.

Intervention purchase price

(개입구매가격)

내부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EC 위원회가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는 가격을 의미함. 개입구매가격은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보통 내부시장가격이 개입구매가격보다 낮으면 개입구매를 실행함.

Intervention stocks

(개입 재고량)

EU의 국가개입기관이 시장가격 지원 조건에 속하는 상품을 개입하여 구매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임. 개입재고 물량은 내부가격이 개입가격을 초과할 경우 내부시장으로 방출될 수 있음.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아도, 이 물량은 수출반환 보조를 받아 세계시장에 판매될 수 있음.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Tuna and Tuna-like Species in the North Pacific Ocean (국제과학위원회)

북태평양에서 회유하고 있는 참치 및 참치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제의로 1996년 5월 설립된 과학기구로, 미국·일본·한국·중국·대만·캐나다·멕시코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동 기구는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북방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참치 종에 대한 자원평가를 대행하고 있음.

Invasive Alien Species (침입성외래종)

새로이 도입되거나 기존의 서식지를 넘어서 확산될 경우 생물다양성에 위협이 되는 종.

Investment-related Trade Measures (투자관련 무역조치)

외국인 기업에 의한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정부 조치. 이러한 조치는 종종 외국인 기업들에게 고정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관세장벽이 수반됨.

Invisibles Meeting

Friends of a new Round의 14개국과 Quad 4개국이 모여 차기협상의 일정, 범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임.

Inward Processing (역내가공)

상품이 제조, 가공, 수리 등을 거쳐 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받은 채로 관세 영역 내에 반입되는 세관 절차.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인도양참치위원회)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중의 하나로



‘인도양참치위원회 설립협정’에 따라 1996년 3월 27일자로 설립되었음.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이며, 현재 일본, 호주, 인도 등 3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음. 사무국은 세이셸에 있음.

IPAP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투자촉진행동계획)

1996년 3월 제1차 방콕 ASEM정상회의에서 태국수상이 아시아-유럽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민·관합동작업반회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제2차 런던정상회의에서 채택함. IPAP은 크게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촉진 및 활성화계획(Pillar I)과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정책 및 제도관련 행동계획(Pillar II)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PAP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투자전문가 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함.

IPOA-IUU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이행을 촉구할 목적으로 2001년 3월 FAO 제24차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정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기국·연안국·항국국·시장국 조치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역할을 명시하고, 각 회원국별 IPOA에 근거한 국가행동계획(NPOA : National Plan of Action)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1952년 4월 3일에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설립된 FAO 산하기구임.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8일에 가입하였으며,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임. 회원국의 임무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입법, 기술 및 행정적 의무의 수행이며, 협약의 적용범위는 국제무역과 관련되는 검역대상병해충(Quarantine pest)에 주로 적용됨. 각국은 식물에 대한 검역과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특정식물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권한을 보유하며, 수입관련 검역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FAO와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FAO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 해결함.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새로운 물질·제조기술·용도 등의 발명, 새로운 상품 디자인·상품의 기능개발·상품의 상징표시 선정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 새로운 문학·미술·음악작품의 저작과 새로운 연출·공연·제작 및 방송 등의 문예적 창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함.

ISD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투자서비스에 관한 지침)

설립권(right of establishment) 제고 및 채권업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1996년 1월에 마련된 유럽공동체 지침. 일단 EC 회원국인 본점 주재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투자기업은 역내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함.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는 재화 및 용역의 국제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규격의 제정 및 보급과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지식 등의 국제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 2월에 설립됨. 현재 중앙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원국 수는 161개국임. 1994년 12월말 기준 ISO에서 제정한 규격의 수는 9,652개에 달함. 185개의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636개의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 1,975개의 실무작업반(WG, Working Group)이 있음. ISO는 국제 조약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님. 비록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 법령에 ISO의 표준을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어느 국가도 국제조약이나 자국의 국내 법령 등에서 '자동적으로' ISO의 표준이 국내법에 편입되도록 하지 않았음.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비영리기구-기타단체들도 순수한 자발적인 베이스로 ISO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Item by Item Formula

(품목별 협상방식)

관세인하 협상방식의 하나. 이해관계자끼리 테이블에 앉아 관세인하품목과 인하율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요구하고, 자국이 타국에게 관세를 인하해 줄 수 있는 품목과 세율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말함.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1948년 GATT 원서명국인 23개국이 UN 전문기구로서 창설하고자 하였던 국제무역기구. ITO의 창설은 Havana현장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ITO현장 초안의 일부분에 주로 근거한 GATT가 세계무역에 책임있는 국가들이 수락한 무역규범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 다자간 국제문서로 남게 되었음.

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고래 관한 자원연구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29일에 가입하였음. 무분별한 고래 남획을 규제하고 현존하는 고래를 보호하여 멸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원래는 전면적인 포경 금지가 아니라 적절하게 고래 수를 관리하면서 고래잡이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으나, 고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1986년부터 전면적으로 고래잡이를 금지시켰음. 본부는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두고 있으며, 2008년 현재 89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Jones Act

미국 '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박 수송 시 미국 내 소재 또는 미국 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서 그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됨.

Juridical person

(법인)

GATS에서 사용된 용어로 회사(corporation), 신탁(trust), 합작회사(partnership), 합작 투자회사(joint venture),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협회(association)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지칭

Jurisdictional Sea Area

(관할해역)

연안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말하며, 관할해역에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이 있으며, 해양관할권의 구분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에 의해 구분됨.

July Package

(7월 패키지)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 동 결정 내용이 7월에 제안되고 논의되어 7월 패키지로 부르나, 실제 의결 날짜는 8월 1일 새벽이었음. 7월 패키지 합의에 따라,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침체에 빠진 DDA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J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Kennedy Round (케네디 라운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r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음.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생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Korea-US Beef Case (한-미 쇠고기 분쟁)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까지는 킬터물량 수입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1998년 IMF등 경제위기로 쇠고기 수입이 부진하여 킬터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미국(1999년 2월)과 호주(1999년 4월) 등 수출국들은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 수입유통제도, 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음.

① 구분판매제 : 제소국은 구분판매제로 인하여 현재 전국에 있는 쇠고기 판매점 중 45,000개가 국내산을 판매하는 데 반해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5,000개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접근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품질을 비교하여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국내산 쇠고기에 유리한 가격차가 유지되며, 국내산과 수입쇠고기가 서로 다른 제품이라는 인식과 수입쇠고기는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므로 수입쇠고기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과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아무런 법적 차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주어지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국내산 또는 수입쇠고기 판매점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양자사이의 전환도 자유롭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판매점의 개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량제한(quota)과 수입되는 쇠고기의 대부분이 음식점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전문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음.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GATT III:4의 수입산에 대한 차별여부는 수입산과 국내산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equal conditions of competition)가 제공되는 지에 달려있으며, 구분 판매제는 그 자체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상이한 대우(differential treatment)이기에, 이러한 상이한 대우는 불가피하게 수입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분리 판매 그 자체가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음. 2000년 12월 11일에 배포된 상소보고서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내린 결론, 즉 구분판매제가 GATT III:4의 내국민대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반복하지는 않았으나 공정한 경쟁기회의 개념과 패널의 reasoning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상소기구는 한국이 1988년 수입재개이후 국내산과 수입산이 동시에 판매되던 상황에서 1990년 구분판매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조건을 수정(modify)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결과로 국내산 쇠고기는 45,000개소에서 판매되는 데 반해 수입쇠고기는 5,000개소에 판매하게 됨으로써 수입쇠고기에 불리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음. ② 쇠고기 수입유통제도 : 쇠고기의 수입, 국내유통과 관련하여 제소국은 수입주체의제한, LPMO 수입쇠고기의 도매시장 판매, 도매시장 판매 시 최저경매가 설정, 도매시장 판매물량의 제한, LPMO의 국제경쟁입찰 연기, SBS 슈퍼그룹에의 참여제한, 슈퍼그룹 및 소속 회사 간 거래(cross trading)의 금지, 거래기록유지의무의 부과, 추가적인 표시의무부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허가제도, 호주산 쇠고기의 곡물사육쇠고기(grain-fed beef)와 초지사육쇠고기(grass-fed beef) 구분, 수입부가금(Mark-up) 부과 등이 GATT XI (수량제한금지), III:4 (내국민대우), II (양허표), XVII(국영무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현재 쇠고기에 대하여는 수량제한(Quota)이 존재하며, 제소국에 의하여 제기된 조치의 대부분은 Quota제도 하에서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서 이미 수출국과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양허표(Schedule LX)에 쇠고기에 대하여 잔존수입제한(remaining restrictions)이 남아있음을 표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였음.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1989년 당시의 패널 보고서, BOP 위원회와의 협의결과, 수출국과 체결한 ROU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항은 모두 잔존수입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수입부가금, 슈퍼그룹 가입제한, 최종수요자의 제한, cross trading의 제한, Super-group에 대한 거래기록 유지의무 부과, LPMO 물량의 도매시장 판매, 수입허가제도 등 수입유통제도의 기본골격은 잔존수입제한에 해당되므로 2000년 말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추가적인 표시제도와 쇠고기 취급자의 거래기록 유지, 입찰의 지연, 반출물량의 제한, 곡물사육쇠고기와 초지사육쇠고기의 구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기본적으로 쇠고기 수입, 국내유통과 관련한 쟁점들은 쇠고기에 대하여 수량제한이 있는 2000년 말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소의 실익은 없는 사안이었음. 이러한 이유로 일부 패소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제소국 모두 상소하지 않았음. ③ 소에 대한 보조금 : UR 양허표 작성 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급격한 국내보조 감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가격의 기준년도는 1989년~1991년(짧은 1993년)을 사용하였고, 적용대상물량으로는 우리나라 수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수매량을 사용하였음. 1997~1998년 급격하게 소

값이 하락하자 우리정부는 소 수매사업을 실시하였음. 우리나라는 소에 대한 시장가격 지지액 계산 시에도 양허표 작성 시와 마찬가지로 기준년도는 1989년~1991년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수매량을 적용대상물량으로 사용하였음. 또한 이렇게 산출된 소 수매액이 총 생산액의 10% 미만이어서 최소허용수준(de-minimis)에 해당되므로 감축대상보조지급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소에 대한 국내보조에 관하여 제소국은 우리나라의 시장가격지지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고, 농업협정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소에 대한 보조액을 감축대상보조지급액에 산입하는 경우 1997년과 1998년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지급액은 양허표의 감축대상보조한도액을 초과하므로 농업협정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시장가격지지액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제소국은 국제가격과 적용대상물량, 가공단계를 문제 삼았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소국은 농업협정문 부속서 3에는 국제가격의 기준년도로 1986년~1988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에 대한 보조금을 계산하면서 1989년~1991년을 기준년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우리나라는 양허표 작성 시부터 1989년~1991년을 사용하여 왔고, 농업협정문 1(a)(ii)에도 양허표 작성 시 사용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적용대상물량에 대하여 제소국은 시장가격지지사업의 가격지지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수매량이 아닌 총 생산량 또는 사전계획물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 측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지지사업의 성격상 실제수매량이 적용대상물량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양허표 작성 시부터 실제수매량을 사용하여 왔고 농업협정문에도 양허표 작성 시 사용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반론으로 제기하였음.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우리나라의 국제가격과 적용대상물량에 대한 계산방법이 잘못되었으며, 수매가격과 국제가격의 가공단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양허표 작성 시 포함된 쌀, 보리, 유채, 옥수수, 콩의 경우에는 양허표 작성 시 사용한 기준년도와 적용대상물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양허표에 없는 쇠고기와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협정문의 부속서 3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임. 결국 패널은 우리나라의 소에 대한 보조금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므로 감축대상보조 지급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임. 또한 패널은 우리나라가 연도별 감축대상보조 한도액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양허표에 제시된 두 개의 숫자 중 괄호 밖의 숫자가 감축대상보조 한도액이며 한국의 1997년과 1998년 감축대상보조 지급액은 감축대상보조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한국은 감축약속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우리 측은 상소서면입장에서 감축약속수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감축약속수준이 괄호안의 숫자임을 양허표와 부속자료의 note에 표시하였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 WTO 사무국도 우리나라의 감축약속은 괄호안의 숫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 또한 국제가격의 기준년도와 적용대상물량에 대하여는 양허표 작성 시부터 사용한 기준에 따라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패널의 권고대로 계산하는 경우 한국은 불공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한국의 양허표와 부속자료의 note를 고려할 때 한국의

감축약속은 팔호안의 숫자라고 판단하였으며, 국제가격 및 적용대상물량에 대하여는 패널의 판단이 맞지만 한국이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패널의 결과를 번복하였음.

Koyto Protocol (교토 의정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고, 개도국은 법적 감축의무는 없음. 우리나라는 2002년 비준, 개도국지위 유지. 당초 2008년~2012년 동안의 감축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함(2012년 도하 당사국총회).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LDCs

(Least-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LDC 혹은 LLDC라고 불림.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1인당 칼로리 공급률, 초중교육 등록률, 문맹률,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 내 고용비율, 1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집중률을 기준으로 정하며, 현재 48개국임. 이 같은 지표들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3년마다 ECOSOC에 의해 검토됨. WTO의 일부규정은 여러 면에서 이러한 국가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어려움 및 그들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있음. 첫째, 최빈개도국들은 GATT 제4장(Part IV of the GATT)과 권능부여 조항(Enabling claus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이는 선진 국가들로 하여금 최빈개도국들에게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1994년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최빈개도국을 위한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 in favouring of least-developed countries)은 최빈개도국들 각자의 경제개발과 금융 및 무역에 관한 필요 정도와 맞는 약속(commitments) 및 양허(concessions)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동 결정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개선과 최빈개도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세(tariff) 및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의 조속한 시행을 추구하고 있음. 최빈개도국들은 또한 자국의 무역확대에 필요한 더 많은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됨. WTO 체제하의 각종 협정들은 최빈개도국에 관한 조치들을 담고 있음.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분야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빈개도국들이 WTO 조항의 적용을 10년 동안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최빈개도국들이 세계 서비스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회원국들이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UNCTAD는 최빈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개발관련 이슈들과 단기 예측 및 성장전망을 다루는 최빈개도국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최빈개도국에 대해서 특혜관세(무관세·무쿼터) 범위를 전체품목의 9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WTO에 통보하였음.

Lesser Duty Rule

(**최소부관원칙**)

반덤핑 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수입국이 결정한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율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채택하는 방식을 지칭함.

Lesser duty principle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부과 원칙)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원칙에서의 최소부과원칙. 즉, 덤핑품목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보다 작아야 한다는 원칙. 이는 미국반덤핑법이 주무당국에 덤핑관세부과에 대한 재량 여지를 주지 않고 덤핑마진만큼 의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의식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Less than full compensation (동등하지 아니한 보상)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의 개념을 인정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을 덜 하는 대신에 저율관세쿼터(TRQ)를 증량하기로 하였음. EU, G10(수입국그룹)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과 수입쿼터 증량에 따른 부담이 일반품목보다 덜 해야 한다는 원칙, 즉 less than full compensation 원칙을 주장하였음.

Less-than-formula Cut (공식에 의한 것보다 적은 감축)

신축성 논의 시 주로 거론되는 용어로서 몇몇 품목에 대해 관세 감축을 여타 품목보다 작게 하는 것을 의미. 현재 DDA NAMA부문 협상의 July Package는 개도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less than formula cut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lex speciali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은 일반법(lex generali)에 우선한다는 국제법 원칙.

Lex posterior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later law)이라는 뜻으로 국제협약을 해석하는 데에 통용되는 원칙. 만약에 어떠한 국가가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나중에 체결한 조항이 전자에 우선한다는 원칙.

LFA

(Less Favoured Area, 조건불리지역)

산간, 도서지역은 일반 농촌지역보다 산업,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낮아 농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경지기반 정비 등 SOC확충과 농외소득원 개발로 대표되지만 이런 방안은 비용도 많이 들고 단기간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지불제같은 소득보조 정책이 필요하게 됨. EU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EU농업은 각국별로 편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동농업정책에 의해 역내 동일가격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조건불리지역 농업은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됨.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농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영농활동을 유지토록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도입되었음. 조건불리지역이라 함은 산악지역(경지의 고도가 높고 경사도가 급한 지역), 일반 조건불리지역(농업생산성이 낮아 농가소득이 낮고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 소규모지역(특수조건불리지역, 수리조건 등이 토양생산조건에 불리하거나 해안, 도서지역, 환경보호 등 공공규제로 영농에 제한을 받는 지역) 등이 해당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보상수당으로 조건불리지역 농민의 소득손실을 직접소득보조 형태로 보상하고 경종농업, 축산분야의 3ha 이상 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축산에 대한 지원은 축종별 마릿수로 계산한 가축단위(LU)에 비례하여 지불되는데 목초지 1ha당 1.4LU까지만 대상이 됨. 투자보조의 형태로 사료생산과 저장, 분배에 필요한 시설, 목초지 개량과 관련 시설 공동투자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Like Product

(동종상품)

덤핑의 정의에 대한 표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타 GATT 조항에서는 다소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반덤핑협정(GATT 6조)상의 개념은 동일상품(Same product)을 가리킬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 이유는 덤핑이란 오직 동종상품의 가격비교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Linear Tariff Reduction

(관세인하방식)

케네디라운드 이전의 상품품목별(Item by Item) 관세인하방식과는 달리, 관세인하 대상품목의 현행 관세율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서 케네디라운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T=(1-a)*t$, T:최종 세율, t: 초기세율, a: 인하율

Lisbon Agreement (리스본협약)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 하에 원산지명명과 그 국제적 등록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조약.

Loan Deficiency Payments (LDP, 용자부족분지불제도)

소맥과 사료곡물에 지원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가소득지지 정책. WTO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통보되는 정책으로서 시장가격이 정부에서 설정한 용자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용자가격(Loan Rate)은 매년 품목별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밀의 경우는 지난 5년간의 평균가격의 85%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LDP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용자보족분지불과 마케팅론이득 지불제도가 있음.

※ Marketing Loan Payment 참조

Lome Convention (로메협정)

1975년 2월 아프리카 토고(Togo)의 수도 로메(Lome)에서 EC와 46개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 EU는 ACP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특혜관세의 부과, 원조와 개발지원을 하는 등 각종 무역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London Dumping Convention (런던협약)

폐기물 또는 기타 물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임.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11일에 가입하였음. 개정된 1996년 의정서는 해양투기 허용물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① 준설품질 ② 철, 강철, 콘크리트 등의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벌크 형태의 물질 ③ 자연발생의 비오염 유기물질 ④ 생산 폐기물 또는 산업적 생산 가공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기 물질 ⑤ 불활성 무기물 지질물질 ⑥ 선박 및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해양 구조물.

LTRF

(Less-Than-Full Reciprocity, **불완전 상호주의**)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선·개도국 간 계수에 차등을 두고 개도국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바탕이 됨.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불완전 상호주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더 많은 불완전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즉 개도국들은 선·개도국 간 계수 격차를 더 많이 벌리고 신축성도 좀 더 많이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음.

Limited Tendering

(**제한입찰**)

제한된 조건에 따라 구매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 선정하는 방법. WTO 정부조달 협정에서는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어 동 입찰방식이 가능하나 최대한의 경쟁을 피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공급자간의 차별을 하거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우리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상의 용어로,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교배나 자연적인 조합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생물체.

※ EU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미국의 경우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로 주로 명칭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Maastricht Treaty (마하트리히트 조약)

1992년 2월 7일 유럽공동체의 당시 12개 회원국 간에 체결된 유럽 연합창설에 관한 조약으로서 1993년 11월 1일 발효되었음. 동 조약은 로마조약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일한 제도적 틀을 통해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안보, 경제개발정책 등 대외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러한 목적달성 책임은 각료이사회 및 유럽집행위원회가 지게 됨. 또한 동 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유럽연합의 중심축인 유럽공동체로 대체함. 유럽공동체 만이 법인격을 가지며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음. 또한 동 조약은 유럽연합의 또 다른 2개 중심축인 공동 외교, 안보정책의 수립 및 법무, 내무분야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다자간 투자협정)

기본적으로 기존의 쌍무 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정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그리고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으로, GATS의 상업적 주제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는 국제규범임. 포괄범위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연자원 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MAI는 투자자유화는 물론 투자보호 및 투자관련 분쟁 해결절차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GATS와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MAI는 투자관련 최초의 본격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 BIA 참조

Market failure (시장실패)

사적시장(private market)의 기구가 어떤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함.

Madrid Agreement (마드리드협약)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 하에 기반적인 상품산지표시를 억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

Managed Trade (관리무역)

일부 분야 및 생산품의 무역이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국제무역의 형태, 이러한 무역형태를 조성하는 것으로는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 수량규제(Quantitative restrictions) 및 그 밖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등을 들 수 있음. 이 경우, 모든 관리무역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의 관리무역은 시장접근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치이상의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제3국의 피해를 야기함. 일부시각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자기기업간의 무역도 관리무역으로 간주하고 있음.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관리변동환율제도)

순수한 고정환율제와 자유변동환율제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각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 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환율제도임. IMF체제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 환율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가 혼재되어 있으나 지배적인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도라 할 수 있음.

Mailbox (메일박스)

WTO 협정 발효일 현재, 의약품 및 농약물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이 시행해야 하는 의무조항(TRIPS 협정 제70조 8항 및 9항).

Margin of Preference (특혜마진)

최혜국 대우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

Maritime Flag State (기국주의)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그 기국법(旗國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함. 예컨대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임.

Market Access (시장접근)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UR 농산물협상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관세상당치(TE)에 의해 개방을 할 경우, 수출국의 상품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일정물량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현행 시장접근물량(CMA)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구분함.

Market Disruption (시장교란)

급속히,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국내 생산품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 중국의 특별세이프가드(SSG) 발동 요인 중 하나로 들어가 있음.

Market Transparency (시장투명성)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시장참여자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Marketing Loan (시장융자제도)

미국의 농가소득지지 정책 중의 하나. 1985년 농업법에서 쌀과 면화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 마케팅론 제도에 의하면 생산자는 상품신용공사(CCC)에 생산된 농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케팅론을 융자받을 수 있음. 이후 시장가격이 마케팅론 단가보다 높아지면 시장에 생산물을 판매하여 융자금액을 상환하고, 시장가격이 마케팅론 단가보다 낮아지면 CCC에 농산물을 인도하면 됨.

※ Non-Recourse Commodity Loans 참조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WTO 협정이라고도 알려진 동 협정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4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다자간 및 복수국 간 협정을 WTO에 예속시켰음. 동 협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부속서 1은 다음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포함하고 있음. 1994년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무역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관세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Customs Valuation),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긴급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부속서 2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포함하고 있음. 부속서 3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포함하고 있음. 부속서 4는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Dispute Settlement),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4개의 WTO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WTO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을 포함하고 있음. 동 사건의 부록1에는 마라케쉬 협정 조항의 요점들이 수록되어 있음.

Marks of Origin

(원산지 표시)

GATT 제9조는 한 체약국의 원산지 표시요건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제3국이 동종상품에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규를 제정 또는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국의 소비자의 보호와 수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해당 상품의 현저한 손상이나 가치의 실질적인 감소 또는 관련비용의 부당한 증대를 야기해서는

안 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한편, 제약국들은 다른 제약국이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특한 지리적(지역적) 상표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해야 함.

Mark-up (수입차익)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Mark-up 운영의 의미는 수입물품에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분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 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됨.

Mark-up (미양허품목)

UR 당시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많은 품목(약 65%)을 미양허 하였음. DDA에서 미양허 품목은 실행세율에 일정 수치(mark-up)를 더한 후 이를 기준세율로 하여 관세를 감축함. 미양허품목을 양허함에 따른 보상이라 할 수 있음. 2008년 7월 10일자 NAMA 제3차 수정안에서 mark-up은 25%였음. 예를 들어 UR 당시 미양허된 10% 품목을 양허할 경우 기준세율은 35%(10+25)가 되고 35%를 공식에 따라 감축하게 됨.

MCS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감시감독통제)

어업 관련 규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통제 활동을 말함. 1981년 어업관련 MCS에 대한 FAO 전문가 회의(Expert Consultation on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System for Fisheries Management)에서 감시(monitring)는 '어획노력의 특징과 자원어획량의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 감독(control)은 '법령,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된 자원이용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감시(surveillance)는 '어업활동 관련 규제의 이행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측의 정도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음.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다자간환경협약)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 그

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Measure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정된 경제블록임.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시발로 하여 1991년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도적 골격을 마련한 남미공동시장은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됨. 남미공동시장은 비회원국들에 대한 대외공동관세(TEC)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경제통합의 단계 가운데 관세동맹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대외공동관세는 최고 2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며 회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일부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음. 이들 예외품목은 2001년까지 동일한 대외공동관세를 목표로 함.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에서는 회원국 총 생산품의 약 90%는 경제블록 내에서 무관세로 거래되며 각 회원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된 관세 부과를 허용하였음. 이들 예외품목에 대한 차별관세는 협상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00년까지 모든 생산품들의 역내 무관세 거래를 목표로 함. 남미공동시장의 정식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고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남미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됨. 예외적으로는 1995년 유럽연합(EU)과 경제블록간의 협력 합의가 서명되었음. 남미 공동시장의 총인구는 2억7백만 명이며, 역내 순생산(GDP) 총액은 8,598억불, 회원국 일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4,139불. 아순시온협약 이후 지속적인 역내 관세의 인화와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인플레이 안정으로 역내 교역량은 1990년 약 40억불 수준에서 1995년 145억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MFA (Multi-Fiber Arrangement, 다자간 섬유협정)

1974년 체결된 섬유류 무역에 대한 국제협약. 수출국과 수입국간 쌍무협상을 통하여 교역량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도국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WTO협정에 의해 2005년부터 완전폐지됨.

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MFN 원칙은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으로서 한 국가가 제3국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

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것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 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가 부여한 최고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임. 최혜국대우의 부여로서 수혜국은 양허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대우를 향유하는 불특정의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임. 이 원칙은 국가 간의 차별을 배제하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역안정에도 기여하는바, 그것은 한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는 이 원칙을 통하여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무역장벽 제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WTO체제에서도 최혜국대우원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지만 경제통합,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와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국가 간 차별이 인정됨으로서 이 원칙에 대한 많은 예외가 주어지고 있음. 국제관계에서 최혜국조항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4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MFN원칙이 이용된 것은 대체로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MFN원칙이 일반화된 것은 19세기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음. ITO 헌장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MFN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주요 선진국에 의해 구체화되었음. GATT 제1조는 MFN원칙의 적용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 『체약국은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다른 국가에 적송되는 상품에 대해 허용하는 편의, 특전, 특권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든 체약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과 동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상품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MFN원칙은 GATT 전 규정을 망라한 무차별원칙이며, MFN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는 우선 GATT상의 어떤 의무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25조 5항의 웨이버 권한, 20조의 일반적 예외, 21조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19조의 면책조항 등이 이에 속함. 이밖에 MFN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은 14조의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에 대한 예외, 24조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협정에 따르는 예외, 35조의 특정국가간의 협정부적용, 23조를 근거로 한 의무의 정지 등을 들 수 있음.

※ National Treatment 참조

MFN 관세 (Most-Favoured Nation Tariff)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적인 원칙. GATT 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 규정됨. WTO회원국 간에는 최혜국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MFN관세를 적용함.

※ Preferential tariff 참조

MFN exemption (최혜국대우 면제)

GATS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됨. 대개의 경우, 각 국가들은 특혜협약, 또는 지역협정 등을 기 체결한 바 있어 이러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게 됨.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심의를 거쳐야 함. 많은 WTO 회원국들은 GATS 발효 시 동 면제조항을 채택하였고, 그 외의 일부국가들은 가입 시부터 면제조항을 적용 받고 있음. 기존 협정국들도 새로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함.

Mid-Term Review (중간평가)

1987년 2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이 갖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참가국이나 협상의 목표인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확대'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세계농산물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가격침체 원인에 대한 수출입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로 주요 의제인 보조금철폐 및 협상 대상으로서의 장단기 조치에 대해 참가국들이 첨예한 이해 대립을 보임으로써 협상과정이 순탄치 못하였음. 특히 1988년 12월 UR의 중간평가를 위해서 Montreal에서 개최되었던 무역협상위원회(TNC) 각료회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완전철폐(elimination)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인 감축(Progressive reduction)을 주장하는 EU(당시 EC)의 입장대립으로 농산물 협상 분야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 그러나 GATT의 중재 및 각국의 이견조정을 거쳐 1989년 4월 Geneva에서 재개된 TNC 고위각료회의에서 농산물분야의 중간평가 합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은 후반기 실질적 협상에 돌입하였음. 농산물분야 중간평가에서는 장기조치 및 농업개혁지침(Long-term elements and guidelines for reforms), 단기조치(Short-term elemen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및 식물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등의 3개 분야에서 중간 합의가 이루어졌음. 첫째, 장기조치 및 농업개혁지침에 대해서는, UR 농산물 협상의 장기적 목표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교역체계의 확립(Establish a fair and market 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이라는 데에 합의하고 먼저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에 관한 중간합의는 향후 협상에서 채택될 구체적 방법에 의해 '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을 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합의를 보았음. 이는 지난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의 시 결렬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에 대한 미국과 EU(당시 EC)의 의견 차이였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한편 중간합의는 위의 합의된 일반원칙(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각국의 특정정책 및 조치별 협상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둘째, 총량 농업지원 측정방법(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셋째, 양자를 혼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다음으로 GATT규율과 원칙의 강화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간합의에서는 수입접근(Import access) 및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의 규율 및 원칙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음. 이 경우 개도국 특히 식량수출개도국에게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식량안보 등 농업 비교역적 측면에 대해서도 협상 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음.

Ministerial Conference (WTO 각료회의)

기존의 GATT에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GATT 체약국 간 회의기능을 대체하는 WTO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최소한 2년에 1회 개최됨. 각료회의는 타 기구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의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요건에 따라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보유함(WTO협정 4조1항). 또한 다자간협정 하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표결처리 가능함. 1995년 1월 1일 WTO 창설 후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뉴라운드 개시를 위한 제3차 회의가 1999년 11월 30일~12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으나 선·개도국 간, 농산물수출·입국 간 의견차이로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음. 4차 회의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으며, 이후 2013년 12월까지 9차례의 각료회의가 열렸음.

Ministerial Decision and Declaration (각료결정 및 선언)

WTO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협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명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덤핑협정과 관련된 결정 및 선언, 통보절차에 관한 결정,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등 12개 분야에 대한 결정 및 선언이 있음.

Ministerial Meeting (APEC 각료회의)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APEC 제1차 각료회의가 열림으로써 APEC이 출범하였으며 매년 1회 개최되어 현안을 상호 협의함. 실질적인 의미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1993년 이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상징적인 위상은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고위실무회의(SOM)에 작업지침을

하달하고 보고를 받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APEC 참조

MM

(Monitoring Mechanism, 이행현황 감독기구)

WTO 협정, 각료 및 일반이사회 결정에 포함된 모든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이행 현황 감독기구.

MMA

(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품목의 경우 국내외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국들의 시장접근기회가 없게 된 점을 감안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 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C/S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 Market Access, CMA 참조

Modalities

(협상 세부원칙)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 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Mode 1~4

(서비스의 공급형태)

한 가지 형태의 물품 공급형태만이 가능한 상품 분야와는 달리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GATS협정에서 4가지 형태(mode)로 구분.

- mode 1(cross-border supply; 국경 간 공급)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인터넷, 팩스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 mode 2(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예)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 해외여행 중 식당 이용이나 이발, 해외에 출장을 가서 법률자문이나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 mode 3(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mode 4(movement of natural person;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자문서비스를 해주는 경우, 외국가수의 내한 공연 등

Modification of Schedules

(양허표의 수정)

WTO 회원국은 자국의 관세를 WTO 양허관세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관세율을 인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바, GATT 제28조는 양허표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음. 양허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수출의 주요 이해관계국과 적절한 보상을 위해 협의하여야 함.

Montreal Protocol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의 오존층 파괴에 관한 다자간 환경협약(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 Halon 등에 대한 생산 및 사용규제를 다루며 총 95종의 규제대상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2년 5월에 가입하였음.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임. 본래 국가 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 간, 국가 기관 간, 일반 기관 간, 일반 기업 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 즉, 당사자 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임.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 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MPA

(Marine Protected Area,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조간대·해저와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법제도와 기타 관리수단에 의해 보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크게 생태계 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되는데 생태계 보전 지역은 하구, 신두리 사구, 문섬 및 주변수역, 오륙도 및 주변수역, 대이작도 및 주변 수역이며, 습지보호지역은 무안, 진도, 순천만, 보성별교, 장봉도 갯벌이 지정되어 있음.

MPP

(Market Promotion Program, 시장촉진정책)

미국이 농산물수출시장 촉진을 위해 기업 및 협회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고부가가치 가공농산물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시장개척 및 판매촉진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수출시장개척 및 촉진정책은 허용대상 정책이므로 WTO 농산물협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따라서 미국 농민들은 수출진흥정책의 예산감축에 따라 이들 정책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MTN Code(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다자무역 협상)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등 6개의 비관세분야와 낙농, 쇠고기, 민간항공기 등 3개의 상품관련분야의 다자간 협정을 총칭함.

MPS

(Market Price Support, 시장가격지지)

특정 농산물의 국경가격과 국내시장가격 간의 격차를 생성시키는 정책이,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로 이전시키는 농가판매단계의 연간 총 화폐가치로 정의됨. MPS를 추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는 농산물 시장이 경쟁적이라는 점임. 경쟁적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은 완전한 정보와, 동질의 제품, 시장 참여자 자유롭다는 점들인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Arbitrage(중개 매매; 동일 상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를 때 이를 매매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방법)가 발생하여 국내가격이 국제 가격에 결국에는 수렴해 가게 됨. 그러므로 국내 가격과 외부 가격 간에 지속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의 시장가격차는 정부 가격 정책에 의한 이전 금액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됨.

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최대지속적생산량)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점의 하나로 재생산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자원으로부터 어획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 어획량을 말함.

Multi-Domestic Corporation

(다국적 기업)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일종으로 기업의 일부가 각국에 중심점을 마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동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주로 타국의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체제를 조직함.

Multilateralism

(다자주의)

국가의 크기나 국제무역의 점유율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무차별 및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한 참여 및 협력을 기초로 국제무역을 하자는 접근방법.

Multilateral Negotiation

(다자간협상)

통상협상방식의 하나. 통상 문제를 양자 간 해결하는 양자협상과는 달리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Multifunctionality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① 농업활동이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②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이 정부개입 없이는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시장실패)를 말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최근 농업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로서 수입국들은 농업이 식량공급 기능 외에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NTC 6개국, 동구권 등이 주로 지지하며, 한국·일본은 식량안보, EU는 환경보전을 가장 중요한 다원적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음.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 허용보조로도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무역증진 및 상호 경제기술협력을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서로의 기준, 자격, 허가요건 등을 인정하는 협정.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NAC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s, 명목지원계수)

한나라 경제의 경제활동별, 분야별 지원구조의 차이가 더 벌어질수록, 동 지원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의 비효율성은 커지는 것임. 경제의 비효율성이 생산자나 소비자 결정에 미치는 예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OECD는 명목지원계수(NAC) 개념을 개발했음. 생산에 대한 명목지원계수(NAC on production)는 비보조 국경가격에 단위당 PSE를 합한 가액의 국경가격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소비에 대한 명목지원계수(NAC on consumption)는 국경가격에 단위당 CSE의 절대가액을 합한 가격의 국경가격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생산명목지원계수 소비명목지원계수는 국내지원구조에 의한 국내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음. 이 두 가지 명목지원계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국내정책에 의한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의 왜곡 효과는 커지는 것임.

NAFO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북서대서양수산기구)

북서대서양의 어업자원의 관리를 위해 1978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에 가입하였음. 캐나다의 다투마우스에 본부를 두고 수산연구 및 개발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4년 현재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 무역협정)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동 지역 내의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자원, 값싼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국의 비교우위를 특화할 경우 여타 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NAFTA는 1988년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음. NAFTA의 목표는 협정문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원국 간에 ① 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②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③ 투자기회의 확대 ④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⑤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⑥ 협정혜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총 8개 부문, 22개 장,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NAFTA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의 상품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시장접근)

DDA 협상 분야의 하나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 주로 공산품이 이에 해당되나 수산물, 임산물도 NAMA 협상의 대상임.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무차별주의의 양대 원칙 중의 하나임. GATT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서 각 가맹국의 국내정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제3조에 집약되어 있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의무임. GATT상의 '내국민대우'란 각국은 조세 및 정부규제 등에 있어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입품을 공평하게 취급하되 국내제품은 유리하게 취급될 수도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음. MFN원칙 하에서는 A국은 X국과 Y국의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하면 되는데 비해 내국민대우 의무는 A국으로 하여금 X국과 Y국의 상품을 자국생산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만약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내국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관세에 버금가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규제도 국내제품을 보호하고 수입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데 있어 관세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흔한 예로서 수입품에 대해 특별한 상표 표시방법이나 포장을 요구한다든지 건강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행정적 규제가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내국민대우의무는 가맹국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GATT의무에 비해 내국정치문제와 쉽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음. 한편 GATT 초안 작성과정에서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조항을 GATT에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 특히 그 적용범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 일부 협상대표들은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는 양허표에 명기된 상품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협상대표들은 내국민대우조항의 목적은 양허표의 보호뿐 아니라 내국세나 각종 정부규제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947년 10월에 채택된 GATT협정문의 내국민대우조항은 1948년 『하바나』회의에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1948년 가을의 『제네바』회의에서 GATT 체약국들은 『하바나』회의에서 수정된 ITO현장안의 어떤 부분이 GATT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내국민대우규정을 그대로 GATT에(제3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GATT수정의정서에 포함시킴으로써 같은 해 12월부터 이를 시행하였음. 오늘날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가 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국가 간 평등권에 기초하여 외국인 대우에 있어서 국가가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비롯한 국경장벽이 완화되어 수입품이 쉽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차별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수입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어지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내국민대우의 부여 없이는 국경장벽이 제거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임. 따라서 자유로운 국제무역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내국민대우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이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임. 또한 내국민대우는 상대국의 국민이나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국가 간의 선린과 평등관계를 도모하는 가운데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 ※ MFN 참조

NAWG

(National Association of Wheat Growers, 미국밀생산자연협회)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생산자단체. 미국에서 생산된 밀의 65%가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방정부의 농업정책 중 특히 수출진흥정책에 관심이 많음.

NCBA

(National Cattleman's Beef Association, 미국축산협회)

미국의 소 축산업 및 소고기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 이 단체의 목적은 축산업자와 도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적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 수요를 증진하는 데 있음. 1898년에 창립된 미국축산협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소를 판매시에 한 마리당 \$1씩 부과되는 판매세(Beef Checkoff)에 의해 재정이 충당됨. 이 세금은 1985년 미국의회에서 제정한 소고기 판매 촉진과 연구에 관한 법에 의해 부과되며 한해에 약 8,500만 달러 정도 견침. 이중 미국축산협회는 약 5,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음. 또한 미국축산협회는 연례 축산 산업 대회 및 트레이드 쇼와 하기 축산협회 콘퍼런스를 개최함.

Negative List

(금지목록 또는 네거티브 방식)

금지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양허 방식. 허용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과 구분됨. GATS 협정에 따라 양허되는 약속이행표(schedule of commitments)는 서비스 분야의 선정은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일단 양허가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에 따라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두 개방되도록 하고 있음.

Negligible imports (미소수입물량)

미소마진 이외에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덤핑 수입품의 수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인 경우를 뜻하며, WTO협정 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이어야 함.

New Round Negotiation (뉴라운드협상)

세계경제에서 점점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R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환경과 무역문제, 노동과 무역문제, 공정경쟁과 무역문제 등을 규율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 틀을 만들기 위해 지금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통상문제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뜻하며 Millennium round라고도 함. 1994년 UR협상 타결 시 각국은 자유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만 2000년부터 추기적인 자유화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EU, 일본, 한국 등 다수 국가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와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업, 서비스 이외투자, 경쟁정책 등 여타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음.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년 3월부터 회원국들로부터 의제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각료선언문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고, 1999년 12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협상의제 등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 차이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회의가 중단되었음.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차원에서는 농업, 서비스 등 시설정의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협정의 이행문제 검토를 포함한 회원국 간 신뢰구축 작업계획을 추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DDA 협상)이 출범하였음.

NFIDC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식량순수입 개도국)

1996년 WTO농업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사항으로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에 포함될 국가들의 목록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은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들(1인당 GNP 1,000불이하 국가)을 들고 있으며, 식량순수입개도국은 제시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서 특정 3개년 간의 기초식량(Basic Foodstuffs)의 순수입국(Net importer)인 개도국 회원국으로 바베이도스, 코트디브와르, 온두라스, 케냐 등 15개국을 들고 있음.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WTO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및 농업협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선진회원국들의 규정된 후속 조치와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음.

NFU

(National Farmers Union)

미국의 소규모 가족농(family farm)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단체로서 의회 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과 비슷함. 식품권 제도, 아동영양정책 확대, 식량원조 확대, 정부규제 농업정책을 선호하며, 오클라호마,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등의 Great Plains and Upper Midwest지역이 거점지역임.

Non-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

허용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연구,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등 3종이며, 동 조항은 5년간 적용된 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31조). 허용보조금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출국은 수입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120일 이내). 여타 보조금의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제소 가능하나 허용보조금은 위원회에만 문제제기 가능함.

Notification

(통보)

WTO가 관장하는 협정들의 당사국들이 서로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무역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WTO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것. 통보는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WTO의 감독기능을 지원함.

Non ad valorem duties

(비종가세)

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비자동수입허가)

WTO 수입허가제한의 시행절차협정 제3조에 따르면 제2조의 자동수입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말함. 동 허가절차가 수량제한이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의 부여 또는 배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수량제한이 목적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회원국의 요청 시 제한의 시행, 최근기간동안 부여된 수입허가 및 공급국간 배분, 수입통계(단, 개도국은 이로 인한 행정·재정상 부담을 지지 않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쿼터의 총량, 개시일, 마감일, 이에 대한 모든 변경, 쿼터의 공급국 간 배분내용 및 쿼터를 조기개시 할 경우 그 일자에 관한 사항은 발효일 21일 이전에(늦어도 발효일 전에) 통보가 필요함.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선착순일 경우 30일, 모든 신청자가 동시 고려될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가의 배분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수입실적, 경제적인 물량허가여부, 개도국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Non-Conforming Measure

(비합치 조치)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고자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

Non-Discrimination Principle

(무차별 원칙)

자유로운 국제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과 경제활동의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차별을 배제하는 원칙을 무차별원칙이라 하며, 여기에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이 있음.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은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한 국가의 입장이 중심이 되지만, 상호주의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차원이 약간 다름. 그리고 국제경제활동의 자유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상품과 경제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장접근의 원칙이나 국가의 무역에 관한 제도가 관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이 확립되어가고 있음.

※ MFN, National Treatment 참조

Non-cumulation (비누적)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Non-Exempted Domestic Support (감축대상 국내보조)

WTO 농업협정은 농업관련 국내보조조치 중 허용대상정책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는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고 있음. 감축대상보조조치는 무역왜곡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해 품목의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경보호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정부가 농산물가격에 개입하는 시장가격지지,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자에게 농업생산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감축대상 직접보조,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 유통비용 절감 등 농업생산 및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허용보조 이외의 모든 여타 지원조치(영농자금지원, 자재지원, 유통비용지원 등) 등을 말함. 감축의무면제 대상으로는 개도국우대보조, De-minimis 보조,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보조 등이 있음.

Non-linear formula (비선형 공식)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관세감축 공식. 스위스공식이 비선형공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관세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선형 공식과 대비됨.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

원산지 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됨.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무역정책에 사용됨.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운용되며,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우회 수입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며, ② 반덤핑 · 상계관세제도 운용, ③ 수량제한 및 할당 관세제도 운용되며, Quota · 수출자율규제제도 · 시장질서협정 · 다자간 섬유류협정 · 긴급수입제한이 해당, ④ 수입지역 제한제도 운용되며, 국민보건위생 보호 · 수입선 다변화제도 · 전략물자 수출입제한이 해당됨.

Non-Product-Specific AMS

(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품목불특정 AMS란 WTO 농업협정상 허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농업생산자에 대한 보조이나, 특정 농산물 생산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품목별 지원액을 구분 계산하기 어려운 지원을 의미하는 것임. 지원대상품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농업용 자재지원, 영농비용지원, 유통비용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들 품목의 보조액은 지원정책별로 재정지출액 또는 농가수혜상당액을 계산(품목별 AMS 계산방법과 동일)하고 각각의 보조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Non-Recourse Commodity Loans

(비상환상품융자제도)

미국의 대표적인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산물 담보융자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책용어. 미국의 주요 농업보조정책은 비상환융자정책(Non-recourse loans)과 부족분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s)로 대별할 수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밀, 사료용 곡물, 면화 및 쌀에 대한 가격지지는 생산농가에 대한 비상환융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즉,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작물을 담보로 기존 융자가격으로 비상환대출을 받고,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확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담보로 한 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함. 상품신용공사(CCC)가 잉여농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때의 잉여농산물은 상품신용공사가 시장에 판매하거나 식량원조형태로 처분하기도 함. 이 제도는 융자단가가

최저가격지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임. 농산물에 대한 담보용자제도는 소맥, 면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1938년 이래 계속 실시되어 왔으며, 용자단가(loan rate)는 1985년 이전까지는 1933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패리티(Parity)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왔으나, 1985년 농업법에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음. 이에 따르면 과거 5개년 간의 시장가격 중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의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그 가격의 75%~85%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비상환상품용자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꾸준히 확대되어 2013년 현재 밀, 옥수수 등 20개(유지류 9개를 한 품목으로 간주할 경우) 품목에 이르고 있음.

Non Recourse Loan Programme (비상환청구권용자 프로그램)

1996년 미국 FAIR법 하에 실행된 프로그램. 1999년 이후부터 버터, 무지방 건조우유, 치즈에 대한 용자상환 시, 반드시 가공업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함. 이는 가공업자의 낙농품 재고 관리를 돕기 위한 것임.

Non-Tariff Measures (비관세조치)

국제교역에 있어서 쿼터, 수입허가제도, 위생규제조치 등 관세가 아닌 조치들을 말함.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

관세율 그 자체보다 표준·인증, 허가, 수출세, 위생검역 등 시장접근을 제약하고 있는 관세 이외의 요소. 크게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Non-violation Complaints (비위반청구)

GATT 제23조 1항에서는 모두 6가지의 GATT/WTO제소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크게 위반제소(Violation Complaint)와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로 나눌 수 있음. 비위반제소는 GATT협정에 저촉되지 않은 조치의 적용이나 어떤 다른 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GATT/WTO제소유형임. 비위반제소는 1998년 상반기까지 모두 14건의 GATT/WTO분쟁에서 원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8건만이 원용될 정도로 그 활용빈도가 낮음. 비위반제소는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DSU) 제26조에서도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반제소와는 입증책임, 보복조치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음. 비위반제소의 중요한 WTO패널 판례로서는 Kodak-Fuji사건(1998년)이 있음. 그러나 비위반제소는 TRIPS협정에 관하여는 WTO출범 후로부터 5년간 적용되지 않음.

Normal Value (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반덤핑협정상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말함. 다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가격 중 대표적인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 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

Non-violation case (비위반사건)

GATT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으로서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 또는 상황. GATT 제23조 1항 (b)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NPAFC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북태평양의 북위 33도 이북의 공해 및 그 인접해역의 소하성어류의 보존을 위해 1993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캐나다의 밴쿠버에 본부를 두고 있음. 연어, 송어 등 소하성어류의 보존조치 및 협약위반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및 동 행위에 대한 제재방법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및 일본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27일 가입하였음. 위원회는 북태평양 및 북위 33도 이북 혹은 인접 수역을 협약수역으로 정하고 이곳의 연어, 은연어, 곱사연어, 흥연어, 왕연어, 시마연어, 무지개송어 등 7종을 관리대상 어종으로 지정하였음. 위원회 산하에는 재정행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이행위원회(Committee on Enforcement), 과학조사통계위원회(Committee on Scientific Research and Statistics)를 두고 있음.

NTC

(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기능)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됨.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상태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의 취약성 때문에 NTC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큼. NTC에 대한 GATT 규정으로는 GATT 제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b)의 (iii)을 들 수 있으며, UR 농산물협상시 TNC(무역협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협상초기부터 각국의 농업정책수행상 무역정책 이외의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입장은 상이하였음. 미국은 NTC를 식량안보(Food Security)로 한정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나 식량자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식량안보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국내 비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NTC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음. 따라서 단지 수출국입장에서 수출규제 및 금지조항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식량비축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케언즈그룹도 미국인과 유사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농산물생산 및 무역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식량안보는 곡물 및 사료곡물의 적정재고유지와 공급선다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특히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안보는 비효율적이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수출국에 대한 이익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었음. 일본은 최대 수입국으로서 NTC중 식량안보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적절한 국내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일본이 제안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은 국민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경조치(GATT 11조 2항 (c) i)는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특히 식량안보에 염두를 두고 있는 품목은 쌀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 만큼은 자유화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배후에 깔려 있었음. 스위스는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objective)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호비용은 해당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국내농업수준 유지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것이었음. 따라서 합의된 전체 자급률 범위 내 보조 및 보호조치 수단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11조의 개정을 통해 이를 GATT에 명백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우리나라는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최저시장접근율 또는 최소자급률로 표시되며,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국경 및 국내보호조치를 GATT규범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측은 NTC가 GATT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입국마다 관심사항 및 보호 품목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음. 우리나라가 NTC품목으로 제시하여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였던 쌀, 보리, 쇠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만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4개 품목 중 9개 품목은 이미 1989년에 1997년 7월까지 현행관세로 자유화하기로 약속했던 품목(BOP품목)들로서, 해당품목의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자유화시기를 최대한 늦췄음. 최고기는 수입제한기간을 200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율은 두 배 이상(20%→43.6%)으로 인상하였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 등 34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그밖에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 5개 품목은 1995년에 자유화하되 관세를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온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5개 품목은 국내외가격차 만큼 관세화하여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수입국들이 공조하여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1998년 9월 22일에 '식량순수입국에 있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제안서를 제출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였음. OECD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 ② 다원적 기능의 계량적 측정 ③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의 세 가지 범위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함.

NTE Report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미국의 1984년 통상법에 의하면 USTR은 미국의 상품·서비스의 수출, 미국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중요한 장애를 구성하거나 왜곡을 초래하는 외국정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Acts, polices or practise)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1984년 통상법은 USTR로 하여금 외국정부의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미치는 무역 왜곡적 영향(Trade distorting impact)을 평가하도록 하고, USTR의 보고서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NTE)라고 함.

Nuisance tariff

(**소액관세**)

관세 액이 너무 적어 과세에 드는 비용이 과세액 이상인 경우와 아무런 보호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관세를 지칭함.

Nullification or Impairment

(무효화 또는 침해)

GATT 제23조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다른 체약국이 동 협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특정조치 적용결과 및 기타 상태존재 결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본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 상대 체약국과 조정을 하든가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음. WTO 협정은 회원국 간 이익침해 조치로 인한 분쟁을 모두 분쟁해결절차로 통합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여 회원국의 권리·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유지를 위해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GATT 분쟁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면, 관세양허의 기술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양허품목에 대한 세분 또는 분류상의 차이는 GATT 제23조의 '무효화'(nullification)의 대상이 됨. 이는 노르웨이와 서독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에 의해 결론지어진 해석으로서 서독이 '정어리'와 비슷한 어류의 수입에 대해 노르웨이산 '정어리'에 비해 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자 노르웨이가 이를 GATT 분쟁위원회에 제소하였음. 그런데 1952년 동 위원회는 이 같은 서독정부의 조치가 GATT를 위반한 것은 아니나 노르웨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무효화」라고 결정하였음(동 위원회의 결정은 체약국단에 의해 받아 들여졌음). 즉 이 같은 세분류는 양국 간의 교섭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협상대표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지만, 다만 그 후의 서독정부의 조치는 노르웨이가 합리적으로 기대하였던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같은 분류상의 혼동은 노르웨이로 하여금 안정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인정된다는 것이 동 위원회의 논지였음. 이에 따라 서독은 보상조치를 제공하게 되었음.

NO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OAA

(Osaka Action Agenda, 오사카행동지침)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995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됨. 이 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이 채택됨. 오사카 행동지침은 ①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관한 10개의 일반원칙을 설정 ② 경제기술협력 13개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역내의 협력 방향을 제시한 행동지침임.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 증여(grants)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으로 구분됨. OECD는 경제발전의 도상에 있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선진국 주도로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를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DAC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증대와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원조공여에 대한 내부적인 상호심사를 하고 있음. 원조공여국인 DAC회원국은 EU 집행위 및 미국, 일본 등 선진 24개국으로 구성(우리나라는 2010년 11월에 가입한 24번째 회원국)되며, IMF/IBRD는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데 DAC는 공적개발원조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 9월 30일에 설립됨.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이 공산진영과의 대결구도 하에서 유럽경제부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부 유럽 국가들에 대해 『마샬플랜(Marshall Plan)』에 의한 원조를 실시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체로서 1948년에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구주경제협력기구)가 창설됨. 그 후 미국의 전후 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지위변화, 유럽의 급속한 경제부흥에 따라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체의 창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OEEC를 확대발전시킨 OECD를 1961년 9월 30에 설립함. OECD 회원국은 2012년 기준 34개국으로 유럽지역 24개국, 아메리카 4개국, 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가입을 신청 중에 있는 나라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임.

- 유럽(24)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미 주(3)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 아시아 및 대양주(5)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터키, 한국(1996년 12월)

OECD는 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체로서 회원국 경제성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향과 원칙, 지침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구이며,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님. 즉 OECD는 협상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회원국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기 위한 기구임. 다른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만 다루는데 반해, OECD는 경제정책은 물론 국제무역, 경쟁, 식량, 과학, 환경,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보호 등 모든 경제 및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임. 주요사항 결정은 각 회원국의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합의(consensus)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며,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 간 신뢰관계에 의해 준수되는 클럽형 성격을 가지나, 회원국 간 「동료 간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감. OECD는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경제협력력을 위한 기구이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경제적 비중과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과 세계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역할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개념정립기반을 마련하는 범세계적인 무역·경제관련 규범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즉, 투자 상의 장벽제거, 농산물생산보조감축 등과 같은 개념도 OECD에서 먼저 논의된 후 UR에서 국제규범화 되었으며, 무역과 투자, 환경, 경쟁정책, 노동, 규제완화, 뇌물공여방지, 국내정책의 상호조화 문제를 새로운 국제무역 이슈로 논의 중에 있음. 범세계적인 경제기구인 WTO, IMF는 물론 EU, NAFTA, APEC 등 지역협력체의 구성원이므로 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ECD 협정문 제16조에 의하면 신규회원국의 가입 결정은 「이사회에 초청에 의하여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하며, 가입효력(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생함.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1996년 말까지 OECD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1994년 5월 외무장관 서한을 통하여 가입의사를 공식전달한 바 있으며, 1995년 3월 29일 공식가입신청서를 외무부장관 명의로 제출하였음. 가입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OECD이사회는 1996년 10월 한국에 대하여 가입초청을 하였으며 국회는 1996년 11월 26일 OECD 가입비준동의안을 처리함.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12월 12일 프랑스정부에 OECD가입신청서를 기탁함으로써 29번째 정회원이 됨.

OECD/Act of OECD (제규범)

OECD는 정책협의기구로서 기본적으로는 국제규범(norms)을 정립하는 기구가 아니나, 소기의 자체목표달성을 위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고 있으며, 규범의 대부분은 경제운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원칙, 지침에 관한 것임. OECD와의 가입조건 협의는 규범에 대한 수락과 유보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임. OECD는 신규 가입국이 OECD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락 또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규범을 수락하고 가입하는 국가는 없음. 가입조건 협의 시 결정과 권고에 대한 수락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양대 자유화규약(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폐기물이동에 관한 결정,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등 여러 개의 핵심규범의 수락여부가 가장 중요함. OECD규범은 법적 의미가 있는 이사회의 결정(Decision of the council), 이사회의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협정(Agreement signed by organization)이 있으며, 정치적인 준수 의무가 있는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s), 약정(arrangements), 지침(guidelines)이 있음. 현재 OECD규범 수는 총 167개로서, 이중 농업규범은 12개(결정 9, 권고 3)임. 12개 농업규범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7개는 종자의 품종인증과 이동통제에 관한 규범이고 4개는 과채류와 트랙터의 표준제도운영과 관련된 규범이며, 나머지 1개는 도시근교지역 농업의 역할에 관한 규범임.

【결정(decision) : 9】

- (1) 농업용 트랙터의 공인시험을 위한 OECD표준코드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7)53 Final]
- (2) 국제무역에서 채소종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71)31 Final]
- (3) 국제무역에서 사탕무 및 사료용 무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6 Final]
- (4) 국제무역에서 옥수수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8)67 Final]
- (5) 국제무역에서 목초 및 유지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8 Final]
- (6) 국제무역에서 곡물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9 Final]
- (7) 국제무역에서 서브트리엔인 클로버 및 유사종자의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70 Final]
- (8) 국제무역에서 산림번식자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74)29 Final]

(9)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92)184 Final]

【권고(Recommendation) : 3】

(10)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 하에서 신선과채류의 상표부착과 증명표시를 위한 일반규정에 관한 이사회 권고[C(72)100 Final]

(11)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 하에서 신선 또는 냉장 과채류의 국제수송을 위한 포장표준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C(76)124 Final]

(12) 도시근교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사회 권고[C(79)18 Final]

OECD/Committee for Agriculture (OECD 농업위원회)

OECD 농업위원회는 1961년 9월 30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34개 전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옵서버는 아르헨티나와 국제기구 등임. 농업위원회 산하에는 3개의 작업반(Working party), 3개의 작업그룹(group), 4개의 회의(meeting)가 있음. OECD 농업위원회는 회원국 간 농업정책에 대한 협의 및 농업의 발전도모, 회원국의 농업현황 조사, 농산물시장 및 유통기능향상에 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며, 농업정책·시장 및 무역의 모니터링, 농업개혁 및 구조조정에 관한 활동, 농업표준·통계 및 연구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4년 9월 OECD/농업위원회에 옵서버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1994년 11월 OECD 제119차 농업위원회의 결정과 1994년 12월 19일 OECD이사회 승인으로 옵서버로 가입, 1995년도부터 OECD 농업관련 각종회의의 참가 등 OECD 활동을 본격 시작하였음. OECD 농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1998년 6월 한국농업에 대해 국별 검토(Country study)를 실시하였음.

OECD/Committee & Working Party (OECD위원회 및 작업반)

OECD는 현재 농업위원회 등 26개의 전문위원회와 보조성격의 4개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이 있음.

OECD/Convention (OECD 협정)

전문과 21개조로 구성된 OECD협정은 OECD의 설립목표와 동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방향, 활동방법, 규범제정, 이사회 등 기본조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협정의 수락은 OECD의 기본설립 목표에 대한 수락을 의미함.

OECD/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 각료이사회)

OECD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매년 1회(5월말이나 6월초) 개최되며, OECD의 주요 정책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발표함. 특히, G-7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사전입장 조정하고, OECD의 지난 1년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지침을 확정함.

OECD Hard Core Cartel Recommendation (OECD 경성 카르텔 권고)

가격담합이나 경쟁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반경쟁적 협정과 같은 핵심 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해 OECD 회원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OECD 권고안. 따라서 이 권고안은 OECD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반경쟁적인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더욱 비밀리에 진행되고 다수의 국가에 산재한 카르텔에 대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뇌물방지협약)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국내조치를 개시하도록 하기 위해 1997년 5월 OECD 이사회에서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를 채택하였음. 뇌물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명시, 법인에 대한 책임의 성문화, 처벌규정으로 뇌물을 주고 얻은 모든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등 본 협정은 전문과 17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져 있음.

OECD 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OECD 특별집행위원회)

OECD 회원국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되며, 금융, 무역, 투자 등 국제경제상의

주요문제를 검토함.

Official exchange rate (공정환율)

자유환율과는 달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로서 외환 수급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IMF의 평가와 관련된 환율을 지칭함.

Offer List 시장개방의 방식 중 R/O 방식의 협상에 있어 상대국의 시장접근의 개선을 요청하는 Request에 대해 자국이 시장개방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는 시장개방 계획서.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국제수역사무국)

동물검역에 대한 국제표준을 다루는 기구(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로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각국의 공통적인 위험을 인식하여 새로운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각국에 신속히 알리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근절을 위해 힘쓰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가축 방역에 대한 시험연구를 증진시키고 조정하고, 가축 전염병의 전파 경위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수집과 교환 등으로 가축 위생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가축 위생업무에 대한 국제협약을 조정하고 가축 방역시책을 실천하고 있음. 국제위원회·행정위원회·사무국·지역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조직되며, 각 위원회별로 회의가 개최됨. 특히 전문위원회는 구제역 상설위원회, 식육바이러스 연구위원회, 혐기성 세균 질병위원회, 살모넬라균증 연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연구위원회, 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 위생규약 연구위원회, 기생충 연구위원회, 어류 질병 연구위원회, 양봉 질병 연구위원회, 생물학적 제제 연구위원회, 가금 질병 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됨. 한국은 1953년에 가입하였음. 2003년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로 명칭을 바꿨으나, 약칭을 OCE로 유지하기로 함.

OMA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

미국은 섬유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국별 선별적인 양자간 규제협정을 OMA라고 칭하고 있음. 수출자율규제와 유사한 것이지만 협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GATT의 무차별대우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VER(수출자율규제)과 함께 회색지대조치의 전형임.

Openess (개방도)

경제활동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대외지향적인지를 보여줌. 개방도가 적을수록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자급자족경제임. 반대로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항은 대외개방도가 대단히 높은 예임.

Open Regionalism (개방적 지역주의)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역외국에 공여하는 것이 핵심. 1994년 저명인사그룹(EPG:Eminent Persons Group)이 제출한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

① 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취함 ②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③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④ APE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

1961년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1969년 미 국무부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청)가 수행해오던 해외투자보험 업무 등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 OPIC의 기본목표는 ①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② 미국의 수출과 고용증진 효과임. USAID가 주로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OPIC는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함.

Open tendering (공개입찰)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찰방식.

Opinion (의견)

EU이사회 또는 EU위원회가 주는 의견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 또한 이에는 EU입법초안에 대한 유럽법회의의 공식의견, EU가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이 EU조약에 일치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법원이 주는 의견, EU사법법원에 부탁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법률관이 유럽 사법법원에 주는 의견을 포함함.

Original Principle (생산국 과세원칙)

제품교역 시 직접세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재산에 대한 세금, 사회보장세 등을 제품생산국가에서 부과한다는 무역에서의 세금부과원칙의 하나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과세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임.

Osaka Declaration (오사카선언)

19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상회의 시 채택된 선언임. APEC은 경제발전수준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협력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와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함. 선진국은 선진국형 자유화 모델을 APEC에서 무차별적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개도국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과 발전단계, 취약부문 등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개방정책을 선호함. 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행동지침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충분히 자유화가 진전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 등 아시아 개도국의 관심분야에 있어서는 그들의 입장을 선도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APEC의 목표와 발전방향으로 공동번영, 경제협력, 자발성 및 다양성 고려 등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대통령이 제시한 APEC의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해 각 회원국 정상들이 공감함으로써, 이 방향이 21세기를 겨냥한 APEC의 활동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추진방향으로 정착됨. 또한 농업부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 및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다각적인 교섭 노력을 끈질기게 기울인 결과 농업 등 각국의 어려운 여건을 배려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는) 일반원칙(행동지침 8항)이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자유화의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 우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무역왜곡보조총액)

무역왜곡 보조총액이란 국내보조의 한 종류로서 감축보조(AMS) 감축면제보조(De-minimis) 과도기적 보조(Blue Box)를 합한 총액을 말함. 이러한 무역왜곡 보조 총액은 각 항목을 줄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총액을 줄여야 함.

Out-of-quota rate

(초과할당 관세)

할당관세 초과 수입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이러한 제도는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할당 내 물품의 수입시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

Outward Processing

(역외가공)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 물품 (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하여, 일정요건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Pacific beef/pigmeat market

(태평양 육류 시장은 구제역, Food and Mouth Disease; FMD)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고 교역하는 국가들과 지역으로 구성되어있다. FMD 지위는 OIE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여되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북아메리카와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포함됨. “태평양”이란 이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평양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붙여졌음

Panel

(패널)

WTO 분쟁해결 협의결과,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에 실패하거나, 협의기간중 당사국 모두가 협의에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요청국은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 설치의 요청은 서면제안으로 이루어지며 동 요청서에는 협의이행 여부 및 문제가 된 특정조치를 명시하고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함.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패널 설치 후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위임사항을 설정하여야 함. “관련협정의 규정에 의거 DSB에 회부된 사안을 검토하고, DSB가 관련협정 하에서 권고나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발견을 함.” 패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정부 및(또는) 비정부 인사로 구성됨.

- 패널 업무 및 패널에의 제소경험이 있는 자
- WTO나 기존 GATT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나 혹은 사무국(secretariat)에서 종사한 바 있는 자
- WTO하의 제반 관계협정이나 그 이전 협정하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
-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에 관한 강의나 논문발표 경험이 있는 자
-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고위실무 경험이 있는 자

분쟁당사국이나 당해 분쟁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인사는 당사국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리스트로 선정될 수 없음. 사무국은 패널리스트 선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인사 목록을 보유하여 상황에 적합한 패널리스트를 선정할 수 있음. 패널은 설치 후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리스트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으로 구성함.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분쟁 발생 시에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 1인의 위원을 개도국 인사로 위촉하여야 함. 부패성 물품 등의 긴급한 상황 하에서는 보고서가 3개월 내에 분쟁당사국에 제시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혹은 긴급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패널은 연장사유 및 보고서 제출예정일을

서면으로 DSB에 통보하여야 하나,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패널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패널 보고서에 기록된 개별 패널리스트의 의견은 익명으로 함. 패널은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동 국가들에게 패널의 서술부분과 조사부분 및 결론 등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분쟁당사국들로부터 견해표명이 없을 경우, 중간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간주됨. 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일방당사국이 DSB에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DSB가 총의에 의해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택됨. 일방당사국이 상소의사를 통보하면 동 보고서는 상소가 종결될 때까지 DSB에서 채택될 수 없음.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파리협약)

1883년에 체결된 파리협약은 베른협약의 자매협약으로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됨.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특허, 상표, 의장 등을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개의 나라에서 별개의 보호요건을 충족하고 출원 절차를 취해야 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리협약은 체약국 상호간에 다른 체약국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파리협약의 가장 근본적 원칙은 베른협약에서와 같이 가입국 내지 협약 체결국 상호간의 내국민대우이고, 다음으로 특허, 의장, 상표 등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한 가입국에 출원한 자는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것에 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는 규정임.

Parallel import (병행수입)

지재권 권리자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복제된 특허상품, 저작물, 상표부착물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지칭. 개도국들은 적은 액수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낮은 생산비용으로 제조, 생산, 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저가품이 원 권리자의 국가로 역수출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본국에서 생산, 배포되고 있는 상품에 타격을 줄 수 있음. 병행수입상품을 Black Market Goods(암거래시장상품)와 구분하여 Gray Market Goods라고 함. 병행수입은 저작권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지적재산권 수출국 입장에서는 역수입을 통한 국내기업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국은 병행 수입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EU는 EU 회원국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음. 반대로 개도국 등 지적 재산권 수입국 입장에서는 병행수입 허락여부를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기를 원함. TRIPs 협정 6조는 “협정 3 및 4조를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권리소진 문제를 분쟁해결 목적으로 다루는데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병행수입에 따른 분쟁의 분쟁해결기구 제소 가능성을 봉쇄함.

Parallelism (평행주의)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함.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뜻함.

Paris Club (파리클럽)

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대출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국과 채권국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 포럼은 채무기한 연장 및 기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방지를 추구함.

Partnership Agreement (신동반자협정)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평양지역 국가) 국가에 대한 EU의 무역특혜 부여 협정.

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경제인협의회)

1967년 설립된 20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학계, 정계, 그리고 재계의 연합으로 구성된 태평양지역 민간 경제협력기구. 국내 사무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내 한국위원회가 있음.

PBF (Pacific Business Forum, 태평양기업인포럼)

국내 교역 및 투자 촉진과 Business Network의 발전을 위해 각 회원국 기업인 대표 2명씩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으로 구성된 기업인 포럼.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태평양경제협력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이슈에 관해서 동일한 전망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업계, 학계 및 경제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0년에 설립되었음.

Peer review

(상호검토)

말 그대로 서로 상대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종의 감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음. 규범 의장초안에 따르면 어항건설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개도국은 보조금 지급전에 어업관리제도의 내용을 FAO에 통보하고 상호검토를 받아야 함. 즉, FAO 회원국들이 어업관리제도가 적절한지를 서로 검토하는 것임. FAO 비회원국들의 반발로 FAO에 준하는 전문가 그룹에 의하여 검토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나 검토 방법과 검토 범위, 검토 결과의 효력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많음.

Pest-or Disease-Free-Area

(병해충 안전지역)

WTO/SPS 협정의 병해충 안전지역이란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주무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을 말함.

Peace Clause

(평화조항)

WTO농업협정 13조의 적절한 자제(Due restraint)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내 및 수출보조 감축이 동 협정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동 협정이행 기간(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동안 보조금규정에 의한 규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이 조항은 UR농산물협상 타결의 계기가 되었던 1992년 미국·EU간 블레어하우스 협약에서 최종 합의되었으며, 동 조항의 의의는 GATT 94 및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농업협정과 보조금협정은 상이한 보조금 분류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조항에 의해 농업협정은 GATT 94 및 보조금협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 즉, 상계관세부과나 관세양허이익의 비위반 무효화에 근거한 조치발동여부는 농업협정에서 정하고 그 절차는 일반법인 보조금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유의할 점은 이 조항은 1992 유통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양허수준 이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적용되는 것이며, 즉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평화조항의 유효기간은 2003년임. 현재진행중인 WTO 농산물협상에서도 EU는 그동안 평화조항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는 유익한 역할을 했고, 회원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라 주장하고 있음.

Phytosanitary [plant health] certificate (식물위생증명서)

농산물 등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생산된 국가의 식물위생당국으로부터 발행된 증명서로서 해당 물품이 병해충 전파 위험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하는 서류.

PL 480 (미 공법)

1955년 농산물무역 및 개발지원법(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ment Assistance Act of 1955)으로서 미공법(public law)은 2차 대전 후 설립되어 유럽원조 및 경제개발, 시장개발, 외교정책 측면에서 그리고 동유럽 및 구소련의 시장경제 전환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음. 동 법은 미국이 '평화를 위한 식량(Food-for-peace)'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비교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산물 수출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이러한 형태의 수출을 이행하는 방법에는 재해구제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부, 잉여농산물을 타국에 기부하는 형식의 전략적 자재·재화·용역과 교환, 신용보조하의 수출 등 다수가 있음. 동 법에 의한 주요 수출농산물로는 밀, 사료용 곡식, 쌀, 면, 유채종자, 낙농제품 등이 있으며, 동 법 하의 비교역형태의 수출은 특히 제3국간의 생산자들에게 공급되는 세계농산물 무역의 흐름과 경제이윤에 대해 영향을 미쳤음. 1950년대, 1960년대에는 미국농산물 수출의 30% 정도가, 1980년대에는 쌀, 밀, 식물성유지 수출의 20%가 미공법에 의한 특혜판매 세일이었음. 이 당시의 특혜판매는 식량원조 및 시장개척 목적 이외에도 미국의 과잉농산물 처리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대만, 브라질, 페루 등이 이공법의 수혜자가 된 후 미국농산물의 주요 시장이 되었음.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복수국간 무역협정)

WTO회원국에게 자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일반적인 WTO협정이 아니라, 동 협정에 가입한 당사국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효되는 협정임. WTO협정에 부속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민간항공기, 정부조달, 국제낙농, 국제우육에 관한 협정 등 4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만 가입하였음.

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FFA 국가 중 외국어선의 자국 EEZ 입어를 허용하는 국가 간의 어업관리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2년 체결된 나우루협정(Nauru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of Common Interest)의 당사국들을 말함. 현재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PNG), 솔로몬, 투발루 등 8개 주요 참치자원 보유국이 가입되어 있음. 사무국은 솔로몬 호니아라에 있는 FFA 사무국이 대행하고 있음. 특히,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조업국들에 대한 최소 입어조건을 정하고 있음.

PIC

(Pe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사전에 획득하여야 하는 승인으로, 사전통보승인을 요청한 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가의 책임 기관이 승인.

PIK Programme

(Payment-in-Kind Program, 페이먼트 인 카인드 프로그램)

미국에서 상품의 공적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임. PIK 프로그램하에 정부가 농민에게 수확면적 감축동의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가 소유한 상품 형태로 직접 지불함.

Polluters Pay Principle

(오염자 부담원칙)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대두된 원칙임. ‘오염자부담원칙’이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OECD가 1972년에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에서는 희소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과 환경투자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방지

및 관리조치의 비용분담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동 원칙은 환경이 수용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결정한 상기의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 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음.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됨.

Pre-arrival processing

(도착전 처리)

수입 상품의 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서류 및 기타 필요 정보들을 세관 및 관련 당국에 사전에 제출하고 처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Price Undertaking

(가격인상약속)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덤핑조사 당국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으로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제시할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ROCAMPO

(프로캄포)

멕시코 정부에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높은 농작물이 무엇인지 제공해주고 현금으로 소득을 지원함.

Prohibited subsidy, red subsidy (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구분됨. 수출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지칭함. 무엇보다도 수출실적에 기초하거나 또는 수출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수출보조금임. 수입대체보조금은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여되는 보조금임. 즉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수입대체 등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면 수입대체보조금이 됨. 금지보조금에 대해서 교역상대국은 협의 또는 패널설치 요청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함.

Protocol on Biosafety (바이오안전성의정서)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CBD(생물다양성협약,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사용, 취급 등에 있어 적절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의정서로 2000년 1월 29일 채택되었음.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라는 도시에서 1999년에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고, 도시명을 따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로 명명.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잠정 반덤핑관세)

일단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반덤핑 협정 제7조에 의해 인정.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잠정 상계관세)

일단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 관세.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의해 인정.

Provisional Measure

(잠정조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

Progressive Liberalisation

(점진적 자유화)

WTO GATS의 목적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협상하는 것.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점진적 자유화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Port State Measures

(항구국조치)

항구국이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부과하는 조치임. 주로 해양오염, 선박안전 등을 규제하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과 구별됨.

Positive comity

(적극적 예양)

일반적으로 국제예양(comity)은 한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타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함. 이에 반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은 경쟁정책의 운영에 있어 한 국가가 관련양자협정의 규범 하에 다른 국가에게 그 국가의 경쟁법상의 행위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8년에 미국과 EU간에 체결된 positive comity협정이 이에 관한 가장 진보된 협정이라 할 수 있음. GATS 제9조(사업 행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적극적 예양원칙과 관련된 규정임.

Positive System (포지티브 시스템)

점진적 자유화 추진방식의 하나로서 개방이 가능한 부문 및 사항만을 열거하고 점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개방 가능한 부문 및 사항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임.

PPM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제조공정방법)

어떠한 제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원이 추출되고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따라 각국은 생산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공정요건(PPMs-related requirements)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환경오염 비용이 그 대표적인 예임. 오늘날 주요선진국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제조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만 국한되기도 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도 함. 대개 제조공정은 국내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규제와의 충돌은 야기하지 않음. 그러나 환경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촉진시키고 환경 유해적인 활동을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제조공정요건이 때로는 통상규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나아가 환경과 무관한 목표, 즉 제조공정요건을 위장한 통상규제조치로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제조공정요건은 통상과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 과제로 되고 있음.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구매력 평가는 국가 간 가격 수준 차이를 제거한 '통화 변환율'임. PPP는 미국 달러당 해당 국가 통화단위로 표시함.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 원칙)

사전예방원칙이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 분야 외에 식품안전 분야에도 동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BSE파동, 수입옥수수 GMO옥수수 사태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수입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이 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등 식품 주수입국이고 선진국에 비해 검역, 검사 인프라 및 위험평가 기술도 낙후되어 있어 농업 및 SPS관련 분야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음.

Preferences (특혜)

일부 교역 당사국에게만 부여되는 관세인하, 비관세조치 비적용 등의 혜택을 말함.

Preferences Erosion (특혜침식)

특혜무역을 통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해왔던 일부 개도국은 현재의 MFN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의 차이만큼의 특혜를 얻고 있었는데, DDA 협상에서 MFN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 이를 특혜 침식이라고 부름. 일부 개도국들은 관세 인하 논의 시 특혜 침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 원산지 규정)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한 특혜무역 협정인 EFTA, NAFTA, 칠레-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특정 국가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수입물품이 특혜관세대상국의 물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임. 특정 국가군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운용할 때 적용하는 규정도 여기에 해당됨. 비특혜원산지 규정이 일반 무역정책에 사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특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Preferential Tariff (특혜관세)

특혜관세란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를 의미. 과거 식민지국과 본국간의 식민지 특혜관세 제도가 있는데, 지금도 EU의 ACP국가나 지중해 연안 국가에 대한 특혜나 미국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등이 있음. 가장 대표적인 특혜관세는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인, 또한 1989년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개도국 간 관세 상의 특혜제도도 있음.

※ GSP, GSTP 참조

Preshipment Inspection (선적전 검사)

선적전 검사제도는 농산물 및 특히 공산품의 자국수입과 관련하여 동 상품의 품질(성능, 규격, 재질, 제작형태, 상태 등), 수량, 수입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관이 선적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 후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평가 능력이 없는 후진국이 실시하는 제도인. 선적전 검사제도는 그동안 국제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각국의 검사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자의적인 가격검정 등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개도국 내 수입자의 부정무역행위에 선적전 검사기관이 영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선진 수출국 측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가 자국의 수출에 규제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자의적인 선적전 검사제도가 야기하는 무역왜곡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의 제정이 강력히 주장되어 UR비관세 협상그룹에서 가장 먼저 타결을 본 협약중의 하나임. 선적전 검사제도는 UR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종래부터 GATT 관세평가 협약에 미가입한 후발개도국들을 위주로 하여 27개국이 활용하고 있음(인도네시아, 필리핀,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기니, 케냐,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자이레,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선적전 검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① 수입국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수출국현지에 파견시켜 검사종료 후 선적 ②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행사하는 방법 ③ 상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음. 대부분은 공인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입국 공무원이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도 있음. 선적전 검사전문기관은 세계적으로 6~7개의 다국적 회사가 있고, 한국에는 스위스계의 한국현지법인인 있음. 선적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수출물품검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종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선적전검사협정 제4조(독립적 심사절차)를 설치하여 선적전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독립기관에 의하여 분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Principle of Comprehension (포괄성 원칙)

19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 자유화추진원칙으로서, 이

포괄성의 원칙은 UR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과 유사한 개념임. APEC에서는 이 원칙을 APEC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한 추진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시 말해, APEC의 15개 행동강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국한테 불리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서 이행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함.

Principle of Flexibility (신축성 원칙)

19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원칙으로서, 이 신축성의 원칙은 APEC이 지향해 나가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회원국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 및 무역당사자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시 말해, APEC 각 회원국 간에 무역 및 투자가 자유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자는 원칙을 뜻함.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

1988년 미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1302조와 제1303조에서 사용된 용어로 각각 슈퍼 301조(super 301)와 스페셜 301조(special 301)로 알려져 있음. 슈퍼 301조는 USTR로 하여금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증가에 가장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임. 스페셜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 즉,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은 ①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가장 악명 높은 법, 정책,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에 대해 공평하고 균등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 ② 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을 거절하는 국가들을 말함. USTR은 일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해야 함. 이들 국가는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으나 USTR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

Precautionary Approach (예방적 접근)

어업관리 원칙 중의 하나로 수산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기초하여 신중한 통찰력을 적용하여 어업관리조치를 취하는 방법임. 1995년에 채택된 유엔공해어업협정은

예방적 접근을 수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부재가 보존관리조치의 채택을 연기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무역특혜협정)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반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됨. 예로써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로메(Lome)특혜,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 등을 들 수 있음.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 (생산자 은퇴계획)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형태의 은퇴농, 이농대상 보조로서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자격을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사람이 은퇴 또는 비농업활동으로 이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히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함.

Product Specific AMS (품목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품목특정적 AMS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감축약속이 면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농산물별로 보조금 지원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임(A 품목의 AMS : 시장가격지지 + 감축대상 직접보조 + 기타 감축대상 보조). 다만, 농업협정에 제6조 5항에 규정된 생산제한정책하의 직접지불은 감축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하여 계산되나 이행기간 당해 연도 Current AMS 계산 시에는 이를 AMS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축의무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생산탄력계약)

미국의 대표적인 직접지불제도, 생산탄력계약제도는 1996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1973년 이래 유지되던 시장가격지지제도인 '부족불지불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음. 1996년 농업법에 따라 농가는 정부와 '생산자율계약'을 맺고 농지보전 요건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의 '계약지불금'을 받음. 과거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가에 직접지불하며, 지급액은 7개 품목별(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로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과거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불. 예를 들어 1991년~1995년 밀을 재배하던 농가가 콩을 재배하더라도 밀에 대해 설정된 예산으로 지불함. 연도별 총 보조예산이 1996년 5,570백만 불에서 2002년 4,008백만 불로 대체적으로 감축되도록 되어 있음. 미국에서 계약지불제도의 수혜자는 약 56만명 가량이고, 연평균 1인당 지급액은 9,100달러가 됨. 계약면적에는 경작자율성(Production Flexibility)이 부여되는데 과일, 채소류(렌즈콩, 녹두, 완두콩 제외) 이외의 모든 품목의 재배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1996년~2002년의 7년간임. 기타 지급조건으로는 1985년 농업법의 경지보전요건 및 습지보전조항 준수, 계약된 경지의 비농업적, 상업적, 공업적인 사용 금지,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계약 종료와 아울러 지불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계약위반 기간 중 받은 지불금(이자 포함)을 반환 등이 있음. 계약지불제도가 생산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EU는 계약농지에 과채류 식부금지급무는 생산중립에 위배되고, 계약지불제도가 비록 현재의 생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5년간 생산실적에 바탕을 두고 있고 과거 5년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급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 비록 현재의 생산규모와는 관계가 없는 고정액의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Prohibited Subsidy (금지 보조금)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 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함.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정이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함(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는 각각 60일과 120일임).

Protocol (의정서)

UR협상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협상결과와 동 협상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협정문, 결정문, 양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Protocol of Accession (가입의정서)

한 국가가 WTO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법적 문서를 가리킴.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가입 작업반 보고서(Working Party Report)는 신청국의 무역정책·제도, 관세·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전반적 협상내용을 담은 개괄적 현황보고서를 말하며 가입의정서와는 다름.

Provisional Safeguard (임시 세이프가드)

일반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에 있어 특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

PSE (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추정치)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총 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수입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시의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PSE의 구성요소는 시장가격지지, 생산기준지불, 경작면적/사육두수 기준지불, 과거실적기준지불, 투입재사용 기준지불, 투입억제 기준지불, 농가소득기준지불, 기타지불 등 8가지 범주이며, 지방정부보조 및 세금감면도 포함됨. PSE 계산 시 제외사항으로는 농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예산지출(식품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보조), 농업부문과 관련이 없는 지출, 농업부문에서 자원을 탈농시키는 조치와 관련된 지출임. OECD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측정 발표되는 계산 대상 기본품목수는 밀, 옥수수, 기타곡물(보리, 귀리, 수수), 쌀, 유지작물(대두, 유채, 해바라기 씨), 설탕(Refined equivalent),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양모, 계란으로 13개임. OECD Country Study시 PSE 계산에서는 각국의 농업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액이 총 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품목을 포함함.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 보리,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로 8개 품목이 해당됨.

* $\%PSE = 100 \times \text{시장가격지지액} + \text{재정지불액}$

$\text{총생산액} + \text{재정지불액}$

PSI

(Principal Supplying Interest, 주요 공급국)

GATT 28조의 양허철회 재교섭 시 양허철회국이 협상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최초교섭국 이외의 당해품목 제1위 수입국을 말함.

Punta del Este Declaration

(푼타 델 에스테 선언)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공식 출범하였음. 회의의 종료와 함께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세계 농업무역제도의 개혁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주요 이슈로서 확인하였음. 선언은 크게 상품분야의 13개 협상분야와 GATT 기능분야, 서비스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품분야에는 관세, 비관세조치, 열대산품, 천연자원기초상품, 섬유 및 의류, 농업, GATT 조문, 긴급수입제한조치, MTN codes,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쟁해결, TRIPs, TRIMs가 포함되었음. 동 선언문에 따르면 농업협상의 목표는 농업분야의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수입접근과 수출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개선하여 GATT 규칙과 규율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었음. 동 협상을 지배하는 원칙은 ① 특히 수입 장벽의 감축을 통해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② 모든 직간접적인 보조와 기타 직간접적으로 농업무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치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확대함으로써 경쟁 환경을 개선하며 ③ 위생 및 검역규정과 장벽이 농업무역에 대하여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한다는 것임.

PO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QR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제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무역 장벽으로 일명 쿼터(quota)라고 함. 쿼터란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그 한도를 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 쿼터제도가 국제무역에 널리 사용된 것은 1930년대 초로서 국제관세협정 하에서는 수입급증을 이유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인상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쿼터제도로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수량제한과 관련된 GATT조항으로는 제15조와 18조가 있는데 제15조는 국제수지방어를 이유로 한 예외와 밀접하게 관련된 GATT와 IMF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항(국제수지문제와 관련)을 포함하고 있음.

Qualified Majority Voting

(가중다수결)

EU 회원국의 이해와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조화시키기 위해 회원국의 규모에 따라 투표수를 차등 분배하고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결의가 성립하게 하는 의사결정제도. EU 이사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회원국의 국력(인구수 등)에 따라 가중된 투표수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함. 189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단일 유럽의정서(SEA, 단일유럽협정)에 의하여 기존의 만장일치제가 가중다수결제로 변경됨. 2007년에 조정된 EU 27개국 회원국의 투표권(전체 345표)은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각 29표, 스페인·폴란드 각 27표, 루마니아 14표, 네덜란드 13표, 그리스·체코·벨기에·헝가리·포르투갈 각 12표, 스웨덴·오스트리아·불가리아 각 10표, 슬로바키아·덴마크·핀란드·아일랜드·리투아니아 각 7표, 라트비아·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룩셈부르크 각 4표, 몰타 3표로 할당됨. 전체 투표수 345표 중 255표 이상이 되어야 가결되며, 255표 이상이 되어도 찬성국의 수가 회원국 수의 과반에 못 미치거나, 찬성국의 총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2%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부결됨.

Quad

(협상 주요 4개국)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국제통상 협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4개국. 종전에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를 지칭하였으나, 최근 DDA 협상에서는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을 의미함(이를 4개국은 New-Quad라고도 불림).

Quota (수입할당)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 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그 한도를 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쿼터는 입법조치가 없어도 행정당국의 재량의 의해 시행할 수 있는 편리한 수입억제수단이며 무역제한의 효과가 확실하여 국가의 무역관리에도 좋은 수단임. 관세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수입의 억제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쿼터는 수입량을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이 많으며, 관세는 수입국의 가격변동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기능은 작동하지만 쿼터는 가격기능을 배제하는 특성 때문에 쿼터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 종류에는 총량쿼터(Global quota), 국별쿼터(Country quota) 등이 있음. 수입할당제는 1931년 프랑스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래 양차대전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고, GATT의 발족이후에도 쿼터제의 폐지에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선진국의 공산품 수입에 있어서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이는 GATT가 세계무역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부분 중의 일부로 평가되고 있음. GATT에서는 쿼터의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요건 규정을 두고 있음. 쿼터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쿼터 시행으로 인한 차별대우의 가능성으로 쿼터는 가변적이고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 상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차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GATT에서는 최혜국대우를 제1조에서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GATT 제13조에서 쿼터제 실시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원칙 준수규정을 따로 두어 이를 당조하고 있음.

※ Global quota, Country quota 참조

Quota Auction (수입권 공매)

수입권공매제도는 GATT규정이나 WTO협정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과거 호주·뉴질랜드가 UR이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음. WTO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등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권 판매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당초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으로 표시하였다가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밤, 대추, 참기름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서는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였음. 1995년~1996년 WTO 농업위원회에서 WTO 협정 부합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TRQ 참조



A silhouette of a person in a field, bent over and planting a small tree. The person is on the left, and the tree is on the righ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silhouette is black.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RAM

(Recently Acceded Members, **신규가입국**)

WTO 신규 가입 국가들을 말하며, 이 나라들은 WTO 가입 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감축했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적게 감축할 수 있음.

Ratchet

(역진방지장치 또는 자유화후퇴방지)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함.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경제협력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FTA,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임.

Reciprocity

(상호주의, 호혜성)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 관행이나, 상호주의가 협정체결의 요건은 아님. 상호주의에 따른 교섭결과는 MFN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

Recycling

(재활용)

폐기물을 일정한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Recovery)과정과 재사용(Reuse)을 포괄하는 것으로 물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임.

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신재생에너지지침)

구속력 있는 지침에 따라서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에너지 혼합물에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이 20%가 되어 한다는 EU의 법안임. 수송연료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10%로 특별규정함.

Red · Amber · Green Light

(신호등 분류방식)

국내농업보조에 대한 UR협상의제는 소득 및 가격지지를 포함한 무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금에 관한 GATT규율 강화와 점진적인 감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 신호등 분류방식은 UR협상초기 미국이 제안한 방식으로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철폐대상(red), 규제대상(amber), 허용대상(green)으로 분류하고, 철폐대상(red)정책은 10년 내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1989년 중간평가회의 이후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음. 감축대상(amber)정책에는 정부수매와 같은 정부관리가격,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농가소득지원, 투자 및 수송 등에 대한 보조 등이며, 허용대상(green) 정책은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장(decoupling), 환경보존 및 유지, 재해보상, 선의의 식량원조, 식량비축 등에 대한 보조이며 규제대상(amber)정책은 AMS를 통해 감축한다는 것임. 예컨대 미국의 의도는 농산물에 대해 국내의 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경보호조치와 국내보조정책 등에 의해 생기는데 그중 국경조치에 의한 부분은 관세화로 수용하고, 나머지 국내보조정책부분인 국내재정지출은 AMS에 의해 감축해 나간다는 것임.

※ Agricultural Subsidy 참조

Regionalism

(지역주의)

지역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말하며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EU, NA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세계무역중 약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 하에 있으며, 한국, 일본, 홍콩을 제외한 WTO회원국 등은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괄목할 만큼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협정의 중요성 증대가 WTO가 추구하는 다자체제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즉, 지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문제임.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임.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임. FTA에서는 FTA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함.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음.

※ FTA 참조

Regional Value contents (역내 부가가치 기준)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eciprocity (상호주의)

국제관계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GATT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로, 권리나 편의 등에 있어서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하여 인정해 준다는 원칙. GATT체약국이 무역자유조치를 취할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동 조치를 상호 교환하는 주의를 상호주의라고도 하며, 무역 면에서 자국과 상대국은 공평하고 평등한 시장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상호주의 개념은 상당히 불명확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국가 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을 한다는 것 외에도 교환되는 무역혜택의 동등성을 내포하고 있음. 즉 국제무역의 상호주의는 다자 혹은 양자 간에 있어서 각국이 제공하는 양허가 국가 간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국가관계가 협조적일 때는 균형 있는 국가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국가관계가 경쟁적일 때는 상호 연쇄적인 보복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호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도국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GATT협정문 제4부의 개도국조항(37조)과 이와는 반대로 개도국도 경제개발의 진전 정도에 따라 GATT의 권리의무를 점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동경라운드의 Framework협정 및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에 상호주의 개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여 상품시장개방 등 국제

무역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GSP혜택도 줄여나가거나 GSP에서 졸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하고 있음.

※ National Treatment, MFN 참조

Request (시장개방요구서)

양허 협상 시 일방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에게 요구하는 교역 자유화 목록. 상대국가에 대한 관세율 인하 내지 개방요구를 담고 있음.

Residual Import Restriction (잔존수입제한)

GATT상위법인 수입제한조치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 GATT가입 후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기로 잠정협정 의정서나 또는 가입의정서 상에서 약속해 놓고 자유화하지 않은 품목을 소위 잔존수입제한품목이라고 하는데, GATT의 특정 상대국이 이의제기를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묵인되었던 수입제한조치를 말함.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 (자원폐기계획)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형태 보조로서 정부의 감산정책 시행에 따른 소득보상적인 성격으로 그 수혜자격은 토지 또는 가축을 포함한 그 밖의 자원을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농지의 경우 최소한 3년 이상 휴경을 하거나 가축의 경우는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함.

Reuse (재사용)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생(Recovery)과 구분되며, 재활용(Recycling), 감량화(Reduction)와 함께 3R로 통하고 있음.



Retaliatory tariff

(보복관세)

상대국의 관세인상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WTO 체계 하에서는 일방적인 보복 관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Retaliation

(보복)

한 체약국이 취한 관세인상 또는 기타 무역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체약국이 취하는 대응조치로서, GATT 23조는 양국이 협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Reservations List

(유보안)

정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으로,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제반 구체적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 유보안은 부속서 1 및 부속서 2(Annex 1 & Annex 2)로 구성되어 있는바,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로 지칭되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역진방지장치(ratchet)가 적용됨.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의 적용이 면제됨.

Revealed Comparative Advnatage

(현시비교 우위지수)

B. Balassa가 개발한 일종의 경쟁력 지수로서 세계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임. 일반적으로 1보다 클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봄.

Reverse Consensus

(역만장일치제)

WTO 분쟁해결기구인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 회원국 중 어떠한 회원국도 그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경우 만장일치로 간주하는 제도를 역만장일치제라 함.

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국제수산물기구는 그 관할범위에 따라 전 지구적(Global), 지역적(Regional), 소지역적(Sub-regional) 기구로 분류되는데 지역적 수산물기구 중 실제로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기구를 말함. 예를 들면, OECD 수산물위원회는 수산정책 협의체로서 실제로 어업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물관리기구가 아니며,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는 일정 수역과 어종에 대한 수산물관리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수산물관리기구로 분류할 수 있음. FAO는 전 세계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18개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나라는 10개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가입하고 있음.

RFS and RFS2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

2007년 에너지자립안전보장법(EISA)에서 요구하는 에너지비 수송부문에 규정된 재생가능 연료 사용에 대한 미국의 기준임. RFS2는 2010년과 그 이후의 RFS 프로그램을 개정한 것임.

Rice Millers Association

(미국 미곡도정업협회)

미국 쌀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899년에 설립된 순수민간단체로 쌀 도정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모임임. 정부의 보조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이 협회에는 미국 전체 39개 도정업체 중 대규모 도정업체 28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1984년부터는 곡물거래업자, 가공업자, 창고업자, 정미기계제조업자 등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여 회원 수가 총 60여 개 사에 달하고 있음. 당초 RMA의 주요기능은 정보수집, 연구분석, 관계기관과의 연락, 쌀 품질의 표준화·등급화사업 등을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쌀의 해외수출촉진을 위한 정치적 활동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쌀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쌀 생산농가가 직접 이 협회의 회원이 될 수는 없으나 회원업체의 상당수가 농협계열이어서 이들 미국 농협을 통해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도 함. 농협계열의 회원으로는 '라이스 랜드', '캘리포니아 쌀 생산자협동조합' 등 56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미국농협이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의 약 50%를 취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캘로스(Calrose : California rose의 약칭)', 쌀로 유명한 '피르미社' 등 일반 도정업체들을 포함하면 미국 쌀 생산량의 90% 이상을 RMA 회원사가 장악하고 있어 쌀 산업에 관한 대정부 로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RMA가 쌀 시장

개방 압력단체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9월 쌀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일본을 미 통상법 제301조에 의거, 제소하면서부터임.

Right of hot pursuit (추적권)

연안국의 관할수역인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외국선박을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관할수역으로부터 공해까지 추적하여 나포, 인치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말함.

Rio Declaration (리우선언)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있은 후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강령으로서 150여 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Risk Assessment (위험평가)

WTO/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 제5조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동·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평가에서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검역 또는 기타 처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Risk Management (위험관리)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된 관리방안·규제정책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R/O

(Request & Offer System,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국제적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양허협상에 있어서 개별국가끼리 관심 있는 품목을 상호 제시하여 품목별로 관세를 인하나 개방정도를 협상하는 방식.

Rollback

(규제철폐)

GATT에서 말하는 Rollback은 GATT에 위배되는 현존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에 일치시키는 것(Phasing out or bring into conformity with GATT of existing measures which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agreement)을 의미하고 있음. 광의로 해석할 때 Rollback은 이미 GATT가 성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GATT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관세의 완전철폐에 있으며, 이미 7차에 걸친 다자간협상에서 관세인하협상이 있어 왔기 때문임. 반면 협의로 해석할 때는 동경라운드 때부터 Rollback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음. 즉, 동경라운드 이전까지 행해진 6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결과 관세에 의한 장벽은 거의 소멸된 반면, 각종 비관세적인 규제조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거래가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음. 그 결과 동경라운드 협상에서는 수량제한소그룹(QR-sub-group)이 설치되어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협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결과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실질적인 Rollback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80년대 접어들면서 뉴라운드 협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82년 GATT각료선언은 GATT위배 조치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Refrain from maintaining any measures inconsistent with GATT...)을 포함함으로써 Rollback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했음. 제네바에서 198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나타난 선·개도국이 보는 Rollback입장은, 선진국은 Rollback을 “모든 무역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규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고 선·후진국 모두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GATT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수입 제한적 조치의 철폐”를 Rollback으로 간주하여 선진국만이 실시해야 하며 정해진 시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개념의 도입으로 맞서왔음. 일반적으로는 늦어도 UR 협상종료 시까지 합의된 시한 내에 GATT와 불일치하는 무역상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함.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R

이에 따라 역내의 국가에게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됨. 유사한 용어로서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으로 표현하기도 함.

Rules (규범)

협상 분야 DDA 9개 협상 분야(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의 하나로 WTO 보조금협정 및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를 주로 논의함. 보조금협정 개정은 다시 수산보조금과 기타 일반보조금의 2개 소분야로 나뉨.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금지보조금의 범위와 개도국 특별 대우임.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임.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각국의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원산지규정 자체가 무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각국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행 등이 공정, 투명, 예측 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고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기존 GATT협정 제9조는 원산지 표시문제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가 국제무역에 있어 비용증가효과 등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본래의 원산지 규정은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원산지 규정에 관련한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국제협약으로서 관세협력이사회(CCC)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은 특별한 원칙 채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D1),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D2), 원산지 증명서 관리에 관한 부속서(D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산지 규정상의 주요기준으로 ① 완전생산기준과 ②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가져오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 변형의 원칙적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주요 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이 있음. 그러나 동 부속서를 수락한 국가는 20여 개국에 지나지 않고 미국도 가입하지 않아 국제협약으로서의 규범성이 약함. UR협상과정에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지역주의 확대로 말미암아 각국의 원산지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 장벽적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EC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에 대해 명료하고 통일성 있는 조화로운 원산지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명료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 제정을 목표로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요규정은 향후 각국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특혜 원산지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0년 5월 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중 원산지규정(D1), 원산지증명(D2) 부속서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원산지규정은 교토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과거에는 수출과 관련된 원산지 증명 발급제도에 치중하였으나 1991년 7월 유통시장 개방이후 수입 질서 내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원산지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수입선다변화 제도에서도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1994년 WTO 원산지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근거해 각국의 원산지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통일원산지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RVC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비율)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방식 1: 공제법

$$RVC = \{(AV - VNM) / AV\} * 100$$

- 방식 2: 직접법

$$RVC = (VOM / AV) * 100$$

(RVC : 역내가치비율, AV : 조정가격,

VN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VO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Safety Net (소득안전망)

소득안전망(Safety Net)이란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로서, 예기치 못한 소득·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보호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말함. 미국은 지난 1998년 이래 농산물 가격추세의 하락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자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 최근에 농가안전망 법안 도입이나 연방 작물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담보용자, 작물소득보험, 재해지원, 정부재고조절, 생산자 재고보조, 농가신용, 세계지원 및 민간 위험관리 수단 등이 '안전망'의 주요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SAB (Standing Appellate Body, 상설상소기구)

WTO분쟁절차상 패널 판정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립되며 7인으로 구성됨. 상소기구의 작업절차에 따라 한 사건에 3인씩 교대로 상소업무를 담당함.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재지명될 수 있음. 구성원은 법률과 국제무역 및 협정상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서 어떠한 개별국가의 정부와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동 상설 상소기구에는 분쟁당사국만이 상소할 수 있으며, 법률적 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함.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 5개국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스와질란드 등 5개국임.

Safeguard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

특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서 GATT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덤핑,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입에 대해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것이므로 이는 한시적으로 발동하여야 하며, 또한 규제국은 관련 수출자에 대해 협의와 보상을 하여야 함.

종래 선진국들은 GATT 제19조 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보다는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를 선호하였는바, 이들 조치는 보상이 필요 없고, 또한 국가별로 선별하여 동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GATS에서는 근거조문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농산물협정, 섬유협정에서 특별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 부여되는 특별대우. 개도국 우대라고도 부르며, 개도국의 관세 감축의무 완화, WTO협정상 이행의무 완화, 기술지원 등으로 반영.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수산보조금 개도국 특별대우)

2007년 11월 규범 의장초안에 따르면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어항건설 등 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은 선진국에는 금지되나 개도국에는 금지대상이 아니며, 어선건조 및 어업운영비도 조건부로 허용하고, 유예기간도 개도국은 4년으로 선진국의 2년보다 김.

SBS

(Simultaneous Buy and Sell, 업계 간 자율거래제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범위의 국내수요자에게 기본 쿼터의 일부를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유통 사업단의 개입 없이 국내 수요자가 직접 상담·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제도임. 2001년 1월부터 폐지되었음.

Schedule of Concessions

(양허표)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함.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함.

SEAFO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남동대서양수산기구)

남동대서양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 어류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 확보를 위해 2001년 4월에 협약서명을 거쳐 2003년 4월에 설립됨. 사무국은 나미비아 알비스 베이에 위치함. 2012년 12월 기준 한국, EU, 나미비아, 노르웨이,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 7개국이 회원국임.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ion Agreement,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한국과 멕시코 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 측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에 FTA의 전 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A)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2004년 10월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음. 멕시코 정부는 한국 측의 자유무역협정 요청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자유무역협정보다 낮은 수준의 전략적경제보완협정을 협상할 것을 제안함.
※ SECA는 모든 상품부문을 협상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유화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FTA와 상이하나 협상 여부에 따라 FTA와 유사한 효과 도출 가능

Section 201

(미 통상법 201조)

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 통상법 201조를 지칭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조항.

Section 22 waiver

(22조 면제)

수입농산물이 미국의 농업계획을 방해할 경우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이나 (일반관세보다 높은) 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 22조를 일컫는 말로, 미국은 1955년에 GATT로부터 농업조정법 제22조 적용을 무기한 면제받았음.

Section 301 (미 통상법 301조)

미국의 많은 수출산업들이 외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외국시장에 진출하는데 겪고 있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 USTR, 즉 미 무역대표부를 관장기관으로 하는 제301조가 '1974년 통상법'의 제정 시 신설되었음. 이후 통상법 301조는 계속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3편 제1장에 포함된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의 규정을 지칭함. 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됨. 또한 이 조항은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미 통상법 제301조는 WTO체제라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대표적인 국내입법이므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

Sectoral Approach (분야별 접근방법)

분야별 관세철폐와 유사한 개념. DDA NAMA 협상에서는 모든 업종별로 동일하게 감축하는 관세감축 공식 외에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관세를 완전히 없애거나(무세화), 관세를 낮추어 각국의 관세를 비슷하게 하는(관세조화)하는 분야별 협상이 진행 중임.

Sectoral Negotiations (분야별 자유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특정 분야의 관세를 완전히 없애거나(무세화), 관세를 낮추어 각국의 관세를 비슷하게 하는(관세조화) 분야별 협상을 지칭함.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전기·전자, 자동차, 수산물 등 15개 분야가 자유화 대상으로 제안되었음. 수산물 무세화는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중국, 태국 등이 제안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은 무세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 시 비농산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여 미국과 중국·인도가 강제적 참여 여부를 놓고 대립하였음.

Selectivity (선별성)

셰이프가드 협정 상 수입제한조치 부과 시 실질적 공급국과의 약정을 통해 또는 최근 기간 동안의 각국 공급량에 따라 수입쿼터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그러나 동 협정 제5조 제2항

(b)은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불균형적으로 증가했을 때 예외적 배정을 허용하는데, 이를 선별성이라고 함. 즉 무역조치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 비차별적으로(MFN 대우)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또는 몇 나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취하여지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제한된 소수의 수출국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이것이 수입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이 국가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Sensitive Products (민감품목)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률에 있어 일반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됨.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품목의 범위 및 대우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임.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관세 감축보다 낮은 감축이 가능하나, 대신 관세할당 증량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늘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Shrimp-Sea Turtle 사건

미국은 새우잡이 트롤 중 바다거북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므로써 질식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TED (Turtle Excluder Devices)를 달도록 의무화한 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TED를 장착하지 않고 잡은 새우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미국 내 수입 판매를 금지(1996년 4월). 미국의 동 조치에 대해 1996년 10월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은 GATT 11조 1항(수입허가제도의 금지)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함. 미국은 이에 대해 동 조치가 GATT 20조 일반예외에 해당됨을 들었으나, 패널은 1998년 4월 TED가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지의 여부는 WTO의 고려사항이 아니며, 개별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를 행함에 있어 WTO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미국의 조치는 미국역외의 개별적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조치로서 다자간 무역체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한 것으로 20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함.

Serious Prejudice (심각한 손상)

보조금 지급에 의한 부정적 효과의 하나.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르면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 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보조금지급, 특정산업 또는 기업의 영업손실 보조, 직접적인 채무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조금 지급으

로 상대국(제3국)에서 수입대체(수출감소), 보조품목의 가격하락, 시장점유율 변화 등의 사항 발생 시에는 심각한 손상이 발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대응조치가 가능함.

SG

(Safeguard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WTO 양허관세 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 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음. 이를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선진수입국들은 종전 GATT체제 하에서는 세이프가드 조항의 요건이 까다로워 동 조치 사용을 기피하고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 양자차원에서의 자의적·선별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선호하였음. 이런 조치들은 GATT 체제 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며,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위협하였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색지대조치를 GATT 규범 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1970년대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도쿄라운드(1973년~1979년)시 본격적인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타결에 실패하였고 UR협상에서는 SG조치의 발동을 쉽게 하는 대신 회색지대조치를 철폐토록 하였음. 섬유류의 경우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간 동안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 분야는 Emergency Safeguard의 별도의 SG규정을 설정하였음.

〈 WTO 협정상의 Safeguard 비교 〉

| UR 분야별 | SG 협정 | 섬유·의류협정 | 농산물협정 |
|-------------|--|--|---|
| 명 칭 | Safeguard | 잠정 Safeguard (Transitional Safeguard) | 특별 Safeguard (Special Safeguard) |
| 대상품목 | 제한 없음 | GATT 미복귀품목 (기규제품목 제외) | 관세화대상 농산물 (아국:보리 등 118개) |
| 제도의 존속기간 | 무차별 발동(수량제한시 수입급증 국가에 대한 선별적 적용가능) | 국가별 발동 | 무차별 발동 |
| 발도요건 |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발생 또는 우려 |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발생 또는 실질적 우려 시 | 물량이나 가격이 발동기준 초과 •수입물량이 시장 접근 기회((10% 이하, 30% 초 과)를 초과한 경우(각각 125%, 110%, 105%) •수입가격이 '86-'88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한 경우 |
| 발동절차 | SG 위원회 통보 및 이해관계 국과 사전 보상협의 (최초 3년간 보복면제) | TMB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규제수준 사전협의(미합의시 TMB의 권고) | 농업위원회 조치 10일 이내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적용 조건 협의(보복면제) |
| 조치수단 | 관세율조정 및 예외적 수량제한 | 수량제한 | 관세율 조정 |
| 조치존속 기 간 | 4년 이내 피해구제필요기간 (8년까지 연장가능) | 연장 없이 3년 간 또는 당해품목의 GATT복귀 시점 중 먼저 도래시까지 | -물량기준: 당해 연도 말 -가격기준 시: 별도 제한 없음 |
| 조치한도 | 관세율 조정 : 피해구제 범위 내 | 최근 1년간 수입량 보장 (초년도 수준을 매년 6% 증량) | -물량기준: 당해 연도 관세의 1/3범위 내 추가 -가격기준: 하락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

Set-aside Program (휴경제도)

곡물생산자들의 과거 기준면적 중 일정 비율을 현행 생산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EU의 프로그램임.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휴경률은 프로그램 실시기간 동안 매년 조정됨.

Singapore Issues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을 지칭.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이들 주제들이 무역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 작업을 진행기로 결정한 데 따라 붙여진 이름.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동 이슈들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추후 결정기로 한 바 있으며, 2004년 7월 패키지에서 4개 이슈 중 무역원활화만 DDA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싱가포르 각료회의)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임.

Single Farm Payment (단일직접지불제도)

2003년 CAP 개혁에 따라 EU는 현 생산 결정이나 시장 발달상황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독립된 농가 기반 직불제를 도입함. 이 제도에 따르면 농민이 수령했던 과거의 직불금 수준에 근거해 정함. 토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연도에 적합한 헥타르(마초지역 포함) 규모로 직불 기준금액을 나누어 자격여부를 계산함. 새로운 SFP를 수령한 농민은 자신의 농지를 훌륭한 농경과 좋은 환경조건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과일, 채소, 감자(table potatoes)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농지에서 재배할 수 있음.

Single Undertaking (일괄수락원칙)

다자통상협상에서 협상 국가들이 WTO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원칙. 따라서 일부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음. 우루과이라운드가 7년 반의 협상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자간 무역협상은 장기간의 협상기간을 필요로 함. 일괄협상은 광범위한 범위의 협상에서 개별 참가국에게 자국의 이익추구와 이익의 안전보장을 할 수 있고, 다른 의제들과의 trade-off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타결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음. 특히, 일괄타결방식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국내 정치여건상 만들어내기 어려운 특정분야의 양허를 일괄협상에 의하면 보다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임.

Simple average tariff rate (단순 평균 관세율)

수입물량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관세율의 산술 평균.

Sliding scale

DDA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해서 G10(한국, 일본 등 수입국그룹)이 주장하는 것으로, 민감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감축하고 저율관세쿼터(TRQ)를 증량하는 방식을 말함. 즉, 관세감축이 커지면 저율관세쿼터 증량이 작아지고, 관세감축이 작아지면 수입쿼터 증량이 커지는 방식을 의미함.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또는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임.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함.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 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됨.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임.

SOM (Senior Officer's Meeting, 고위급회의)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를 위해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연 4회~5회 개최되는 APEC의 실질적 핵심운영기관인,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동향 및 현안그룹 및 10개의 Working Groups의 진전현황, 각료회의의 지시사항 및 위임사항, 신규 회원국 가입정책, 새로운 협력분야 등 APEC 활동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면서 주요 결정사항은 각료회의에 상정함. 각 회원국의 차관보급 또는 국장급 고위간부가 수석대표이고, 의장은 주최국의 고위간부가 됨.

SOMTI

(Senior Officials' Meeting for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

ASEM 관련 용어. 2년마다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담당부서 차관보 또는 국장급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회의로, 아시아·유럽 간 경제협력 특히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촉진방안을 주로 논의함.

SP

(Special Product, 특별품목)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세인하와 관세할당물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발도상국 농산물을 말함.

Specificity

(특정성)

특정성이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상계가능보조금이 됨. 즉 보조금 지급이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을 명시함이 없이 일부 기업에 제한되거나, 소수 특정기업에 지나치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지칭하며, 특정성이 있는 경우는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특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① 보조금의 공여가 특정기업으로 명백히 한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으며, ② 보조금의 수혜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경제적이며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며, ③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수, 각 기업에 배정된 금액 및 공여기관의 재량권행사방식을 고려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Special 301

(스페셜 301조)

스페셜 301조는 1988년에 도입한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통상법 182조를 일컫는 것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통상법 조항임. 이에 의하면 USTR은 미국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는 국가나 또는 지적재산권에 근거한 미국

인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 301조 절차에 소요되는 기한이 보통 12개월임에 비하여 스페셜 301조는 이를 6개월로 하는 신속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Spaghetti-bowl effect (스파게티볼 효과)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경우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FTA의 양산에 따른 무역규칙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그와티(Bhagwati)와 파나가리아(Panagarya) 교수가 사용한 용어임. 예컨대, 각 FTA에서 다른 원산지규정을 사용함으로써, FTA를 하나 이상 가입한 국가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하고, 수출입 기업도 상이한 규정에 적용받는 애로사항 발생.

SPC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남태평양공동체 사무국)

22개 태평양도서국 및 속령에 대한 기술지원, 정책자문, 훈련 및 연구 활동 제공 등을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뉴칼레도니아 뉴메아에 본부가 있음. 동 기구 해양자원과(Marine Resources Division)의 해양어업프로그램(Oceanic Fisheries Programme)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참치자원평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Special treatment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

관세화 의무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 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음.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 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은 4~8%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한국은 관세화 유예 10년째 해인 2004년 재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7.96%까지 증량한다는 조건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인정받은 바 있음.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우대)

보통 개도국들에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것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 조치를 뜻함. WTO 농업협정 제15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개발도상국은 감축 약속의 이행 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최빈 개도국에게는 감축약속 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Specific Duty (종량세)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종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 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 됨.

| 국제가격 | 증가세(100%) | | 종량세(1,000원/kg) | |
|-------------|-----------|-------|----------------|-------|
| | 관 세 | 수입원가 | 관 세 | 수입원가 |
| 1,000(원/kg) | 1,000 | 2,000 | 1,000 | 2,000 |
| 500원(원/kg) | 500 | 1,000 | 1,000 | 1,500 |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 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증가세(Ad Valorem Duty)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SPRFMO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현재 설립중인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참치 어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제1차 설립협상이 시작된 이래 2009년 11월에 채택한 '남태평양공해수산자원보존관리협약' 발효에 대비, SPRFMO위원회 절차규칙, 사무국운영·과정규칙 논의하였으며,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협약문을 채택하였음. 설립협상에는 한국, 중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관심대상 어종은 전갱이(Jack Mackerel)임. 남태평양 전 수역의 수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이 2012년 8월 24일 정식 발효됨.

SPS Agreement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 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 협상을 통해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체결됨.

SRM

(Specified Risk Material, 특정위험물질)

환경오염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분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염물질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접·간접으로 중대한 위해(危害)를 주는 물질이 판명됨에 따라 이들을 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특정 유해물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대기 유해물질과 수질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있음.

SSG

(Special Safeguard, 특별긴급관세제도)

UR협정에 의해 당시 수입제한품목들은 모두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의해 국내외가격차로 개방하였음. 따라서 개방에 의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도록 한 피해구제제도임. 대상품목은 UR협정 당시 관세화로 개방한 농산물 중 각국의 C/S에 명기한 품목으로 국한되며 발동요건 충족 시 산업피해 조사 없이 자동 발동되는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는 수삼 등 22개 품목을 2014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

SSM

(Special Safeguard Measures,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농촌개발·생계유지를 위해 개방에 의해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 새로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지정할 수 있음.

STABEX

(Export Earning Stabilization System, 수출소득보상제도)

단일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ACP국가들의 일정한 수출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와 ACP국가 간 로메협약(Lomé Convention)을 통해 마련한 특혜제도. 본 제도에 따라 EU는 ACP국가의 상품 중 EU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커피·코코아·땅콩·바나나·면화·야자수·철광석·목재·피혁 등 12개 품목 중에서 해외시장가격이 하락하여 APC국가로부터 수출액이 일정수준을 밑도는 경우, EU가 무이자로 용자를 제공하는 제도.

Standing Committee

(상설위원회)

WTO의 상설위원회에는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수지위원회(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Restrictions), 예산·행정위원회(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있음.

Standstill

(현상/규제 동결)

원래 GATT상 Standstill은 “모든 회원국이 GATT 가입과 동시에 GATT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Obligation not to introduce trade restrictive measures not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agreement).”는 의무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1947년 GATT가 설립된 이후로 많은 회원국들은 GATT에 위배되는 무역제한 조치를 취해 왔음. GATT에서 최초로 Standstill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분야는 보조금 분야임. 즉, GATT제약국은 GATT 가입당시 1958년 1월부터 1차 산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했음.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한 체약국들은 이러한 보조금 철폐약속을 1957년 11월 30일 개최된 GATT총회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함과 더불어 1955년 1월에 존재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소위 Standstill(규제 현상 동결)을 약속하게 되었음. 이처럼 보조금 분야에서부터 제기된 Standstill은 GATT회원국 간 새로운 무역제한조치가 확산되면서 모든 무역 분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음. Standstill의 확대적용은 1960년 GATT의 제5차 무역협상인 Dillon라운드 당시 협상지침에 관한 각료선언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GATT에 위배되는 관세 및 기타 보호조치의 증가를 중지하는 것(Shall refrain

from increasing tariff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in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general agreement)”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명시함에 따라서 Dillon라운드 협상기간 중 Standstill은 하나의 협상원칙이 되었음. 한편 이러한 Standstill원칙은 GATT 제6차 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었는데, 케네디라운드 협상계획에 관한 1963년 5월 21일자 각료선언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수출에 반하는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인정할 수 없다(No new tariff or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rected by industrialized countries against the export trade of any less developed country).”라 명시했음. 이러한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원칙은 70년대 최대 다자간 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미 관세양허가 이루어졌으며 관세에 의한 규제수단보다는 비관세에 의한 수입규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 Standstill없이 곧바로 「수량제한의 철폐」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제거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임.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시 이러한 구상은 계속되는 보호주의 추세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1980년대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Standstill이 대두되었음. 1982년 GATT 각료선언은 Standstill을 GATT가 취해야 할 중요 행동계획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Standstill을 “GATT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으며 국제무역을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무(Undertake to refrain from taking or maintaining any measures inconsistent with GATT and to make determined efforts to avoid measures which would limit or distort international trade)”로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있음. 이 같은 정의 아래 개도국은 뉴라운드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선진국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협상의 대상으로서 Standstill원칙의 적용이 선·개도국 모두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서 선·개도국들은 뉴라운드 추진을 위한 고위실무회담(Senior Officials Meeting)과 1986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의장은 Standstill을 “현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Preventing deterioration of an existing situation)”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한편 1986년 9월말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는 신국제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를 개시키로 합의하였으며 동시에 협상기간 중 Standstill 및 Rollback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참가국 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의 감독을 위해 GATT무역협상위원회에 다자간 특별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음.

State Trading (국영무역)

국가가 직접 또는 국영기업업을 통하여 하는 무역으로, 일반적으로 국영무역이란 국가 간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 국영무역 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며 특히 농업분야에 다수가 존재함. UR협정에서는 국영무역기업을 “수입 또는 수출방향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적이거나 특별한 권리, 특권 등이 허용된 정부 기업과 비정부기업”으로 정의. 원래 GATT 17조에는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잘 준수되지 않아 UR협상을 통해 국영무역기업의 정의, 통보의무 및 역통보 등 그 운영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작업반을 설치하여 각 회원국의 국영무역 기업 활동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WTO협상에서 국영무역이 논의되는 배경은 독점적 또는 특별한 권리와 특권(exclusive or special rights and privileges)을 가진 시장지배력을 통해 시장접근을 막고, 수출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무역환경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임. 그러나 국영무역제도는 GATT체제 출범과 함께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온 합법적인 제도임. 국영무역은 수입물량의 일괄적인 관리, 농산물 가격안정, 국내 유통질서 및 수급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으며 시장접근물량의 일반적인 관리에도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음. 현재 WTO협정상 수입국영무역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매우 투명하게 운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출국영무역에 관한 규범체계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쌀, 보리, 쇠고기, 고추, 마늘 등 17개 품목(2012년 HS 4단위 기준, HS 10단위 기준은 97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함에 있어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겠다고 UR 이행계획서에 표시하여 이행하고 있음.

* GATT 17조 참조

State Trading Enterprise (국영무역기업)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3년마다 전면통보를 해야 하며 매년마다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C/S에 근거하여 당초 쌀, 쇠고기 등 19개 품목의 관세쿼터 물량의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협중앙회 등 8개 기관을 국영무역기업으로 WTO에 통보하고 운영하여 있으나, 1998년 1월부터 실크가 실수요자추천으로 수입관리방식이 변경되어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 등 17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1995년과 1996년에 WTO에 보고된 가장 큰 수출국영무역기업은 캐나다 밀 위원회, 뉴질랜드 낙농위원회, 호주 밀 위원회 및 퀘벡랜드 실탕공사 등임. 1992년과 1999년 사이에 4개의 대형 국영무역기업들은 각기 매년 9억 달러 이상의 대표상품을 수출했음. 기타 수출 국영무역기업들은 곡물, 낙농제품, 육류, 설탕, 과일 및 채소를 수출했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수의 유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호주는 보리, 설탕, 밀, 쌀과 같은 상품에 대한 유통위원회를 보유하고 캐나다의 곡물, 낙농제품, 맥주, 포도주, 증류주에 대해 유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유통위원회는 국내유통 및 무역권한을 축소시켜 왔을지라도 육류, 유제품 및 광범위한 범위의 원예제품을 유통시켜 왔음. 남아공화국은 1996~1997년에 많은 유통위원회를 해체했고 1997년 7월에 수출보조금제도를 종료했음. 남아공화국의 가장 큰 유통 국가들에 의해 마케팅 되는 품목에는 사과, 포도, 감귤류, 옥수수 등이 있음. WTO 회원국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수입 국영무역기업은 일본 식량국과 인도네시아의 BULOG임. 두 기업은 1993~1995년 동안 매년 평균 10억불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했음. 일본 식량국은 가장 큰 일본농업관련 국영무역기업임. 반면 일본의 기타 국영무역기업들은 담배, 비단, 몇몇 낙농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함. 1967년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BULOG은 1993~1995년 동안에 여러 개의 농산물 수입, 쌀 수출과 수입상품에 대한 유통 및 가공을 관리, 국내 쌀 생산량 수매 및 재고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 1998년 BULOG의 독점거래 권한을 폐지하였지만 인도네시아 금융위기 동안에 그 기관은 농산물의 수매, 재고관리 및 쌀 수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 말레이시아(쌀), 필리핀(쌀, 옥수수) 및 태국(감자, 차, 담배) 역시 주요 품목에 대해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Stock to Use Ratio (사용 대비 재고 비율)

곡물의 사용 대비 재고 비율은 곡물의 국내사용 대비 재고의 비율로 정의됨

Stock to Disappearance Ratio (물량 대비 재고의 비율)

주요 수출국이 국내사용 및 수출을 합한 물량 대비 재고의 비율을 의미함. 밀의 경우 미국, 아르헨티나, EU, 캐나다,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8대 주요 수출 국가임. 잡곡의 경우 미국, 아르헨티나, EU, 캐나다,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이 주요국임. 쌀은 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 미국이 이 비율계산을 이용함

Straddling Fish Stock (경계왕래어족)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인근 공해를 왕래하는 어족으로 참치, 적어, 대구, 명태 등이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2항은 동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Structural Fund (구조기금)

EU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의 전직, 전업지원, 산업의 구조조정, 빈부격차 해소,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U가 조성한 기금.

Subsidy (보조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조금의 개념은 “특정사업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단체, 사적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으로 정의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함) 및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됨. 그러나 WTO 제정정상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이와 같은 정부재정의 이전적 지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WTO 협정상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에 관한 일반규정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규율한 농업협정,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있으며, 이들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다음의 경우 WTO 규율대상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① 특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금(금지 보조금) : 부속서 1에 예시된 수출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② 다음의 지원이 동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성을 띠고 지원되는 보조금(상계조치 가능보조금) :
 - i)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책임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에 예시된 3가지 기능의 유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ii) GATT 1994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 ③ ②항에 제시된 보조금이 존재하나 특정성이 없거나 또는 특정성은 있으나 협정 제8조 2항에 제시된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 지원 등은 허용됨(허용보조금)

둘째, 농업협정에서는 보조금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보조(Export subsidy)로 분류하고 국내보조는 농업생산자를 위한, 농업 농촌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조치로서 정부, 정부대행기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출과 징수감면조치(Revenue forgone)를 포함함. 수출보조는 직접적인 수출보조 등 6가지 유형(제9조 1항)의 감축대상보조와 이를 우회하는 여타 수출보조로 보조형태를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은 지원 조치인가의 여부는 지원목적, 대상자, 기대효과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임.

셋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구체적인 보조금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제15조에서 특정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WTO 서비스교역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실질적변형기준)

원산지판별에 사용하는 규정 중의 하나임.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3개의 주요 기준은 ① 그러한 변형이 HS 코드에 기초한 세번의 변경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 ② 그 변형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그 변형이 특정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임.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

WTO GATS상 지역경제통합(RTA)의 요건 중 하나. 즉, 통합협정의 서비스 분야별 대상범위가

상당한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 대상범위의 규모나 정도는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 등을 통해서 결정되며, 어떤 경우라도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해서는 안 됨.

Sunset Clause (일몰조항, 자동소멸조항)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덤핑관세가 종료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관세 부과일이나 덤핑 및 피해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음.

Super 301 (슈퍼 301조)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현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을 근거로 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1988년 종합통상법이 새로이 도입한 절차. 이에 의하면, USTR은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동 보고서에서 언급한 무역장벽관행 중 우선관심관행, 우선관심국가를 지정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우선국과 관행을 지정한 후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함. 따라서 슈퍼 301조는 조사개시절차에 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협의와 보복조치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 3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즉 일반 301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는 반면 슈퍼 301조는 그러한 제소 없이 USTR에 의한 우선국과 우선관행 지정이 있으면 바로 조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일반 301조보다 경직성 및 일방적 성격이 강함.

Support price (지지 가격)

정부 정책담당자가 직, 간접적으로 국내시장이나 생산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지정한 고정가격임. 관리되는 모든 가격제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최저보장 지지가격이나 목표가격이 정해져 있음. 이 가격은 생산과 수입에 대한 양적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금, 조세, 수출보조금, 공공비축제도 등과 같은 관련 정책조치를 통해 관리됨

Surveillance Body (감시기관)

GATT 도쿄(Tokyo)라운드 등에 의거, 체결국단이 채택한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에 관련된 일국의 무역정책 및 현상유지, 점진적 철폐약속을 감시하는 GATT상의 기관으로 1986년에 설립.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개념임.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이사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음.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의 제15차 이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 등은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SVE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소규모 취약국가)

세계 교역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에 대해선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폭을 낮춰 적용함. 감축 폭은 협상 중이며, 해당 국가는 볼리비아, 쿠바, 온두라스 등임.

Swap Transaction (스왑거래)

외환시장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환매매 당사자가 현물환 매매와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동일 금액의 선물환 매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Swap Agreement (상호교환협정)

환율안정을 위해 2개국 중앙은행 간 체결되는 통화의 상호교환협정으로 각 중앙은행은 자국의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서로 바꾸어 예치하여 차관도입이라는 형식 없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게 됨.

Swiss Formula (스위스 공식)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 감축 방식의 하나 GATT 제7차 다자간 협상인 도쿄라운드(1973~1979년)에서 스위스가 제안하여 공산품 관세인하에 적용된 방식임.

$T = t * a / (t + a)$ T: 공식적용 후 세율, t: 공식적용 전 세율, a: 관세율 상한

2000년 1월 개시된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국들은 농산물의 고율관세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공식과 같은 공식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a가 상수가 아닌 각국의 평균관세율을 반영하는 공식은 지라르(Girard) 공식 또는 ABI(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공식이라고 불림

Swing (전용)

한 수출국가가 한 상품의 쿼터 일부를 다른 제한된 상품의 쿼터로 활용하는 것.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무역조정 지원조치)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무역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막기 보다는 보상(Compensation) 원칙에 따라 그 피해자나 피해계층이 시장개방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 전업지원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미국 연방 무역법에 관련 규정이 명되어 있음.

TAC

(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어획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어류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관리 장치로 보아야 하고, 국가 간 공동 이용자원의 합리적 관리 수단의 필요성에 의한 UN해양법 협약의무이행사항임.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제주도에서 '소라'에 대한 자체TAC를 이미 실시한 바 있고, 2008년 기준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 대상은 고등어 등 어류와 게류, 패류 등으로 점차 확산됨.

TARIC

(Tariff Integre Communautaire, EC 통합관세)

유럽단일시장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관세제도의 조화를 통하여 개정된 EU의 통합관세제도.

Tariff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조세. 즉, 상품의 수입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말하며, 종가세(가액의 백분율), 또는 종량세(예:100kg당 10원)로 부과됨. 관세의 기능으로는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보호로 나눌 수 있음. 무역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높은 관세부과를 통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중요하지만 세계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해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상을 GATT출범 이후 여러 번 해왔음. UR 시장접근분야 협상은 농산물·공산품·수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수입제한·보조금지급·검사·과세·통관 등)을 완화를 통한 교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농산물과 공산품·수산물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농산물은 시장개방(수입제한품목의 관세화), 국내 및 수출보조금의 축소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산품·수산물은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무세

화), 관세의 하향 동일화(관세조화) 등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농산물의 경우 각종 비관세 장벽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함께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 후 6년 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5%, 평균 36% 이상, 개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에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 이상 감축하도록 하였음.

Tariff Binding (관세양허)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를 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단 양허한 관세는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 없이는 인상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양허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이 수반됨. GATT 2조는 관세양허(표)와 관련된 규정이고, 28조는 양허표의 수정에 관한 규정임.

Tariff Concession or Concessin of Tariff (관세양허)

GATT 협정에서 체약국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관세양허임.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commitment)으로 이 약속은 해당국가의 양허표(schedule)에 나타나 있음. 이때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 함.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은

- ① 현행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관세인하(Reduction)
- ② 현행세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Binding)
- ③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준 이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한 계점(Ceiling)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경우에는 양허된 세율보다 관세율 수준을 더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허한 범위를 초과해서 관세장벽을 강화할 수는 없음. 일단 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상대국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관세를 양허관세(Bound tariff)라고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관세체계에 수용될 때 이를 총괄적으로 국제협력관세라고 함. 관세양허는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양허표는 GATT 제2조 7항에 의하여 GATT협정의 일부가 됨. 관세양허에는 자국이 어떤 품목을 양허할 것인가와 양허품목의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양허대상에는 일반적인 수입관세 외에도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과세 및 과정금도 포함됨. 양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양허의 수정 및 철회를 하고자하는 국가는 주요국과 수정이나 철회의 보상조치를 교섭하여 합의하고, 또한 실질적

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국가와도 협의를 거쳐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Tariff Binding, Ceiling Binding 참조

Tariff Dispersion (관세격차)

관세격차 문제는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로서 국가별, 품목군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일반적으로 산업 보호적 관세율체계를 유지할수록, 국별로 수입관리의 필요성이 큰 품목일수록 세율이 세분화되고 품목군 내에서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국가별로 가장 높은 관세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군은 곡물류로서 우리나라는 곡물류와 전분에 대하여 수백%의 양허관세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는 0%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어느 품목의 세 번을 얼마나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중요한바, 세분화할수록 관세목적에 부합하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치즈(HS 0406)의 경우 미국은 156개, EU는 50개, 일본 10개, 한국 5개의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반면에 가금육(HS 0207)의 경우는 한국이 33개, 미국 19개로 분류하고 있음.

Tariff Escalation (경사관세)

상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 즉 원료품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로 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로 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뜻함. 이는 자원수입국의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나 자원수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진.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 협상에서 자원수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공단계별 관세율 상승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누진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보호무역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Tariff Quota (관세할당)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WTO 바나나패널판정에 의하면 관세할당에도 GATT 13조에 의한 비차별원칙이 적용됨.

Tariffication

(관세화)

관세 이외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 효과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입규제를 철폐(수입자유화)하는 대신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국내의 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Tariff Harmonization

(관세조화)

회원국의 관세를 일정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참여하여 분야별 관세조화를 하는 것을 일컫기도 하고,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을 통해 모든 국가의 모든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수렴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Tariff Heading

(세번)

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의 번호로 6단위에서 10단위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음. HS의 골격은 품목 표 전체의 분류방식에 관한 통칙(GRI)과 21부(section), 97류(chapter), 1241호(heading), 5,013 소호(6단위 소호)의 4차원과 주(註)로 구성됨.

Tariff Increase

(관세인상)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특정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임. GATT에 양허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나, 양허된 품목의 경우는 safeguard나 당초 관세인하 교섭 상대국 및 주요 이해관계국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인상할 수 있음.

Tariff Line

(관세품목)

관세율표상 분류된 품목.

Tariff-jumping Investment (관세회피 투자)

고관세 장벽이나 기타 국경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타국가의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행위.

Tariff Peak (고관세)

High tariff라고도 하며,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Tariff Peak and Valley (불균등 관세)

품목별 관세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5% 수준이나 쇠고기,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40%를 상회하는 반면 유지종자, 채소 등은 무관세인 소위 품목별 불균형 관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Tariff Reduction (관세인하)

GATT는 주기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억제하여 자유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GATT의 중요목표가 관세인하이므로 GATT설립이후 다자간 협상들은 주로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이 주가 되었었음. 관세인하협상은 상호주의를 토대로 국가 간에 이익의 상호교환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관세인하 협상 방식은 품목별 협상방식(Request-Offer)과 선형인하방식(Linear Tariff Reduction)에 의한 협상방식이 있음. 품목별 협상방식은 GATT의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일반관세인하 협상에서 사용되었고, 이후 케네디라운드나 도쿄라운드에서도 농산물과 같은 민감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 품목별 협상방식은 수많은 품목에 대한 협상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협상이 매우 복잡하고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음.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은 양자협상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어느 두 국가 간의 협상결과가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다른 회원국가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됨. 선형인하 방식은 협상참가국이 대상품목에 대해선 기존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삭감하는 방식이며 짧은 시간에 많은 인하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관세율이 같은 비율로 삭감되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은 국가, 높은 상품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상태로 남는

단점도 있음.

Tax on Tax (중첩적 과세)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됨. 수입자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특소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됨.

TBR (Trade Barriers Regulation, 무역장벽규정)

EC 설립조약 113조 및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3286/94에 근거한 EU의 주요 통상법. 역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었음. 일반적으로 EU판 Super 301조로 간주되나, 미국의 301조가 국제규범상의 분쟁해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데 비해 EU의 조치는 필요시 WTO분쟁해결절차를 거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함.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를 정하는 것으로 강제성 여부에 따라 표준(Standards : 비강제적),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 강제적) 2가지로 분류함(제1조).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ment procedures)란 어떤 상품이 표준과 기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인증(Certification)과 시험·검사(Testing & Inspection)가 주요 분야임. TBT는 도쿄라운드 MTN Code 중 하나였으나 TBT 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기술장벽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UR협상의 결과 WTO체제로 이관되었음. 도쿄라운드에 따른 TBT Code는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2일에 가입하였음. 한편, TBT협정의 적용예외로서 ①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② 안전 ③ 환경보전 ④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명세인 강제규범분야(normative practice areas)가 인정되고 있음. TBT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

한 모든 상품(서비스는 제외)에 적용됨.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새로이 출범하는 SPS협정이 적용되는 부문은 TBT협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조달 관련도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조달협정에 따름.

TCE/TDE

(Trade Creation Effects, Trade Diversion Effects,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남.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함.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함.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 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됨.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하도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 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 시 동 협정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이하 생략(동 양해 서문)”,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 협정에 관한 제2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동 양해 제12항).”

TDE

(Trade Distortion Equivalent, 무역왜곡상당치)

1989년 UR중간평가 시에 농업보호를 위한 총량측정치(AMS)를 계산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PSE(생산자 지원상당치)방식으로 모든 가격지지 및 소득지지정책을 지원하되 농업보조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Cairns Group 중 캐나다에서 주로 주장한 것으로 그 내용은 미국과 유사하나 PSE가운데서 무역왜곡적인 조치만을 고려하지는 일종의 수정된 PSE개념을 말함.

TE

(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치)

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의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의미하며, $TE = (\text{국내가격} - \text{국제가격}) / \text{국제가격} \times 100(\%)$ 식으로 계산.

Tariff Concession Modalities

(관세양허 모델리티)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고 협상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Tariff Barriers

(관세장벽)

무역수지 개선 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각국에서 관세장벽 강화.

Tariff Cap

(관세상한)

현행 관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관세율을 이행기간 중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상한. DDA 비농산물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의 경우 계수가 관세상한의 역할을 하게 됨.

TPL

(Tariff Preference Levels, 관세특혜수준)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

Tariff Quota Underfill Mechanism (미소진 매커니즘)

농업 협상에서 각국의 TRQ 소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Territorial Sea (영해)

영토(領土)에 딸려 나라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바다로 연안해(沿海), 내해(內海), 만, 해협(海峽)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海岸線)을 기준(基準)으로 하여 너비 3해리(5.558km)까지가 보통이나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함.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고 있음.

Third Party (제3국)

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분쟁당사국 이외의 제3국이 협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당사국 및 DSB에 통보하여야 함. 제3국은 관련협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의 참여가 가능하며 협의 참여 요청이 기각될 경우, 제3국은 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분쟁당사국 및 분쟁사안과 관련된 기타 협정회원국의 이해관계는 패널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패널에서 제기된 조치가 관련협정 하에서 제3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해당국은 본 양해하의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가능한 기존의 패널에 회부됨.

Technical Regulation (기술규정)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강제규범을 의미함. TBT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과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임. 또한 물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데 따라 용어, 기호, 표시 또는 분류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들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음.

Technical Barriers

(기술장벽)

제품 또는 생산 공정에 관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하며, 무역에서 주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써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함. 예를 들어,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시장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각국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출국의 공업표준에 각각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결과적으로 각국의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제품 제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 제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잠정적인 기술 장벽이 되며, 또한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인증과 검사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됨.

Tiered Formula

(구간 공식)

DDA 협상에서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 감축방식. 관세율에 따라서 정해진 구간에 배치를 한 후 구간별 감축률에 따라서 관세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높은 구간에 해당할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Threshold

(구간 경계)

DDA협상에서 구간 공식에 따라서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에서의 구간별 경계.

TMB

(Textile Monitoring Body, 섬유감시기구)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상품교역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협정이행의 감시, 각국의 조치의 협정에의 일치여부 검토, 분쟁해결 등을 그 목적으로 하며 1명의 의장과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됨.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무역협상위원회)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 UR협상 시 전반적 활동을 감독했던 각료급 최고의결기관으로 UR협상 시 위원회 산하에 크게 상품협상 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GNS)으로 나누었음. 각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회의에 상정되고 TNC회의에서는 각 협상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고 그룹 간의 조정을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하였음.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음.

Tokyo Round

(도쿄라운드)

GATT의 7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02개국이 참여하였음. 1973년 9월 동경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데서 유래함.

TRQ administration

(TRQ 관리)

국영무역 방식, 실수요공매 방식, 선착순 방식 등 각국이 자국의 TRQ를 관리하는 방식.

Total AMS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총보조 총액측정치)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규정에서는 산업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금지되느냐 또는 상계조치 대상이 되느냐가 검토되지만, 농업협정은 농업보조의 계량화를 통하여 감축해 나가야 하므로 보조효과의 계량화가 협정이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다양한 정부지원효과가 단일의 수치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지원정책과 지원방법에 따라 보조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음. WTO 농업협정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해서 보조금감축 기준설정, 이행평가, 또는 감축의무면제 수준의 결정 등을 위해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EMS(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및 Total AMS라는 보조금 계량화 방법을 마련하였음. Total AMS란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모든 감축대상보조액과 모든 품목불특정적인 감축대상보조액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모든 감축보조상당액의 합을 의미함. 또한 동 총감축대상보조액은, 기준기간동안 제공된 보조 즉, 기준 총보조총액측정치(Base Total AMS), 이행 기간 중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이행 기간 중의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

(Current total AMS)는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됨. Total AMS의 산출은 품목특정적 보조(Product-Specific AMS) 및 보조상당액(EMS)이 선진국은 당해 연도 품목생산액의 5%, 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품목의 AMS와 품목불특정 보조가 당해 연도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품목불특정 보조를 합산한 것이 Total AMS임. 이 Total AMS가 당해 국가의 국내보조 감축의무의 표시이며 양허표에 명시되고, 매년 보조이행 실적의 점검도 이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감축대상 품목특정적 보조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별 보조금의 감축은 이 Total AMS 범위 내에서 1992 유통년도 보조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축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감축폭을 달리할 수 있음.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권한)

무역협상권한은 미국의 무역법으로, '무역촉진권한'이라고도 불림. 1974년의 신속협상권(fast track authority)을 2002년 8월부터 부시 행정부에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로 개칭한 것임. TPA는 의회가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 없이 90일 안에 승인 또는 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 의회는 행정부에 협상목표를 제시하면서 협상권을 위임할 뿐 부분 수정 등 통상적인 의회 절차를 취할 수 없음. 그러나 미국 상원은 TPA 법안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이 합의한 무역협상 결과를 상원이 최종 수정할 수 있도록 한 TPA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미국 업계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전권을 맡기지 않고 의회가 어느 정도 손질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임.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Pacific Four Agreement: P4)로 2006년에 출범했으나, 2010년 미국, 호주 등이 P4 협상에 참여하면서 공식명칭도 P4에서 TPP로 바뀌었으며, 현재 협정문 개정 및 확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2013년 4월 현재 12개국(P4+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9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음. 최초로 2011년 타결을 목표로 설정한 이래 협상 타결 시한은 매년 연장되고 있음. TPP 성사 시 2011년 기준 전 세계 명목 GDP의 38.2%를 차지(일본 포함 시)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경제통합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 하나인 GATT 기능강화 분야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합의된 분야로서 1989년 이후 시행중임. TPRM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 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 조치가 만연하여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국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국 제도의 명료성을 강화하고 이해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기능의 원활화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TPRM의 결과가 특정 GATT규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음.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TPRM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그 검토주기는 세계교역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름. 즉, 4대 교역국(미국, EU, 일본, 캐나다)은 2년을 주기로, 그 다음 5위~20위까지의 16개국은 4년마다 검토를 시행함. 여타 회원국은 6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나 최빈개도국의 경우는 더 긴 기간이 설정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어느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이 변경되어 교역상대국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요청에 따라 차기 TPRM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음.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는 ① 검토대상 회원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② WTO사무국이 작성한 별도 보고서의 두 보고서를 기본 검토 자료로 하여 시행함. TPRB에서의 논의주제는 TPRM의 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및 관행들임. 우리나라에 대한 1차 TPRM은 1992년 7월 8일~9일에 스위스 제네바 GATT에서 40여개 회원국의 참가 하에 특별이사회 형식으로 실시되었음. 당시 TPRM 회의의 시 외국의 논평에 의하면 한국이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등 개방화 정책이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한국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교역규모에 맞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희망함. 세부 분야별 개선과제로는 복잡한 관세체계, 위생 및 검역기준의 불투명성 및 자의성 등 비공식 무역장벽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저해, 수입선다변화 정책과 국산화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만을 차별 우대하는 통상관행 존재, 농업분야의 과보호 등을 지적하였음. 2012년 9월에 실시된 TPRM은(1992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 여섯 번째로, 그동안의 무역정책 운영상 개선 실적 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성격을 띤.

Trade Act of 1974

(1974년 미국 통상법)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Special 301조는 다음과 같이 비교됨.

□ 법적 근거

- 통상법 301조 : 1974년 통상법(Trade Act)
- 슈퍼 301조, Special 301조: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

- 통상법에 의거 대통령에게 위임된 '행정명령'으로 결정시행

□ 발동 요건

- 통상법 301조 : 상대국의 구체적인 불공정 통상관행 대상
 - 통상협정상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관행·행위, 부당한 관행·행위, 불합리한 관행, 차별적인 관행
- 슈퍼 301조 : 일반적인 불공정 통상관행의 전반 대상
 - 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불공정 관행, 간접적인 무역장벽 및 무역수지관리를 위한 정부의 환율개입 경우 등 전반적 사항
- Special 301조 : 지적재산권분야의 불공정관행 대상

□ 운용 절차

-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반적 절차는 ①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청원의 제출 ② 조사 개시결정 ③ 상대국과의 협의 ④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 ⑤ 보복조치의 결정 ⑥ 보복조치의 시행 순으로 진행
- 일반 301조에서는 USTR 재량 또는 이해당사자(업계 등)가 제기한 청원을 검토한 후 USTR의 재량에 의해 조사를 개시하는 데 비해, 슈퍼 301조 절차에서는 PFCP(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강제성 부과

□ 조치 시한

- 통상법 301조(Regular 301)
 -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청원의 제출
 - USTR의 조사개시 결정 및 상대국과의 협의
 - USTR은 조사개시 결정 즉시 협상을 요청하되, 협상기간 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협상 개시 후 5개월 또는 협정에서 정한 협상기간의 종료 중 빠른 기간이내 불공정관행 조사개시
 - 조사개시 후 보복조치 결정
 - 수출보조금 관련사항은 7개월, 통상협정관련 건은 18개월, 기타의 경우 12개월, 수출육성정책은 6개월 이내 결정
 - 보복조치 시행
 - 조사기간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로 하되, 청원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USTR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80일까지 조치시행기간 연장 가능
- 슈퍼 301조 (Special 301조도 유사)
 - 대상국 선정
 - USTR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의회 제출(시한: 매년 3월 31일)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어부 의회에 보고(시한: 매년 4월 30일 - NTE보고서 발표 후 1개월 이내,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관행(PFCP),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가능관행(감시대

- 상관행), 기타관행 지정)
- 상대국과 협의
 - PECP 등 지정에 관한 의회보고 후 21일 이내에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해 해당국 정부와 90일에 걸쳐 협의
 - 조사개시 후 보복조치 결정
 - WTO관행일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감안 18개월, 차별적인 정부조달관행일 경우 6개월, 기타 불공정관행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보복조치 결정
 - 보복조치 시행
 - 조사기간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보복조치
 - 슈퍼 301조 유효기간
 - 3년간(1999년~2001년) 한시적 운영

Trade Diversion (무역전환)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의 체결 후 수입이 저비용 역외국가에서 고비용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

Trade Facilitation (무역원활화)

상품의 국경 간 이동의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 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화하여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중 하나로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DDA 협상 분야의 하나가 됨.

Trade Remedies (무역구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

Trade-chilling Effect

(무역냉각효과)

특정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 반덤핑 제도는 최종 관세 부과와 관계없이 조사개시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Trade Creation

(무역창출)

종전에는 역내국 사이에 없었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이후에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

(무역가중 평균관세율)

무역가중치에 따라 계산된 평균 관세율.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잠정세이프가드)

WTO ATC 하에서 협정대상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

Transparency

(투명성 · 공개주의)

무역정책, 관행 및 이들이 수립되는 과정의 공개. 예측 가능정도를 말하며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명료하게 공개, 공표되거나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WTO의 일반적 원칙을 말함.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우호 · 통상 · 항해조약)

보통 FCN조약이라는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음. 과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던 양자조약의 형태로서 양자간 무역 및 해운관련 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 일국의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산 소유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Treaty of Rome (로마조약)

1957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본 로마 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후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됨.

Trigger Price (발동가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품목별 CIF 수입가격이 발동기준가격(참조가격 : 1986년~1988년간 평균 CIF 수입가)의 90%를 하회할 경우 가격차별로 가격차의 30~90% 누진관세로 부과됨.

Trigger Level (발동수준)

WTO 농업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SSG)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①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일정비율 초과 ② 수입가격이 1986~1988년 기준 국내가격 보다 10% 이상 인하되는 것을 말함. ①의 경우에는 실행관세율 1/3 수준한도 내에서 추가관세를 당해 연도 추가관세를 당해 연도에 한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의 경우는 가격차의 일정비율을 추가관세로 부과할 수 있음.

TRIM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 무역관련 투자 조치)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 혹은 왜곡시킬 수 있는 규제나 유인(incentive)을 말함.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 내 무역의 비중이 증대하는 등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간의 연계가 심화됨으로써 이에 관한 적절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UR 협상과정에서 선진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시 기술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주권국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할 것과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TRIMs 협정은 상품무역(Trade in Goods)과 직접 관련된 투자조치에 적용됨. 따라서 서비스무역 관련 투자조치는 GATS에서 관할하며, 무역과 무관한 투자조치는 TRIMs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원국은 WTO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본 협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상품교역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위의 통고된 조치를 WTO협정 발효 후 선진국은 2년 이내, 개도국은 5년 이내, 최빈개도국은 7년 이내에 폐지해야 하며, WTO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상품교역이사회는 본 협정의 기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의 수정을 제안하기로 함. WTO/TRIMs협정의 발효로 상품교역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① 수출의무 ② 국산부품 사용의무 ③ 외환수지·무역수지 균형의무 등이 금지되었으나 선진국이 금지를 주장한 기술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도국이 주장한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행위규제도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본 협정에서는 향후 수정·보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 OECD, APEC 등에서 보다 강화된 TRIMs 관련 규범 제정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1994년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투자문제를 자유화의 진전과 다자간 체제의 강화를 위한 향후 작업부문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설립을 위해 5개의 Working Group이 작업 진행 중이며, 1994년 11월 APEC에서는 비구속적 투자원칙(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에 합의함으로써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1994년 7월 G-7 회의에서도 무역·투자문제 등 4개의 논의진전 상황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기로 합의하였음.

TRIP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새로운 제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며,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 때 비로서 권리화가 가능함.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같이 양도권, 지분권 및 포괄적 지배권을 갖게 되고 지적재산권자는 법적으로 배타적 지위를 부여받게 됨.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법체계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분야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창작보호 및 공정경쟁 보호로 나누어 짐.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하고,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신생물 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있음. UR협상 과정에 있어 지적재산권(IPR)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교역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IPR보호를 자국의 무역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됨. 그러나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GATT는 IPR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IPR을 협상 분야로 채택하여 IPR보호가 정당한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GATT규정을 명료화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고 위조상품의 국제 교역문제를 취급할 다자규범을 개발하게 되었음. WTO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IPR) 보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으로서, 기존의 관

런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기존의 국제협약의 보호수준보다 높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

Tropical Products (열대상품)

천연 및 가공 상태에 있는 다음 7개 그룹의 상품들은 열대상품에 대한 협상의 기초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음. 열대음료(커피, 차, 코코아), 향료·꽃 및 식물·특정유지종자, 야채오일 및 오일케익(예: 야자 및 코코넛 오일), 담배·쌀 및 열대뿌리(예: 마니옥), 열대과일 및 견과(예: 바나나, 오렌지 및 파인애플), 열대목재 및 고무, 황마(jute) 및 마섬유. 그러나 이 목록은 유연하게 해석됨. 예컨대 쌀은 특정 쌀 생산국에서는 열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음.

TRQ (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쿼터)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관세 제도임. 우리나라는 UR협상 결과 보리,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C/S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음. 관세할당제도는 UR협상 당시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고 수출국들에게 현행 혹은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자 소득감소와 같은 수입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수립된 수출입국간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TRQ제도는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의한 무역제한 조치에 비해 무역흐름을 덜 왜곡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량제한 조치에 비해 보다 시장지향적인 무역질서라는 측면에서 선호됨.

TSE (Total Support Estimate, 총지지추정치)

정책의 목적, 농가생산 및 소득, 농산물 소비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농업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납세자 및 소비자로부터의 농가에 대한 모든 이전의 연간화폐가치 지표임.

* $TSE = PSE(\text{생산자지지추정치}) + CSE$ 중 납세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이전 + $GSSE(\text{연구개발비, 하부구조 시설비 등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 $\%TSE = TSE / GDP$

TSB

(Textile Surveillance Body, 섬유감독기구)

다자간 섬유협정 체제하에서 존재하였던 TMB의 전신.

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

수출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품목의 순수출을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 -1에서 1까지 값으로 표시되며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고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짐.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2013년 2월 13일 EU와 미국은 정식으로 TTIP협상 개시를 위한 내부적 절차를 각각 시작할것임을 선언함. EU와 미국의 TTIP는 규모면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주체 간의 무역협정이 될 것이므로 세계무역 체제와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EU 27개국 GDP(17조 5천억달러)와 미국 GDP(14조 7천억달러)의 합이 2012년 기준 33조 2,600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47%에 달함.

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노동조합자문위원회)

1948년 마셜플랜과 연관되어 창설된 노동조합 기구로서, OECD의 공식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비정부기구. BIAC(기업·산업자문위원회)가 경영자 측의 견해를 대변하는데 반해 TUAC은 회원국의 주요 노조가 참여하여 노동자 측 견해를 대변함. 현재 TUAC에는 OECD 회원국 28개국 중 24개국에서 45개 전국노조연합체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회원 수는 모두 약 6천7백만 명에 달함. 주요활동 분야는, ① TUAC 전체회의의 합의에 따라 TUAC의 우선적인 관심분야는 경제사회정책, 고용, 고용훈련의 문제, 다국적기업, 무역과 노동기준, 개방의 분야로 확정 ② 환경문제에 대한 OECD의 활동에도 관심을 증대 ③ 주로 동유럽, 중부유럽 및 아시아의 비회원국과 진행되는 OECD의 활동 역시 TUAC의 주요 관심사임.

Tuna-Dolphin Case (참치-돌고래 사건)

멕시코가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치잡이 시 유자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이 멕시코 또는 그 중개국가인 EC 등에서 수입되는 참치에 대하여 수입제한조치를 내린 사건. 패널은 미국의 수입금지결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GATT 제 11조 1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음. ① 동정상품의 개념은 생산의 방법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 ② GATT 제 20조의 일반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은 GATT 체약국단에 의하여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GATT 패널은 채택되지 않는 패널보고서도 선례로서 참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1998년 새우-바다거북사건은 미국과 말레이시아·태국사이의 분쟁사이의 분쟁으로서, 참치-돌고래 사건과 내용 및 결과가 거의 동일함.

TO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 회의)

세계 각국은 그동안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저하로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태동되게 되었음. 1973년에는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선언을 시초로 지구환경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1982년 『세계자연헌장』 제정과 19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구성 및 ‘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인류공영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제창, 19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구성, 1984년 세계자연헌장제정, 1989년 제44차 UN총회에서 인간환경선언 채택 20주년이 되는 1992년에 환경개발회의를 소집키로 결의하게 되었음. 지구환경문제는 동서냉전체제 붕괴 후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 실사를 규율하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환경오염의 피해 및 영향은 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각 국가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 협조체계(Global partnership)가 필요함.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의(UNCED)가 개최되어 사상 처음으로 각국 정상간 리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규범에 합의하고,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동시달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공감대를 구축하게 되었음.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주요결정사항을 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을 채택하여 에너지, 토지,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및 여성, 교육 등 경제,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규범으로서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사항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리우선언』 및 『의제 21』의 이행을 평가·감시하기 위해 지속개발위원회(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화석연료 사용규제 원칙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선언』을 채택하였음. 리우 무역환경개발회의 이후 미국·EU 등 선진국의 환경중시 정책과 더불어 UN을 중심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OECD·GATT·UNCTAD 등 국제기구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와 GATT 자유무역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 통상법위원회)

1966년에 설립된 유엔 내 국제통상에 분야의 위원회로서 각종 국제규칙의 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특히 국제상사중재(國際商事仲裁) 및 조정, 국제수송 및 상품판매 등의 주제들에 대해 작업계획을 추진해왔고, 1973년 제3차 신용장통일규칙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음.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

동 협약은 전문,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로 구성된 인류역사상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으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간 협상을 거쳐 1982년 4월 30일에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자로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비준서를 1996년 1월 29자로 UN에 기탁, 1개월 후인 1996년 2월 28일 동 협약의 정식회원이 되었음. 동 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속하는 자원의 이용, 보전,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분쟁의 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협약의 핵심은 1970년대 중반 미국, 소련 등의 주요연안국의 200해리 EEZ 선포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던 200해리 EEZ 제도를 협약에서 성문화한 것으로 기존의 해양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

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개발위원회)

1992년 6월 리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권고하고 제4차 UN총회 시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결의함에 따라, 1993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발족됨. CSD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대기, 해양, 토양, 담수 등 39개 분야로 구성된 「의제21」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감시·평가하고, 「의제21」에 관한 각국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보고서 검토와 각종 국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산림원칙선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1993년 UN 경제사회이사회는 CSD의 이사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53개국을 선출한바 있음(임기 3년).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1950년대 중반부터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공업화된 선진국과의 현격한 경제격차를 인식한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들은 이를 국제문제화 하기 시작하였음. 저개발국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 간 격차해소문제에 대해 GATT에 건의하였으나 GATT의 대응이 미온적인 결과, 저개발국들의 무역확대문제는 UN의 주관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저개발국 대표들은 1962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국제무역회의개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저개발국들의 건의와 선진국들의 동의를 얻어 준비위원회를 구성, 3차에 걸친 준비위원회 끝에 프레비쉬(prebish) 보고서를 발표하고, 1964년 3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UN 무역개발회의(UNCTAD)를 개최, 동년 12월 개최된 UN 총회에서 항구적인 상설기구로 설립되었음. UNCTAD의 설립목적은 국제사회의 경제발전과 특히 개발도상국 무역의 확대 및 이에 관련한 경제개발상의 제 문제의 종합적 검토임. 우리나라는 1965년 1월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 전담기구의 설립을 결의함에 따라 1972년 12월 제27차 UN총회 결의에 의거 설립되었음. UNEP는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촉진과 권고, 환경관계유엔활동의 방향설정 및 조정에 관한 정책지침제공, 환경보호에 관해 각국 정부에 조언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UNEP 아시아지역 관리이사국으로 피선된 바 있음.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산업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로 지구기온이 상승하고, 이는 이상기후·해수면 상승·인체건강 등 생태계와 경제·사회면에 심각한 변화를 유발하는 바, 이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HFCs, CFCs, SF₆ 등)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고,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임. 1992년 5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6월 현재 186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한.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는바,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방안을 합의함(2008년~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Unethical business practice (비윤리적 영업관행)

의약품의 유통·처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부조리 등을 의미.

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 Agreement, 유엔공해어업 협정)

정식명칭은 ‘경제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 협약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으로서 1995년에 채택되고 2001년에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2일에 가입하였음. 5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에의 예방적 접근방법 적용, 지역 수산기구에 가입하거나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해당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기구의 의무 및 타국 정부 선박에 의한 어선 승선검색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Uniform Regulation (통일규칙)

FTA 협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지침.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 품종보호동맹)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 식물종자보호동맹. 1961년에 조약이 발효되어 1968년부터 보호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991년에 조약을 개정하여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시켰음. 현재 회원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7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 1월에 회원국으로 가입함.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음.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함. 여러 차례의 GATT 라운드 중에서 가장 폭넓은 주제가 논의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관세, 비관세 조치, 우선 분야인 열대상품, 천연자원 상품, 섬유 및 의류 GATT 조항들에 대한 검토, 긴급수입제한, 동경라운드 협정 및 협약, 보조금 상계 조치, 분쟁해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GATT체제 기능 효율화(FOGS : Functioning of the GATT System) 등이 논의되었음. 각 주제는 목적별로 구분, 설치된 협상 그룹이 관리함. 당시 GATT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상은 서비스의 GATT 편입에 반대했던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따라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추진하도록 함. 각료회의에서는 동 협상을 4년 내에 종결짓기로 합의함. 협상은 ① 폰타 델 에스테에서의 협상개시 시점으로부터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중간검토 기간 ② 1990년 12월 브뤼셀 각료회의 시까지 기간 ③ 마라케쉬 각료회의 등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2차 연장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3년 12월 15일 실질적으로 협상이 종결됨.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는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긴 협상 시간을 가진 라운드였음. 우루과이라운드의 주된 성과는 가중평균 관세의 38% 인하, 농산물 교역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GATT체제로 편입시킨 농업협정의 타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채택, 통일되고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설립,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재확인, 15개 다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등임. 기타 반덤핑, 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 규정 강화 등의 성과를 들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다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을 대체함으로써 동 분야를 GATT 규범 안으로 편입시킴.

URAA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URAA라는 용어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의 결과를 구체화한 최종법안인 “농업협정”이라 붙여진 부분에서 나옴. 본문에는 시장접근, 국내지원, 수출보조금, 그리고 감시와 지속에 관한 분야의 약속이 담겨있음. 더불어 URAA안에 있는 각 국가의 계획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는 명칭의 별도 합의가 있음. 이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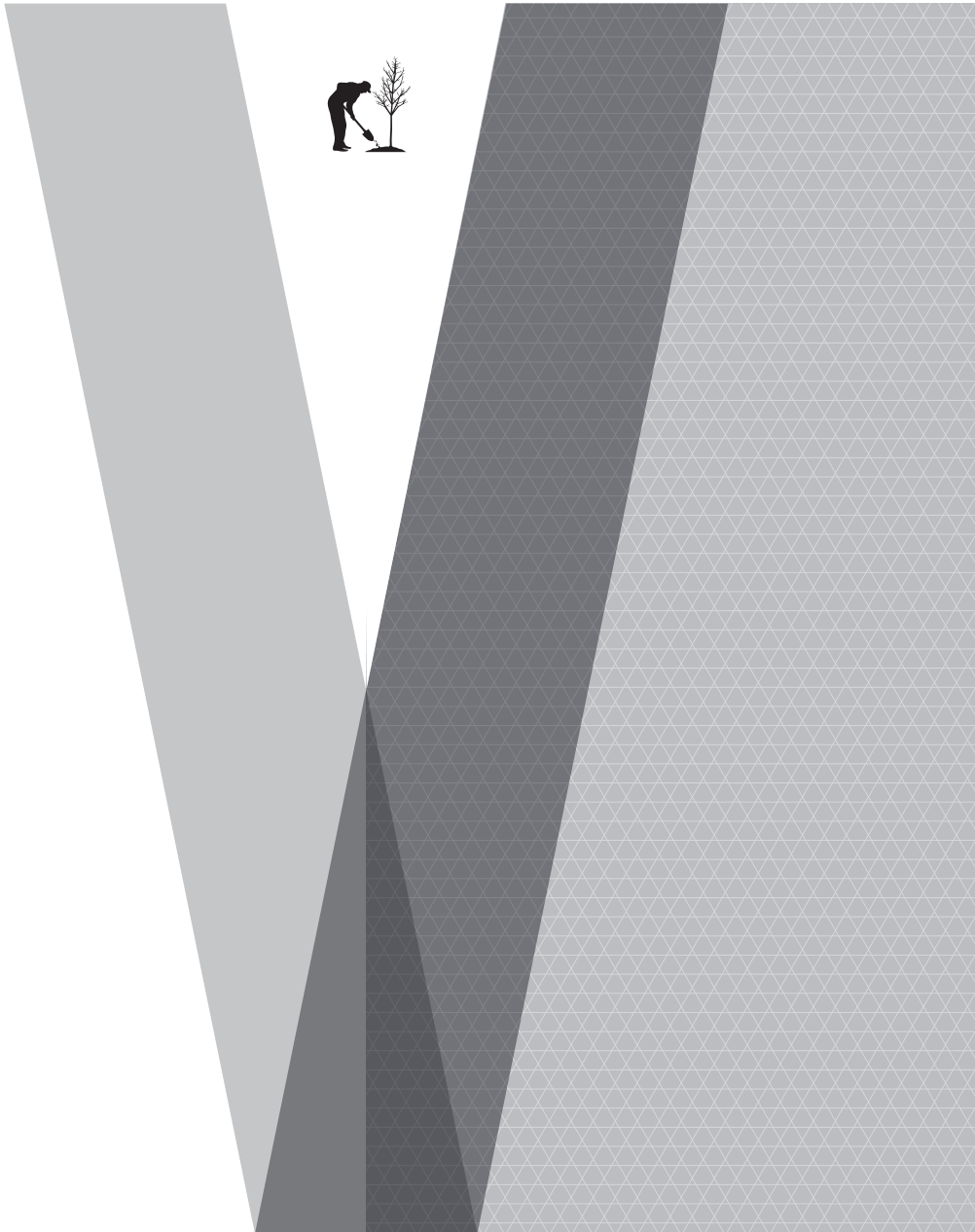
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채택, 개발, 집행에 있어 지침이 되는 규칙과 규율에 대한 다자적 토대 수립을 추구하여, 이를 통해 이 조치가 무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UR Acceleration (UR 가속화)

APEC EPG(저명인사그룹)의 제안 중 하나로서 APEC이 UR 합의사항을 앞당기는 선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50% 규칙을 적용하라고 권고함(개방 시기 50% 앞당김, 관세율 50% 감축 추가).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외무역협상을 담당하는 각료급 인사. 또한 동 기관을 지칭하기도 함.





농업통상 용어집



Value added criteria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판정규정(rules of origin)의 근본원리가 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임.

Variable Levy (가변과징금)

과일이나 농산물의 수확기 및 출하기에 맞추어 수입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적게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임. 말하자면 어떤 농산물이 수확되어 출하량이 갑자기 많아질 기간 동안에는 수입을 그만큼 줄이기 위하여 수입관세나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상품의 출하량이 적은 계절에 필요한 만큼 수입을 허용할 목적으로 관세나 과징금을 인하, 적용하는 제도임.

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자율규제)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회색규제 조치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해서 양자 간 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Grey Area Measures 참조).

Vertical Approach (수직적 접근방식)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비관세장벽 논의 시 거론되는 방식 중의 하나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산업 내에서 발견되는 비관세장벽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함.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도 있으나 산업별로 논의하는 만큼 특정산업에 이해관계가 많은 회원국들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VHT

(증열처리; Vapor Heat Treatment)

열대과일에 대한 병해충 사멸 처리의 일종으로 동남아산 망고 등에 기생하는 굴과실파리 (Oriental Fruit Fly) 등 병해충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사용됨. 이외의 병해충사멸처리 방안으로는 온탕침지(Hot water Treatment), 저온처리(Cold Treatment), 훈증소독(Fumigation) 등이 있으며, 수출국의 병해충 관리상황 및 위험정도에 따라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있음.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감시장치)

VMS는 현대적인 MCS의 일부로서 위성을 이용한 선박추적체계임. VMS는 어선관리당국에게 어선의 위치, 경로, 속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이 정보로 어선의 어업활동 등을 추론할 수 있음. 어획량 및 노력 자료도 VMS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으나 수작업이 필요함. 어업감시당국은 VMS 정보를 기초로 어선의 승선검색 등 추가적인 MCS 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Voluntary Quota Restructuring Scheme

(자발적 할당량구조조정 계획)

2006년 2월 1일 EU 설탕 공동시장조직(CMO)의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립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4년 동안 적용되었음. 본 계획 하에 설탕 생산자들은 2006~2007년부터 2009~2010년 동안 영구적으로 설탕생산 할당량을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 체감적 직불금을 받음.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Waiver (의무면제)

GAT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 상황 하에서 GATT 체약국단이 투표의 2/3 찬성(전체투표의 과반수이어야 함)으로써 범위 및 기준을 정하여 어떤 가입국의 특정 GATT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함. 어떤 국제적인 협정이나 국내법규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완화시키는 예외조항이 없이는 그 협정 또는 법규는 오래 존속할 수 없음. GATT에 있어서도 초기 계약에서부터 웨이버나 면책조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밖에도 특정국가들 사이의 이해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수의 예외조항도 도입되었음. 흔히 GATT를 일컬어 “온갖 예외조항으로 뒤범벅이 된 복합체”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들 예외조항들은 GATT에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었더라면 GATT의 발족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GATT의 예외규정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예외조항의 효력발생방식에 따르면 첫 번째 형태의 예외조항은 체약국단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웨이버(25조 5항), 환율조정후의 증가세조정(2조 6항), 경제개발과 관련한 특정조치(18조), 일부반덤핑조치(6조 6항(b)) 등이 이에 속함. 두 번째 형태는 GATT의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지만 GATT에의 통보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예외(12조 및 18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24조 7항), 긴급수입제한조치(19조) 등이 있음.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예외조항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서 20조의 ‘일반적 예외’와 21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가 이에 속하며 GATT상 체약국단에 부여된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25조에 규정된 웨이버 권한일 것임. ITO현장 및 GATT에 이 같은 일반적인 웨이버 규정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은 협상의 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나타났으며 준비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초안의 취지가 거의 그대로 협정으로 발전되었음. 25조 5항 이외에도 GATT에는 체약국단에 웨이버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 여러 규정이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18조 C 및 D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일정한 GATT의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단에 부여하고 있으며, 24조 10항도 체약국단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토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음. 25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하라.”는 구절임. 그리고 25조 5항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웨이버 권한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체약국단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버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 즉 웨이버의 부여에는 예외적인 사정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이며 지금까지 25조 5항에 의거하여 부여된 웨이버는 다음과 같은 7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 ① 어떤 체약국단에 웨이버를 부여하여 신생독립국 또는 준독립영역이 과거와 같이 특혜대우

- 를 받도록 하는 경우[예 : 미국의 태평양지역 신탁지역에 대해 부여된 웨이버(1951년), 리바다산품과 관련하여 이태리에 부여된 웨이버(1951년) 등]
- ② 어떤 계약국이 새로운 관세분류방식 또는 세계개혁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 반영되도록 양허표의 재교섭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웨이버
[예 : 미국의 관세분류와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1963년), BTM체계의 채택과 관련하여 페루에 대한 웨이버(1964년)]
- ③ 24조에서 정해진 기준에 합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무역결성에 있어 2개국 이상에 대해 자유무역지역형성과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
- ④ IMF비가맹국으로서 GATT 제15조에서 규정된 ‘특별외환협약’의 체결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소수 GATT계약국에 부여된 웨이버
- ⑤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 “수입과징금”의 부과를 허용한 웨이버
- ⑥ 농산물 수입쿼터를 허용한 웨이버
[예 :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의한 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4년), 일부농산물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9년)]
- ⑦ 일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취해진 계약국단의 결정
- 웨이버 권한의 남용은 주로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한 것이 많으며 특히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웨이버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세계 농산물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UR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이 기 획득한 웨이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음.

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컨센서스)

19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전략으로 미국 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1989년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경제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붙인 것에서 유래됨. 구소련 붕괴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구조조정 지원의 전제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적인 확산을 위해 내세운 조건들로서 미국 행정부, IMF, 세계은행이 모여 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이루어낸 합의라는 뜻임. 제3세계 국가들이 따라야 할 구조조정 조치는 정부 예산의 건전한 운영,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인하,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부의 규제축소, 재산권의 보호 등임. 조지소로스는 이를 시장근본주의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조지 스티글리츠도 개도국들에게 고금리 정책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며 IBRD에서 사퇴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 바 있음.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48년 4월 7일 26개 회원국이 세계보건기구 헌장(Magna Carta for Health of WHO, 세계보건헌장)을 비준함으로써 설치되었음.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사업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회원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요청국의 보건부문 발전을 위한 원조를 제공함. 평상시 및 긴급사태 발생 시에 각국 정부에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전염병과 풍토병, 기타 질병의 퇴치사업을 수행함. 필요시에 타 전문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영양, 주택, 위생, 오락, 근로조건 및 환경위생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실시함.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4년 현재 회원국은 194개국임. 세계보건기구의 조직은 총회, 6개의 지역사무소(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서태평양), 집행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됨.

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 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함.

WTO Plus 방식

FTA 체결 국가는 WTO 협정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 등 기존 WTO협정 준수의 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협정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소위 WTO Plus라 함.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WTO Trade Policy Review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중국, EU, 일본)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 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WTO 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즉, 보조금을 부여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나 기업그룹, 또는 산업그룹에만 한정하여 특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WTO 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WTO 분쟁해결절차)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및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승소국은 패널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의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됨.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상품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상품의 그룹별로 세계 공통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관세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역활동을 촉진하며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을 함. 현재 관세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와 이스탄불 협약 및 교토협약의 운영을 맡고 있음.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중서부태평양 참치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중의 하나로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4년 6월 19자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25일자로 가입함. 현재 호주, 일본, 미국 등 2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미크로네시아 포나페에 있음. 중서부태평양은 우리나라 참치생산량의 95%(약 27만톤)를 생산하는 주요어장임.

WCT

(WIPO Copyright Treaty, **WIPO 저작권조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함.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1974년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 간 기구.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임.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 **WIPO 실연, 음반조약**)

실연, 음반에 관한 저작권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신연가 인격권의 창설, 고정된 실연, 레코드를 이용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WRP

(Wetland Reserve Program, **습지유보계획**)

1990년 미국 농업법에서 실시된 환경보전제도의 하나. WRP는 표토와 식생의 복구와 야생 동식

물의 서식처, 수질개선, 홍수예방 담수, 지하수 복원을 위한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WRP는 농업인이 자신의 토지를 습지로 전환하거나 기존 습지의 농지로의 전환을 방지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토지은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보존유보계획(CRP)과 유사한 정책으로 참가자에게는 5년~20년 동안 에이커당 연간 임차료가 지불됨.

※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onservation Compliance 참조

WFC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이사회)

1974년 11월 세계식량회의에서 세계식량이사회 설립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제29차 UN총회 결의로 정식 발족됨. WFC는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 및 생산정책 등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WFC에서의 논의사항은 UN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됨. WFC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하는 36개국 정부대표(임기 : 3년)로 구성되며, 매년 6월 연례회의를 개최함.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FP(세계식량계획)은 1961년 UN총회 및 FAO 총회에서 설립기로 결의하고 1962년 4월 세계식량계획 설립협정을 승인함으로써 1963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함. 1965년 12월에는 UN 및 FAO에서 WFP의 무기한 존속을 결정함. 현재 WFP는 긴급 식량원조를 통해 각국의 비상사태해결에 노력하고 경제·사회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식량원조정책계획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FAO가 선출하는 30개국(임기: 3년)으로 구성되며 WFP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원조계획안의 검토 및 승인업무를 맡고 있음. UN회원국 및 FAO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동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6년 WF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가입함.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세계동물보건기구)

동 기구는 1924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서 동물의 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기구임. 현재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음.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참조)

WO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각국 정부의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 처리를 위해 1992년 9월 세계은행이 채택한 일련의 비경제적인 원칙. 동 지침은 외국인 투자자의 행위를 다루고 있지는 않음. 외국인투자는 경쟁촉진, 자본·기술 및 관리기법 등의 이전, 시장접근 개선 및 국제교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 대상국가의 장기 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혜택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장려하는 것이 보다 광범한 동 지침의 목적임.

World Investment Report

(세계투자보고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기술 및 관련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세계 투자동향 및 관련 의제에 관해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종종 동 보고서는 개도국이 경험하는 일부 문제들을 여전히 초국가기업의 작위 또는 부작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 이들 기업들의(외국인) 투자를 좋게 보고 있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 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임.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 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임.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 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Legal capacity)을 보유하고,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 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 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함.(회원국 당 투표권 1표)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에의 참

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음. 2013년 3월 기준 WTO 회원국은 159개국임.

WTO 보조금협정

(ASCM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정식명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으로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제조업, 임업, 광업, 수산업 등 비농업)의 보조금을 규율함. ASCM은 일반적 규범으로 본래 특정 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으나, DDA 협상결과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ASCM의 부속서(Annex)의 형태로 신설될 것으로 예상됨.

WTO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및 국제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등을 지칭. 동 협정들은 도쿄라운드(Tokyo Round) 기간 중에는 본래 규약(codes)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었음. 이들 협정들은 각자 해당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규율을 담고 있음. 동 협정들에 가입하는 것이 WTO 회원국 가입의 전제조건은 아님. 국제우육협정 및 국제낙농협정은 199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부속서 4에서 삭제됨.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Zanzibar Declaration (잔지바르 선언)

2001년 7월 22일~24일 중 개최된 최빈개도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선언. 이 회담이 개최된 장소가 탄자니아 공화국 잔지바르 섬이었음. 세계무역에서 최빈 개도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최빈개도국의 무역인프라 구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촉구. 또한 UNCTAD의 지속적인 기술원조, 최빈개도국에 유리한 TRIPS조항의 적용, 최빈개도국의 WTO가입 촉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Zero for Zero Tariff Reductions (무세화)

UR협상에서 처음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는 안 임.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음.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U는 종이, 목재, 비철금속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음.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ITA)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Zero for X

분야별 자유화 논의 시 거론되는 관세감축 방법 중 하나로,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X%로 감축하도록 하는 방법.

Zeroing (제로잉)

덤핑률 산정 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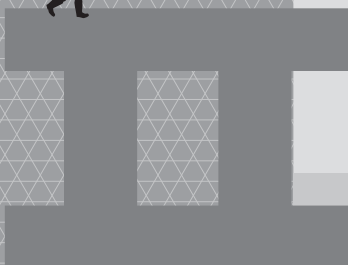
Zero option (제로옵션)

UR 협상 초기 주로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농산물 교역이나 생산을 왜곡하는 일체의 보조금을 사실상 10년 내에 철폐하지는 제안을 지칭하는 용어.

ZO



Dictionary of Agriculture Trade Policy Terms





농업통상 용어집

한글INDEX



㉑

가격보전직불제도 89

가격인상약속 278

가변과징금 366

가입 36

가입의정서 287

가입확대 143

가중다수결 292

각료결정 및 선언 236

각료이사회 106

감시감독통제 232

감시기관 330

감축대상 국내보조 250

감축대상 농업보조 48

강하성 어종 85

개도국 우대 321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311

개도국지원을 위한 통합체제 197

개발도상국 121

개발원조위원회 118

개방도 266

개방적 지역주의 266

개별실행계획 196

개입 재고량 202

개입구매가격 202

걸프협력회의 175

경계왕래어족 326

경사관세 336

경상수지 62

경쟁 정책 100

경제기술협력 139

경제사회위원회 145

경제지도자 정상회의 136

경제통합 139

경제협력개발기구 260

고관세 338

고도회유성어종 191

고위급회의 318

곡물년도 109

곡물메이저 182

공개입찰 266

공동농업정책 81

공동시장 99

공동실행계획 83

공식에 의한 것보다 적은 감축 221

공식적용방식 166

공적개발원조 260

공정무역 156

공정환율 265

공통이슈 109

공해 191

공해어업 191

관리무역 229

관리변동환율제도 229

관세 무세화 38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73

관세 334

관세격차 336

관세동맹 114

관세사 113

관세상당치 341

관세상한 341

관세양허 모델리티 341

관세양허 335

관세양허 335

관세영역 114

관세인상 337

관세인하 338

| | | | |
|-------------------|-----|----------------------|-----|
| 관세인하방식..... | 222 | 국내보조금..... | 126 |
| 관세자유구역..... | 113 | 국내운항권..... | 80 |
| 관세장벽..... | 341 | 국내총생산..... | 176 |
| 관세조화..... | 337 | 국민총생산..... | 179 |
| 관세조화..... | 190 | 국별 농업보호현황자료..... | 106 |
| 관세특혜수준..... | 341 | 국별 쿼터..... | 108 |
| 관세평가..... | 114 |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 255 |
| 관세품목..... | 337 | 국별양허표..... | 110 |
| 관세할당..... | 336 | 국영무역..... | 324 |
| 관세협력기구..... | 87 | 국영무역기업..... | 325 |
| 관세협력이사회..... | 86 | 국제 농업개발기금..... | 198 |
| 관세화 유예..... | 120 | 국제과학위원회..... | 203 |
| 관세화..... | 337 | 국제금융공사..... | 198 |
|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 | 320 | 국제노동기구..... | 198 |
| 관세환급제도..... | 127 | 국제무역기구..... | 206 |
| 관세회피 투자..... | 338 | 국제무역특혜제도..... | 186 |
| 관할해역..... | 210 | 국제부흥개발은행..... | 196 |
| 교차보복..... | 110 | 국제상호인정협정..... | 89 |
| 교차보상..... | 109 | 국제수역사무국..... | 265 |
| 교토 의정서..... | 217 | 국제수지..... | 73 |
| 구간 경계..... | 343 |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 62 |
| 구간 공식..... | 343 | 국제수지보호조항..... | 73 |
| 구매력평가..... | 281 | 국제식물보호협약..... | 204 |
| 구상무역..... | 64 |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 361 |
| 구속적 양허..... | 67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96 |
| 구제역..... | 162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192 |
| 구조기금..... | 327 | 국제통화기금..... | 199 |
| 구조조정 비용..... | 38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197 |
| 국가 위험도..... | 108 | 국제포경위원회..... | 206 |
| 국경 내 장벽..... | 65 | 국제표준화기구..... | 205 |
| 국경보호..... | 74 | 국제협동조합연맹..... | 196 |
| 국경세조정..... | 74 | 국제환경협약..... | 197 |
| 국경장벽..... | 57 | 권능부여조항..... | 143 |
| 국내농업보조의 카테고리..... | 75 | 규범..... | 306 |

규제철폐..... 305
 그린라운드..... 184
 그린룸 183
 금지 보조금..... 279, 286
 금지목록 또는 네거티브 방식..... 246
 기국주의..... 229
 기설정 의제..... 65
 기술규정..... 342
 기술장벽..... 343
 기업산업 자문위원회..... 66
 기업인 자문회의..... 38
 기여실적..... 109
 기준세율..... 64
 기준총보조총액 측정치..... 65
 기초발동수준..... 77
 긴급수입제한조치..... 310
 긴급수입제한조치..... 315
 까르네 협정..... 84

L

나우루협정당사국..... 277
 낙찰..... 58
 남극조약..... 49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86
 남동대서양수산기구..... 312
 남마.카리브 연안 국가군..... 185
 남미공동시장..... 23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90
 남아프리카관세동맹..... 310
 남태평양공동체 사무국..... 320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160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321
 내국민 대우..... 245
 노동조합자문위원회..... 353

녹색기후기금..... 176
 농기보유비축제도..... 159
 농업보조금..... 46
 농업보조총액..... 48
 농업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 48
 농업협정..... 42
 누적 피해판정..... 113
 누적조항..... 39
 뉴라운드 우호국..... 163
 뉴라운드협상..... 247
 능력배양 또는 능력형성..... 86

C

다국적 기업..... 240
 다원적 기능..... 240
 다자간 섬유협정..... 233
 다자간 투자협정..... 228
 다자간협상..... 240
 다자간환경협약..... 232
 다자주의..... 240
 단순 평균 관세율..... 318
 단위노력당 어획량..... 108
 단일직접지불제도..... 317
 대륙붕..... 103
 대서양 소고기/돼지고기 시장..... 56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197
 대외경제협력기금..... 139
 덤펵초안..... 129
 덤핑 마진..... 128
 덤핑..... 128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부와 원칙..... 221
 도착전 처리..... 278
 도교라운드..... 344
 도하개발아젠다..... 118

| | | | |
|-------------------|-----|-----------------------|-----|
| 독립국가연합 | 93 |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 351 |
| 동남아국가연합 | 54 | 무역관련 투자 조치 | 350 |
| 동등성 | 144 | 무역구제 | 348 |
| 동등하지 아닌 보상 | 221 |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339 |
| 동식물건강검역청 | 49 | 무역냉각효과 | 349 |
| 동아시아경제협력체 | 134 | 무역왜곡보조총액 | 268 |
| 동아시아비상쌀비축제 | 134 | 무역왜곡상당치 | 340 |
| 동종상품 | 222 | 무역원활화 | 348 |
| 드류의장 초안 | 121 | 무역장벽규정 | 339 |
| 디커플링 | 118 | 무역전환 | 348 |
| 디폴트조항 | 119 | 무역정책검토제도 | 346 |
| 딜론라운드 | 123 | 무역조정 지원조치 | 334 |
| ㄹ | | 무역창출 | 349 |
| 련던협약 | 223 |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 340 |
| 로마조약 | 350 | 무역투자위원회 | 112 |
| 로메협정 | 223 | 무역특혜협정 | 285 |
| 리스본협약 | 223 | 무역특화지수 | 353 |
| 리우선언 | 304 | 무역협상권한 | 345 |
| ㄴ | | 무역협상위원회 | 344 |
| 마드리드협약 | 228 | 무역환경위원회 | 111 |
| 마하트리히트 조약 | 228 | 무역환경위원회 | 99 |
| 만장일치제 | 101 | 무임승차국 | 166 |
| 먹이그물 | 166 | 무차별 원칙 | 249 |
| 먹이사슬 | 164 | 무효화 또는 침해 | 256 |
| 메일박스 | 229 | 문의처 | 144 |
| 면책조항 | 146 | 물량 대비 재고의 비율 | 326 |
| 멸종동식물 보호협약 | 94 | 물품세 | 148 |
| 명목지원계수 | 244 | 미 공법 | 276 |
| 모범규제관행 | 185 | 미 통상법 201조 | 312 |
| 무관세 무쿼터 | 122 | 미 통상법 301조 | 313 |
|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 | 319 | 미국 농업법 | 156 |
| 무역가중 평균관세율 | 349 | 미국 무역대표 | 363 |
| | | 미국 미국도정업협회 | 303 |
| | | 미국농업인연맹 | 38 |

미국밀생산자연협회..... 246
 미국축산협회..... 246
 미소 덤핑마진..... 120
 미소수입물량..... 247
 미소진 매커니즘..... 342
 미양허품목..... 232
 미주자유무역지대..... 168
 민감품목..... 314

ㅂ

바이오안전성의정서..... 279
 바젤협약..... 65
 반덤핑 자문위원회..... 39
 반덤핑관세..... 50
 반우회덤핑..... 49
 발동가격..... 350
 발동수준..... 350
 발리패키지..... 62
 방콕협정..... 63
 배출권거래제..... 142
 배타적 경제수역..... 140
 배타적경제수역..... 148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353
 법인..... 210
 법적 차별..... 120
 병해충 안전지역..... 275
 병행수입..... 273
 보고르선언..... 72
 보복..... 302
 보복관세..... 302
 보상..... 99
 보상지불제도..... 100
 보전동의 규정..... 102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373

보조금..... 74, 327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4
 보조상당측정치..... 142
 복수국간 무역협정..... 276
 복합관세..... 100
 복합세..... 100
 본선인도가격..... 163
 불라 규정..... 72
 부가가치기준..... 366
 부족불 제도..... 119
 북미자유 무역협정..... 244
 북서대서양수산기구..... 244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253
 분석 및 정보교환..... 47
 분석인덱스..... 49
 분야별 자유화..... 313
 분야별 접근방법..... 313
 분야별 제외..... 71
 분야별 조기 자유화..... 147
 분쟁조정 전문가그룹..... 126
 분쟁해결..... 125
 분쟁해결기구..... 128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128
 불균등 관세..... 338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198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204
 불완전 상호주의..... 224
 브레튼우즈 체제..... 75
 브뤼셀 각료회의..... 76
 브릭스..... 75
 블레어하우스 합의..... 69
 비관세장벽..... 252
 비관세조치..... 252

| | | | |
|---|-----|----------------------|-----|
| 비교역적 기능 | 254 | 상한 설정 | 83 |
| 비농산물시장접근 | 245 | 상호검토 | 275 |
| 비누적 | 250 | 상호교환협정 | 331 |
| 비상환상품용자제도 | 251 | 상호인정협정 | 241 |
| 비상환청구권용자 프로그램 | 252 | 상호주의 | 300 |
| 비선형 공식 | 250 | 상호주의, 호혜성 | 298 |
| 비연계소득보조 | 118 | 생물다양성 | 68 |
| 비위반사건 | 253 | 생물다양성협약 | 103 |
| 비위반청구 | 252 | 생물자원 | 67 |
| 비윤리적 영업관행 | 361 | 생산국 과세원칙 | 267 |
| 비자동수입허가 | 249 | 생산자 은퇴계획 | 285 |
| 비종가세 | 249 | 생산자지지추정치 | 287 |
| 비특혜 원산지 규정 | 251 |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 71 |
| 비합치 조치 | 249 | 생산탄력계약 | 285 |
| | | 생태계적 접근 | 134 |
| |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73 |
| | | 서비스무역이사회 | 113 |
| | | 서비스의 공급형태 | 237 |
| | | 서비스협상그룹 | 180 |
| | | 선박감시장치 | 367 |
| | | 선별성 | 313 |
| | | 선적전 검사 | 283 |
| | | 선진 7개국 | 172 |
| | | 선택세 | 40 |
| | | 설탕공동시장조직 | 95 |
| |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42 |
| | | 섬유감독기구 | 353 |
| | | 섬유감시기구 | 343 |
| | | 섬유류 통관협력 | 113 |
| | | 성장삼각지대 | 187 |
| | | 세계 무역기구 설립협정 | 45 |
| | | 세계관세기구 | 373 |
| | | 세계동물보건기구 | 375 |
| | | 세계무역기구 | 376 |
|  | | | |
| 사실상의 차별 | 119 | | |
| 사용 대비 재고 비율 | 326 | | |
| 사전예방 원칙 | 281 | | |
| 사전통보승인 | 277 | | |
| 상계가능보조금 | 37 | | |
| 상계관세 | 115 | | |
| 상계조치 | 106 | | |
|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 | 328 | | |
| 상설상소기구 | 310 | | |
| 상설위원회 | 323 | | |
| 상소검토 | 52 | | |
| 상소기구 | 52 | | |
| 상업적 고려 | 99 | | |
| 상업적 주제 | 97 | | |
| 상업차관 | 96 | | |
| 상주대표위원회 | 105 | | |
| 상품무역이사회 | 112 | | |
| 상품신용공사 | 87 | | |

| | | | |
|-------------------------------|-----|--------------------|-----|
|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 372 | 수출가격..... | 151 |
|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 | 373 | 수출경쟁..... | 149 |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 231 | 수출반환..... | 151 |
| 세계보건기구..... | 372 | 수출보조..... | 151 |
| 세계식량계획..... | 375 | 수출보험..... | 150 |
| 세계식량이사회..... | 375 | 수출세..... | 153 |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374 | 수출소득보상제도..... | 323 |
| 세계투자보고서..... | 376 | 수출신용..... | 148 |
| 세관, 출입국관리 및 검역..... | 92 | 수출신용보증..... | 149 |
| 세번 변경..... | 92 | 수출신용보증계획..... | 149 |
| 세번..... | 337 | 수출신용보증제도..... | 185 |
| 소규모 취약국가..... | 330 | 수출자율규제..... | 366 |
|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 200 | 수출증대프로그램..... | 139 |
| 소득안전망..... | 310 | 수출진흥계획..... | 150 |
| 소비국 과세원칙..... | 121 | 수출쿼터..... | 151 |
| 소비자지주정치..... | 110 | 수평적 양허..... | 192 |
| 소액관세..... | 255 | 수평적 이슈..... | 192 |
| 소하성 여족..... | 48 | 수평적 접근방식..... | 192 |
| 소해면상뇌증..... | 76 | 슈퍼 301조..... | 329 |
| 수량제한..... | 292 | 스왑거래..... | 330 |
| 수산보조금 개도국 특별대우..... | 311 | 스위스 공식..... | 331 |
| 수입과징금..... | 200 | 스파게티볼 효과..... | 320 |
| 수입권 구매..... | 293 | 스페셜 301조..... | 319 |
| 수입선다변화 제도..... | 126 |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 | 104 |
| 수입제한..... | 200 | 습자유보계획..... | 374 |
| 수입차익..... | 232 | 시장가격지지..... | 239 |
| 수입쿼터..... | 200 | 시장개방요구서..... | 301 |
| 수입할당..... | 293 | 시장개방요청 및 제언방식..... | 305 |
| 수입허가..... | 199 | 시장교란..... | 230 |
| 수입허가절차..... | 199 | 시장실패..... | 228 |
| 수직적 접근방식..... | 366 | 시장옹자제도..... | 230 |
| 수출 보조금..... | 151 | 시장접근..... | 230 |
| | | 시장질서유지협정..... | 265 |
| | | 시장촉진정책..... | 239 |

| | | | |
|---|-----|-----------------------|-----|
| 시장투명성..... | 230 |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 41 |
| 시카고 협약..... | 92 | 아시아 개발은행..... | 39 |
| 식량순수입 개도국..... | 248 | 아시아 고도 성장국..... | 130 |
| 식량안보..... | 165 |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 41 |
| 식량원조..... | 164 |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 56 |
| 식물위생증명서..... | 276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 145 |
| 식부면적 감축계획..... | 53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50 |
| 식품권..... | 165 |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 36 |
| 식품안전..... | 164 |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국가.. | 37 |
| 식품안전검사국..... | 167 | 약속..... | 97 |
| 식품의약품국..... | 160 | 양자간 무역협정..... | 66 |
| 신규가입국..... | 298 |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 66 |
| 신동반자협정..... | 274 | 양자주의..... | 67 |
| 신법 우선의 원칙..... | 221 | 양자지불방식협정..... | 75 |
| 신속처리권한..... | 159 | 양자협상..... | 66 |
| 신속처리절차..... | 159 | 양해각서..... | 238 |
| 신재생에너지지침..... | 299 | 양허..... | 101 |
|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 | 303 | 양허관세..... | 74 |
| 신축성 원칙..... | 284 | 양허비율..... | 67 |
| 신축성 제한요건..... | 36 |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 67 |
| 신축성..... | 162 | 양허표..... | 311 |
| 신호등 분류방식..... | 299 | 양허표의 수정..... | 238 |
| 신흥시장계획..... | 142 | 양허협상..... | 101 |
| 실질적 변형 기준..... | 328 | 여군탐지기..... | 161 |
| 실행관세..... | 52 | 여류군집장치..... | 156 |
| 실효환율..... | 140 | 어업관리..... | 161 |
| 심각한 손상..... | 314 | 어획증명제도..... | 90 |
| 싱가폴 각료회의..... | 317 | 업계 간 자율거래제도..... | 311 |
| 싱가폴 이슈..... | 317 | 에너지독립안보법..... | 141 |
| | | 엘니뇨 현상..... | 141 |
|  | | 역내 부가가치 기준..... | 300 |
|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 40 | 역내가공..... | 203 |
| 아세안 행동계획..... | 134 | 역내가치비율..... | 307 |
|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 55 | 역내포괄경제협력협정..... | 298 |

| | | | |
|----------------------------------|-----|-------------------------------|-----|
| 역만장일치제 | 302 | 원산지 규정 | 306 |
| 역사적 특혜 | 192 | 원산지 명칭 | 52 |
| 역외가공 | 268 | 원산지 증명 | 91 |
| 역진방지장치 또는 자유화후퇴 방지 | 298 | 원산지 표시 | 231 |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92 | 원산지 표시제도 | 108 |
| 연안운송 금지 | 80 | 원산지 | 107 |
| 열대상품 | 352 | 원산지증명서 | 80 |
| 영사거래 | 102 |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322 |
| 영업관행 | 77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 45 |
| 영해 | 342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원회 | 98 |
| 영해기선 | 64 | 위장된 무역장벽 | 125 |
| 예방적 접근 | 284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 190 |
| 예산행정위원회 | 62 | 위험관리 | 304 |
| 오사카선언 | 267 | 위험평가 | 304 |
| 오사카행동지침 | 260 | 유럽공동체 | 136 |
| 오염자 부담원칙 | 277 | 유럽규격 | 143 |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238 | 유럽농민단체협의회 | 104 |
| 온실가스 | 178 | 유럽농협연합회 | 96 |
| 완전생산기준 | 36 | 유럽부흥개발은행 | 135 |
| 왜곡 | 126 |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 137 |
| 외국시장개척 정책 | 163 | 유럽연합 | 146 |
|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 376 | 유럽이사회 | 147 |
| 외국인 직접투자 | 160 | 유럽자유무역연합 | 140 |
| 외부참조가격 | 153 | 유럽중앙은행 | 135 |
|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 362 | 유럽지역발전기금 | 144 |
|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 362 | 유럽통화단위 | 137 |
| 우선협상대상국 | 284 | 유럽평의회 | 105 |
| 우호·통상·항해조약 | 349 | 유로화 | 146 |
| 우회 수출보조 | 93 | 유보안 | 302 |
| 우회덤핑 | 93 | 유엔공해어업 협정 | 361 |
| 워싱턴 컨센서스 | 371 | 유엔국제 통상법위원회 | 359 |
| | | 유엔기후변화협약 | 360 |
| | | 유엔무역개발회의 | 360 |

| | | | |
|----------------------|-----|---------------------|-----|
| 유엔식량농업기구 | 157 | 자원폐기계획 | 301 |
| 유엔지속개발위원회 | 359 | 자유무역지대 | 166 |
| 유엔해양법협약 | 359 | 자유무역협정 | 167 |
| 유엔환경개발회의 | 358 | 자유회수준동결 | 166 |
| 유엔환경계획 | 360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278 |
| 유전자변형생물체 | 179 | 잔존수입제한 | 301 |
| 유전자변형생물체 | 224 | 잔지바르 선언 | 380 |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 39 | 잠정 반덤핑관세 | 279 |
| 유효보호율 | 145 | 잠정 상계관세 | 279 |
| 유효지원율 | 144 | 잠정검토제도 | 202 |
| 융자부족분지불제도 | 223 | 잠정세이프가드 | 349 |
| 음반조약 | 374 | 잠정조치 | 280 |
| 의견 | 267 | 재사용 | 301 |
| 의무면제 | 370 | 재활용 | 298 |
| 의정서 | 286 | 저울관세쿼터 | 352 |
| 의제 2000 | 41 | 저작권 | 105 |
| 의제 21 | 42 | 저작권조약 | 105 |
| 이월 | 84 | 적극적 예방 | 280 |
| 이행현황 감독기구 | 237 | 적정보호수준 | 47 |
| 인과성 | 85 | 적정수준 보호, ALOP | 49 |
| 인도양참치위원회 | 203 | 적하목록 | 84 |
| 일괄수락원칙 | 317 | 적하보험 | 201 |
| 일몰조항, 자동소멸조항 | 329 | 전기이행 | 167 |
| 일반관세 | 177 | 전미열대 참치위원회 | 196 |
| 일반적 예외 | 177 | 전용 | 331 |
| 일반특혜관세제도 | 186 | 전자상거래 | 141 |
| 임시 세이프가드 | 287 | 전통어업 | 54 |
| 잉여농산물 처분원칙 | 158 | 전환적 덤핑 | 126 |
| ㄱ | | 점진적 자유화 | 280 |
| 자기자본비율 | 68 | 접촉수역 | 103 |
| 자동성 | 57 | 정부조달 | 181 |
| 자동수입허가 | 57 | 정부조달협정 | 181 |
| 자발적 할당량구조조정 계획 | 367 | 정상가격 | 253 |
| | | 제3국 | 342 |

제규범 262
 제로업선 380
 제로잉 380
 제외 85
 제조공정방법 281
 제한입찰 224
 조건불리지역 222
 조기 자유화 56
 조기경보제도 135
 조기수확 135
 조류독감 47
 조부조항 183
 조상 84
 조정관세 40
 조정국회의 103
 증가세 상당치 58
 증가세 38
 종량세 321
 주선, 조정, 중개 180
 주요 5개국 162
 주요 공급국 288
 주한미군지위협정 318
 중간재 흡수원칙 39
 중간평가 235
 중력모형 183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 86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90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374
 중재 53
 중첩적 과세 339
 중첩적 과세 85
 증열처리 367
 지라르 공식 178
 지리적 표시 177

지리적표시 94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330
 지역무역협정 305
 지역수산물관리기구 303
 지역주의 299
 지역협정위원회 98
 지적재산권 205
 지지 가격 329
 지침 123
 직접지불제도 123
 집행위원회의 총국 122

㉠

참치-돌고래 사건 354
 채무불이행 119
 책임수산업규범 89
 청정개발체제 94
 계약국 103
 초과할당 관세 268
 초기 가시화 자발적 선행조치 127
 총량 쿼터 179
 총보조 총액측정치 344
 총지지추정치 352
 총체적 감축방식 178
 총허용어획량 334
 최대지속적생산량 240
 최빈개도국 220
 최소부관원칙 220
 최소시장접근 237
 최소허용보조 121
 최종의정서 156
 최초협상국 권한 201
 최혜국대우 면제 235
 최혜국대우 233

| | |
|--------------|-----|
| 추적권 | 304 |
| 침입성외래종 | 203 |

ㄱ

| | |
|-------------------|-----|
| 카리브해 공동시장 | 84 |
| 칼보조항 | 81 |
| 캐나다 정기간행물사건 | 81 |
| 캐나다-칠레 FTA | 88 |
| 케네디 라운드 | 214 |
| 케언즈 그룹 | 80 |

ㄴ

| | |
|------------------------|-----|
| 탄력관세 | 162 |
| 탄소발자국 | 83 |
| 태평양 육류 시장은 구제역 | 272 |
| 태평양경제인협의회 | 274 |
| 태평양경제협력회의 | 275 |
| 태평양기업인포럼 | 274 |
| 통관세 | 114 |
| 통보 | 248 |
|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 372 |
| 통일규격 | 190 |
| 통일규칙 | 361 |
| 통일원산지규정 | 190 |
| 통합협정문 | 102 |
| 투명성·공개주의 | 349 |
| 투자, 기술 및 관련금융위원회 | 97 |
| 투자관련 무역조치 | 203 |
| 투자보장협정 | 69 |
| 투자서비스에 관한 지침 | 205 |
| 투자촉진행동계획 | 204 |
|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 322 |
|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322 |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221 |

| | |
|-----------------|-----|
| 특별품목 | 319 |
| 특정성 | 319 |
| 특정위험물질 | 322 |
| 특혜 원산지 규정 | 282 |
| 특혜 | 282 |
| 특혜관세 | 282 |
| 특혜마진 | 229 |
| 특혜침식 | 282 |

ㄷ

| | |
|-----------------------|-----|
| 파리클럽 | 274 |
| 파리협약 | 273 |
| 패널 | 272 |
| 페이먼트 인 카인드 프로그램 | 277 |
| 편법 관세화 | 124 |
| 편의치적선 | 163 |
| 평균작물수입 | 37 |
| 평행주의 | 274 |
| 평화조항 | 275 |
| 포괄성 원칙 | 283 |
| 포괄적 관세화 | 101 |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91 |
| 포지티브 시스템 | 281 |
| 푼타 델 에스테 선언 | 288 |
| 품목별 협상방식 | 205 |
| 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 251 |
| 품목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 285 |
| 프로캅포 | 278 |
| 피시 프렌즈 그룹 | 161 |
| 피해 | 201 |

ㄹ

| | |
|--------------|-----|
| 하바나 헌장 | 190 |
| 하한 설정 | 163 |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312

한국국제협력단..... 214

한국품목분류 193

한도양허..... 91

한-미 쇠고기 분쟁 214

할당관세..... 58

할당관세율..... 201

항구국조치..... 280

해양보호구역..... 239

해외민간투자공사 266

허용대상 국내보조 148

허용대상농업보조 183

허용보조금..... 248

현상/규제 동결..... 323

현시비교 우위지수 302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 115

현행시장접근 95

협상 세부원칙..... 237

협상 주요 4개국 292

협상방식..... 94

협의..... 102

협정가입 조건부 최혜국대우..... 95

협정별 제안..... 56

호르몬사건..... 138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 57

혼합세 96

확정 반덤핑관세..... 120

환경마크..... 141

환경비용의 내부화 202

환경표시제..... 136

환급..... 127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345

회색지대조치 184

후기(後期)이행 62

휴경제도..... 316

1

10그룹..... 172

113조 위원회..... 53

194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74

1974년 미국 통상법..... 346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74

2

20그룹..... 172

22조 면제 312

33그룹..... 172

7

77그룹..... 172

7월 패키지..... 210

A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Working Group..... 56

A-H1N1..... 46

APEC 각료회의..... 236

APEC 기업망..... 50

APEC 무역·투자위원회..... 51

APEC 비구속적 투자준칙..... 51

APEC 연구센터..... 54

APEC 저명인사그룹..... 144

APEC 정상회의..... 40

ASEAN 산업협력 프로그램..... 55

ASEAN 투자지대 55

ASEM (Asia-Europe Meeting,

| | | | |
|---------------------------------|-----|-------------------------------|-----|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 55 | GATT 18조..... | 175 |
| ASEM Connect | 56 | GATT 20조..... | 175 |
| ASEM 경제장관회의 | 142 | GATT 8조..... | 174 |
| B | | Global Research Alliance | |
| Basic Instrument and | | on Agricultural Greenhouse | |
| Selected Document | 68 | Gases | 184 |
| C | |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 |
| Closer Economic Relations | 91 | 모형..... | 187 |
| Conformité Européé | 90 | Gross National Product | |
| Contingent Measure | 103 | Deflator..... | 180 |
| Cotton-4 | 105 | H | |
| Critical Mass | 109 | HOD 회의 | 192 |
| Custom-Trade Partnership | | I | |
| against Terrorism..... | 80 | Invisibles Meeting..... | 203 |
| C보존유보계획..... | 110 | J | |
| E | | Jones Act..... | 210 |
| EC 바나나분쟁..... | 138 | M | |
| EC 통합관세 | 334 | MFN 관세..... | 234 |
| EU 유지종자분쟁 | 137 | N | |
| EU 집행위원회..... | 97 | National Farmers Union | 248 |
| Euro 이사회..... | 147 | O | |
| Everything but Arms | 135 | OECD 각료이사회..... | 264 |
| F | | OECD 경성 카르텔 권고..... | 264 |
| FAO 이행협정 | 157 | OECD 농업위원회 | 263 |
| First Action..... | 161 | OECD 뇌물방지협약..... | 264 |
| G | | OECD 양대 자유화규약 | 95 |
| GATT 14조..... | 174 | OECD 특별집행위원회 | 264 |
| GATT 17조..... | 175 | | |

OECD 협정 263

OECD위원회 및 작업반 263

S

Shrimp-Sea Turtle 사건 314

Sliding scale 318

T

TRQ 관리 344

U

UR 가속화 363

W

WIPO 저작권조약 374

WTO Plus 방식 372

WTO 각료회의 236

WTO 농업위원회 97

WTO 보조금협정 377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377

WTO 분쟁해결절차 373

WTO 일반이사회 176

Z

Zero for X 380